2023회계연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외 교 부	소관
통 일 부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재 외 동 포 청	소관

2024. 8.

외 교 통 일 위 원 회

2023회계연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4. 8.
외교통일위원회

Ⅰ. 소관 기관 회부 결산

1.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o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o 기금 :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2. 통일부 소관

o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o 기금 : 남북협력기금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o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4. 5. 31.

2. 회부일자 : 2024. 6. 27.

3. 상정 및 의결일자

가. 외교부 소관

□ 제417회국회(임시회)

o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4. 8. 13.)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제417회국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 8. 28.)

- 상정・대체토론

•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 8. 29.)

- 상정・대체토론・원안의결

o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2024. 8. 29.)

- 상정・대체토론・원안의결

나. 통일부 소관

□ 제417회국회(임시회)

o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4. 8. 13.)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제417회국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 8. 28.)

- 상정・대체토론

•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 8. 29.)

- 상정・대체토론・원안의결

o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2024. 8. 29.)

- 상정· 대체토론・원안의결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제417회국회(임시회)

o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4. 8. 13.)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제417회국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 8. 28.)

- 상정・대체토론・원안의결

o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2024. 8. 29.)

- 상정· 대체토론・원안의결

라. 재외동포청 소관

□ 제417회국회(임시회)

o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4. 8. 13.)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제417회국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 8. 28.)

- 상정・대체토론・원안의결

o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2024. 8. 29.)

- 상정· 대체토론・원안의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외교부 소관 : 수석전문위원 송 병 철

I.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 입

< 세입결산 개요 >

(단위 : 백만원,%)

과 목	세 입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과 수납액 차 (C-A)	예산액대 수납액 비율 (C/A)
재산수입	520	422	419	-	3	△101	80.6
경상이전수입	7,203	78,967	78,801	-	166	71,598	1,094.0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128,802	161,398	161,398	-	-	32,596	125.3
수입대체경비 수입	130,810	155,535	155,535	-	-	24,725	118.9
합 계	**267,335**	**396,322**	**396,153**		**169**	**128,818**	**148.2**

2023년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673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961억 5,300만원으로 당초 세입 예산액 대비 1,288억 1,800만원이 증가(148.2%)하였음. 수납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당초 세입 예산액 대비 경상이전 수입 715억 9,8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325억 9,600만원, 수입대체경비수입 247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세입증감액조서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편성대비 증감액		증 감 사 유
	증	감	
11관 재산수입	**82**	**183**	
51항 관유물대여료	-	183	국유재산 건물 임대 수입액 감소 및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 수입액 증가
512목 건물대여료	-	183	
54항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82	-	
546목 기타재산이자수입	82	-	
12관 경상이전수입	**71,598**	-	
57항 변상금 및 위약금	519	-	국고보조금(분담금) 반환 등 기타경상이전 수입액 증가 *NATO의 아프간군신탁기금(ANATF) 58,512,000 미불 잔액 반납액 포함
571목 변상금	48	-	
572목 위약금	471	-	
59항 기타경상이전수입	71,079	-	
596목 기타경상이전수입	71,079	-	
13관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32,943**	**347**	
65항 면허료 및 수수료	32,943	-	사증 및 공증 수수료 등 영사 수입액 증가
651목 면허료 및 수수료	32,943	-	
69항 잡수입	-	347	
691목 기타잡수입	-	347	
14관 수입대체경비수입	**24,725**	-	
65항 면허료 및 수수료	24,725	-	여권 수수료 수입액 증가
651목 면허료 및 수수료	24,725	-	
합 계	**129,348**	**530**	

2. 세 출

가. 개 요

< 세출결산 개요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C/A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3,249,526	3,284,782	3,162,910	97.3	96.3	9,004	112,868

※ 예산현액(3,284,782) = 당초예산액(3,249,526) + 전년도 이월액(6,517) + 예비비(62,572) + 수입대체초과지출승인액(22,300) - 이체(56,133)

2023년도 당초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조 2,495억 2,6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5억 1,700만원, 예비비 625억 7,200만원, 수입대체초과지출승인액 223억원 및 이체 △561억 3,300만원으로 인하여 예산현액은 3조 2,847억 8,200만원이 되었으며, 이 중 3조 1,629억 1,000만원을 집행(97.3%)하였고, 90억 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28억 6,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나. 예비비

(단위 : 백만원)

과 목	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통일·외교	62,572	53,890	4,022	4,660
정상 및 총리외교	32,859	28,548	1,071	3,240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4,896	3,023	947	926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2,820	322	2,004	494
재외동포청 이체	21,997	21,997	-	-

2023년도 예비비는 정상 및 총리외교,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등 4개 사업에 총 625억 7,20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정상 및 총리외교 32억 4,000만원,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9억 2,600만원,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4억 9,400만원을 각각 불용처리하였음.

다. 전 용

< 전용 개요 >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전 용 사 유	금 액
기 타	재외동포청 출범 관련 예산 비목 전환	15,235
	인도적 지원(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	8,420
	교체여비	4,793
	정상 및 총리 해외순방행사	2,130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	1,444
	부산세계박람회 지지교섭 활동	592
	기타	16,864
합 계		**49,478**

2023년도 전용액은 총 494억 7,800만원으로, 재외동포청 출범 관련 예산 비목 전환 152억 3,500만원, 인도적 지원(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 84억 2,000만원, 교체여비 47억 9,300만원 등에 전용되었음.

라. 이 용

< 이용 개요 >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전 용 사 유	금 액
기 타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재외공관 공공요금 부족	2,880
합 계		2,880

2023년도 이용액은 총 28억 8,000만원으로,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재외공관 공공요금 부족에 이용되었음.

마. 수입대체경비

< 수입대체경비 세출결산 개요 >

(단위 : 백만원)

과 목	세출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초과 지출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증감액	이용·이체액	초과지출 승인액					
외교·통일	85,620	2,109	-	-	22,300	110,029	109,482	64	482	-
-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 (수입대체경비)	85,620	2,109	-	-	22,300	110,029	109,482	64	482	-

2023년도 수입대체경비의 당초 세출예산액은 856억 2,0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1억 900만원, 초과지출승인액 223억원이 합산되어 예산현액

은 1,100억 2,900만원임.

이 중 1,094억 8,200만원이 집행되었고, 6,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8,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바. 이 월

< 이월 개요 >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이월사유	금 액
미지급금 이월	계약조건에 따른 미지급금 발생 등	5,826
	연구용역 미완료로 인한 이월 등	720
	소 계	**6,546**
사업계획 변경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665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량 증가	1,793
	소 계	**2,458**
합 계		**9,004**

2023년도 이월 규모는 90억 400만원으로, 계약조건에 따른 미지급금 이월(58억 2,600만원) 발생 등이 주요 사유임.

사. 불 용

< 불용 개요 >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불 용 사 유	금 액
지급사유 미발생	인건비 지급사유 미발생 등	4,487
	소 계	**4,487**
계획변경 또는 취소	행사변경 및 취소로 인한 미지급금 발생	3,809
	소 계	**3,809**
예산 절감	사업 예산 절감	1,725
	소 계	**1,725**
환율 변동	편성액 대비 집행 환율 변동	253
	소 계	**253**
집행잔액	기타 집행잔액	102,593
	소 계	**102,593**
합 계		**112,867**

2023회계연도 불용액은 총 1,128억 6,700만원으로, 지급사유 미발생 44억 8,700만원, 계획변경 또는 취소 38억 900만원, 예산 절감 17억 2,500만원, 환율변동 2억 5,300만원 및 집행잔액 1,025억 9,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Ⅱ.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검토의견

1. 개 요

202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구조를 보면, 한반도 평화 조성 등 18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3조 2,495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5억 1,700만원, 예비비 625억 7,200만원, 수입대체초과지출승인액 223억원 및 이체 △561억 3,300만원으로 인하여 예산현액은 3조 2,847억 8,200만원임. 이 중 3조 1,629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90억 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28억 6,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외교부 프로그램별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프로그램	2022 결산	2023년				2024 예산
		본예산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계	2,811,547	3,249,526	3,284,782	3,162,910	96.3	4,029,753
1. 한반도 평화 조성	13,383	29,126	28,490	22,523	79.1	15,712
2. 정상외교	26,199	24,868	57,798	53,094	91.9	27,113
3.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	13,281	5,852	5,467	4,963	90.8	5,334
4.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1,203	12,020	16,616	14,158	85.2	46,147
5. 국제기구분담금	509,972	661,827	661,827	660,366	99.8	718,311
6. 다자관계협력	14,621	18,064	20,884	17,378	83.2	25,013
7. 원자력 비확산 외교강화	1,837	3,076	3,098	2,680	86.5	5,239
8. 국제개발협력	1,101,120	1,297,850	1,297,872	1,247,771	96.1	1,968,035
9. 국제법적 대응 강화	6,503	7,429	6,964	5,993	86.1	6,673

10.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28,138	29,432	29,157	26,111	89.6	23,110
11. 재외국민 해외안전관리	10,431	15,547	15,841	12,496	78.9	15,744
12.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제고 및 재외동포 역량강화	64,706	58,946	33,270	33,207	99.8	-
13. 여권업무 선진화	97,851	85,620	110,029	109,483	99.5	141,030
14. 경제외교	8,520	12,447	12,447	10,461	84.0	12,860
15.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5,065	5,514	5,514	4,244	77.0	9,806
16.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15,038	14,918	14,043	12,524	89.2	15,964
17. 재외공관운영	675,977	730,909	733,968	712,023	97.0	776,394
18. 외교행정지원	207,701	236,081	231,498	213,435	92.2	217,268
19. 차입금원금상환	-	-	-	-	-	-

2. 총 괄

□ 외화표시예산의 환차손 대응수단 다각화 필요

외교부는 다수의 국제 및 외교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외화로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업(국제기구분담금, 재외공관 활동경비, 외교활동경비 등)은 외화표시예산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음. 외화표시예산은 예산 편성이 완료되기 전 3개월 평균환율(기준환율)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는 예산 편성 시점에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함임.

2023년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세출) 및 기금(지출)의 외화표시예산 집행액은 전년도(1조 765억 7,200만원) 대비 7.5%(808억 1,300만원) 증액된 1

조 1,573억 8,5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의 외화표시예산 비중은 38.1%로 전년도의 29.0%보다 9.1%p 증가하였음. 외화표시예산은 총 58개의 세부사업에서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용을 보면 유엔 PKO예산분담금 납부로 약 1억 5,743만USD,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로 약 1억 4,308만USD, 인도적지원(ODA)에 약 1억 700만USD가 집행되었음.

< 2022, 2023년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의 외화표시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1,000USD, 백만원, %)

구분	미화 표시 집행액			원화 집행액		
	'22집행액 (A)	'23집행액 (B)	증감액(B-A) (증감율)	'22집행액 (C)	'23집행액 (D)	증감액(D-C) (증감율)
일반회계	828,823	844,864	16,041 (1.9%)	999,460	1,097,111	97,651 (9.7%)
국제질병퇴치기금	42,781	26,718	△16,063 (△37.6)	54,015	34,446	△19,569 (△36.2)
국제교류기금[1]	17,807	19,816	2,009 (11.3)	23,097	25,828	2,731 (11.9)
합계	**889,411**	**891,398**	**0.2**	**1,076,572**	**1,157,385**	**7.5**

< 2022, 2023년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의 외화표시예산 비중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전체예산 (A)	외화표시예산 (B)	비중 (B/A)	전체예산 (C)	외화표시예산안 (D)	비중 (D/C)
일반회계	2,874,765	842,629	29.3	3,249,526	1,252,401	38.5
국제질병퇴치기금	92,053	57,921	62.9	48,005	34,547	71.2
국제교류기금	220,537	24,304	10.6	151,807	26,965	17.7
합계	3,187,355	924,854	29.0	3,449,338	1,313,913	38.1

1) 미화 표시 집행액: 미화(USD)+현지화(USD로 환산), 원화 집행액: '22~'23년도 미화 표시 집행액에 대한 원화환산금액 기재

그러나 외화표시예산이 편성 시점의 기준환율을 바탕으로 편성됨에 따라 집행 시점의 환율과 기준환율 사이의 괴리가 커지는 경우 과도한 환차익·손이 발생할 수 있음.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기준환율은 1,290원이었으나 연중 환율이 1,290원 미만이 되었던 시기는 극히 짧아 환차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2]. 2023년 외교부 예산 중 발생한 환차손의 규모는 약 71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 외교부 예산 환차익·환차손 발생 내역 >

(단위: 백만원, 1백만USD)

연도	외교부 총예산 (본예산 기준)	외화예산		환차손익		비고
		미화	원화환산 (편성환율)	환차익	환차손	
2018	2,270,731	844	953,513 (1,130원/$)	3,762	-	불용처리(국고반납)
2019	2,355,607	879	966,926 (1,100원/$)	-	31,415	-
2020	2,617,199	878	1,044,242 (1,190원/$)	10,991	-	불용처리(국고반납)
2021	2,736,149	829	1,002,999 (1,210원/$)	59,563	-	불용처리(국고반납)
2022	2,874,765	746	842,629 (1,130원/$)	-	61,977	-
2023	3,249,526	971	1,252,401 (1,290원/$)	-	7,142	-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3]을 통한 외화표시예산 환위험 관리는 국제기구 분담금[4], 인도적 지원 일부 예산에만 한정됨에 따라 재외공관근무여건 개선

2) 2022년도에도 기준환율 1,131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환율은 1,300원~1,400원대를 유지하여 약 620억 상당의 환차손이 발생하였음

3) 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의 급등락 조정 및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임.

(4012-251), 재외공관 행정직원 인건비(4021-401)의 경우 사업계획조정이나 전용을 통해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있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경우, 사업계획의 조정, 이·전용, 예비비를 통해 이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외공관 운영 예산의 환차손 발생으로 인한 부족을 사업계획 조정 및 이·전용으로 충당한 것은 지침에 부합하는 집행으로 집행 자체의 문제는 없음.

다만, 외교활동의 기본이 되는 예산이면서 동시에 경직성 경비의 성격이 강한 재외공관 운영 관련 예산의 부족은 안정적인 재외공관 운영에 차질을 유발해 재외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교부는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대응수단으로 사업계획 조정 및 이·전용뿐만 아니라 외국환평형기금이나 예비비의 활용방안을 같이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국외업무여비 예산의 현실화 필요

외교부는 국제 및 외교 관련 업무의 수행, 재외공관 운영 등의 사유로 타 부처 대비 많은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여 집행 중임. 국외업무여비의 집행 내역을 확인해보면 해외순방행사, 국제회의 참석 등 단발성 예산뿐만 아니라 전지의료검진, 이·부임 비용 등 매년 집행 규모가 정해져 있는 예산도 포

4) 국제기구분담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환차손에 대해선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 환전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재원을 통한 환전으로 예산을 집행함. 외국환평형기금을 이용한 환전은 편성 당시의 기준환율로 외환을 매입하는 것인바, 환율변동으로 인한 예산과부족 발생 가능성이 없어 개별 부처가 안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음.

함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물가상승으로 인해 국외업무여비 예산의 부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교부는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등의 예산에서 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음. 통계에 따르면 국제항공료 물가지수는 2020년 대비 2022년 30% 상승했으며[5], 미국·EU 등 주요 국가의 숙박비 단가는 2020년 대비 30~40% 상승[6]한 것으로 파악됨. 또한 최근엔 부산엑스포 유치 교섭, APEC 의장국 수임, 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등 외교 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전보다 많은 국외업무여비 소요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외교부의 국외업무여비 예산은 국제항공료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매년 전용을 통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 외교부의 기관운영기본경비(7011-201·251) 내 국외업무여비 예산은 2021년 대비 2023년에 약 21.3%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음.

< 국외업무여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주요 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순번	전용 증액 세부사업명	전용 감액 세부사업명	금액	전용 사유
1	공관장회의 및 기타외교현안 대응 (7033-404)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2)	600	필수 지출항목인 항공운임의 대폭 인상으로 국외업무여비 부족 현상 발생으로 일반수용비를 전용
2	정상 및 총리외교 (1231-401)	정상 및 총리외교 (1231-401)	2,130	정상 및 총리 해외순방행사 확대로 인한 국외출장여비 부족으로 동 사업 내 일반용역비를 전용
3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1,000	코로나 이후 해상운임, 항공료 인상 및 인사이동 인원 대비 예산 과소 편성 등으로 교체여비 부족이 발생한 바 일반수용비를 국외업무여비로 전용

5)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6) STR(미국 호텔 전문 조사업체), Statista(데이터 수집 전문 독일 온라인 플랫폼)

4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동북아시아국 기본경비 (7011-257) 외 다수	1,930	재외공관 발령 직원 이부임 항공료, 이전비 등 부족으로 개별 실국의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등을 국외업무여비로 전용
5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본부 인건비 (7001-101) 외 다수	1,700	재외공관 발령 직원 이부임 항공료, 이전비 등 부족으로 공무원 인건비 및 개별 실국의 자산취득비, 공사비 등을 국외업무여비로 전용
6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163	재외공관 발령 직원 이부임 항공료, 이전비 등 부족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국외업무여비로 전용
7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4021-401)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4021-401)	83	물가상승 및 환차손으로 재외공무원 전지휴양비가 부족한바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국외업무여비로 전용
8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4012-251)	재외공관 안전강화 (4031-402)	616	재외공관 행정직원 교체채용에 따른 항공료 및 저지대 요양 예산 부족으로 관리용역비를 국외업무여비로 전용

< 국외업무여비 중 이·부임비용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이·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편성액	예산 총액	이전용 등
2021	7,804	11,757	3,953
2022	8,105	14,934	6,829
2023	9,736	14,959	5,223

「국가재정법」 제45조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를 때, 국외업무여비 부족으로 인한 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은 자체전용권 범위 내에 있는 예산의 전용이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행상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임.

다만 국외업무여비의 부족을 이유로 매년 다양한 사업·비목 예산을 이·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집행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행정 비용을 유발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게 되어 중장기적으론 외교 활동 수행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문제점은 상당하다고 보임. 외교부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재정 당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외교센터 민간임대 공실률 개선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필요

‘관유물대여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7]에 따른 토지, 건물 등 정부 소유물에 대한 대여수입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시 관유물대여료의 세입예산 계상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부터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

7)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 관유물대여료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4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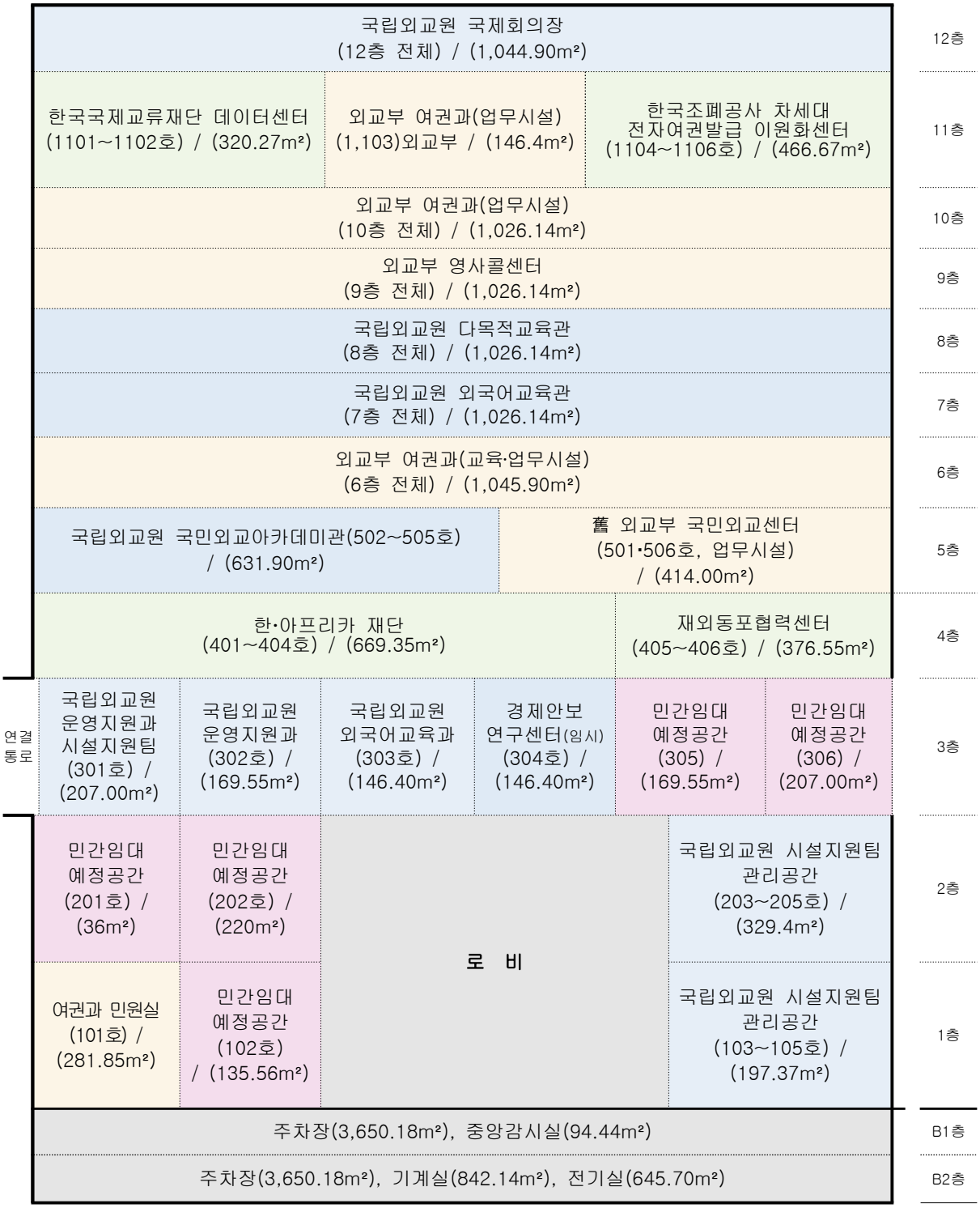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	-	-	-	344	344	100	100	-	-
2021	-	-	-	-	346	346	100	100	-	-
2022	-	-	-	-	329	329	100	100	-	-
2023	390	-	-	390	207	207	100	100	-	-
2024	429	-	-	429	-	-	-	-	-	-

1996년 이래 민간에 위탁 관리되던 외교센터를 2020년 외교부가 환수하여 국립외교원이 관리 중에 있으며, 동 센터 내 민간임대공간에서 건물대여료가, 2023년부터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토지대여료[8]가 발생 중임.

8) 2023년 수납액 644,600원

<외교센터 층별 사무실 및 입점업체 현황>



(자료: 국립외교원)

재외동포청이 2023년 6월 신설되면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광화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외교타운 내 아포스티유팀도 광화문 소재 센터로 이전하였음.

이에 기존에 외교타운 내 사무실을 유상사용허가 중이던 3개 공증업체(총 402.4㎡)가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취소 신청하여 중도에 철수하였으며, 1층 카페 업종(라크리마) 역시 2024년 1월 계약 종료 이후 철수한 상태로 현재까지 민간임대 전 공간 모두 공실 상태임.

<2023년 외교타운 입점업체 계약현황>

(단위 : 백만원)

업체명	유상사용허가 기간	사용료 (징수결정액)	수납액
법무법인 한미	(갱신) 2023.1.1. ~ 23.7.29.	109	109
법무법인 센트럴	(갱신) 2023.1.1. ~ 23.8.18.	67	67
외교타운 번역 아포스티유	(갱신) 2023.1.1. ~ 23.7.29.	6	6
라크리마 외교타운점	(신규) 2021.1.18.- 2024.1.17	24	24
합 계		206	206

(자료: 국립외교원)

국립외교원은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온비드(국가공매포털)를 통해 유상사용허가 일반입찰 공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3층 민간임대 공간의 경우 2020년 외교부가 외교타운을 환수하여 관리를 맡은 이후 2024년 현재까지 공실인 상황임.

<공실기간 및 입찰시행 경과>

구분	공실기간	입찰공고 횟수	최종 임대료
민간임대예정공간 102호	‘24.1.17 이후 – 현재	10회차	24,324,773원
민간임대예정공간 201호	‘23.7.28 이후 – 현재	9회차	59,214,923원
민간임대예정공간 202호	‘23.7.28 이후 – 현재	9회차	9,689,715원
민간임대예정공간 305호	‘20.1.1 이후 – 현재	4회차	121,695,638원
민간임대예정공간 306호	‘20.1.1 이후 – 현재	4회차	148,575,625원

※ 305-306호는 ‘20년 4회차 / ‘22년 3회차 / ‘23년 1-2월간 4회차, 10-11월간 4회차 온비드를 통해 지속 공고하였으나, 입찰이 없었음.

(자료: 국립외교원)

국립외교원은 민간업체 뿐만 아니라 교육부·산업부 산하 공공단체 및 관련단체 등이 직접 사무실 확인을 하기도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양재역 외곽에 위치하고, 사무실 크기 등이 맞지 않아 입찰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함.

그러나, 2019년 국립외교원이 외교센터 관리를 맡은 이후 민간임대공간을 지속적인 공실 상태로 두는 것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각 관리청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관련 수입의 증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9]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국립외교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립외교원은 1층 카페업종이 있던 민간임대공간에 대하여는 외교타운

9)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37

방문객이 적어 수익발생이 어려운 점이 유상사용허가에 걸림돌인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 기관에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승인하는 방안을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함.

한편, 외교부의 예산과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외교부 본부청사 공간이 외교부의 전 부서를 소화하지 못해 일부 부서가 본부청사 외 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태인데,

외교부 여권과가 현재 외교타운 9층~11층에 입주해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외교부 사무실 입주현황에 대한 재점검을 통하여 일부 본부 조직을 외교타운으로 이동하여 입주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임.

<외교부 본부청사 외 타 건물 입주사무실 현황>

구분	사무실 현황
대우빌딩 12층	본부대사실, 비상안전담당관실
서울청사 본관 11층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감찰담당관실, 상설감사장, 공관회계팀(회계행정시스템T/F), 유엔플라스틱협약제5차정부간협상위원회준비기획단
서울청사 본관 14층	국유재산팀, 공관회계팀, 재외공관안전팀

(자료: 외교부)

이 밖에도 외교부가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는 기획단이나 TF의 임차료 지출액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의 활동 공간으로 외교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등 외교센터의 공실을 줄이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최근 3년간 외교부 주요 임시조직(기획단, TF) 사무실 임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임차료 총액	임시조직 개수	기획단 명칭
2021	305	2	2021년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2021년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 준비기획단
2022	37	1	2021년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 준비기획단
2023	279	3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자료: 외교부)

3. 정상외교

가. 개 요

“정상외교” 프로그램은 대통령 및 총리의 해외순방 행사·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국가 위상 제고를 도모하고 외국 국가원수 및 총리급 외빈방한 영접을 통해 국가 간 우호 증진·협력 강화 및 다각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정상외교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본예산	추경	결산	
[1200] 정상외교				26,199	24,868	24,868	53,094	27,113
	[1231] 정상회의참가 및 국빈영접			26,199	24,868	24,868	53,094	27,113
		[11] 일반	[401] 정상 및 총리외교	26,199	24,868	24,868	53,094	27,113

2023년도 예산액은 248억 6,800만원이고, 530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음.

나. 정상 및 총리외교(1231-401)

「정상 및 총리외교」는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다자정상회의 및 국제회의 참가와 양자 방문, 총리의 다자회의 참가 및 양자 방문을 통한 국가 간 상호협력관계 심화, 우리 정부의 공식초청 및 상대국 정부의 공식 방한요청에 따른 외국 국가원수, 총리 등 외빈영접 관련 의전

행사를 수행하는 사업임.

<정상 및 총리외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24,868	24,868	71	-	32,859	57,798	53,094	1,071	3,633	213.5

2023년도 예산액 248억 6,8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7,100만원, 예비비 328억 5,900만원 등 총 329억 3,000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 577억 9,800만원 중 10억 7,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6억 3,300만원이 불용되고 530억 9,4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213.5%임.

□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사업을 정상 및 총리외교(1231-401)에서 부적정 집행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 부흥을 목표로 2021년 12월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음.

우리나라는 2023년 3월 미국 주도하에 개최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10] 공동주최국으로서, 화상 정상회의를 참석하여 첫 번째 세션(주제: 경제 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재하였고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2024년 3월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음.

10) 2023. 3. 29(수) ~ 3. 30(목)

<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현황 >

회의명	일시	구성	협력국
제1차 정상회의	2021.12.	미 정상 주재 화상회의	-
제2차 정상회의	2023. 3.	ㅇ공동주최국 주재 화상 정상회의(미국 개최) ㅇ장관급 지역회의 (공동주최국 개최)	(공동주최국) 미국, 한국,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잠비아
제3차 정상회의	2024. 3.	ㅇ화상 정상회의 ㅇ장관급 회의 ㅇ시민사회 주도 주제토론·워크숍 행사	ㅇ(화상 정상회의 - 공동주재국 (co-chair)) : 한국, 덴마크, 케냐 ㅇ(장관급 회의 - 공동주최국 (co-host)) : 한국, 미국, 영국, 에콰도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는 110여개국 정상, 시민사회·국제기구·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였고 우리 정상이 본회의 공동 주재 및 인태지역회의 환영사 등을 발표하였음.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2231-411)는 정상회의 본회의 공동주최 및 인도·태평양 지역 장관회의 개최를 위하여 2023년 신규사업으로 행사운영대행(PCO) 용역, 회의장 임차, 연구용역 등을 위하여 25억원을 편성하였고 동 예산으로 의제발굴, 행사 기획·준비, 미국 등 공동주최국과의 협의를 통한 회의 구성, 행사개최, 결과보고서 발표 등 관련 후속조치 등 일련의 사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음.[11]

그러나 외교부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2231-411)를 위한 예산

11)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이 주최하고 우리나라는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한 회의로, 우리나라는 본회의 화상 참석(공동주최국으로서 본회의 개회사 및 1세션 주재), 인태지역 장관회의 대면 개최함. 우리 정부가 기획·주최한 행사는 인태지역 장관회의이고, 본회의는 미국 주최 하에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동 사업비는 인태지역 장관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하였다고 외교부는 설명하고 있음.

이 별도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의 본회의 행사장 조성을 위하여 정상 및 총리외교(1231-401) 일반용역비에서 2억 8,682만원을 집행하였음.

<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일반용역비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자금이체일자	집행액	세부사업	세목	건명	수령인명
2023-02-15	1,181,880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일반용역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지역회의	(주)이즈피엠피
2023-05-04	286,825	정상 및 총리외교	일반용역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이즈피엠피
2023-05-30	506,520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일반용역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지역회의	(주)이즈피엠피

외교부에 따르면, 정상급 행사는 의전장실에서 장관급 이하의 행사는 소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중 우리 정상의 화상 정상회의 참석으로 인한 비용은 의전장실의 '정상 및 총리외교(1231-401)'에서, 인태지역 대면 장관회의 개최 비용은 국제기구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2231-411)'에서 집행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더불어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2231-411)'사업은 우리나라가 기획·주최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장관회의 대면 개최에 중점을 두어 편성 및 집행하였으며, 화상 정상회의는 미국이 주최하고 우리는 공동주최국으로서 참여하는 회의인바, 우리 정상의 화상 정상회의 참석으로 인한 소요 비용은 소관 업무에 따라 '정상 및 총리외교(1231-401)'사업 예산에서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사업이 별도의 세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공동주최 및 인도·태평양 지역 장관회의 개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음.[12)]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유사한 성격의 2023년에 개최된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및 2024년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은 개별사업에서 정상회의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향후 외교부는 별도의 정상회의 세사업이 편성된 경우 개별 세사업에서 정상회의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예산 집행 및 업무 수행을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12)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는 2023년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심의단계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음.

4. 한반도 평화 조성

가. 개 요

「한반도 평화조성」 프로그램은 대북 및 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및 공감대 확보,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 지속 추진, 동북아지역국가 및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5개의 단위사업과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도 예산은 291억 2,600만원이고, 이 중 77.3%에 해당하는 225억 2,300만원이 집행됨.

< 한반도 평화 조성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00] 한반도평화조성				13,383	29,126	29,126	22,523	15,712
	[1131] 북핵문제 협의지원			865	906	906	798	1,069
		[11] 일반	[401] 북한 핵문제 대처	518	589	589	490	530
		[11] 일반	[402]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사업	346	317	317	308	539
	[1132] 평화체제구축지원			2,588	3,331	3,331	2,667	3,097
		[11] 일반	[401]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485	582	582	513	647
		[11] 일반	[402]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1,134	1,134	1,134	1,134	878
		[11] 일반	[403]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968	1,615	1,615	1,020	1,572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33]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4,916	5,580	5,580	5,175	5,298
		[11] 일반	[401]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4,916	5,580	5,580	5,175	5,298
	[1134] 동북아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2,418	3,075	3,075	1,900	3,560
		[11] 일반	[401]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418	3,075	3,075	1,900	3,560
	[1135] 아시아 · 태평양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2,597	16,234	16,234	11,983	2,688
		[11] 일반	[401] 아시아 · 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272	3,620	3,620	2,636	2,688
		[11] 일반	[402]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325	614	614	581	-
		[11] 일반	[404]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	12,000	12,000	8,767	-

나.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은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이송을 추진하고, 임시보호 기간 중 적절한 체류 여건을 제공하는 한편,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16억 1,500만원이고, 이 중 10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9,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1,615	1,615	-	-	-	1,615	1,020	-	595	63.2
- 북한이탈주민 보호, 국내이송 및 해외 협력 사업	1,615	1,615	-	-	-	1,615	1,020	-	595	63.2

□ 북한이탈주민 대상 의료지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집행률 제고 필요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3]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13)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관련국 국경 통제가 완화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동 사업은 63.2%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역사업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국내이송 및 해외 협력 사업'의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음.

<북한이탈주민 연도별 입국자 수>

(단위 :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1분기	229	135	31	11	34
2분기	320	12	5	8	65
3분기	226	48	12	23	40
4분기	272	34	15	25	57
계	**1,047**	**229**	**63**	**67**	**196***

* '23년 탈북민(196명), 전년(67명) 대비 약 193%(129명) 증가
(자료: 외교부)

<북한이탈주민 보호, 국내이송 및 해외 협력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탈북민 보호시설 운영	329	266	80.9
탈북민 구료비	121	83	68.6
탈북민 국내이송	505	346	68.5
탈북민 담당관 회의 및 전문가 간담회	31	24	77.4
탈북민 의료지원	64	21	32.8
해외긴급지원보호비	164	32	19.5
공관보호 탈북민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65	23	35.4
주재국 유관기관과 정기협의체 운영	80	35	43.8
주재국 유관기관과 국내이송 협력	20	20	100.0
주재국과 협력관계 구축	63	47	74.6
민족공동체해외협력 강화사업	173	123	71.1
합 계	**1,615**	**1,020**	**63.2**

(자료: 외교부)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중 ‘탈북민 의료지원’, ‘공관보호 탈북민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① 수용 탈북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의약품 송부, ② 응급환자 발생 시 현지 의료체계를 활용한 치료 실시, ③ 심리·진로상담을 위한 물품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임.

또한, 공관보호 탈북민에 대한 의료지원 및 심리·진로상담 출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소속 의사 및 심리상담사, 진로상담사를 인솔하여 해당 공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의료지원/심리상담 현황>

구 분	의료지원 출장(건)	심리상담 출장(건)	대상공관 (개수)	대상인원 (명)	집행액 (백만원)
2019	3	11	4	159	111
2020	-	2*	2	2	105
2021	-	2*	2	2	13
2022	-	2*	2	2	23
2023	1	2(1*)	2	2	44

*‘20~22년 심리・진료상담과 ‘23년 상반기 1건은 비대면으로 실시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동 세부사업의 집행률 부진에 대하여 최근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 발생 예측이 어려워, 상반기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탈북민 의료지원’, ‘공관보호 탈북민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집행률 부진에 대하여는 외교부내 의사 및 심리상담사 인력이 부재하여, 인력 협

조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의 건강악화 및 트라우마, 장기간 수용에 따른 스트레스 등에 따른 의료 및 심리 지원이 절실하고, 의료 및 심리상담 지원은 의약품 지원, 현지 의료체계 활용, 비대면 심리·진료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바, 외교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됨.

특히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 외교부가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수의 증가, 탈북루트· 탈북방법·탈북유형 등이 다양해짐에 따른 주재국과의 협상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청한 바,

향후 동 사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외교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면밀한 집행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임.

다.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사업은 한·미간 정치·안보·경제·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교류·협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동맹 기반 및 한·미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한미군지위협정 운영·개선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포괄적인 한·미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53억 7,900만원이고, 이 중 51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5,580	5,580	9	△210	-	5,379	5,175	-	205	92.7
-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602	602	-	4	-	629	617	-	12	102.5
- 동맹기반 강화	2,681	2,681	-	△84	-	2,576	2,501	-	75	93.3
- 한미안보협력 강화	449	449	-	1	-	447	439	-	8	97.8
- SOFA 운영·개선 및 민군관계 강화	1,451	1,451	9	△56	-	1,404	1,351	-	53	93.1
- 미 신정부 출범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 새로운 대미 외교지평 확대	397	397	-	△77	-	323	267	-	56	67.3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여러 세부사업에서 집행 부적절

외교부는 동 세부사업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를 집행하였으며, 동 세부사업 외 타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에서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사업을 집행하였음.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세부사업	건 명	지출액	세 목
한반도 평화조성(1100) -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1133-401)	2023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포럼 용역 지급 의뢰	150	일반용역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리셉션 행사장 조성	45	일반용역비
	공관 송금(주미대사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사업 지원)	21	임차료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품 구매 계약	20	일반수용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리셉션 개최 경비	19	사업추진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주요문서집 제작	12	일반수용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리셉션 개최 경비	9	일반수용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뱃지 등 제작	5	일반수용비
	합 계	281	

(자료: 외교부)

<타 세부사업 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세부사업	건 명	지출액	세 목
정상외교(1200) - 정상 및 총리외교(1231-401)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 사진집 제작 계약 대금	52	일반용역비
국제개발협력(2400) - ODA선진화(ODA)(2438-401)	2023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개발협력 심포지움	147	일반용역비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2600) - 공공외교 역량강화(2631-403)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미국내 한국인식조사	38	일반연구비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2600) - 국민외교추진기반구축(2631-404)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관계 발전 방향 모색에 대한 국민참여사업	311	일반용역비
외교행정지원(7000) - 외교홍보 역량강화(7034-401)	한미동맹 70주년 광고 영상제작	60	일반용역비
	합 계	608	

(자료: 외교부)

이 중 세부사업 ‘정상 및 총리외교’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 사진집 제작 대금’으로 5,200만원을 집행한 것은 동 세부사업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외교부가 임의로 집행한 것으로 보이며, 그밖의 사업도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하지 않은 상태로 여러 세부사업에서 분산하여 집행한 경향이 있음.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23년도 예산 편성 시 동 세부사업의 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여러 세부사업에서 나누어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여러 세부사업에서 임의로 추진한 것은 부적절한 집행으로 볼 수 있는바,

향후 외교부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의 추진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편성 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예산 집행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일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라.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은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중국정부 지도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중간 우호정서 강화를 위해 한·중 간 학술·인문,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며,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중국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 등 대중국 외교기반 강화,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등을 수행하려는 것임.

<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3,075	3,075	-	△120	-	2,955	1,900	9	1,046	61.8
- 중국정부 지도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880	880	-	△82	-	798	526	-	272	59.8
- 한중간 우호정서 강화	622	622	-	13	-	635	414	-	221	66.6
-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434	434	-	△57	-	377	96	-	281	22.1
- 대중국 외교기반 강화	1,005	1,005	-	9	-	1,014	809	9	196	80.5
-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134	134	-	△3	-	131	55	-	76	41.0

동 사업의 이·전용을 포함한 2023년도 예산현액은 29억 5,500만원인데, 이 중 19억원이 집행되었고, 중국 내 사업 추진 환경이 악화되면서 대다수 사업이 순연되거나 규모가 조정됨에 따라 10억 4,6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정책연구용역 잔금 900만원이 이월되었음.

□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집행실적의 연례적 부진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 내역을 살펴 보면, 40~70%대에 머무르고 있어 전반적으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3년도의 경우 집행률은 61.8%임.

< 최근 4년간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집행률 >

(단위: 백만원, %)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중국정부 지도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748	281	37.6	1,313	709	54.0	1,213	863	71.1	880	526	59.8
· 한중간 우호정서 강화	430	224	52.1	441	365	82.8	511	550	107.6	622	414	66.6
·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276	84	30.4	394	170	43.1	304	123	40.5	434	96	22.1
· 대중국 외교기반 강화	995	628	63.1	875	570	65.1	1,042	752	72.2	1,005	809	80.5
· 대몽골 외교기반 강화	104	25	24.0	94	29	30.9	134	130	97.0	134	55	41.0
합 계	2,553	1,242	48.6	3,117	1,843	59.1	3,204	2,418	75.5	3,075	1,900	61.8

먼저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사업의 집행률은 22.1%에 불과하고, '한중간 우호정서 강화' 사업의 일반연구비는 예산 2억 2,100만원 중 50%만 집행하고 1억 1,000만원을 불용하였음.

외교부는 중국측의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23.1월)와 한국인 대상 단기비자의 발급 재개('23.2월) 등의 조치로 중국과의 대면 교류사업이 상반기 중에 일부 재개되기는 하였으나,

'중국 지방정부 인사 방한 초청' 등의 사업은 중국측과의 협의 및 준비과

정이 필요하여 다음연도로 순연되거나 규모가 조정되면서 예산 불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대몽골 외교기반 강화’ 사업의 집행률 역시 41%로 부진한데, 그 중 2022년 신규사업인 ‘한몽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경우 2023년도 집행률은 25%로 특히 저조함.

동 사업은 몽골 내 지도자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인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친한화(親韓化)하여 장기적인 외교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외교부는 ‘한몽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당초 우리측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몽골 측이 자국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예산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대몽골 외교기반 강화>

(단위: 백만원, %)

내내역 사업	2022년(신규사업)			2023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몽골 차세대리더 네트워크 구축	40	31	77.5	40	10	25.0

동 세부사업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집행이 부진하였으며, 코로나 이후에도 미·중 경쟁 심화에 따른 중국의 안보인식 확대, 2023년 7월 중 반간첩법 개정안[14] 시행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여건 악화로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14) 개정 반간첩법 주요내용: ▲간첩행위의 정의 확대, ▲법 적용 범위 확대, ▲국가안보기관의 권한 확대,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기존 5개 章 40개 조항에서 6개 章 71개 조항으로 개정

향후 외교부는 중국측 국내정세 변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연구용역비 연말 집행 지양 노력 필요

외교부는 동 세부사업에서 총 7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5건이 모두 12월에 완료되었고, 2건은 차년도 1월에 완료되었음.

<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연구용역비 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제명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계약기간	제출일	수행기관	계약방법
최근 중국 경제와 대내외정책 상호 영향관계 구조에 대한 교차 비교 분석과 한국외교에 주는 시사점 연구	20	20	-	23.10~23.12	23.12.8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한중관계 관련 일반인·전문가 인식조사(2023)	30	30	-	23.10~23.11	23.11.30	㈜글로벌리서치	수의
지정학적 갈등 심화 상황에서 대만의 대응 전략 및 우리에의 함의	21	21	-	23.11~23.12	23.12.12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교수	수의
홍콩의 중국화 관련 동향 분석: 홍콩 국가안전법 확대 강화 전망	20	20	-	23.11~23.12	23.12.15	호서대학교 혁신융합학부 교수	수의
한중 우호정서 관련 중국 주요포털 및 SNS 모니터링	40	40	-	23.11~23.12	24.1.31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수의
2023 한중 교류데이터 분석	70	70	-	23.2~23.12	23.12.15	성균중국연구소	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 국가들의 예방접종 정책 연구	30	21	9	23.10~24.2	24.2.29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경쟁→수의

(자료: 외교부)

이 중 '한중 우호정서 관련 중국 주요포털 및 SNS 모니터링' 용역은 2024년 1월 말에 제출되었음에도 전년도 말에 대금이 지급되었으며, '포스트 코

로나 시대 동북아 국가들의 예방접종 정책 연구’ 용역은 2024년 2월 말 완료됨에 따라 9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음.

외교부는 연구용역이 연말에 집중된 이유로 한중 고위급 교류 소통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연구용역 작업을 하반기에 시행하였고, ‘한중관계 관련 일반인·전문가 인식조사’의 경우 매년 하반기(10월 발주하여 11월말 완성)에 집행해 왔으며, 중국 관련 대내외 주요정세 변화 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관련 용역 발주시기가 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동 사업의 연구용역비 전체가 연말에 집중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된 상황은 예산집행에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외교부는 연말 연구용역 계약을 지양하고 연구용역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철저한 집행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마.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사업은 태평양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증대에 따른 관계 발전 및 협력 강화, 정상급 교류를 통한 태평양도서국과의 소통 활성화 및 다층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120억원이고, 이 중 87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000만원을 이월하고, 32억 300만원을 불용하였음.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12,000	12,000	-	-	-	12,000	8,767	30	3,203	73.1
- 준비기획단 운영	1,274	1,274	-	330	-	1,604	1,016	-	588	79.7
- 의제발굴 및 업무협의	350	350	-	-	-	350	221	-	129	63.1
- 정상회의 개최	10,376	10,376	-	△330	-	10,046	7,530	30	2,486	72.6

□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행사대행용역 조달수수료 이월 부적절

외교부는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두 건의 일반용역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일반용역비 예산액 71억 1,700만원 중 일반용역 대금으로 총 58억 7,100

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일반용역비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비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일반용역비(210-14)	7,117	-	△70	-	7,047	5,871	30	1,146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일반용역계약 내역>

(단위 : 백만원)

계약명	계약금액	수탁기관	계약기간	계약유형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행사 대행용역	5,550	㈜인터컴	23.3-23.12	일반경쟁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종합 홍보	321	한국언론재단	23.3-23.11	수의계약

(자료: 외교부)

이월액 3,000만원은 일반경쟁을 통해 체결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행사 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조달수수료로서, 외교부는 동 용역계약 대금으로 2023년 4월과 8월에 각각 선금과 잔금을 수탁기관에 지급하였으며, 조달수수료는 이월하여 2024년 1월 집행하였음.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23년 8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이 단축되었으나 3월 당초 계약 당시 설정된 체결기간(2023.3.28.~11.30)을 변경하지 않아 조달수수료 고지서가 2024년 초에 발급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국가재정법」 제48조[15]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에 한하여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16]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함.

동 정상회의는 5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개최되었고 잔금 납부가 8월에 완료되었으므로, 조달수수료가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라고 할 수 없으며, 외교부는 즉시 조달청장에 통보하고 조달수수료를 연내 납부했어야 함.

외교부는 향후 이와 같이 부적절한 이월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15)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1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대금 지급)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달청장이 대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5. 국제기구분담금

가. 개 요

「국제기구분담금」 프로그램은 유엔 등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 및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분담금을 납부하여 국제기구 회원국으로서 재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격에 걸맞은 사업분담금 지원을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 예산은 6,618억원 2,700만원이고, 6,603억 6,600만원이 집행됨.

< 국제기구분담금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100] 국제기구분담금				509,972	661,827	661,827	660,366	718,311
	[2131] 국제기구분담금			509,972	661,827	661,827	660,366	718,311
		[11] 일반	[401]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	84,075	98,579	98,579	97,134	107,284
		[11] 일반	[402] 유엔 PKO 예산분담금 납부	185,671	203,096	203,096	203,096	212,377
		[11] 일반	[403]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	71,742	83,435	83,435	84,876	97,036
		[11] 일반	[404]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168,484	276,717	276,717	275,259	301,614

나. 기타 의무분담금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사업은 IAEA 헌장, UNESCO 헌장, 대한민국에 대한 OECD에 관한 가입 초청 협정 등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전문기구 및 정부간 기구 가입 협정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회원국으로써 의무이행 차원에서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서, 의무분담금의 적기 납부를 통하여 국제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임

<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대비(C/A)	현액대비(C/B)
83,435	83,435	-	1,444	-	84,879	84,876	-	3	101.7	100.0

2023년에 납부한 의무분담금 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기타 의무분담금 내역사업별 납부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번	분담금 명	22 결산	집행률	23 예산	23 결산	집행률	24년 예산
1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3,333	81	3,575	3,573	100	4,894
2	콜롬보플랜	18	100	20	21	105	21
3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	236	87	268	270	101	281
4	OECD Part I	11,861	86	14,035	13,865	99	15,504
5	OECD 개발센터	548	82	638	633	99	739
6	OECD 철강위원회	34	85	39	39	100	46
7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166	84	191	186	97	211
8	비엔나협약 신탁기금	20	77	26	22	85	30

연번	분담금 명	22 결산	집행률	23 예산	23 결산	집행률	24년 예산
9	몬트리올의정서 신탁기금	66	47	154	105	68	178
10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	211	81	262	266	102	274
11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462	92	509	536	105	566
12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AALCO)	21	95	24	25.9	108	27
13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127	97	147	142.9	97	156
14	국제해저기구(ISA)	577	109	342	342	100	410
15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2,192	96	3,595	3,590	100	3,642
16	남극조약사무국(ATS)	45	98	49	51	10	52
17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	1,743	100	1,743	1,743	100	1,861
18	국제해사기구(IMO)	579	103	632	648	103	683
19	국제이주기구(IOM)	1,534	96	2,295	2,540	111	2,904
20	국제원자력기구(IAEA)	10,769	94	13,809	14,415	104	15,246
21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2,201	93	2,401	2,401	100	2,719
22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3,296	79	3,865	3,865	100	5,488
23	바세나르체제(WA)	67	75	87	88	101	107
24	생물무기금지협약(BWC)	35	71	58	71	122	72
25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42	95	45	0	0	48
26	국제형사재판소(ICC)	9,424	102	10,077	11,242	111	13,442
27	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70	92	76	77	101	79
28	헤이그국제사법회의	124	86	142	125	81	182
29	상설중재재판소(PCA)	25	89	29	29	100	39
30	베니스위원회	67	92	68	81	119	87
31	국제형사재판소(ICC) 신청사 건축	290	92	312	323	104	337
32	국제사실조사위원회	2	20	10	6	60	10
33	세계박람회기구(BIE)	43	74	46	47.2	103	48
3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371	96	385	426	111	437
35	세계무역기구(WTO) 의무분담금	6,302	92	7,194	7,185	100	8,148
36	중앙아시아학술연구소(IICAS)	100	101	108	108	100	116
37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9,979	101	10,773	10,942	102	11,759
38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	2,079	105	2,072	2,072	100	2,553
39	불어권국제기구(OIF)	13	87	31	32	103	17
40	무기거래조약(ATT)	28	88	35	22	63	43
41	핵비확산조약(NPT)	0	0	30	53	177	60
42	대인지뢰금지협약(APLC)	14	78	18	14.8	82	19
43	국제원자력기구 기술협력기금(TCF)	2,514	93	3,220	2,629	82	3,501

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은 유엔 산하기구 및 회의체(UNICEF, UNDP, UNHCR 등)[17]의 사업운영 및 지역 국제기구(ASEAN, AU, OAS 등)[18]와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분담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적 기여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 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276,717	276,717	-	-	-	276,717	275,259	-	1,458	99.5	99.5

2023년에 납부한 사업분담금 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내역사업별 납부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번	분담금 명	22 결산	집행률	23 예산	23 결산	집행률	24년 예산
1	UNIDO 서울투자기술진흥사무소(ITPO)	318	100	386	386	100	468
2	유엔개발계획(UNDP) 정규재원기여금	9,614	100	13,820	13,820	100	23,400
3	유엔아동기금(UNICEF)	3,959	100	5,157	5,157	100	19,500

17) UNICEF: UN Children's Fund, 유엔 아동기금
UNDP: UN Development Programme, 유엔 개발계획
UNHCR: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 난민 기구

18)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U: African Union, 아프리카연합
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기구

4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200	100	2,265	2,265	100	10,408
5	유엔평화구축기금(PBF)	2,828	100	5,598	5,598	100	10,408
6	유엔자원봉사단(UNV)	4,407	100	4,860	4,717	97	5,832
7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170	100	154	154	100	146
8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지원	11,300	100	15,583	15,583	100	17,550
9	군축분야 인도적 지원 신탁기금	905	100	929	929	100	883
10	유엔 군축 사업분담금	1,404	99	1,548	1,548	100	1,601
11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114	100	90	90	100	142
12	글로벌파트너십	878	100	747	747	100	911
13	IAEA 비확산 핵안보기금	1,697	100	1,806	1,806	100	3,612
14	유엔난민기구(UNHCR)	3,468	100	4,906	4,906	100	23,266
15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지원	158	100	134	134	100	260
16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2,262	100	2,580	2,580	100	6,500
17	민주주의 증진 협력 기여금	340	100	387	387	100	397
18	한-유엔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ECLAC) 협력기금	420	100	358	358	100	663
19	한-미주기구(OAS) 협력기금	227	100	244	244	100	232
20	한-태평양도서국포럼(PIF) 협력기금	1,695	100	1,806	1,548	96	3,900
21	대아프간 지원 강화	39,583	100	16,355	16,178	99	0
22	한-아프리카연합(AU) 협력기금	1,697	100	1,832	1,697	93	9,758
23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파트너십 기금	113	100	96	96	100	91
24	한-ESCAP 협력기금(KECF)	283	100	191	191	100	390
25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	566	100	382	382	100	651
26	국제형사재판소(ICC) 피해자 신탁기금	57	100	61	61	100	65
27	한-아세안센터	7,600	100	7,600	7,600	100	7,600
28	한-아세안협력기금	18,080	100	26,169	25,800	99	36,400
29	한-메콩 협력기금	5,683	100	8,178	8,178	100	10,400
30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57	100	65	65	100	65
31	아시아·유럽재단(ASEF)	226	100	259	258	100	261
32	중동담수화연구소 협력기금	114	100	61	61	100	58
33	시나이정전감시단(MFO) 기여금	339	100	310	310	100	325
34	국제민간항공기구 공개키 디렉토리(ICAO PKD)	28	88	42	30	71	42
35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ECCC)	565	100	516	516	100	390
36	테러리즘 대응 및 폭력적 극단주의 방지 사업 지원	283	100	258	258	100	781
37	해적 퇴치 관련 IMO 사업분담금	226	100	206	206	100	260
38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분쟁 예방기금	2,825	100	4,907	4,902	100	4,544

39	아프리카연합(AU) 평화안보활동 사업분담금	1,130	100	1,290	1,290	100	6,500
40	OECD 자발적 기여금	1,661	98	1,674	1,244	74	2,576
41	OECD DAC 자발적 기여금	339	100	387	387	100	368
42	한-UNDP 지속가능개발(SDG) 신탁기금	8,483	100	10,303	10,303	100	10,400
43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기금	939	100	1,015	1,015	100	2,600
44	유엔개발시스템 선진화기금	1,878	100	2,028	2,028	100	1,927
45	세계식량계획(WFP) 정규재원기여금	4,524	100	5,888	5,888	100	26,000
46	UNIDO 공업개발기금(IDF)	396	100	457	457	100	434
47	APEC 지원 기금 (ASF)	791	100	903	903	100	911
48	APEC 정책지원부서(PSU) 분담금	283	100	241	241	100	229
49	WTO 대개도국 협력사업기여금(GTF)	339	100	390	390	100	650
50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자발적 신탁기금	23	100	13	13	100	26
51	국제해양법재판소 자발적 기여금	226	100	240	239	100	426
52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기금	2,720	100	2,698	2,698	100	2,838
53	평화유지신탁기금	3,390	100	3,870	3,870	100	3,900
54	한-카리콤(CARICOM) 협력기금	566	100	818	818	100	3,900
55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 신탁기금	4,238	100	4,838	4,838	100	4,879
56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여금	1,131	100	1,032	1,032	100	980
57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3,394	100	3,870	3,803	98	5,200
58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자발적 기여금	4,520	100	1,636	1,638	100	1,554
59	한-중미통합체제(SICA) 협력기금	1,695	100	1,226	1,226	100	1,165
60	엘시(Elsie) 기금	565	100	645	645	100	650
61	국제사법재판소(ICJ) 사법 펠로우십 신탁기금	-	-	40	40	100	40
62	태평양 산호초국가 지원 이니셔티브	-	-	259	259	100	390
63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96	100	110	109	100	111
64	글로벌 보건 기여	-	-	100,000	100,000	100	0

□ 개별 부처의 분담금 자체평가에 대한 외교부의 관리·보완 필요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분담금의 관리를 통해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납부한 분담금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함.

각 부처에서 작성 및 제출된 자체평가 결과는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19]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송부되며 기획재정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함[20]. 분담금에 대한 자체평가는 계획의 적절성(외교정책목표와의 부합 여부 등), 과정의 신뢰성(예산집행률, 납부 목적과 실제 내용 부합 여부 등), 결과의 유용성(납부를 통한 국익 제고 결과 등)을 그 내용으로 함.

다만 현재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 체계가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피평가자인 개별 부처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존하고 있는바, 평가의 객관성 확보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임. 외교부는 개별 부처의 자체평가 수행 과정에서 부처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개별 부처의 자발성에 따라 정보의 정확성이 상이할 수 있고 외교정책 목표, 국익제고 효과 등 지표에 대한 개별 부처마다의 관점 차이로 인해 일관성 있는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는 등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보임. 제출된 자체평가 내용이 부족한 경우 외교부는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보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

19) 위원장(외교부 제2차관) 포함 20명 이내 위원(관계기관 고위공무원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음.

20)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납부실적 및 납부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심의·조정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부받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다음 연도 납부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교부는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주관기관으로 자체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지속 보완해 나가는 동시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분담금 납부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국제기구분담금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 일관성 제고 필요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통해 CEPI(감염병예방백신연합), GPEI(글로벌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이니셔티브), 글로벌펀드에 대한 기여를 수행하고 있으나, 2023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악화된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상황을 감안해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으로 동 기구에 기여하였음. 2023년도 CEPI, GPEI, 글로벌펀드에 기여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은 총 1,103억 2000만원으로, 본예산인 국제기구분담금 사업에서 약 1,000억원, 국제질병퇴치기금에서 약 103억 2,000만원으로 구성되었음.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출연·출자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1]를 제외하고는 분담금 예산 편성·집행 시에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조

21)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기구 분담금"이란 정부가 국제기구에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비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납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에 납입하는 출자금 또는 출연금은 제외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이 완료되면 그 집행 내용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함[22].

그런데 2023년도에 작성된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확인해보면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통해 납부한 글로벌펀드 분담금은 심의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방송발전기금으로 편성된 ITU(International Telecommuncation Union) 협력사업 부담금, APT(Asia Pacific Telecommunity) 특별기여금은 포함되었음.

다른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제기구 분담금은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으로 상정되었는바, 외교부는 향후 국제기구분담금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에 있어 일관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

22)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④ 외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다음 연도 납부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다자관계 협력

가. 개 요

「다자관계 협력」 프로그램은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와 공동 대처함으로써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자관계 협력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200] 다자관계협력				14,621	18,064	18,064	17,378	25,013
	[2231] 국제기구 협력강화			14,621	18,064	18,064	17,378	25,013
		[11] 일반	[401] 국제기구초급 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ODA)	7,436	9,528	9,528	9,284	14,115
		[11] 일반	[402] 테러 대응체제 강화 및 국제 안보 협력	1,078	2,089	2,089	1,823	1,880
		[11] 일반	[403]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2,651	3,253	3,253	3,148	3,943
		[11] 일반	[404]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2,213	-	-	-	-
		[11] 일반	[405] MIKTA 중견국 외교	172	178	178	147	160
		[11] 일반	[406]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456	450	450	409	475
		[11] 일반	[408] 유엔 행정예산 분야 제도 구축 및 운영 강화(정보화)	616	66	66	64	63
		[11] 일반	[411]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	2,500	2,500	2,180	-
		[11] 일반	[421]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	-	-	322	4,377

2023년도 예산은 180억 6,400만원이고, 예산액 대비 96.2%에 해당하는 173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음.

나.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사업은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파견,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등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인적 기여 제고 및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9,528	9,528	-	-	-	9,528	9,284	-	244	97.4
-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 파견	9,410	9,410	-	-	-	9,410	9,170	-	240	97.4
-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63	63	-	-	-	63	60	-	3	95.2
- 국제기구 인사센터	55	55	-	-	-	55	54	-	1	98.2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95억 2,800만원인데, 이 중 92억 8,4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4,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경비 집행 및 관리 강화 필요

JPO 파견 사업은 우리나라 청년을 국제기구에 2년간 수습직원으로 파견하고 국제기구에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25명을 선발하여 파견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30명으로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는 등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최근 4년간 결산 내역 및 2024년도 예산>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6,024	6,024	-	-	6,024	5,717	94.9	94.9	-	307
2021	7,002	7,002	-	-	7,002	6,650	95.0	95.0	-	352
2022	7,708	7,708	-	-	7,708	7,436	96.4	96.4	-	272
2023	9,528	9,528	-	-	9,528	9,284	97.4	97.4	-	244
2024	14,114	14,114	-	-	-	-	-	-	-	

JPO에게 지원되는 경비는 기본급여, 지역조정급[23], 왕복 항공임, 체재비, 건강보험비, 훈련비이며, 외교부가 JPO 파견 대상 국제기구에 JPO 파견비용을 송금하면 각 국제기구가 JPO에게 보수 및 정착비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용하고 있음.

23) 국제기구 내 동일 직급의 직원이 근무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지 물가·환율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8조[24]에 따르면 파견기간 내에 JPO 자격을 포기하거나, 동 예규 제15조[25]에 따라 JPO 파견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해 JPO 파견자에게 지급된 경비를 반납받도록 하고 있음.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JPO 개인사유로 인한 중도포기 또는 국제기구 채용으로 인한 조기 종료 등 중도에 사임한 사례는 15건이고, 예규 제15조에 따라 JPO 파견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음.

이렇게 JPO가 중도에 사임을 하여 반납액이 발생하는 경우 외교부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외교부는 2021년과 2023년 JPO 조기사임에 따라 국제기구측이 해당 금액을 반납한 두 건에 대해서만 세입처리[26]

---

24)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8조(파견기간 및 파견경비) ① JPO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JPO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파견 국제기구와의 협정에 의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3년차 근무의 경우, 외교부와 파견 기구가 파견경비를 반액씩 담하는 것을 전제로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JPO 파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JPO 파견자의 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파견기간내에 JPO 자격을 포기한 때
2.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 때

25)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5조(JPO 파견의 취소) ① 외교부장관은 JPO로 파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JPO 파견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파견 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파견된 국제기구로부터 해직 당한 경우
3. 관할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외교부장관에게 파견기간 중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었다는 통보가 있고 파견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외교부장관의 승인 없이 파견기관을 변경한 경우
5. 파견된 국제기구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외교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
6.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
7.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26) ○ 2021년 선발 UNESCO 파견된 JPO의 조기사임으로 인한 파견비용 잔액 세입 처리 (55,471.96미불, 2024.4월)
○ 2020년 선발 OPCW 파견 JPO 조기사임으로 인한 파견비용 잔액 세입 처리 (101,641유로, 2022.12월)

를 하였으며, 각 국제기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향후 JPO 파견 시 사용해 오고 있음.

<최근 5년간 국제기구초급전문가 중도 사임 사례>

(단위: 명)

연도	전체 선발인원	중도사임*	비 고
2019	15	2	▲2021.8. 개인 사유(1명) ▲2021.10. 국제기구 채용(1명)
2020	20	5	▲2021.8. 국제기구 채용(1명) ▲2022.3. 국제기구 채용(2명) ▲2022.8. 국제기구 채용(1명) ▲2022.12. 국제기구 채용(1명)
2021	20	6	▲2023.6. 국제기구 채용(2명) ▲2023.8. 국제기구 채용(1명) ▲2023.11. 국제기구 채용(1명) ▲2024.1. 국제기구 채용(1명) ▲2023.11. 개인 사유(1명)
2022	25	2	▲2023.7. 개인 사유(1명) ▲2024.4. 국제기구 채용(1명)
2023	25	0	

※ 중도 사임 : 중도 포기 및 채용으로 인한 조기종료 포함

<2023년 JPO 파견 사업 잔액 현황>

국제기구	잔 액	국제기구	잔 액
유엔사무국	352,836미불	WFP	61,347.91미불
UNICEF	291,586.43미불	UNESCO	38,636.81미불
UNHCR	238,980미불	UNIDO	33,448.34미불
ILO	97,141.73미불	IOM	15,185미불
ICC	56,681.17유로		

※ 2023.12월말 기준 파악된 기구에 한해 작성 / 여타 기구 잔액 확인 필요
(자료: 외교부)

이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법률에서 특별하게 예외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17조[27]의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한 「국고금관리법」제7조[28]의 위반 소지가 있음.

외교부의 설명에 따르면 매년 예산편성 시점 이후에 JPO가 선발됨[29]에 따라 동반가족 등 JPO별 실제 파견경비가 예산 편성 이후에야 결정이 되는 바, 예산 편성 시 정확한 파견경비 추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함. 이로 인한 파견경비 인상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파견경비 대비 편성액이 부족해지는 경우 불가피하게 기구측 예치 잔액으로 부족액을 충당해 왔다고 함.

해외 파견을 위한 해외송금 경비인 JPO 예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파견경비 대비 편성액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JPO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예산 집행의 융통성이 필요한 측면은 있어 보임.

그러나, 외교부는 환율 상승으로 인해 JPO 파견 집행 필요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 기구별 잔액을 활용하기 위해 2022년과 2023년에 잔액을 파악한 경우 외에는, 연도별·국제기구별로 집행액과 정산액 등에

---

27)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8) **「국고금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29) 2023년도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선발시험 제1차 서류접수 기간은 2023년 9월 8일까지였으며, 이후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이 되는 시점은 각 국제기구별로 상이하나 대체로 11월 전후임.

관한 통계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아, 집행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각 국제기구별로 기 맺어진 양해각서의 경우 일부 양해각서는 정산과 관련한 내용이 없는 경우[30]도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임.

이에 외교부는 향후 새로운 국제기구와 양해각서를 맺을 시 파견경비 정산과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매년 각 국제기구별·연도별 집행액 및 정산 내역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각 국제기구에서 반납액이 발생하거나, 국제기구와의 양해각서가 종료되는 경우에 기구측 예치 잔액을 신속히 국고로 세입처리할 수 있도록 동 예산의 집행 및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30) 총 19건의 협약 중 정산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는 2건(UNICEF, OPCW)임.

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신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사업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국내 개최를 통해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를 달성한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	-	-	-	2,820	2,820	322	2,004	494	11.4
- 준비기획단 운영	-	-	-	-	520	520	259	-	261	49.8
- 공동주최국·시민사회 협의	-	-	-	-	92	92	63	-	29	68.5
- 홍보 및 광고지원 용역	-	-	-	-	1,000	1,000	0	806	194	-
- 정상회의 조정 메커니즘	-	-	-	-	1,208	1,208	0	1,198	10	-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28억 2,0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배정받은 것임. 외교부는 이 중 3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 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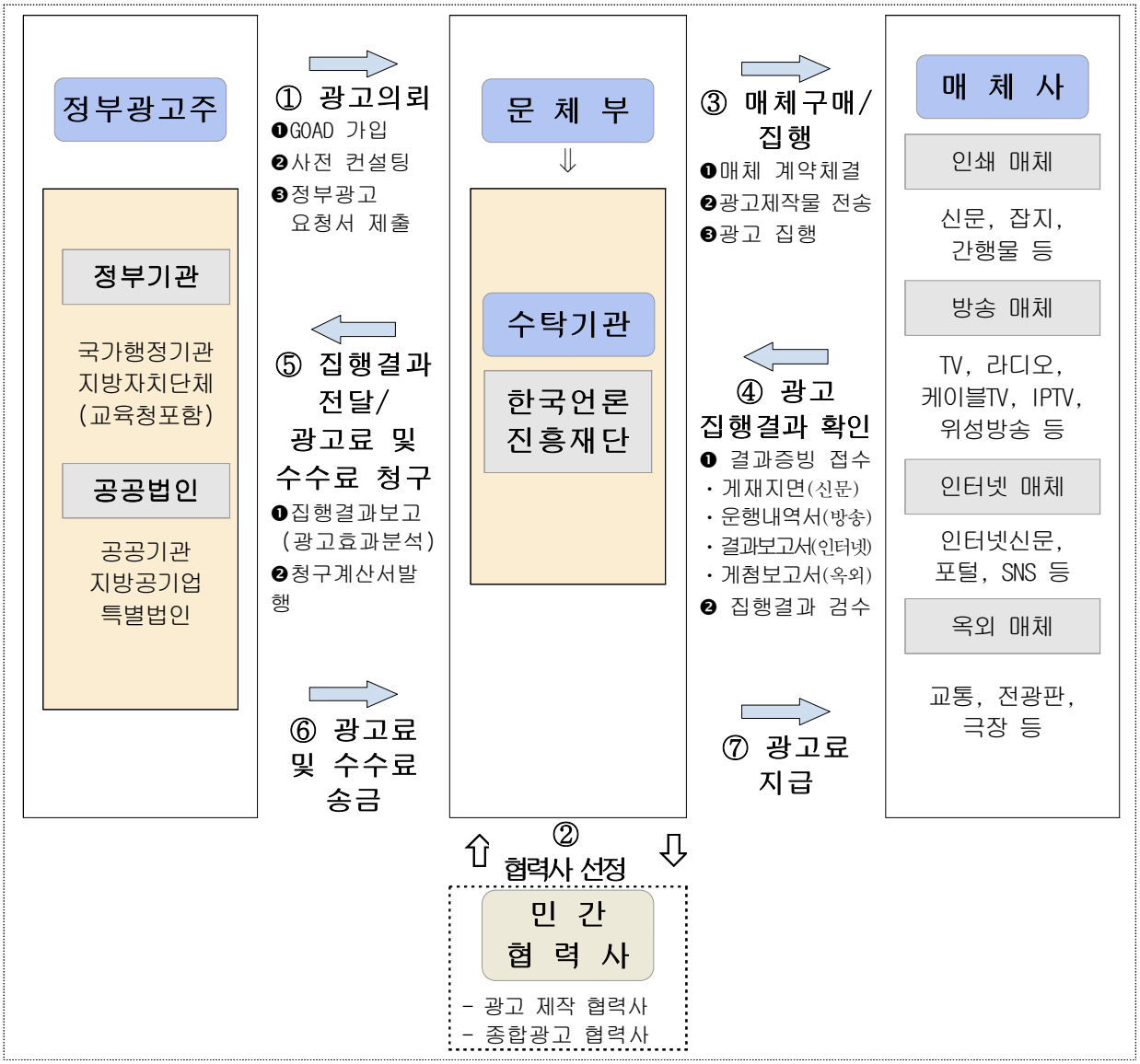
□ 홍보 및 광고지원 용역계약 「정부광고법」 이행 필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라 한다) 제5조[31]는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정부광고 집행

3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을 위해 정부기관의 광고 시행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3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33]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광고 운영체계>



(출처: 정부광고 업무편람(문화체육관광부. 2024. 3.))

3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그런데 외교부는 동 사업의 홍보 및 광고지원 용역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조달청을 통한 입찰공고 방식을 통해 진행하였음.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일반용역계약 내역>

(단위 : 백만원)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서 기준)	수탁기관	계약기간	계약 유형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홍보 및 광고지원 용역	792	피알하우스	24.2-6	일반경쟁

외교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할 경우 홍보 예산의 30-40%에 해당하는 3~4억원이 국내 언론 광고에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제행사로서의 특성 및 선거 근접 시기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내 언론 광고에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 조달청 입찰로 추진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정부광고법」에 따른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서 정부기관 등에서 홍보목적으로 예산 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일체의 홍보행위[34]에 해당하므로 국내 언론 광고에만 소요될 것으로 우려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았다는 외교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실제로 국제행사로서의 성격이 유사한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의 종합홍보사업 용역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진행한 바 있음.

34) 법제처 해석/'19.5(출처: 정부광고 업무편람)

「정부광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부기관 등의 광고 대행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게 독점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정부 광고의 기획부터 집행에 이르는 과정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광고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이므로,

향후 외교부는 홍보 및 광고와 관련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정부광고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어 보임.

7. 국제개발협력

가. 개 요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중 ⅰ)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ⅱ)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ⅲ)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ⅳ)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ⅴ) 글로벌 프로그램, ⅵ) 협력사업 지원, ⅶ) 전략적협력 강화, ⅷ)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일부(인도적지원 일부[35] 및 민간협력사업[36]), 이상 8개 단위사업 예산은 외교부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KOICA에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예산임.

외교부는「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단위사업 중「ODA 선진화」세부사업과「인도적지원(ODA)」세부사업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있음.

전체 프로그램의 2023년 예산은 1조 2,978억 5,000만원이고, 이 중 1조 2,477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500억 7,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35) 1638-402 중 민관협력사업

36) 1638-403

< 국제개발협력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400] 국제개발협력				1,101,120	1,297,850	1,297,850	1,247,771	1,968,035
	[2431]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180,402	242,640	242,640	219,944	275,641
		[11] 일반	[401] 베트남(ODA)	29,574	35,329	35,329	32,381	49,646
		[11] 일반	[402] 인도네시아(ODA)	11,786	19,445	19,445	15,448	20,971
		[11] 일반	[403] 캄보디아(ODA)	22,247	23,577	23,577	22,636	22,864
		[11] 일반	[404] 필리핀(ODA)	20,087	23,319	23,319	18,137	31,043
		[11] 일반	[405] 방글라데시(ODA)	13,668	14,936	14,936	14,122	13,790
		[11] 일반	[406] 몽골(ODA)	9,414	12,825	12,825	14,848	17,122
		[11] 일반	[407] 라오스(ODA)	19,264	23,292	23,292	25,698	24,652
		[11] 일반	[408] 스리랑카(ODA)	8,702	10,574	10,574	11,044	12,232
		[11] 일반	[409] 네팔(ODA)	8,427	8,538	8,538	7,971	9,438
		[11] 일반	[410] 파키스탄(ODA)	3,311	8,678	8,678	7,337	9,239
		[11] 일반	[411] 아시아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31,066	60,400	60,400	49,742	62,841
		[11] 일반	[412] 인도(ODA)	760	987	987	415	853
		[11] 일반	[413] 미얀마(ODA)	2,096	740	740	165	950
	[2432]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164,874	238,517	238,517	224,943	306,614
		[11] 일반	[401] 가나(ODA)	5,810	9,548	9,548	9,548	15,943
		[11] 일반	[402] 에티오피아(ODA)	21,694	33,494	33,494	31,109	30,643
		[11] 일반	[403]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91,444	126,870	126,870	124,029	187,826
		[11] 일반	[404] 르완다(ODA)	9,143	16,237	16,237	15,640	15,714
		[11] 일반	[405] 우간다(ODA)	11,360	14,564	14,564	14,554	14,501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406] 탄자니아(ODA)	14,044	18,466	18,466	14,678	18,927
		[11] 일반	[407] 세네갈(ODA)	7,729	12,209	12,209	8,620	12,853
		[11] 일반	[408] 이집트(ODA)	3,650	7,129	7,129	6,765	10,207
	[2433]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59,497	97,225	97,225	87,242	73,671
		[11] 일반	[401] 콜롬비아(ODA)	8,375	9,861	9,861	9,861	7,306
		[11] 일반	[402] 페루(ODA)	4,218	8,428	8,428	6,917	9,964
		[11] 일반	[403] 볼리비아(ODA)	9,477	8,599	8,599	8,408	8,024
		[11] 일반	[404] 파라과이(ODA)	11,170	10,892	10,892	10,892	15,701
		[11] 일반	[405]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26,257	59,445	59,445	51,164	32,676
	[2434] 중동 CIS지역 국가원조			42,801	81,632	81,632	78,072	133,274
		[11] 일반	[401] 우즈베키스탄(ODA)	9,259	14,203	14,203	11,928	23,767
		[11] 일반	[402] 중동 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30,438	60,169	60,169	57,482	88,688
		[11] 일반	[403] 키르기스스탄(ODA)	3,104	7,160	7,160	8,661	12,950
		[11] 일반	[404] 타지키스탄(ODA)	-	50	50	1	7,169
		[11] 일반	[405] 우크라이나(ODA)	-	50	50	0	700
	[2435] 글로벌 프로그램			245,763	229,553	229,553	228,796	313,652
		[11] 일반	[401]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ODA)	108,053	100,858	100,858	100,858	128,756
		[11] 일반	[402] 글로벌연수(ODA)	55,767	52,473	52,473	51,917	67,378
		[11] 일반	[403] 국제기구협력(ODA)	55,058	51,899	51,899	51,725	81,915
		[11] 일반	[404]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	26,885	24,323	24,323	24,296	35,603
	[2436] 협력사업 지원			60,651	51,705	51,705	48,397	59,260
		[11] 일반	[401] 협력사업 지원(ODA)	60,651	51,705	51,705	48,397	59,260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437] 전략적협력강화			5,585	8,000	8,000	3,925	8,000
		[11] 일반	[401] 전략적 협력 강화(ODA)	5,585	8,000	8,000	3,925	8,000
	[2438]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341,547	348,578	348,578	356,452	797,923
		[11] 일반	[401] ODA 선진화	538	1,265	1,265	1,149	812
		[11] 일반	[402] 인도적지원(ODA)	301,426	299,367	299,367	307,774	740,111
		[11] 일반	[403] 민관협력사업(ODA)	39,583	47,946	47,946	47,530	57,000

나. 인도적 지원

「인도적지원(ODA)」 사업은 해외재난 발생 시 피해국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명구조 및 재난구호 실시,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분야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것임.

2023년 본예산은 2,993억 6,700만원, 이·전용액 84억 2,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077억 8,700만원임. 이 중 3,077억 7,4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100%임.

< 인도적지원 (ODA)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대비(C/A)	현액대비(C/B)
299,367	299,367	-	8,420	-	307,787	307,774	-	13	102.8	100.0

「인도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결산은 아래와 같음.

< 2023년도 인도적 지원 결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예산	집행률	
	결산	본예산(A)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B)	결산(C)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합 계	301,343	299,367	8,420	-	307,787	307,730	740,111	102.8	100.0
1. 해외긴급구호	297,103	295,061	-	-	295,061	295,023	734,624	100.0	100.0

37) KOICA 출연금 지급

	재난대응	287,080	283,756	-	-	280,742	280,720	694,900	98.9	100.0
	만성적재난	46,737	91,856	-	-	88,842	87,918	304,900	95.7	99.0
	긴급재난	30,371		-						
	ACT-A	110,297**	129,000	-	-	129,000	128,359	130,000	99.5	99.5
	우크라이나 지원	99,675	62,900	-	-	62,900	64,443	260,000	102.5	102.5
	재난대응시스템강화	-	-	-	-	-	-	-	-	-
	국제부담금	2,150	2,275	-		5,289	5,273	8,500	231.8	99.7
2 선진인도적지원 역량강화		7,873	9,030	-	-	9,030	9,030	31,224	100.0	100.0
3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37]		105	106	-	-	106	103	187	97.2	97.2

* 구호대 파견비용은 긴급재난 예산에 포함

** 2022년 COVAX(코로나19백신공조체제) AMC*로 지원

* ACT-A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치료제·진단 분야를 포괄하는 국제공조체제이며, COVAX AMC는 이 중 백신 관련 협조체제임.

「해외긴급구호」는 「인도적 지원(ODA)」 사업의 내역사업이며, 「해외긴급구호」 사업은 「재난대응」,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및 「국제부담금」 내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난대응」 사업을 통해 「만성재난」과 「긴급재난」 예산을 집행함.

「만성재난」 사업은, 해외 국가 재난 발생시 재난의 심각성,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 정부의 인도지원 전략과의 부합성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 규모 및 지원 분야를 결정되는 사업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조정 총괄을 담당하는 UN 인도지원조정실[38] 에서 매년 12월 차년도의 전세계 인도지원 수요를 지역·국가별로 발표하며, 외교부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WFP[39] 및 UNHCR[40]과 같은 국제기구에 지원금을 공여하고 있음.

38) OCHA: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UN 인도지원조정실

39) WFP: World Food Programme, 유엔 세계 식량계획

40)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유엔난민기구

「긴급재난」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피해현황, 피해국의 재난대응 역량, 국제사회 지원 동향 및 정무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지원을 결정함.

<난민 등 만성적 재난 지원 결정 절차>

유엔합동 지원요청 발표 (연초)	⇨	국별 지원계획(안) 수립	⇨	지역국/재외공관 협의	⇨	국별 지원계획 확정

(고려사항) △국별 유엔합동지원요청 규모, △재난의 심각성,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 △우리의 인도지원 중점 추진 분야와의 부합성, △정무적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

<자연재난 등 긴급 재난 지원 결정 절차>

재난 발생	⇨	재외공관 보고	⇨	국제사회의 재난 평가 및 긴급 요청 접수	⇨	지원 계획(안) 수립 (지역국/재외공관 협의)	⇨	지원 계획 확정

(고려사항) △인적·물적 피해 현황, △피해국의 재난 대응 역량, △국제사회의 지원 요청 및 지원 현황·규모, △정무적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은 우리나라 민간단체가 전 세계 인도적지원 현장에서 적극적인 생존 및 존엄성 지원, 조기 복구, 재난위험 경감, 난민지원 및 분쟁하 성폭력 회복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엔 4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튀르키예 강진 발생에 따른 적시성 있는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84억 2,000만원의 증액 전용을 승인 받아 126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음[41].

41) 동 예산 지원을 통해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가 튀르키예 강진 발생 지역에 임시 거주촌을 조성하고 사회경제적 회복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였음.

<2023년도 만성재난 지원액 집행 내역>

연번	지원내용	금액 (미불)
1	수단 위기	1,000,000
2	가자지구	1,500,000
3	미얀마	1,400,000
4	로힝야난민(미얀마, 방글라데시)	3,900,000
5	아프리카 뿔 지역	2,300,000
6	예멘	3,500,000
7	시리아 및 주변국	12,000,000
8	차드	400,000
9	베네수엘라	1,000,000
10	페루	500,000
11	니제르	400,000
12	수단	270,000
13	아이티	500,000
14	마다가스카르	300,000
15	콜롬비아	2,000,000
16	에콰도르	500,000
17	부르키나파소	400,000
18	예멘	400,000
19	나이지리아	400,000
20	중앙아프리카공화국	600,000
21	카메룬	400,000
22	부룬디	300,000
23	차드	410,000
24	다년간 기여	10,100,000
25	우크라이나	50,000,000
합 계		94,480,000

(자료: 외교부)

<2023년도 긴급재난 지원액 집행 내역>

연번	지원내용	금액 (미불)
1	말라위 폭풍 피해	200,000
2	튀르키예 지진 피해	75,849
3	시리아 지진 피해	1,000,000
4	모잠비크 홍수 피해	300,000
5	이란 북서부 지진 피해	300,000
6	태국 백신 해외공여 운송비	63,335
7	말라위 열대폭풍 피해	200,000
8	바누아투 태풍 피해	200,000
9	칠레 산불 피해	100,000
10	필리핀 해양오염	32,646
11	홍해 유조선 FSO Safer호	200,000
12	르완다 폭우 피해	300,000
13	민주콩고 폭우 피해	500,000
14	쿠바 폭우 피해	300,000
15	우크라이나 카호우카 댐 파괴	1,000,000
16	미얀마 태풍피해	500,000
17	하와이 산불	2,000,000
18	튀르키예 지진피해	3,000,038
19	아프가니스탄 지진	1,000,000
20	필리핀 태풍	300,000
21	리비아 홍수 피해	2,000,000
22	네팔 지진 피해	300,000
23	바누아투 태풍 피해	300,000
24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2,000,000
25	모로코 지진 피해	2,000,000
26	나고르노-카라바흐 충돌	500,000
27	말라위 폭풍 피해	300,000
28	ACT-A	100,000,000
29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3,640,855
합 계		122,612,733

(자료: 외교부)

□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집행 관리 강화 필요

최근 재난·재해 등에 따른 인도적 위기의 증가로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이 발표[42]하는 인도적 지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고위급 공약회의 혹은 긴급히 개최되는 공약회의의 증가에 따라 인도적 지원 발표 계기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43], KDRT(해외긴급구호대) 파견 실적 증가와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기대 증가 등으로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는 5년 사이 4배 가량 증가하였음[44].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의 발생 횟수가 빈번해지고 있고,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정세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인도적지원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증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고려할 때 재난대응 예산 규모를 늘려나가는 것을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인도적 지원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적시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주기적인 집행률 점검 등의 노력을 배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확대된 인도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가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42) 인도적지원 수요는 2022년도 2억 7,400만명/410억불 규모에서 2023년 3억 6,300만명 552억불 규모로 35%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기후변화의 가속화 등으로 2024년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임.

43) 2023년 한 해에만 신규 개최 고위급 공약 회의로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대응 회의, 아프리카 뿔 지역 지원 회의, 수단 지원 회의 등이 있었음.

44) 2020년도 인도적 지원 예산현액은 1,861억 4,300만원이었으나, 2024년도 예산엔 7,401억원 규모로 4배 가량 증가하였음.

8. 국제법적 대응 강화

가. 개 요

「국제법적 대응 강화」 프로그램은 우리 영토에 대한 일 측의 도발 및 분쟁지역화 기도에 대응하고, 장기적·전략적으로 영토주권 근거 강화 및 우리 입장의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며, 국제규범질서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 해양·남극·항공 관련 국제법적 대응 지속·강화를 통해 국제법 발전 및 국제규범질서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우리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예산은 74억 2,900만원이고, 예산액 대비 80.7%에 해당하는 59억 9,300만원이 집행되었음.

< 국제법적 대응 강화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예산		2023 결산	2024 예산
					본예산	추경		
[2500] 국제법적 대응 강화				6,503	7,429	7,429	5,993	6,673
	[2531] 국제법적 기반 구축 및 활동 강화			6,503	7,429	7,429	5,993	6,673
		[11] 일반	[401]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6,503	7,429	7,429	5,993	6,673

나.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증진」 사업은 독도 관련 제반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여 우리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국제법 관련 이슈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국격을 제고하며, 해양 및 남극 활동, 한일 청구권 협정 대응, 그리고 조약 번역 및 검독 강화 등을 추진하려는 것임.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증진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7,429	7,429	215	△680	-	6,964	5,993	249	721	80.7
- 영토주권 수호	5,342	5,342	-	△671	-	4,671	4,240	-	432	79.4
-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1,052	1,052	-	△205	-	847	658	-	189	62.5
- 조약체결 지원 및 검독 강화	1,035	1,035	215	195	-	1,445	1,096	249	100	105.9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당초 74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및 이·전용을 통해 4억 6,500만원이 감액된 69억 6,400만으로 조정되었고, 이 중 59억 9,3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4,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연구용역 집행·관리 방식 개선 필요

2023년 외교부는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영토주권 수호’와 ‘국제법을 통한 국익증진’에서 ‘2023년 한국 관련 이슈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기후변화 관련 국제법적 검토’ 등 총 41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예산현액 9억 7,800만원 중 8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8,800만원을 불용하였음.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증진’ 사업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연구비(260-01)	1,418	1,418	0	△440	0	978	890	0	88
- 영토주권 수호	1,006	1,006	-	△240	-	766	751	-	15
- 국제법을 통한 국익증진	412	412	-	△200	-	212	139	-	7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3조 및 제54조[45]는 연구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정책연구의 계약체결 내용과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4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 사업의 2023년도 계약사항을 살펴보면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연구용역 41건을 모두 수의계약 하였고, 2023년뿐만 아니라 동 내역사업의 최근 4년간의 연구용역 계약현황을 보더라도 매년 수의계약 비율이 100%에 이르고 있음.

이에 대해 외교부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우리 전략과 논리의 노출 가능성, 해외 연구자의 신원 노출 우려 및 특정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학술연구로서 수의계약의 불가피성, 사안별로 시의성을 고려한 신속한 연구 착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46]를 근거로 연구용역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임. 아울러 2023년의 경우 일부 연구용역을 경쟁입찰로 추진하였으나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가 소수에 불과하여 단일응찰 또는 무응찰로 유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전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연구자를 임의로 선택하는 수의계약 방식은 연구용역 내용의 중

---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립성·다양성이 약화되고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외교부는 전체 연구용역이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되는 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용역의 공개적인 경쟁입찰 규모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외교부는 동 사업의 연구용역을 모두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하고 있는데, '일반연구비(260-01)'는 국가로부터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함.

동 사업의 연구용역 중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학술연구 포함),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 '정책연구비(260-0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의 성격에 맞는 비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47]에서도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연구용역사업'으로 정의하고, '기술·전산·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와 자문 등은 정책연구용역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

47)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연구용역사업을 말한다. 다만, 기술·전산·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와 자문 등은 정책연구용역 범위에서 제외한다.

외교부는 동 규정에 맞게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성격에 맞는 비목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9.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가. 개 요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문화교류 및 대(對) 유네스코[48] 외교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국가 이미지를 확립하고,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을 통해 국가 간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공공외교를 통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우호와 신뢰를 제고하여 국익을 증대하는 한편, 외교 현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쌍방향 외교체제를 구축하고, 디지털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및 체계화를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1개의 단위사업 및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본예산은 294억 3,200만원이며 이 중 261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음.

<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600]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28,138	29,432	29,432	26,111	23,110
	[2631] 공공문화외교 강화			28,138	29,432	29,432	26,111	23,110
		[11] 일반	[401]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2,582	3,035	3,035	2,517	2,693
		[11] 일반	[402]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6,154	5,594	5,594	5,272	2,470

48)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교육·과학·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하여 국가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전문기구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403] 공공외교 역량강화	14,963	16,282	16,282	14,189	16,103
		[11] 일반	[404] 국민외교추진기반구축	727	744	744	614	-
		[11] 일반	[405]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3,713	3,777	3,777	3,519	1,844

나.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는 양자 간 문화교류 증진, 우리 문화·예술의 대외 홍보 및 유네스코(UNESCO) 등의 다자협력체를 매개로 한 국제적 협력기반 구축을 통하여 우리의 국격 제고 및 정치·경제 등 여타 분야의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네스코 등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對) 유네스코·세계관광기구 외교강화 사업」, 재외공관에 우리 미술품을 지원·전시하는 「국가이미지 제고 전시 사업」 및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미소재 국가의 현지 관광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확충을 지원하는 「방한 관광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3,035	3,035	-	△290	-	2,745	2,517	-	228	82.9

2023년도 예산액은 30억 3,500만원이었으나 2억 9,000만원을 이용 감액하여 예산현액은 27억 4,500만원이었으며, 이 중 25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800만원을 불용함.

□ 주요국 유산 동향 연구 사업 수행 방식의 적정성 검토 필요

「대(對) 유네스코·세계관광기구 외교강화 사업」은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193개 회원국 중 8위 규모의 분담금을 납부하는 핵심 공여국으로서 집행이사국 및 총회 산하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기 위한 주요회의 및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20억 5,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6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음.

동 사업엔 '주요국 유산 동향연구'를 위한 정책연구비(260-02) 예산 5,000만원이 편성되어 4,935만원을 집행하였음. 이는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동향 및 전략 파악을 통한 우리의 체계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외교부는 해당 연구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매년 유사한 규모로 수의계약을 통한 용역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음.

동 연구는 사도광산 등 유네스코 민감 현안 신속대응 등 대체 연구자를 찾기 어려운 분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매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그 집행 방식에 대해선, 현재와 같이 수의계약을 통한 연구 용역 수행보다는 민간경상보조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임.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외의 기관이 동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바, 해당 연구비가 사실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대한 보조금적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동 예산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연구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보임.

외교부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협력 구축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신규 편성을 시도하고 있으나, 2024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미편성되었는바 2025년 예산안 편성 시에도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겠다는 입장임.

10. 재외국민 해외안전관리

가. 개 요

“재외국민 해외안전관리” 프로그램은 재외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도 예산액은 155억 4,700만원 중 124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재외국민 해외안전관리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본예산	추경	결산	
[2700] 재외국민 해외안전관리				10,431	15,547	15,547	12,496	15,744
	[2731] 재외국민 보호			10,431	15,547	15,547	12,496	15,744
		[11] 일반	[401] 재외국민 보호	10,431	15,547	15,547	12,496	15,510
		[11] 일반	[402] 영사서비스 지원	-	-	-	-	234

나. 재외국민 보호(2731-401)

「재외국민 보호」는 해외안전정보 제공을 통해 해외 출국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등 해외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재외국민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영사조력 등 대응을 통해 재외국민을 지원·보호하며, 영사콜센터 운영을 통해 영사민원 전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을 보호하려는 사업임.

< 재외국민 보호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15,547	15,547	294	-	-	15,841	12,496	28	3,317	80.4

2023년도 예산액 155억 4,7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2억 9,400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 158억 4,100만원 중 2,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3억 1,700만원이 불용되고 124억 9,6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80.4%임.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는 예비비적 성격의 무자력자 긴급지원비 집행 저조 및 긴급대피 지원을 위한 전세기 미운영, 영사콜센터 운영 관련 집행 잔액 등에 따른 것임.

□ 영사콜센터 재택 상담시스템 활용방안 마련

영사콜센터는 해외에서 사건·사고 또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콜센터이고 주요 업무는 해외 위난 발생 시 가족 등의 안전확인 접수 및 현지 안전정보 안내, 해외 사건·사고 접수 및 조력, 신속해외송금 지원, 해외 긴급상황시 통역서비스 지원, 여권 업무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음.

외교부는 영사콜센터에 데스크탑 가상화(VDI) 기반 재택 상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VDI 서버 장비,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 및 이와 관련된 SW

를 구입하였고 상담원 PC 및 모니터 각각 85대를 구매하면서 2023년 예산으로 5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음.

영사콜센터는 코로나 시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22년 4월까지 전체 상담관의 20~30%가 재택상담시스템 없이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상담 응대율 저하[49]에 대응하고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대비 24시간 무중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담관이 자택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보안, 네트워크 시설을 정비하고 재택상담시스템을 구축하였음.

동 시스템은 출근 및 재택을 동시 운영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 운영환경을 마련하였고 비상상황에서 재택 근무시 상담관에 대한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택 출근여부, 재택상담 통계, 모니터링 등 관리기능을 구축하였으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증된 인프라 도입 및 사업시작 시점에 대한 사전검증을 수행한 것으로 나옴.

또한 동 시스템 구축[50] 후 1년간 사업수행업체가 시스템의 하자 보수 등 기술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 영사콜센터 상담시스템 유지보수업체를 통하여 시스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었음.

이처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외교부는 재택상담시스템을 구축하였음.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영사콜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코

49) 연평균 상담 응대율: (2019) 93.7% → (2021) 77.1%

50) 구축기간: 2023. 8. 7. ~ 2023. 11. 5.

로나19 일상회복으로 다수의 기업이 재택근무를 중단하거나 감소시키고 재택근무를 축소 또는 중단하는 추세에 따라 재택상담시스템의 활용율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또한 재택상담시스템 장비는 그 내구연한[51]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비가 집행되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대해 외교부는 동 시스템의 활용율 제고를 위하여 2024년 6월부터 시범운용을 거쳐 구체적 활용 방안과 관련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7월 파리 올림픽 기간 중 휴직, 병가 등으로 인한 프랑스어 통역 상담관 부족 상황에서 재택상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역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실제 업무에 활용중이며, 향후에도 pc고장이나 상담관 교육 등에 해당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함.

재택근무는 독립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민원인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으며,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직무 등에 적용하기 용이함을 고려할 때 콜센터의 상담관이 적임이므로 해외위난 맞 사건·사고의 발생 시 콜센터 내 공동 응대, 재외공관과의 긴밀한 협업 등 영사콜센터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재택상담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51) 통상적으로 IT장비의 내구연한은 5-10년임.

11. 여권업무 선진화

가. 개 요

「여권업무 선진화」 프로그램은 품질 및 보안성이 우수한 여권 발급으로 우리 여권의 국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실무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 및 첨단 시스템 도입으로 신속, 정확한 여권 발급 체계를 유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예산액은 856억 2,000만원인데, 여권발급량 증가에 따른 세출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수입대체경비 수입액 일부를 지출함에 따라 집행액은 1,094억 8,200만원임.

< 여권업무 선진화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900] 여권업무 선진화				97,851	85,620	85,620	109,482	141,030
	[2931] 전자여권발급및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97,851	85,620	85,620	109,482	141,030
		[11] 일반	[651]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97,851	85,620	85,620	109,482	141,030

나.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은 국내외 여권민원실 운영·지원을 통해 대국민 여권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여권의 품질 제고 및 보안성 강화로 국제신뢰도를 향상하려는 사업임.

<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 2023년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85,620	85,620	2,109	22,300	-	110,029	109,482	64	482	127.9
- 여권제조 및 발급	77,395	77,395	-	22,300	-	99,793	99,710	-	83	128.8
- 국내외 여권민원실 운영	7,647	7,647	24	-	-	7,573	7,350	-	223	96.1
- 여권품질 및 서비스 개선	578	578	62	-	-	640	399	64	178	69.0
-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	-	2,023	-	-	2,023	2,023	-	-	-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856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1억 900만원과 여권발급량 증가로 인한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223억을 합한 예산현액은 1,100억 2,900만원인데, 이 중 1,094억 8,200만원이 집행되었고, 6,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8,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관련 연구용역의 회계연도에 맞는 집행 필요

외교부는 대국민 여권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내외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 품질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동 세부사업에서 아래와 같은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음.

<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 연구용역 계약 체결 내역 >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예산액	계약명	계약 금액	수탁 기관	계약기간	계약 유형
여권 품질 및 서비스 개선	130	2023년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관련 연구용역	128	(재)한국기계 전기전자시험 연구원	23.4-24.4	수의
여권 품질 및 서비스 개선	11	공백여권 제조원가 및 발급비용 산정	9	한국산업정보 연구소	23.8.-23.10	수의
여권사무대행기관 업무경비지원규모 적정성 검토 및 조정방안 마련 연구용역	35	여권사무 대행기관 업무경비 지원규모 적정성 검토 및 조정방안 마련 연구용역	31	한국산업정보 연구소	23.7-23.11	수의

(자료: 외교부)

이 중 '2023년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관련 연구용역'은 한국조폐공사가 제조·제작하여 외교부에 납품하는 전자여권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전자여권 발급 및 교부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독오류 등 각종 불량여권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며, 민원 처리 및 품질개선에 활용,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차세대 전자여권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한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으로, 2023년 연구용역 미완료로 인하여 6,400만원을 이월하였음.

< 전자여권 시행 이후 연도별 전자여권 불량률 >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현용	-	-	-	-	-	-	-	-
종전	0.95	0.69	0.66	0.65	0.65	0.67	0.62	0.86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현용	-	-	-	-	-	-	6.35	4.90
종전	0.54	0.59	0.52	0.61	0.65	0.38	0.93	0.86

(자료 : 외교부)

동 연구용역은 2023년뿐만 아니라 연례적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처음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계약일이 4월이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 보니 부득이 매년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관련 연구용역 연도별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계약명	수탁 기관	계약기간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2019	2019년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재)한국기계 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19.4.3.-2020.4.2.	125	62.5	62.5
	차세대 전자여권 품질확보	(재)한국기계 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19.4.5.-2020.5.31.	40	20	20
2020	2020년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재)한국기계 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20.4.3.-2021.4.3.	124	62.4	62.4
2021	2021년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재)한국기계 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21.4.5.-2022.4.5.	124	62.2	62.2
2022	2022년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재)한국기계 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22.4.6.-2023.4.6.	124	62.2	62.2
2023	2023년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재)한국기계 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23.4.6.-2024.4.6.	128	64	64

(자료 : 외교부)

그러나 이와 같은 연례적인 이월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 원칙[52]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외교부는 2025년도 연구용역 계약 시 해당 회계연도 내에 계약기간이 이루어지도록 계약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관련 법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52)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12. 경제외교

가. 개 요

「경제외교」 프로그램은 G20 정상회의 등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를 강화하고, 다자경제체제 강화를 위한 정책 홍보 및 정책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양자 경제외교 진흥 및 해외진출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이익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경제외교 활동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 예산은 124억 4,700만원이고, 이 중 104억 6,200만원이 집행됨.

< 경제외교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3000] 경제외교				8,520	12,447	12,447	10,462	12,860
	[3031] 다자 경제외교 강화			1,702	1,978	1,978	1,612	4,562
		[11] 일반	[401]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625	1,469	1,469	1,166	1,395
		[11] 일반	[402] G20 글로벌 거버넌스 대응 강화	1,077	509	509	446	707
	[3032] 지역 경제외교 강화			6,676	10,469	10,469	8,850	8,298
		[11] 일반	[401]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4,445	8,007	8,007	6,763	5,381
		[11] 일반	[402] 해외진출기업 활동 지원	2,231	2,462	2,462	2,088	2,917

나.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다자경제 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사업은 우리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역내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WTO(World Trade Organization),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등 다자경제기구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 경제 해외 활동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 예산은 14억 6,900만원이고, 이 중 11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5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 1억 3,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대비(C/A)	현액대비(C/B)
1,469	1,469	-	1	-	1,470	1,166	165	139	79.4	79.3

□ 국제경제규범 정립 및 개선 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편성 조정 필요

세사업 「국제경제규범 정립 및 개선」은 경제협정 및 국제협상 관련 법률자문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반수용비(210-01)로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여 2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음. 해당 사업은 경제협정 및 국제협상 등의 내용이 국내법의 내용과 충돌 가능성 등을 검토하려는 것으로, 양·다자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다자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의 여타 세사업의 경우, APEC 등 지역경제협력 논의 참여, WTO, WCO(세계관세기구),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등 다자국제경제기구 논의 참여 및 해외 지식 재산권 보호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역내 시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국제경제규범 정립 및 개선」 사업은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 주로 양자적인 형태로 체결되는 경제협정의 법적 효과 및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것인바 그 목적이 상이하다고 보임.

따라서 해당 사업은 「다자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이 아닌 다른 단위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편성될 필요성이 있음[53].

다.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공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법률자문서비스 제공,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 경제외교 협의 메커니즘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도 본예산은 80억 700만원, 추경 및 전년 이월액에 따른 예산 현액은 80억 6,000만원이고, 이 중 67억 6,3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 현액 대비 집

53) 외교부는 동 지적을 감안해 별도 단위사업으로의 편성을 고려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측이 예산 규모가 소규모이고, 기존 예산 편성 방식으로도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별도 사업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는 입장임.

행률은 83.9%임.

<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 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8,007	8,007	-	53	-	8,060	6,763	2	1,296	84.5	83.9

□ 경제안보 관련 재외공관 주재 전문연구원 인건비 예산의 연례적 불용 최소화 필요

세사업「주요국 경제안보정책 대응」은 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을 통해 빈발하는 경제안보 현안을 조기에 포착하고 총괄 분석·조정·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2023년 2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8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음. 동 사업은 경제안보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에 전문연구원 10명, 재외공관 주재 전문 연구인력 6명을 두고자 하며, 2023년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1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 규모는 7억 2,000만원으로 3억 9,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2년엔 인건비 불용액이 8억 7,500만원에 달하여 예산액 기준 인건비 불용 규모가 78.8%에 이르렀는바, 2023년엔 그 비중이 37.2%로 축소되어 집행률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예산 편성 당시 예정한 인력 채용·운용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재외공관 주재 전문 연구인력의 경우 총 6명을 채용할 것을 예정하였으나, 주네덜란드대사관과 주인도대사관 주재 전문 연구

인력의 경우 9월이 되어서야 채용이 마무리되었으며, 국내 전문연구원의 경우 예정된 인원을 모두 채용하지 못하고 있음.

증대되고 있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해당 분야의 전공자들을 전문 연구인력으로 채용해 외교부의 경제안보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나, 연례적으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해당 예산을 상당 규모 불용하는 것은 인력 수급 및 보수에 대한 보다 정밀한 추계가 전제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외교부는 인건비 불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대한 기존 집행 내역을 예산 편성 단계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가. 개 요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프로그램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에너지 협력 외교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협상 등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녹색성장 등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달성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1개의 단위사업 및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본예산은 55억 1,400만원이며, 이 중 42억 4,400만원을 집행함.

<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3100]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5,065	5,514	5,514	4,244	9,806
	[3131] 에너지외교 및 기후변화녹색성장 국제협력강화			5,065	5,514	5,514	4,244	9,806
		[11] 일반	[401] 기후변화 녹색환경 외교강화	5,065	5,514	5,514	4,244	9,806

나. 기후변화 녹색환경 외교강화

「기후변화 녹색환경 외교 강화」는 글로벌 에너지·자원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국가 에너지 안보 제고에 기여하며, 물 분야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및 양자·지역 차원의 환경협력에 기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 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관 에너지협력외교 활동/에너지 및 물 분야 국제협력 강화」, 「과학기술외교 강화」, 「기후변화외교 강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국제협력강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북극 국제협력 강화」로 구성되어 있음.

< 기후변화 녹색환경 외교강화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5,514	5,514	-	-	-	5,514	4,244	-	1,270	77.0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한 에너지협력외교 및 과학기술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공관들을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 공관'(총 46개) 및 '과학기술거점공관'(총 36개)으로 지정하였으며, 에너지·인프라 및 과학기술 외교 업무를 담당할 전문관을 채용하고 있음.

<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 공관 지정 현황 >

구분	공관명
아시아(8)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호주, 중국
러시아/중앙아(5)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총),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유 럽(8)	튀르키예, 독일, 영국, 덴마크,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본(분), 불가리아
북 미(3)	미국, 캐나다, 휴스턴(총)
중남미(7)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에콰도르, 칠레, 콜롬비아, 페루
중 동(7)	사우디, 알제리, 이라크, 이란, 카타르, 쿠웨이트, UAE
아프리카(8)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공, 앙골라, 카메룬, DR콩고, 마다가스카르

<과학기술거점공관 지정 현황 >

구분	공관명
유 럽(12)	독일(본분관 포함), 네덜란드,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미 주(9)	미국,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아시아 · 대양주(7)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일본, 중국, 뉴질랜드, 호주
아프리카 · 중동(3)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
다 자(5)	오이시디, 유네스코, 유럽연합, 제네바, 아세안

<공관별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채용현황>

순번	공관	채용 인원	집행 규모 (단위: 달러)	채용 기간
1	주휴스턴총영사관	1	60,000	2018. 10. 24. ~ 현재
2	주말레이시아대사관	1	47,273.3	2017. 12. 1. ~ 현재
3	주베트남대사관	1	21,945.5	2024. 2. 19. ~ 현재
4	주호주대사관	1	71,033.4	2018. 4. 26. ~ 현재
5	주블라디보스톡대사관	1	69,590	2012. 7. 30. ~ 현재
6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1	29,567.3	2023. 12. 1. ~ 현재
7	주카자흐스탄대사관	1	22,363.5	2024. 2. 12. ~ 현재
8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1	21,061	2024. 2. 15. ~ 현재
9	주아제르바이잔대사관	1	38,844	2019. 11. 6. ~ 현재
10	주덴마크대사관	1	54,668.1	2021. 8. 1. ~ 현재

11	주튀르키예대사관	1	48,000	2015. 7. 1. ~ 현재
12	주불가리아대사관	1	26,649	현재 교체채용 진행 중
13	주브라질대사관	1	28,486	2023. 11. 16. ~ 현재
14	주칠레대사관	1	33,540	2022. 3. 7. ~ 현재
15	주페루대사관	1	39,000	2015. 2. 2. ~ 현재
16	주카타르대사관	1	44,746	2023. 12. 3. ~ 현재
17	주이란대사관	1	19,965.3	2024. 2. 18. ~ 현재
18	주가나대사관	1	22,919	2017. 8. 1. ~ 현재
19	주가봉대사관	1	20,677	2023. 9. 18. ~ 현재
20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	1	9,222.4	2022. 1. 20. ~ 현재
21	주카메룬대사관	1	9,007	2023. 7. 19. ~ 현재

<공관별 과학기술전문관 채용현황>

순번	공관	채용 인원	집행 규모 (단위: 달러)	채용 기간
1	주네덜란드대사관	1	56,160	2022. 12. 1. ~ 2023. 12. 1.
2	주시애틀총영사관	1	108,000	2022. 7. 1. ~ 2023. 7. 1.
3	주이스라엘대사관	1	60,000	2023. 2. 1. ~ 2024. 1. 31.
4	주체코대사관	1	37,524	2022. 8. 1. ~ 2023. 7. 31.

□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사업 집행 부진 해소 필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이슈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유지·강화하고, 범지구적 환경이슈 및 해양환경외교 이슈에 대응하며, 대국민 녹색경제외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4억 3,200만원이었으나, 이 중 2억 9,100만원이 집행되었음.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사업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추경)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추경)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녹색 경제 관련 다자협력	46	49	106.5	46	22	47.8	46	38	82.6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참여	35	24	68.6	31	160	516.1	31	61	196.7	
녹색성장주간행사 개최 지원	52	10	19.2	48 (16)	7	14.6 (43.8)	48	25	52.1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운영	67	53	79.1	75	40	53.3	75	65	86.7	
해외환경프로젝트 발굴 및 환경시장개척 지원	62	0	0	62 (54)	0	0	62	26	41.9	
그린라운드테이블	50	52	104.0	50	32	64.0	50	36	72.0	
P4G 이사회 의장국 활동 및 참여	-	-	-	120	28	23.3	120	40	33.3	
합 계	**312**	**188**	**60.2**	**432 (392)**	**289**	**66.8 (73.7)**	**432**	**291**	**67.4**	

내내역사업 중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참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2023년도 예산 집행률이 60% 내외로 전반적으로 과소 집행되고 있음.

먼저, 「해외환경프로젝트 발굴 및 환경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사업은 환경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환경시장의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에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및 국내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진출과 해외 환경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사업으로, 2021년도부터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

이에 대해 외교부는 코로나19 사정으로 현실적으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

이 어려웠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2023년도에도 집행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임[54]. 동 사업과 유사하게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3032-401)' 내 세사업이나,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3032-402)' 내 세사업의 경우 이미 코로나19 상황 이전만큼 집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집행률 부진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외교부는 「해외환경프로젝트 발굴 및 환경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의 집행률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동 사업의 집행률 제고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재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보임.

다음으로, 「녹색성장주간(GGGW) 개최 지원」사업은 서울에 소재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본부의 총회·이사회 행사 주간에 포럼 등의 개최를 통해 녹색성장 및 기후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도 2023년 예산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은 2,5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집행률이 부진한 실정임.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GGGW가 지속적으로 축소,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전개에 어려움이 있었고, 對GGGI 협력 강화 기조에 따라 GGGI 측과 환영 리셉션 공동 개최, 총회·이사회 참석 주요 인사 초청을 지

54) 외교부는 2023년도에 환경부와 협력하여 베트남에 환경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 국내 환경 기업 우수기술 소개 △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 진출기업 간 정보, 의견 공유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등 주어진 여건 내에서 사업 집행을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임.

원했으나 참석 예정 인사들이 방한을 취소함에 따라 집행이 부진했다는 입장임.

외교부는 동 사업에 대해 향후 GGGI 측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더 면밀하게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다른 세사업과 달리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참여」의 경우 2023년도엔 집행률이 194%로, 2022년도 집행률이 516%에 이르렀던 것에 이어 연례적으로 초과집행되고 있음. 동 사업은 환경·해양 분야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2023년도엔 「유엔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참석 및 관련 협의에 예산이 집행되었음.

외교부는 상기 유엔 플라스틱협약이 성안될 경우 기후변화협약 이래 최대의 환경 협약으로 예상되고 있고, 유엔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차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만으론 여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는바 초과 집행 했다는 입장임.

동 회의가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외교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나, 동 사업은 회의 참석·개최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하게 발생한 예산 소요로 보이지 않은바 편성 단계부터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했어야 할 것으로 보임[55]. 외교부는 동 사업에 연례적인 초과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55) 외교부는 이에 따라 2024년도엔 동 사업의 예산을 전년대비 3배 가량 증액하여 편성하였음.

14.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가. 개 요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은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및 비전 제시,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학술회의 개최, 외교인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무공무원의 역량검증 및 개발, 외교인재 양성을 위한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개의 단위사업 및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예산은 149억 1,800만원이며, 이 중 125억 2,400만원을 집행함.

<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3500]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15,038	14,918	14,918	12,524	15,964
	[3531] 외교전략 연구 및 교육훈련			13,756	13,733	13,733	11,456	13,051
		[11] 일반	[401]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2,738	3,269	3,269	2,793	3,498
		[11] 일반	[402] 국내외 교육훈련	6,882	8,022	8,022	6,723	7,433
		[11] 일반	[403] 외교역량 평가 및 개발교육	361	477	477	394	463
		[11] 일반	[404]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391	427	427	387	414
		[11] 일반	[405]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 운영 강화	994	1,171	1,171	904	1,059
		[11] 일반	[407] 글로벌 온라인 화상회의 및 교육시스템 구축(정보화)	1,965	-	-	-	-
		[11] 일반	[408] 국민 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425	367	367	255	184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3532] 외교전략 수립			1,282	1,185	1,185	1,068	2,913
		[11] 일반	[401] 국별 외교전략 및 외교전략총론 수립	1,282	1,185	1,185	1,068	1,067

나.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사업은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대응전략 개발 및 중장기 외교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내외 민·관·학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및 연구기관과의 정례 학술회의를 통해 외교정책 수립 및 외교활동상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2023년도 예산은 32억 6,900만원, 예산현액은 33억 5,900만원이었으며, 이 중 27억 9,300만원이 집행됨.

<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3,269	-	-	90	-	3,359	2,793	-	566	85.4
- 외교현안연구 및 정례학술교류 활동	1,115	-	-	90	-	1,205	1,055	-	148	94.6
- 외교안보연구센터 운영	2,154	-	-	-	-	2,154	1,738	-	418	80.7

□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 추진 지양

1963년 9월 3일 외무공무원교육원으로 출범[56]한 국립외교원은 개원 60주년을 맞이하여 2023년 9월 1일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음.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행사 개요>

□ 기념 심포지엄
- o 일시 : 2023. 9. 1.(금) 10:00 - 15:10
- o 장소 :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
- o 주제 : "국립외교원 60년, 새로운 미래를 향한 다짐"
- o 참석자 : 300여명
  - 전 장관, 전 원장, 전 교수, 전 소장, 외교원 전 간부
  - 원내 간부, 언론 관계자, 유관 기관 장, 본부 간부
  - 글로벌리더십과정생, 외교관후보자 등
- o 프로그램
  - 제1세션 : 글로벌 가치 연대를 위한 외교전략
  - 제2세션 : 글로벌 중추 외교를 위한 정예 외교관 양성
  - 특별대담 : 대한민국 외교 구상의 산실 국립외교원

□ 타운홀 미팅
- o 일시 : 2023. 9. 1.(금) 10:15 - 10:35
- o 장소 :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
- o 주제 : "글로벌 외교의 미래를 꿈꾸다."

(자료: 국립외교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동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국립외교원은 타 세부사업에서 내역변경을 통하여 경비를 조달하였으며,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사를 개최하였음.

56) 1963.9.3. 외무공무원교육원으로 출범한 후, 1965년 외교연구원으로, 1976년 외교안보연구원으로 개편되었다가 2012.3월 국립외교원으로 확대 개편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행사 경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내역변경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9.5.)	국내외 교육훈련 (3531-402)	240-01	10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3531-401)	240-01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3531-407)	210-01	7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3531-401)	210-01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3531-407)	210-01	73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3531-401)	210-14	

(자료: 국립외교원)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행사 용역계약 체결내역>

(단위 : 백만원)

계약명	예산액	계약금액	수탁기관	계약기간	계약 유형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행사	-	73	㈜허니컴씨엔티	8.8.~9.1	수의계약

(자료: 국립외교원)

국립외교원은 당초 기념행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신임 원장 취임(23.3.31.)을 계기로, 외교안보 구상과 외교관 양성의 산실로 성장해 온 국립외교원의 60주년을 기념하고 역량강화 및 혁신을 통해 외교안보 싱크탱크로 거듭나기 위한 모멘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 행사를 기획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행사는 2023년도 예산 편성 당시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었으므로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행사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그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음.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타 사업의 예산을 충당하여 추진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립외교원은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적이 다른 타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는 예산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사업은 국민 대상별 맞춤형 대외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우리 외교의 중장기적 비전 및 다양한 외교사례와 외교현장 체험을 공유, 소통함으로써 대국민 외교소양 함양과 우리나라의 총체적 외교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367	367	-	△80	-	287	255	-	32	69.5
-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367	367	-	△80	-	287	255	-	32	69.5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3억 6,700만원인데, 예산액 대비 69.5%인 2억 5,500만원이 집행되고,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국민외교아카데미 사업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국립외교원은 2020년 10월 '국민외교타운'을 출범한 데 이어 2021년 3월 국립외교원의 대외교육 기능을 확대한 '국민외교아카데미'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 중임.

동 사업은 「국립외교원법」 제3조[57]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원, 일반국민 등에 대한 교육을 신설, 확대하여 국가적 외교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국민외교아카데미 연도별 교육과정>

구분	과목명	대상	인원(명)	기간
2021년	청소년외교배움터	고등학생	163	3.24.-5.27., 9.23.-11.25.
	대학생외교연수과정	대학생	49	7.19.-7.30.
	대국민열린외교강좌	일반 국민(성인)	201	4.7.-6.23., 10.13.-12.15.
	언론인 연수 과정	언론인	77	3.18., 3.19., 4.29., 4.30., 5.6., 5.7., 6.17., 6.18., 7.29.
	대국민특강	일반 국민	70	4.23.
2022년	청소년외교배움터	고등학생	131	3.31.-6.9., 10.6.-11.24.
	대학생외교연수과정	대학생	101	1.10.-1.21., 7.11.-7.22.
	대국민열린외교강좌	일반 국민(성인)	151	4.27.-7.6., 9.28.-11.30.
	언론인 연수 과정	언론인	52	6.16., 9.16., 11.24.
	대국민특강	일반 국민	65	12.7.
2023년	청소년외교배움터	고등학생	137	5.18.-7.6., 10.5.-11.23.
	대학생외교연수과정	대학생	95	1.22.-2.2., 7.10.-7.21.
	대국민열린외교강좌	일반 국민(성인)	79	5.17.-7.19.
	언론인 연수 과정	언론인	68	6.15., 7.7., 9.21., 10.19.
	대국민특강	일반 국민	100	2.22.
	열린 외교 심화 과정	지식인	9	11.3.-11.17.

57) **「국립외교원법」**
제3조(국립외교원의 직무) ① 국립외교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외교부 소속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국가 외교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분석 및 개발
3.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인 및 외국인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분	과목명	대상	인원(명)	기간
2024년	미래 지도자 과정	석·박사 연구원, 외교·안보 종사자	47	5.16.-11.22.
	청년 국제관계 실무 기본과정(상반기)	국제관계 실무 종사 청년 및 대학생	197	5.22., 5.29., 6.12., 6.26.
	청소년외교 배움터 (하계 방학 예정)	고등학생	100 (계획)	7월 - 8월
	대학생외교연수과정 (하계 방학 예정)	대학생	45 (계획)	7월 중

(자료: 외교부)

그런데 동 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2021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하여 예산현액이 계속하여 감소하였으며, 2023년도는 예산액 대비 집행률도 69.5%에 머무르는 등 집행률이 부진함.

특히 2023년도의 경우 '국립외교원 설립 60주년 기념행사'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동 사업 예산 8,000만원을 내역변경 감액까지 하였으며, 2024년 예산액도 50% 가량 대폭 축소되는 등 사업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모양새임.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4년 예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471	471	-	-	471	**435**	92.3	92.3	-	36
2022	540	540	-	△110	430	**425**	78.7	98.8	-	5
2023	367	367	-	△80	287	**255**	69.5	88.7	-	32
2024	184	184	-	-	-	-	-	-	-	-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사업 이·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내역변경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8.31.)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3531-407)	210-01	7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3531-401)	210-01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3531-407)	210-01	73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3531-401)	210-14	

‘국민외교아카데미’ 과정은 외교부와 국립외교원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간 축적된 외교 전반에 관한 지식과 정보,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우리 국민의 외교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를 도모하는 국립외교원만의 특색 있는 대외교육 과정임.

더욱이 동 사업은 최근의 급격한 외교환경 변화와 외교 주체 다변화에 따른 대외교육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에 신설된 과정으로, 한층 더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는 국제관계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바,

대국민 외교교육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외교부는 지방 및 해외 국민 참여 등 대상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다변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 국민외교아카데미 사업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5. 재외공관 운영

가. 개 요

「재외공관 운영」 프로그램은 외교부 재외공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운용과 제반 공관 운영에 필요한 재외공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외교정책 수행을 지원하고, 노후화된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의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대(對) 테러 보안시설 설치 및 강화를 통한 안전 도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것임. 동 프로그램은 5개의 단위사업과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예산은 7,309억 900만원이고, 이 중 7,120억 2,3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재외공관 운영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4000] 재외공관운영				675,977	730,909	730,909	712,023	776,394
	[4001] 재외공관 인건비			258,668	271,619	271,619	264,524	284,188
		[11] 일반	[101] 재외공관 인건비	258,668	271,619	271,619	264,524	284,188
	[4011]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84,592	184,633	184,633	194,135	144,805
		[11] 일반	[251]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84,592	184,633	184,633	194,135	144,805
	[4012] 재외공관 운영			20,233	20,268	20,268	21,409	21,000
		[11] 일반	[251] 재외공관근무여건 개선	16,900	15,901	15,901	17,151	17,063
		[11] 일반	[252]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3,333	4,367	4,367	4,258	3,937
	[4021]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177,033	201,281	201,281	184,858	208,655
		[11] 일반	[401]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177,033	201,281	201,281	184,858	208,655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2022 결산	2023 예산		2023 결산	2024 예산
					본예산	추경		
	[4031] 재외공관 안전확보 및 시설개선			35,451	53,108	53,108	47,098	117,746
		[11] 일반	[401]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18,559	30,756	30,756	27,244	28,180
		[11] 일반	[402] 재외공관 안전강화	16,892	22,352	22,352	19,853	23,466

나.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사업은 재외공관 근무자들에 대한 정착지원금, 차량보험료, 신변안전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공관 근무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2023년도 예산은 159억 100만원, 예산현액은 182억 9,500만원이었으며 이 중 171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6,0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15,901	15,901	179	2,215	-	18,295	17,151	84	1,060	107.8	93.7

□ 전지휴양·저지대요양 예산의 만성적 부족 해소방안 마련 필요

외교부는 특수지 및 고지대주재 재외공무원 및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차원에서 정기적 휴양 및 요양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도엔 1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전용 등을 통해 6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18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음.

전지휴양 및 저지대요양 예산은 매년 그 예산이 부족해 이·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데[58], 이는 전지휴양 및 저지대요양은 기본경비 사업이나 그 비목이 국외여비로 편성되어 있어 기획재정부의 통제 비목에 해당하기 때문임. 외교부의 전지휴양 및 저지대요양 예산은 자체적인 추계에도 매년 미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율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 그 부족분은 더 증가할 수 있음.

<전지휴양 대상 공관 및 소요 비용 추계>

특수지 등급	공관수	항공료		체재비		총계($)
		일인당 상한($)	인원수	일인당 상한($)	인원수	
가	18	1,800	141	1,000	80	333,800
나	24	1,300	254	1,000	124	454,200
다	29	900	494	1,000	199	643,600
합계	71	-	889	-	403	1,431,600

(자료: 외교부)

58) 2022년도에도 1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17억 8,000만원으로 이·전용을 통해 자체 부족분을 충당하였음.

<저지대요양 대상 공관 및 소요 비용 추계>

공관	항공료		체재비		총계($)
	일인당 상한($)	인원수	일인당 상한($)	인원수	
멕시코(연 4회)	700	46	1,000	15	47,200
볼리비아(연 3회)	1,100	9	1,000	4	13,900
에티오피아, 에콰도르, 콜롬비아(연 3회)	800	44	1,000	20	55,200
합계	-	99	-	39	116,300

(자료: 외교부)

전지휴양 및 저지대요양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장기 거주 도모를 위해 필수적이라 보인다는 점에서, 연례적인 이·전용 등을 통한 부족분 마련 관행이 없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이를 감안해 실시율을 90%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외교부는 기획재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지휴양·저지대요양비의 만성적인 예산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외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보장해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다.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사업은, 재외공관 국유화 건물의 대수선 및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급격한 노후화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재외공관 시설 안전성을 제고하여 국격에 어울리는 외교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 예산은 307억 5,600만원이었으며, 이 중 272억 4,400만원이 집행되

고 11억 9,7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88.6%임.

<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 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30,756	30,756	-	△2,315	-	28,441	27,244	-	1,197	88.6	95.8

2023년 개별 재외공관에서 이루어진 리모델링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음.

< '23년 재외공관 노후 리모델링사업 집행 내역 >

공관명	재외공관 이월 (단위 :미불)	지급원인행위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 (현지화폐)
주인도(대)	873,694.00	주인도(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2022.12.27.	$2,024,785.00
주이탈리아(대)	1,595,490.85	주이탈리아(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2021.12.30.	€3,730,655.85
주프랑스(대)	173,125.00	주프랑스(대) 청사 리모델링 AMO 용역	2022.04.12.	€803,000.00
주세네갈(대)	1,411,096.00	주세네갈(대) 관저 리모델링 건축공사	2023.08.03.	$2,765,500.00
주러시아(대)	160,177.00	주러시아(대) 관저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용역	2023.10.15.	$513,700.00
주캐나다(대)	1,600,531.99	주캐나다(대) 관저 리모델링 공사	2023.12.21.	$2,628,000.00
주프랑스(대)	204,401.00	주프랑스(대) 영사동 리모델링 공사	2023.05.15.	€1,727,000.00
주노르웨이(대)	110,000.00	주노르웨이(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1.11.30.	$275,000.00
주아르헨티나(대)	840,826.41	주아르헨티나(대) 관저 리모델링 공사	2023.12.28.	$2,639.138.00
주카타르(대)	672,708.00	주카타르(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2023.12.31.	$2,049,063.00
주헝가리(대)	11,784.04	주헝가리(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2.08.08.	$116,000.00
주페루(대)	110,000.00	주페루(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3.12.26.	$360,000.00
주시애틀(총)	106,800.00	주시애틀(총) 관저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3.12.28.	$180,000.00
주유네스코(대)	125,000.00	주유네스코(표) 관저 리모델링 공사	2023.12.27.	€1,414,000.00

□ 재외공관 관서운영경비 이월 관행 시정 필요

연도별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 집행 내역을 확인하면, 개별 공관에선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아래와 같이 매년 이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주재국 상황에 따라 혹은 설계·시공 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연중 집행이 어려워지는 등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2020~23년 재외공관 노후 리모델링사업 집행 내역 >

구분	공관명	사업명	이월내역 (단위: $)	이월 집행액 (단위: $)	이월 잔액	지출원인행위(계약 내역 등)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 (단위: 현지화폐)
2020년								
1	주네덜란드(대)	청사 리모델링	16,395.05	16,395.05	0	주네덜란드(대) 청사 리모델링 설계 계약	2020. 07.09.	€ 25,410
2	주러시아(대)	관저 리모델링	400,000.00	160,000.00	240,000.00	주러시아(대) 관저 리모델링 설계 계약	2020. 12.30.	$400,000.00
3	주세네갈(대)	관저 리모델링	250,000.00	129,000.00	121,000.00	주세네갈(대) 관저 리모델링 설계 계약	2020. 12.31.	$242,000.00
4	주이탈리아(총)	청사 리모델링	87,859.27	87,859.27	0	주이탈리아(대) 청사 리모델링 설계 계약	2020. 09.11.	€ 260,379
5	주칠레(대)	청사 리모델링	2,028.96	2,028.96	0	청사리모델링 사전작업 용역	2020. 07.01.	135 UF (칠레페소)
6	주히로시마(총)	청사 리모델링	28,211.96	28,211.96	0	청사 리모델링 공사계약	2020. 05.27.	￥8,700,000
※ 러시아 $240,000는 주재국 문화재 인허가 지연에 따라 설계 지연으로 이월 잔액 발생 ※ 세네갈 $121,000는 토지대장 현행화(주재국 등재 부지와 실재 사용 부지 불일치)를 위한 설계 정지로 이월 잔액 발생								
2021년								
1	주네덜란드(대)	청사 리모델링	6,996.00	6996.00	0	주네덜란드(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0. 07.09.	€ 25,410.00
2	주노르웨이(대)	청사 리모델링	165,000.00	51,304.59	113,695.41	주노르웨이(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1. 11.30.	$275,000.00
3	주러시아(대)	관저 리모델링	54,840.62	54,840.62	0	주러시아(대) 관저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0. 12.30.	$400,000.00
4	주사우디(대)	직원주택 리모델링	2,019,940.00	2,019,940.00	0	주사우디(대) 직원주택 리모델링 공사	2021. 12.28.	$2,911,000.00
5	주아르헨티나(대)	관저 리모델링	250,000.00	250,000.00	0	주아르헨티나(대) 관저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1. 12.29.	$328,000.00
6	주이탈리아(대)	청사 리모델링	2,559,988.65	2,559,988.65	0	주이탈리아(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2021. 12.30.	€3,730,655.85

7	주인도(대)	청사 리모델링	1,797,800.00	1,797,800.00	0	주인도(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2021. 12.28.	$1,610,500.00
8	주칠레(대)	청사 리모델링	2,199,455.00	2,199,455.00	0	주칠레(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2021. 12.29.	$2,535,000.00
9	주캐나다(대)	관저 리모델링	80,612.03	78,034.53	2,577.5	주캐나다(대) 관저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1. 05.07.	C$280,544.00
※ 노르웨이 $113,695.41는 코로나19로 인한 주재국 협의 지연으로 잔액 발생 ※ 캐나다 $2,577.5는 설계 완료 후 집행 잔액 발생								
2022년								
1	주프랑스(대)	영사동 리모델링	13,189.80	13,189.80	0	영사동 리모델링 AMO 용역	2022. 09.19.	€56,400.00
2	주네덜란드(대)	청사 리모델링	83,951.04	54,101.23	29,849.81	주네덜란드(대) 청사 리모델링 CM용역	2023. 01.10.	€62,100.00
3	주러시아(대)	관저 리모델링	15,657.00	15,657.00	0	주러시아(대) 관저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0. 12.30.	$400,000.00
4	주미국(대)	관저 리모델링	319,800.00	267,200.00	52,600.00	주미국(대) 관저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2. 12.23.	$533,000.00
5	주사우디(대)	직원주택 리모델링	2,107,360.26	2,107,360.26	0	주사우디(대) 직원주택 리모델링 공사	2022. 12.29.	$3,947,602.00
6	주이탈리아(대)	청사 리모델링	1,967,863.26	1,967,863.26	0	주이탈리아(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2021. 12.30.	€3,730,655.85
7	주인도(대)	청사 리모델링	1,746,769.00	1,746,769.00	0	주인도(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2022. 12.27.	$2,024,785.00
8	주칠레(대)	청사 리모델링	401,653.75	401,653.75	0	주칠레(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2021. 12.29.	$2,535,000.00
9	주카타르(대)	청사 리모델링	72,763.32	72,697.23	66.09	주카타르(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2. 07.25.	$290,789.00
10	주프랑스(대)	청사 리모델링	619,555.61	619,555.61	0	주프랑스(대) 청사 리모델링 AMO 용역	2022. 04.12.	€803,000.00
11	주헝가리(대)	청사 리모델링	17,974.88	17,974.88	0	주헝가리(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2. 08.08.	$116,000.00
※ 네덜란드 $29,849.81 및 미국 $52,600.00는 주재국 인허가 지연으로 잔액 발생 ※ 카타르 66.09는 설계 완료 후 집행 잔액 발생								
2023년								
1	주프랑스(대)	영사동 리모델링	204,401.00	0	미정	영사동 리모델링 공사	2023. 05.15.	€1,727,000
2	주러시아(대)	관저 리모델링	160,177.00	0	미정	주러시아(대) 관저 리모델링 CM용역	2023. 10.15.	$513,700
3	주이탈리아(대)	청사 리모델링	1,595,490.85	189,249.68	미정	주이탈리아(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2021. 12.30.	€3,730,655.85
4	주인도(대)	청사 리모델링	873,694.00	221,810.00	미정	주인도(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2022. 12.27.	$2,024,785
5	주세네갈(대)	관저 리모델링	1,411,096.00	365,949.00	미정	주세네갈(대) 관저 리모델링 공사	2023. 08.03.	$3,201,500
6	주캐나다(대)	관저 리모델링	1,600,531.99	260,410.08	미정	주캐나다(대) 관저 리모델링 공사	2023. 12.21.	$2,628,000

7	주노르웨이(대)	청사 리모델링	110,000.00	0	미정	주노르웨이(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1. 11.30.	$275,000
8	주아르헨티나(대)	관저 리모델링	840,826.41	0	미정	주아르헨티나(대) 관저 리모델링 공사	2023. 12.28.	$2,639,138
9	주카타르(대)	청사 리모델링	672,708.00	0	미정	주카타르(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2023. 12.26.	$2,049,063
10	주헝가리(대)	청사 리모델링	11,784.04	0	미정	주헝가리(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2. 08.08.	$116,000
11	주페루(대)	청사 리모델링	110,000.00	0	미정	주페루(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3. 12.31.	$310,000
12	주시애틀(총)	관저 리모델링	106,800.00	2,685.64	미정	주시애틀(총) 관저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3. 12.28.	$180,000
13	주프랑스(대)	청사 리모델링	173,125.00	0	미정	주프랑스(대) 청사 리모델링 AMO 용역	2022. 04.12.	€803,000
14	주유네스코(표)	관저 리모델링	125,000.00	33,893.83	미정	주유네스코(표) 관저 리모델링 공사		€1,414,000

다만 이월 행위 자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본부 차원의 결산에서 해당 이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임. 외교부가 제출한 연도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자료에 따르면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이월이 있었으나, 결산상에는 이월이 없었던 것으로 표기되고 있음.

< 최근 4개년도「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17,867	17,867	-	△7,801	-	10,066	9,243	51.7%	91.8%	-	823
2021	26,319	26,319	-	-	-	26,319	22,077	83.9%	83.9%	-	4,242
2022	28,759	28,759	-	△4,000	-	24,759	18,559	64.5%	75.0%	-	6,200
2023	30,756	30,756	-	△2,315	-	28,441	27,244	88.6%	95.8%	-	1,197

외교부는 그 사유에 대해「국고금 관리법」 시행령[59] 제37조제4항제3호

에 따라 재외공관 시설비 이월액은 외교부 본부(지출관)에 반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공관에서 직접 이월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본부 기준으로 작성되는 외교부 결산보고서 상에는 공관 이월액이 본부 집행액으로 집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시행령은 관서운영경비의 이월이 가능하다는 포괄적인 규정일 뿐으로서, 재외공관에서 동 사업 예산을 이월시키는 경우에도 외교부가 예산 이월 사항에 대해 결산보고서 상에 생략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외교부는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 내 이월 예산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상 규정의 취지를 감안한 결산 보고서 작성을 해야 할 것임.

---

59)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7조(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해당 지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 및 해외주재관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재외공관 및 해외주재관에 교부할 관서운영경비에서 빼는 것으로 반납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의 사용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직전 회계연도에 사용한 정부구매카드 사용금액 중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재외공관의 시설비 중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지급되지 아니한 경비**

16. 외교행정지원

가. 개 요

“외교행정지원” 프로그램은 외교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운용과 제반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본경비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외교정책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부 인건비 및 기본경비 외에 외교 정보화, 정책연구개발(R&D), 본부 및 재외공관의 외교활동 업무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2023년도 기준, 8개의 단위사업 및 7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예산은 2,360억 8,100만원이고, 이 중 2,134억 3,5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외교 행정지원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7000] 외교행정지원				207,702	236,081	236,081	213,435	217,268
	[7001] 본부인건비			84,962	96,292	96,292	87,730	94,669
		일반	[101] 본부 인건비	84,962	96,292	96,292	87,730	94,669
	[7002] 소속기관 인건비			8,752	9,820	9,820	8,573	9,064
		일반	[101] 국립외교원 인건비	8,752	9,820	9,820	8,573	9,064
	[7011] 본부 기본경비			43,836	46,347	46,347	44,733	44,704
		일반	[201]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8,695	9,564	9,564	9,520	10,072
		일반	[202] 국가외교통신 운영(총액)	12	19	19	17	19
		일반	[203] 의전장실 기본경비(총액)	29	32	32	31	32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일반	[204] 국제기구국 기본경비(총액)	28	22	22	31	32
		일반	[205] 외교전략기획관실 기본경비(총액)	11	20	20	17	20
		일반	[206] 동북아시아국 기본경비(총액)	31	45	45	23	35
		일반	[207] 북미국 기본경비(총액)	27	41	41	30	41
		일반	[208] 북핵외교기획단 기본경비(총액)	24	24	24	23	24
		일반	[209] 중남미국 기본경비(총액)	21	24	24	18	24
		일반	[210] 유럽국 기본경비(총액)	28	25	25	29	28
		일반	[211] 아프리카중동국 기본경비(총액)	32	38	38	34	41
		일반	[212] 국제법률국 기본경비(총액)	17	24	24	21	24
		일반	[213] 공공문화외교국 기본경비(총액)	30	29	29	27	32
		일반	[214]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기본경비(총액)	20	23	23	10	-
		일반	[215] 영사안전국 기본경비(총액)	22	35	35	26	35
		일반	[216] 여권발급 기본경비(총액)	150	173	173	154	173
		일반	[217] 국제경제국 기본경비(총액)	16	15	15	18	18
		일반	[218] 양자경제외교국 기본경비(총액)	25	24	24	34	29
		일반	[219]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본경비(총액)	15	19	19	24	27
		일반	[220] 개발협력국 기본경비(총액)	34	34	34	40	39
		일반	[221] 아세안국 기본경비(총액)	23	30	30	28	30
		일반	[222] 평화외교기획단 기본경비(총액)	18	24	24	24	24
		일반	[223]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 기본경비(총액)	16	24	24	18	24
		일반	[224] 아시아태평양국 기본경비(총액)	29	33	33	34	33
		일반	[251] 기관운영 기본경비	24,058	22,535	22,535	24,458	22,303
		일반	[252] 국가외교통신 운영	3,313	3,182	3,182	3,003	3,980
		일반	[253] 의전장실 기본경비	441	2,530	2,530	460	329
		일반	[254] 인천공항연락실 운영	71	74	74	72	74
		일반	[255] 국제기구국 기본경비	643	529	529	433	508
		일반	[256] 외교전략기획관실 기본경비	274	527	527	598	503
		일반	[257] 동북아시아국 기본경비	204	244	244	215	234
		일반	[258] 북미국 기본경비	207	260	260	169	242
		일반	[259] 북핵외교기획단 기본경비	136	145	145	106	138
		일반	[260] 중남미국 기본경비	224	264	264	208	254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일반	[261] 유럽국 기본경비	261	448	448	437	427
		일반	[262] 아프리카중동국 기본경비	290	358	358	321	347
		일반	[263] 국제법률국 기본경비	705	719	719	578	712
		일반	[264] 공공문화외교국 기본경비	465	537	537	429	502
		일반	[265]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기본경비	225	254	254	102	-
		일반	[266] 영사안전국기본경비	200	343	343	313	336
		일반	[267] 여권발급 기본경비	886	936	936	858	915
		일반	[268] 국제경제국 기본경비	215	210	210	203	202
		일반	[269] 양자경제외교국 기본경비	398	477	477	400	440
		일반	[270]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본경비	257	262	262	244	276
		일반	[271] 개발협력국 기본경비	303	331	331	310	318
		일반	[272] 아세안국 기본경비	176	284	284	166	272
		일반	[273] 평화외교기획단 기본경비	129	165	165	117	160
		일반	[274]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 기본경비	157	173	173	132	166
		일반	[275] 아시아태평양국 기본경비	244	219	219	169	210
	[7018] 소속기관 기본경비			6,607	6,918	6,918	6,666	7,043
		일반	[201] 국립외교원 기본경비(총액)	2,379	2,517	2,517	2,381	2,588
		일반	[251] 국립외교원 기본경비	4,229	4,401	4,401	4,285	4,455
	[7031] 외교 정보화			43,840	51,226	51,226	44,111	36,662
		일반	[501] 외교정보전용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16,692	21,743	21,743	20,225	20,882
		일반	[502]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12,157	11,527	11,527	10,684	10,989
		일반	[503]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3,974	4,047	4,047	1,450	-
		일반	[504] 재외공관 회계 및 행정업무 고도화(정보화)	8,226	5,607	5,607	7,131	2,125
		일반	[505] D.N.A 기반 외교업무환경 지능화(정보화)	2,375	3,649	3,649	4,313	2,666
		일반	[506] 해외 주요인사 대상 E-diplomacy 강화(정보화)	415	336	336	307	-
		일반	[507]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정보화)	-	4,317	4,317	-	-
	[7032] 정책연구개발(R&D)			59	445	445	401	356
		일반	[401] 정책연구개발(R&D)	59	445	445	401	356
	[7033] 외교활동 업무지원			17,852	22,668	22,668	19,718	22,502
		일반	[401] 외교네트워크 구축	3,926	7,073	7,073	4,628	5,472
		일반	[402] 재외공관 주요행사비	6,003	7,543	7,543	6,770	7,649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일반	[403]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210	387	387	379	1,802
		일반	[404]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대응	688	2,303	2,303	2,807	2,303
		일반	[405] 대한민국 외교사료집 편찬	331	321	321	317	301
		일반	[406] 외교타운 안전정비사업	2,390	1,000	1,000	884	900
		일반	[407] 외교사료관 환경개선사업	345	-	-	-	-
		일반	[408] 재외공관 국경일행사 개최지원 및 내실화	3,960	4,041	4,041	3,933	4,075
	[7034] 외교정책 대내외 이해제고			1,794	2,365	2,365	1,503	2,268
		일반	[401] 외교홍보역량강화	1,794	2,365	2,365	1,503	2,268

나. 기관운영 기본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외교부 본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공무직 보수를 포함한 행정지원 경비, 기획조정실·대변인실·감사담당관실 운영 기본경비 등임.

< 기관운영 기본경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C/B)
본예산	추경(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32,099	32,099	525	2,533	-	35,157	33,978	132	1,047	96.9

2023년도 예산액 320억 9,9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5억 2,500만원 및 이전용액 25억 3,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51억 5,700만원 중 1억 3,200만원은 이월되고 10억 4,7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339억 7,800만원은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9%임.

□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 현실화 필요

2023년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 등 국외여비로 106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59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49.8%인 52억 9,100만원이 부족하여 전용 또는 자체 국외업무여비 내의 다른 사업 예산으로 부족분을 충당하였음. 주요 요인은 재외공관 이부임직원과 동반가족 등에 대한 항공료, 이전비 등 부족에 기인함.

< 일자별 교체여비 이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조정 세부사업	금액
자체전용	9.27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1개 사업	1,000
자체전용	12.13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8개 사업	1,930
승인전용	12.22	본부 인건비 등 6개 사업	1,700
자체전용	12.29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1개 사업	163
합 계			4,793

2023년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4차례에 걸쳐 47억 9,300만원을 전용하였고 자체 내역변경을 포함할 경우 52억원이 부족하였음.

< 연도별 교체여비 집행 현황 >

연도	요구액	편성액(A)	집행액(B)	부족액(B-A)	부족률[(B-A)/A]
2019	86억원	73억원	87억원	14억원	19.2%
2020	94억원	79억원	100억원	21억원	26.6%
2021	92억원	78억원	117억원	39억원	50.0%
2022	120억원	81억원	150억원	69억원	85.2%
2023	125억원	97억원	149억원	52억원	53.6%

전용재원은 기본경비 등 기관운영경비로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로 기획재정부는 제시한 기본경비 지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도한 기본경비의 이·전용은 기관 운영을 저해할[60] 수 있으므로 지양하여야 했음.

60) 외교부는 2019년부터 매년 전 직원 대상 갑질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2023년 전체 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위 조사 여비 마련을 위해 갑질설문조사 일반용역비(1천만원)를 여비로 전용하고 설문조사는 용역 계약이 아닌 부내 업무 포털 설문조사 기능을 활용하여 실시함.

교체여비는 다른 국외출장 여비와는 달리 재외공관 이부임 및 전임 등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 필수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경비이나, 증액이 어려운 경상적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어 실제 소요액 대비 편성액 부족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교체여비 편성액 대비 집행액 현황 >

연도	편성액	집행액
2021	77억원 항공료: 1,500명 x 2.46백만원 = 36.9억원 이전비: 580명 x 6.55백만원 = 37.9억원 일 비: 1,500명 x 0.08백만원 = 1.2억원 준비금: 100명 x 0.84백만원 = 0.8억원	117억원 항공료: 2,242명 x 1.58백만원 = 35.4억원 이전비: 891명 x 9백만원 = 80.2억원 일 비: 2,242명 x 0.04백만원 = 1억원 준비금: 1,093명 x 0.08백만원 = 0.9억원
2022	81억원 항공료: 1,500명 x 2.90백만원 = 43.5억원 이전비: 580명 x 6.15백만원 = 35.7억원 일 비: 1,500명 x 0.07백만원 = 1.1억원 준비금: 100명 x 0.78백만원 = 0.8억원	150억원 항공료: 2,315명 x 2.09백만원 = 48.5억원 이전비: 834명 x 11.8백만원 = 98.4억원 일 비: 2,315명 x 0.06백만원 = 1.4억원 준비금: 521명 x 0.24백만원 = 1.2억원
2023	97억원 항공료: 1,500명 x 3.2백만원 = 48억원 이전비: 580명 x 8.14백만원 = 47.2억원 일 비: 1,500명 x 0.08백만원 = 1.2억원 준비금: 100명 x 0.89백만원 = 0.9억원	149억원 항공료: 2,260명 x 1.99백만원 = 44.9억원 이전비: 823명 x 12.5백만원 = 102.9억원 일 비: 2,260명 x 0.05백만원 = 1.1억원 준비금: 168명 x 0.26백만원 = 0.4억원

매년 국회는 직원 교체여비를 과소하게 편성하고 연례적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충당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뚜렷한 개선은 보이지 않고 있음. 향후 재정당국은 교체여비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외교부 기관운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 **계속사업경비를 국외여비 전용재원으로 부적정 전용 지양**

외교부는 2019년부터 매년 전 직원 대상으로 갑질 실태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갑질위험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전문성을 갖춘 용역업체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일반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교체여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으로 국외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위 조사 여비 마련을 위해 갑질위험진단 설문조사 일반용역비 예산을 여비로 전용하였고, 설문조사는 용역 계약이 아닌 부내 업무포털을 이용한 설문조사 기능을 활용하여 실시하였으나, 전문성을 갖춘 용역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관계로 설문조사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설문조사는 데이터 수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접근방식을 제공하며 설문조사를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연구대상에 적용하면 연구조사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면서 가치있는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 전문성을 갖춘 용역업체를 통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

외교부는 교체여비 등 국외여비 부족으로 기관운영경비에서 매년 전용을 실시하면서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례적인 사업도 국외여비의 전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기관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가족동반직원에 대한 국외이전비 지급기준 개선 필요

「공무원 여비 규정」[61]에 따르면 외국으로 부임하거나,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 또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국외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외이전비 지급기준은 단신이든 가족을 동반하든 상관없이 15㎥를 기준으로 실비를 지원하고 15㎥를 초과하는 경우 25㎥ 이하 이전비 실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음.

< 국외이전비 개정 연혁 >

일자	내 용	비고
1998.02.24	○ 여비지급구분표(3단계) 및 지역별 등급(9등급)에 따라 정액 (최대 $5,080, 최소 $2,180)으로 이전비 지급	
2007.11.13	○ 10㎥ 이하: 실비 ○ 10㎥ 초과, 15㎥ 미만: 10㎥ 비용 + 10㎥ 비용 초과분의 60% ○ 15㎥ 초과(25㎥ 상한): 15㎥ 비용 + 15㎥ 비용 초과분의 30%	
2010.11.10.	○ 10㎥ 이하: 실비 ○ 10㎥ 초과, 15㎥ 미만: 실비의 85% ○ 15㎥ 초과 (25㎥ 상한): 실비의 80%	
2013.01.09.	○ 15㎥ 이하: 실비 ○ 15㎥ 초과 (25㎥ 상한): 실비 80%	
2015.01.06.	○ 15㎥ 이하: 실비 ○ 15㎥ 초과 (25㎥ 상한): 15㎥ 이전비 실비 + 15㎥ 초과, 25㎥ 이하 이전비 실비의 50%	현행

최근 3년간 가족수별 이전비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가족을 동반한 경우는 단신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물크기·이전비 및 평균 자부담 비용

61)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③ 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이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녀 양육 및 부양가족에 요구되는 물품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에 따른 것임.

< 최근 3년간 가족수별 이전비 신청 건수 >

(단위: 건)

구분	이전비 신청건수			합계	평균 건수
	2021	2022	2023		
단신	301	369	347	1,017	339
동반가족(+1)	170	178	211	559	186
동반가족(+2)	176	137	136	449	150
동반가족(+3)	154	130	115	399	133
동반가족(+4 이상)	20	21	15	56	19
합계	821	835	824	2,480	827

< 최근 3년간 가족수 별 평균 화물크기 및 이전비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평균 화물크기(㎥)	평균 이전비 집행	평균 자부담 내역
단신	17.5	10.1	0.8
동반가족(+1)	20.3	10.9	1.1
동반가족(+2)	24.2	11.4	1.0
동반가족(+3)	24.1	11.2	0.8
동반가족(+4 이상)	24.6	13.5	1.2
평균	20.6	10.8	0.9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의 최하위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저출산정책을 앞다투어 마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저출산사회에 대응하면서 가족친화적인 재외공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족동반직원에게 최소한의 경비절감 차원에서 국외이전비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외이전비 지원이 확대될 경우 해외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도 혜택이 부여될 수 있음.

국내이전비의 경우 5톤 화물(25㎥ 상당) 이하 실비 100%를 지원하고 있어 국내이전과 국외이전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전비 지원기준인 15㎥과 지원상한인 25㎥의 차이가 1백만원에 불과함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단신 부임시는 현행을 유지하되, 가족동반시는 25㎥까지 국외이전비를 확대 지원하여 저출산사회에 대응하는 친가족적 재외공관의 환경조성에 힘쓸 필요가 있음.

다. 해외주요인사대상 E-diplomacy 강화

「해외주요인사대상 E-diplomacy 강화」는 SNS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여론 동향 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해외 여론 주도층의 SNS를 모니터링하여 빅데이터 구축, 디지털 외교 자산 활용 및 디지털 외교 방향을 제언하기 위한 것임.

< 기관운영 기본경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336	336	-	-	-	336	307	-	29	91.4

2023년도 예산액 3억 3,600만원 중 2,9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3억 700만원은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1.4%임.

□ 신규사업 편성시 사업의 효율성 및 집행가능성 고려

「해외주요인사대상 E-diplomacy 강화」는 언론에 대한 SNS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SNS 여론 동향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음.[62)]

동 사업은 해외언론인,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SNS 모니터링 및 우리 외교정책과 관련된 국제여론의 사전 파악, 내·외신의 관련 보도 여부 등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디지털 외교 자산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디지털 외교방향

62) 2022년 소셜 미디어 분석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8,800만원 집행

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외교부는 유력 외신 언론사 및 언론인, 각국 정상, 외교장관 등 정부인사, 주요 싱크탱크 및 연구자 등 주요 인사 X(구 트위터) 및 페이스북 계정 등록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2년 12월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시스템 구축 전에는 (주) 알에스엔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용서비스[63]를 한시적으로 구독하여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취득 및 개발과정에 활용하였고 데이터 컨설턴트 용역업체가 해외 주요인사 SNS를 직접 모니터링하였음.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외 주요인사의 SNS 계정을 자동 모니터링하고 통계 추출물을 수시업무에 반영하여 위기관리 및 홍보가 가능함. 또한 데이터 컨설턴트 전담인력 2명을 통하여 일일 모니터링 보고서(200여회), 격주간(40여회), 월간(11회)를 작성하고 온라인상 특이사항 관찰 시 수시로 고지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였음.

그러나 2023년 7월 SNS 채널 X(구 트위터)가 기존 정책을 변경[64]하여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제한하는 등 기 구축시스템 활용 여건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외교부는 동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 외부 사업자와의 시스템

---

63) LUCY 2.0은 아이템분석 사용자, 트렌드 검색 설정 지원, 트렌드 검색, 토픽 검색, 해시태그 검색, 프로필 검색 제공, 언론, 커뮤니티, SNS(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포함 12개 채널 데이터 제공, 검색 기간 설정, 비교 기간 설정, 아이템 셋팅 등 기능 지원, 정보량, 감성, 채널, 연관 키워드 분석 및 대시보드 제공 등을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임.

64) 해외주요인사 SNS 모니터링 대상 계정: 트위터(현 X)(471계정) / 페이스북(167계정)
- SNS의 중요 정보 대부분을 생산하던 트위터가 AI를 활용한 데이터 자동수집이 불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차단하면서 실시간·대규모 모니터링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 사용의 기술적 이득이 사라짐.

구축·활용 계약을 조기 종료함.

이에 외교부는 기존 사업의 취지대로 관련 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을 지속하되 별도 시스템의 활용 없이 직접 관리하면서 선별·집중된 정보 및 동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시스템 활용과 관련된 기존 사업은 조기 종료하였음. 외교부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체계적인 해외 유력인사의 동향 파악 등 사업효과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지 2년만에 종료함에 따라 시스템 구축비로 집행된 예산 및 각종 행정비용은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또한 데이터 컨설턴트 전담인력 2명을 활용하여 수행하던 동향 파악,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외교부 직원이 직접 전담하게 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동 사업은 모니터링 대상 계정의 약 74%가 SNS 채널 X(구 트위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X의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 활용 자체가 곤란해짐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다른 채널을 통하여 여론동향을 파악할 방법을 모색하거나 기존 예산으로 데이터 컨설턴트 전담인력를 활용하여 여론동향을 분석하는 방안 등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음.

향후 외교부는 신규사업을 반영할 경우 사업의 실효성, 집행상 비효율적인 요인은 발생하지 않는지, 위탁이 아닌 직접 사업으로 수행이 가능한지 등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임.

17. 한국국제협력단

가. 개 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각종 협력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으로 설립된 외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외교부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은 ⅰ)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ⅱ)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ⅲ)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ⅳ) 중동·CIS지역국가원조, ⅴ) 글로벌 프로그램, ⅵ) 협력사업 지원, ⅶ) 전략적협력강화, ⅷ)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등 8개 단위사업에 39개 세부사업[6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은 상기 출연사업 및 보조금 수탁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한국국제협력단 예산의 경우, 2023년 예산은 1조 3,490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추경 및 이전용 결과 예산현액은 1조 3,038억원 5,700만원임. 이 중 1조 2,458억 6,600만원이 집행되고 185억 8,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94억 1,000만원이 불용됨.

65) KOICA 출연금 및 보조금이 아닌 외교부 소관 「ODA 선진화」 사업을 포함할 경우 총 40개 세부사업임.

< 한국국제협력단 2023년도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항 목 명	예 산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A)	증감 (A'-A)	예산현액 (A')				
총 합 계	**1,349,054**	**△45,197**	**1,303,857**	**1,245,866**	**18,581**	**39,410**	**95.6**
□ 인건비	**46,311**	**778**	**47,089**	**47,086**	**-**	**3**	**100.0**
협력사업지원(인건비)	45,671	915	46,586	46,586	-	-	100.0
기금운영비(인건비)	640	△137	503	500	-	3	99.4
□ 경상운영비	**1,687**	**-**	**1,687**	**1,587**	**-**	**100**	**94.1**
협력사업지원(경상비)	1,687	-	1,687	1,587	-	100	94.1
□ 사업비	**1,299,737**	**△44,684**	**1,255,053**	**1,197,193**	**18,581**	**39,279**	**95.4**
<출연사업>	**1,013,079**	**△45,334**	**967,745**	**909,942**	**18,581**	**39,223**	**94.0**
1. 국별협력사업	**660,014**	**△47,032**	**612,982**	**566,206**	**17,230**	**29,546**	**92.4**
①아시아태평양지역원조	**242,640**	**△20,881**	**221,759**	**201,042**	**7,841**	**12,876**	**90.7**
베트남(ODA)	35,329	△2,747	32,582	28,783	906	2,893	88.3
인도네시아(ODA)	19,445	△3,997	15,448	14,358	100	990	92.9
캄보디아(ODA)	23,577	△791	22,786	22,128	235	423	97.1
필리핀(ODA)	23,319	△5,182	18,137	16,724	207	1,206	92.2
방글라데시(ODA)	14,936	△640	14,296	13,506	90	700	94.5
몽골(ODA)	12,825	2,048	14,873	14,360	380	134	96.5
라오스(ODA)	23,292	2,406	25,698	25,276	-	422	98.4
스리랑카(ODA)	10,574	527	11,101	10,952	43	107	98.7
네팔(ODA)	8,538	△520	8,018	7,784	31	202	97.1
파키스탄(ODA)	8,678	△1,341	7,337	6,689	-	648	91.2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60,400	△9,497	50,903	39,912	5,849	5,142	78.4
인도(ODA)	987	△572	415	411	-	4	99.1
미얀마(ODA)	740	△575	165	160	-	5	97.0
② 아프리카지역원조	**238,517**	**△12,804**	**225,713**	**212,829**	**5,165**	**7,719**	**94.3**
가나(ODA)	9,548	28	9,576	9,222	70	283	96.3

항 목 명	예 산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A)	증감 (A'-A)	예산현액 (A')				
에티오피아(ODA)	33,494	△2,385	31,109	29,697	-	1,412	95.5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126,870	△2,673	124,197	115,324	4,951	3,922	92.9
르완다(ODA)	16,237	△597	15,640	15,329	-	311	98.0
우간다(ODA)	14,564	△10	14,554	14,334	144	76	98.5
탄자니아(ODA)	18,466	△3,788	14,678	13,984	-	694	95.3
세네갈(ODA)	12,209	△3,028	9,181	8,295	-	886	90.3
이집트(ODA)	7,129	△350	6,779	6,644	-	135	98.0
③ 중남미지역원조	**97,225**	**△9,983**	**87,242**	**79,819**	**1,898**	**5,525**	**91.5**
콜롬비아(ODA)	9,861	-	9,861	9,370	-	491	95.0
페루(ODA)	8,428	△1,511	6,917	6,703	-	214	96.9
볼리비아(ODA)	8,599	△191	8,408	7,361	-	1,047	87.6
파라과이(ODA)	10,892	-	10,892	10,600	-	292	97.3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59,445	△8,281	51,164	45,784	1,898	3,482	89.5
④ 중동·CIS지역원조	**81,632**	**△3,364**	**78,268**	**72,516**	**2,326**	**3,426**	**92.7**
우즈베키스탄(ODA)	14,203	△2,275	11,928	11,310	184	435	94.8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60,169	△2,491	57,678	52,927	1,947	2,805	91.8
키르기스스탄(ODA)	7,160	1,501	8,661	8,278	196	187	95.6
타지키스탄(ODA)	50	△49	1	1	-	-	95.7
우크라이나(ODA)	50	△50	-	-	-	-	-
2. 글로벌프로그램	**229,553**	**△505**	**229,048**	**221,464**	**404**	**7,180**	**96.7**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100,858	207	101,065	96,446	-	4,619	95.4
글로벌연수	52,473	△511	51,962	51,129	404	429	98.4
국제기구협력	51,899	△174	51,725	51,061	-	664	98.7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	24,323	△27	24,296	22,829	-	1,467	94.0
3. 협력사업지원	**63,366**	**△1,770**	**61,596**	**59,468**	**765**	**1,363**	**96.5**
협력사업지원	63,366	△1,770	61,596	59,468	765	1,363	96.5
4. 전략적 협력강화	**8,000**	**△4,075**	**3,925**	**3,415**	**181**	**329**	**87.0**

항 목 명	예 산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A)	증감 (A'-A)	예산현액 (A')				
전략적 협력강화	8,000	△4,075	3,925	3,415	181	329	87.0
5.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52,146**	**8,047**	**60,193**	**59,389**	**-**	**804**	**98.7**
민관협력사업	47,946	△363	47,583	46,785	-	798	98.3
인도적지원(출연금)	4,200	8,410	12,610	12,604	-	6	100.0
<보조사업>	**286,031**	**936**	**286,967**	**286,911**	**-**	**56**	**100.0**
6.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286,031**	**936**	**286,967**	**286,911**	**-**	**56**	**100.0**
인도적지원(보조금)	286,031	936	286,967	286,911	-	56	100.0
<수탁사업>	**627**	**△287**	**340**	**340**	**-**	**-**	**100**
7.질병퇴치기금사업	**464**	**△176**	**288**	**288**	**-**	**-**	**100**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114	△22	92	92	-	-	100.0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	280	△147	133	133	-	-	100.0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70	△7	63	63	-	-	100.0
8. 기금운영비	**163**	**△111**	**52**	**52**	**-**	**-**	**100.0**
기금운영비	163	△111	52	52	-	-	100.0
□ 예비비	**1,319**	**△1,291**	**28**	**-**	**-**	**28**	**-**
협력사업 지원(경평성과급)	1,319	△1,291	28	-	-	28	-

※ '증감'은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미배정액을 포함한 금액임

나. 검토의견

1) 총괄

□ 국가별 협력사업 내 멀티바이 사업 증가를 감안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국가별 협력 사업 내 멀티바이 사업(이른바 '다자성 양자' 사업[66])은 양자개발협력 추진이 어려운 국가나 지역에서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한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개별 국가들이 국제기구에 재원을 기여하고 국제기구가 이를 통해 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함. 한국국제협력단의 멀티바이 사업은 2018년 29건에서 2023년 88건으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집행 규모도 2018년 447억 5,500만원에서 2023년 1,265억 5,3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음.

<연도별 국별 협력사업 및 멀티바이 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국가별 협력사업 전체					멀티바이(다자성양자)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건수	예산	예산현액 (C)	집행액 (D)	집행률 (D/C)	건수
'18년	327,809	330,013	307,234	93.1	267	35,869	45,485	44,755	98.4	29
'19년	323,807	318,447	308,184	96.8	264	51,456	58,686	58,503	99.7	44
'20년	366,144	278,092	261,975	94.2	290	76,818	66,925	65,461	97.8	58
'21년	401,324	361,234	335,297	92.8	361	84,263	110,418	107,444	97.3	82
'22년	428,284	387,637	367,929	94.9	377	100,395	105,191	102,324	97.3	83
'23년	518,988	475,526	454,577	95.6	394	120,376	129,831	128,225	98.8	89

66) 다자협력은 공여국 정부와 국제기구 간 협력으로, 순수다자(core)와 다자성양자(non-core)로 구분되는데 순수다자는 지원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재원으로 통계상 다자원조로 표기되고, 다자성양자는 수혜 국가/분야 등 용처를 특정하는 재원으로 통계상 양자원조로 표기됨. 다자성양자 사업의 재원은 지정기여금과 신탁기금으로 구성됨.

다만 멀티바이 사업의 집행 규모와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먼저 멀티바이 사업은 양자 개발협력 사업이 어려운 국가·지역 위주로 보완적·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일부 국가들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의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으로 설정되어 있는 등 양자간 개발협력이 기존에 활발했음에도 불구 해당 국가에서의 사업을 모두 멀티바이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한국국제협력단은 국가별 협력사업 내 멀티바이 사업의 적정비중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나, 멀티바이 사업으로 집행되는 예산 및 사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다 구체적인 집행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지역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해당 국가 내 사업을 멀티바이 형태로 집행한 사례>[67]

(단위: 백만원)

국가	내역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	불용
DR 콩고	DR콩고 분쟁취약지역의 젠더기반폭력 예방과 통합 지원을 통한 평화정착 사업 (UNDP, UNFPA)('20-'26/860만불)	2,000	1,940	1,939	1
	DR콩고 오트우엘레주 산림전용 및 황폐화방지 이니셔티브(REDD+)를 통한 통합적 기후변화대응 사업 (UNDP)('21-'26/900만불)	2,000	1,800	1,774	26

67) 다만 한국국제협력단은 하기 사업들의 경우, 국제기구를 활용한 멀티바이 형태 사업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함.
※ DR콩고-젠더, 영양실조 등 국제기구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과 치안이 매우 불안정한 지방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긴요한 사업
※ 콜롬비아 - 마약 등 국제기구 전문성이 긴요한 사업과 분쟁지역(PDET)을 사업지로 둔 사업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긴요한 사업
※ 과테말라 - GCF(Green Climate Fund)와 공동 출자한 사업 제외 - GCF와 공동 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국제기구와의 협력 고도화 관점에서 긴요한 사업
(참고: GCF사업의 경우 GCF인증 기관만 사업수행 가능)

	DR콩고 킨샤사 주 초등교육 접근성 및 교육의 질 개선사업(UNICEF)('21-'25/650만불)	500	670	634	36
	DR콩고 카사이성트랄 주 만성영양실조 예방 사업 (WFP, UNICEF)('22-'26/800만불)	2,000	2,000	1,967	33
콜롬비아	콜롬비아 WFP 분쟁 피해지역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권익 증진사업('19-'24/450만불)	128	5	4	1
	콜롬비아 뿌뚜마요 지역 마약 대체작물 재배 및 상업화를 통한 지역 농가 경제 강화 사업 (UNODC)('20-'25/620만불)	1,486	1,709	1,697	12
	콜롬비아 농촌 여성의 경제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소득 개선사업 (UN Women, UNFPA)('21-'26/680만불)	2,005	2,178	2,156	21
	콜롬비아 2개 분쟁피해지역(PDET) 평화지속화를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역량강화사업 ('22-'26/640만불)	1,613	961	957	4
	콜롬비아 2개 분쟁피해지역(PDET)의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소농 소득 증대사업(UNDP) ('22-'27/940만불))	1,975	2,485	2,479	6
과테말라	과테말라 중북부 지역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복원력 강화 사업 ('18-'23/700만불)	240	32	29	3
	과테말라 GCF 서부고원지대 기후변화 복원력 강화 사업('19-'26/500만불)	20	1,352	1,348	4
	과테말라 중부 및 동부 농촌지역 기후회복력 강화 사업(GCF)('21-'28/700만불)	2,579	1,789	1,782	7

둘째, 멀티바이 사업에 대한 집행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멀티바이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이 국제기구에 송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률을 산출하는 것이 아닌, 교부된 금액으로 국제기구가 실제 사업을 얼마나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국제기구별로 회계 주기나 회계 작성 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들의 경우 전년도 집행 상황에 대한 재정보고서도 송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현재 멀티바이 사업의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한국국제협력단이 국제기구에 송금

한 금액으로 산출되고 있는데, 이는 국제기구 단계의 실집행률과는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도 명목집행률은 100%에 달하나 국제기구 단계의 실집행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다수 확인되고 있음.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이를 감안해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집행 관련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연례보고서 내 국제기구의 실집행액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기구와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가별 협력사업 내 멀티바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68].

<2023년 집행되었으나 국제기구로부터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업>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	불용	집행률
베트남 폭력피해 여성/여아 예방 및 보호모델 강화사업(UNFPA)('23-'26/500만불)	100	9	2	7	22%
이란 국립 직업훈련교사 훈련원 현대화사업 ('17-'26/750만불)	594	799	768	31	96%

<명목집행률은 높으나 국제기구의 실집행률이 낮은 사업>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	불용	집행률	(국제기구) 실집행액	(국제기구) 실집행률
아프가니스탄 카불시 바르치 지역 식수개발사업('14-'24/650만불)	50	112	111	1	99%	5	4.5
에티오피아 기후변화 대응 산림 및 토지복원 사업 (GGGI)('21-'25/1,200만불)	3,404	4,158	4,037	121	97%	859	21.3

68) 이에 대해 한국국제협력단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외교사안 및 공공부문 간 협력(public-public)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제기구 자체 내규·절차에 따른 공인 재정보고서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전제되어 있는 바, 국제기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별도 표준 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소말리주 분쟁지역 이주민 사회경제적 회복력 구축 지원사업 (IOM)('22-'25/1,000만불)	3,805	5,738	5,728	10	100%	1,644	28.7
아프리카연합(AU) 간염 예방 및 통제 지원사업('21-'25/500만불)	2,053	2,443	2,416	27	99%	337	13.9
콜롬비아 2개 분쟁피해지역(PDET)의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소농 소득 증대사업 (UNDP)('22-'27/940만불))	1,975	2,485	2,479	6	100%	335	13.5
엘살바도르 경제 재건을 위한 역동적 소상공 개발사업 (UNDP)('21-'26/660만불)	4,068	3,197	3,179	18	99%	1,393	43.8
이란 내 아프간 여성 난민을 위한 통합적 성생식 보건 및 보호 서비스 지원사업(UNFPA) ('23-'26/500만불)	505	530	519	11	98%	257	49.5
키르기즈공화국 UNDP 소방구조 역량강화사업('19-'24/770만불)	750	522	514	8	98%	81	15.8

□ 분쟁 및 취약국지원 사업 예산 편성의 취지를 살리는 집행 필요

분쟁 및 취약국지원 사업은 국제적인 취약국 지원 파트너십 강화 움직임에 부응하기 위해 분쟁이나 각종 위기에 취약한 국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336억 7,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318억 1,700만원이 집행되었음. 분쟁 및 취약국지원 사업이 외교부 무상 ODA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집행액 기준 약 1.7%임.

<분쟁 및 취약국지원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도 본예산	2023년도 집행	주요 내용
분쟁 및 취약국지원 (내역사업)	33,676	31,817	취약국의 평화, 복원력 및 제도 구축에 기여하고 국제적인 취약국 지원 파트너십 강화
아시아태평양	7,480	6,440	
아프리카	16,380	16,358	
중남미	4,431	4,410	
중동·CIS	5,385	4,609	

분쟁 및 취약국지원 사업은 분쟁·위기의 사전 예방 및 위기 직후 초기 복구 단계에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여타의 ODA 사업과 달리 그 편성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일반적인 ODA 사업은 편성 2년 전 예비검토 단계부터 시작해, 1년 전 심사·조정 및 국회 심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분쟁 및 취약국지원 사업은 N-1년 발굴 또는 N년 발굴을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음. 2023년 신규사업의 경우 23년 2월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4월 예비검토, 5~7월 예비조사, 8월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이 4분기 중 약정체결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예산집행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여타 2년 주기로 편성되는 ODA 사업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미얀마 4개 주 취약농가 식량안보 개선 및 생계지원 사업의 경우 9억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69], 부르키나파소 농업생산 자본 지원 및 경제활동을 통한 청년 및 여성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300만원만이

69) 한국국제협력단은 해당 사업의 약정 체결이 '23.12로 늦어져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입장임.

집행되고 있는 상황임[70].

<2023년 신규 분쟁 및 취약국지원 사업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 내역>

내역사업명	'23				'24 예산	집행부진 사유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미얀마 라카인, 몬, 카인주 분쟁 및 재해·재난으로 취약해진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강화사업(IOM, 2023-2025/400만불)	405	405	2	0.5%	2,406	ㅇ ▲'23년도 사업대상지 분쟁 악화로 기초선 조사를 포함한 조사 제반 착수 지연(예산집행 순연 발생), ▲단, 약정금 지급 3개월 내, 1차년도 약정금 중 1분기 계획예산(35,276 USD)의 59%(20,910 USD)를 기집행
미얀마 카친주 국내난민 귀환 및 재정착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사업(UNHCR-UNFPA, 2023-2025/400만불)	0	0	0	0%	2,303	ㅇ`23.12월말 약정 체결*, 연례보고서 제출 시기 미도래('25년 1월)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나, 연례보고서 접수 후 사업관리 통해 확인 예정
미얀마 4개 주 취약농가 식량안보 개선 및 생계지원 사업(FAO, 2023-2026/400만불)	938	938	0	0%	1,432	ㅇ `23.12월초 약정 체결*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편이나, 사업 정상 착수하여 공정율 만회를 위해 노력 중
파푸아뉴기니 모로베주 통합적 식수위생 접근을 통한 평화 구축사업(UNICEF, 2023-2026/400만불)	410	410	79	20%	1,597	ㅇ `23.10월 약정 체결* 12월 중 약정금 지급으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편
우간다 카라모자 지역 분쟁 영향 및 취약 공동체 내 회복력 구축 (UNDP, 2023-2025/500만불)	806	808	159	21%	3,299	ㅇ ▲약정 체결(23.11월*) 이후 시간 부족으로 사업 활동·예산 집행 불가, ▲사업 착수 제반활동(사업이행기관 선발, 기초선 조사 업체 R&R 수립 등) 진행하였으며, ▲'24.3월 대사관·코이카 사무소의 사업 착수식 참석 및 사업지 방문, ▲우간다 사무소 주도 정기 모니터링 예정
짐바브웨 국적 남아공 이주민의 특별면제허가(ZEP) 제도 폐지에 따른 동부 4개 지역 귀국이주민 재통합 지원사업(IOM, 2023-2026/400만불)	307	307	29	9.5%	1,264	ㅇ `23.10월 중 약정 체결* 및 1차약정금 지급되어 예산 집행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4.5월 중 예정된 남아공 대선(총선) 영향으로 인한 치안 불안정 요소가 발생하기 시작함
니제르 난민-원주민 간 평화적 사회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생계 역량강화 지원사업(UNHCR, 2023-2026/450만불)	0	0	0	0%	965	ㅇ동 사업은 니제르 내 쿠데타 발발로 인해 사업 순연됨. 따라서, 현재 약정 미체결 상태로 예산 집행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70) 한국국제협력단은 해당 사업의 약정 체결이 '23.11로 늦어져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입장임.

부르키나파소 농업생산자본 지원 및 경제활동을 통한 청년 및 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WFP, 2023-2025/400만불)	395	400	23	6.1%	2,355	ㅇ동 사업은 `23년 11월 중 약정이 체결*되고 월말에 약정금이 지급됨에 따라 예산집행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분쟁취약)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기초 인프라, 생계지원, 평화활동을 통한 사회 안정 및 사회통합 향상 사업(UNDP)('23-'25/372만불)	367	364	91	25.2%	2,993	ㅇ23년도 약정액 삭감으로 예산이 불충분하여 건축/건물 개·보수 과업 용역 입찰 및 예산 소진 지연
(분쟁취약) 제로헝거 빌리지: 기니 전역 내 제로헝거 달성을 위한 지역사회 단위 회복성 강화사업(WFP)('23-'25/400만불)	375	375	0	0%	3,224	ㅇ동 사업은 `23년 11월 중 약정이 체결*되고 12월 중 약정금이 지급되어 예산집행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분쟁취약) 예멘 여성 권리보호 및 젠더정의 강화를 위한 법치제도 조기회복 및 지역사회 사법접근성 강화사업(UNDP)('23-'26/400만불)	679	679	0	0%	1,487	ㅇ ▲약정 체결(23.11월*) 이후 시간 부족으로 사업 활동·예산 집행 불가, 요르단(예멘 겸임) 사무소 주도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진행 점검 중, ▲사업 착수 행사, 사업지 방문, 이해관계자 면담을 통해 효율적 사업 진행을 위한 제반 작업 실시 완료
(분쟁취약) 예멘에서 평화를 위한 물: HDPN에 기반한 물 관련 분쟁 해결 및 기후변화 적응에서 여성의 역할 강화사업(IOM)('23-'25/400만불)	802	802	0	0%	2,212	ㅇ `23.11월 말에 약정을 체결*하여 예산집행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사업 정상 착수하여 공정율 만회를 위해 노력 중임
레바논 북동부 취약지역 기후 회복력강화를 통한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사업 (UNEP, 2023-2026/400만불)	802	802	0	0%	1,474	ㅇ사업 약정서 문구에 대한 기구측 합의 불가로 기구로부터 재정기여 철회 요청 접수됨
시리아 분쟁 피해지역 대상 지역참여형 복구전략을 통한 사회적 결속과 통합 촉진사업(UNDP, 2023-2026/372만불)	802	802	0	0%	1,353	ㅇ약정체결(23.12월*) 이후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간부족으로 사업 활동 및 예산 집행 불가, 요르단(시리아 겸임) 사무소 주도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진행 점검 중.
콜롬비아 내 베네수엘라 난민 및 이주민 지역사회 통합지원 사업 (IOM, 2023-2026/400만불)	2,190	2,181	0	0%	1,097	ㅇ`23.12월 초에 약정을 체결*하여 예산집행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사업 정상 착수하여 공정율 만회를 위해 노력 중임

이와 같이 다수의 사업이 집행이 부진하다면 시행절차를 간소화해 분쟁 및 위기의 사전 예방과 위기 직후 초기복구 단계에서 회복력 강화를 위한 분쟁 및 취약국지원 사업 예산 편성이 일반적인 ODA 사업 예산의 편성 절차에 따라 편성되는 사업과 차별화될 수 없음. 외교부는 분쟁 및 취약국지원 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의 약정 체결 및 약정금 지급 단계에서 사업 지연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신규 사업에 대한 초년도 사업 착수 비율 상향 노력 필요

국별 협력사업이 새로이 편성되는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은 '협의의사록(RD: Record of Discussion)'을 체결해 수원국/수원기관과의 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관리기관(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을 선정해 한국국제협력단의 위탁에 따라 사업관리를 총괄하도록 함. 이에 따라 선정된 사업관리기관은 협의의사록에 따른 사업에 착수함.

그러나 2023년도 신규 국가별 협력사업의 초년도 사업 현황을 확인해보면, 48개의 신규 협력사업 중 사업에 착수한 사례가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협의의사록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사업관리기관이 선정되지 못한 사례가 과반에 달하는 등 초년도 사업 착수 비율이 낮은 편임. 국가별 협력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N-2년부터 사업을 계획하고 심의·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 그 집행 과정에선 사업 착수조차 하지 못하는 비율이 과반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보임.

<신규 국가별 협력사업 초년도 사업 현황>

(단위: 건, %)

총 신규사업 수	초년도 사업착수	초년도 사업착수 지연			
		소계 (A+B+C)	협의의사록 미체결 (A)	사업관리기관 미선정 (B)	사업관리기관 선정 후 착수 준비 (C)
48	15	33	12	13	8

한국국제협력단은 사업 초년도부터 착수가 지연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예산 편성 전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업 지연 요소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단계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개발협력 관련 조달의 과도한 긴급공고 자제 필요

한국국제협력단은 조달시스템을 통해 개발협력 사업과 관련된 조달 입찰을 진행하고 있음. 조달 입찰의 방식은 크게 일반공고와 긴급공고로 구분되는데, 긴급공고는 보다 신속하게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일반공고 대비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있음[71].

<한국국제협력단의 조달 규모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2023년		2024년 계획			증감 (B-A)	증감률
		계획(A)	결과	소계 (B=C+D)	이월 (C)	본예산 (D)		
총액		316,035	296,674	376,223	33,545	342,677	60,188	19.0
건수		195	210	206	25	181	11	5.6
유형	용역	144	160	153	15	138	9	6.3
	물품	47	50	51	10	41	4	8.5
	시설공사	4	-	2	-	2	△2	△5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긴급공고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 ① 재공고입찰의 경우, ②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들고 있음.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24.6.30.)」을 통해 국가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긴급입

71) 일반공고의 입찰기간은 40일이나 긴급공고의 입찰기간은 10일

찰 발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의 지침은 코로나 위기에 따른 내수 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이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체 원조조달 사업의 89.5%(220건 중 197건), 86.2%(254건 중 214건)를 긴급조달 방식으로 발주하였음.

그러나 코로나 위기가 해소된 2023년에도 여전히 한국국제협력단이 긴급공고 위주로 원조조달 공고를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보임. 2023년 한국국제협력단은 전체 원조조달 공고 중 84.7%(210건 중 178건)를 긴급공고로 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긴급공고 비율인 7%의 약 12배에 해당함. 또한 한국국제협력단 조달시스템(nebid.koica.go.kr)의 2024년 원조조달 공고도 대부분 긴급공고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됨.

<한국국제협력단의 원조조달 사업 관련 통계>

(단위: 건, %)

구분	총 발주건수	긴급 발주건수	유찰		발주지연[72]		
			유찰건수	유찰률	최초 발주계획	이월	지연율
2020년	162	78	68	42.0	152	62	40.8
2021년	220	197	108	49.1	143	73	51.0
2022년	254	219	128	50.4	166	52	31.3
2023년	210	178	98	46.7	250	40	16.0

긴급공고는 일반공고와 달리 낙찰률이 높기 때문에 실무적 편의성은 있다보이나, 긴급공고 위주로 입찰을 하는 경우 신규 업체가 진입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기존업체 대상 수의계약의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72) 연초 발주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당해연도에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을 의미

점에서 입찰 공정성의 관점에서 타당성이 낮다고 보임. 비록 기획재정부가 2024.6.30.까지 원칙적으로 긴급입찰 발주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두고 있으나, 이는 기계적으로 긴급공고를 원칙으로 발주하라는 뜻이 아니라 조달 기업 지원의 관점에서 발주 기관이 탄력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임.

따라서 한국국제협력단은 긴급공고 위주의 원조조달입찰을 지양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긴급공고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아시아태평양 지역원조

「국별 협력사업」은 양자무상원조를 위한 것으로, 2023년도 본예산은 6,600억 1,400만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및 전용액 등으로 인한 감액분 470억 3,200만원을 고려한 예산현액은 6,129억 8,200만원임.

이 중 92.4%에 해당하는 5,662억 600만원이 집행되고, 172억 3,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95억 4,600만원이 불용됨. 이에 국별협력사업의 예산현액 대비 92.4%로 나타나고 있음.

< 2023년도 국별협력사업 결산 개요 >

(단위 : 백만원, %)

항 목 명	예 산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A)	증감 (A'-A)	예산현액 (A')				
국별협력사업 (지역원조) 총괄	660,014	△47,032	612,982	566,206	17,230	29,546	92.4
① 아시아태평양지역원조	242,640	△20,881	221,759	201,042	7,841	12,876	90.7
② 아프리카지역원조	238,517	△12,804	225,713	212,829	5,165	7,719	94.3
③ 중남미지역원조	97,225	△9,983	87,242	79,819	1,898	5,525	91.5
④ 중동CIS지역원조	81,632	△3,364	78,268	72,516	2,326	3,426	92.7

※ '증감'은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미배정액을 포함한 금액임

□ 주요국 사업들의 과도한 전용 조정 지양 필요

2023년 국가별 프로젝트 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이 상당히 높아 개별 협력사업들의 집행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집행률을 집행액 대비 본예산으로 산출하는 경우 기존에 산출된 집행률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 중점협력국 중 가장 많은 국가별 협력사업 예산이 배정되는 베트남의 경우 2023년 수행된 26개의 사업 중 본예산과 집행액 간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이 11건에 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집행률의 괴리가 나타나는 것은 한국국제협력단이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전용 조정하거나 미교부하는 방식으로 예산현액을 조정하기 때문임. 예를 들어 '베트남 다낭시 스마트 통합 도시재난관리센터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본예산으로 2023년 18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10억 8,000만원을 전용 조정 감액,

4,500만원을 미교부하여 예산현액은 본예산액 대비 40%에도 미치지 않는 7억 1,000만원에 그침. 해당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0.9%에 달하나, 본예산 대비 집행률은 35.2%에 불과함. 반대로 '방글라데시 기술교육 및 청년취업 강화사업'의 경우 본예산으로 10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억 3,000만원을 전용 조정 증액하여 19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음. 해당 사업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100%이나, 본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190%에 달함.

이와 같은 전용·조정은 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상 본예산 편성 시점에 집행가능성을 가늠하기가 어렵고, 집행 시점에 집행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배정해 예산 집행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의도로 이해됨. 또한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을 불용하기 보다는 집행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예산에 초과 배정해 집행하는 것이 개별 사무소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 집행 방식으로 보임.

그러나 전용·조정의 규모가 편성된 본예산의 50%를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는 경우 본예산 편성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이후 결산 시점에서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함.

한국국제협력단은 본예산의 과도한 전용·조정을 지양하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본예산 편성의 취지를 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전용·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과도한 전용·조정 등으로 본예산과 예산현액의 괴리가 큰 사업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본예산	전용 · 조정 등 (미교부 포함)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본예산)
베트남 다낭시 스마트 통합 도시재난관리센터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1,835	△1,530	645	35.1
베트남 지뢰/불발탄 제거를 통한 중부지역 평화마을 조성	3,750	△2,259	1,461	38.9
인도네시아 하천 쓰레기 자원화를 통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사업	762	△447	273	35.8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977	△1,713	55	2.7
캄보디아 고등인재양성 왕립프놈펜대학 환경공학과 설립사업	1,900	△980	905	47.6
캄보디아 국립소아병원 내과계 병동건립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	1,542	△1,200	340	22.0
필리핀 동부사말 기안 펠리페 아브리고 지역 거점 공공병원 재건사업	1,094	△1,046	24	2.2
필리핀 팜팡가강 유역 수자원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2차 사업	1,972	△1,318	336	17.0
필리핀 기마라스주 지속가능한 스마트 수산양식장 구축 사업	1,481	△1,321	120	8.1
방글라데시 기술교육 및 청년취업 강화사업	1,013	930	1,943	191.8
방글라데시 IOM 인신매매 통합대응 프로그램	1,696	1,800	3,455	203.7
몽골 철도교통관제센터 건립 및 운영 역량강화를 통한 철도교통 경쟁력 강화 사업	1,885	△1,290	592	31.4
라오스 한-라 직업기술개발원 역량강화사업	518	△260	256	49.4
라오스 불발탄 제거 지원 2차 사업	853	670	1,490	174.6
스리랑카 기술대학 및 고등학교 건설학과 역량강화 사업	1,320	1,054	2,747	208.1
네팔 통합적 지역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사업	1,945	△749	1,031	53.0
파키스탄 KP주 아보타바드시 하베리안지역 상수도공급 지원사업	2,191	△1,488	489	22.3
피지 기후변화 대응 보건역량 강화사업	1,172	△774	377	32.1
인도 직업기술교육 역량강화사업	563	△557	5	0.88

3)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중남미지역 국가원조」는 중남미지역 12개국[73] 및 1개 국가연합체[74]를 대상으로 총 54건의 프로젝트 및 3건의 개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도 예산현액 872억 4,200만원 중 55억 2,500만원을 불용하고 798억 1,8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1.5%임.

<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항목명	예산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A)	증감* (A'-A)	예산현액 (A')				
□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97,225	△9,983	87,242	79,819	1,898	5,525	91.5
콜롬비아(ODA)	9,861	-	9,861	9,370	-	491	95.0
페루(ODA)	8,428	△1,511	6,917	6,703	-	214	96.9
볼리비아(ODA)	8,599	△191	8,408	7,361	-	1,047	87.6
파라과이(ODA)	10,892	-	10,892	10,600	-	292	97.3
중남미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59,445	△8,281	51,164	45,784	1,898	3,482	89.5

* 증감은 전년도 이월액과 이전용을 포함한 것임.

73)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총 4개국의 중점국가와 도미니카(공),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쿠바 등 총 8개국의 비중점국가임

74) 카리브 인근 25개 국가연합

□ 신규사업 집행 저조에 대한 대처 방안 강구

2023년 국별협력사업 중 신규사업은 48개이고 예산액은 145억 9,700만원 중 33.8%인 49억 3,300만원이 집행되었음. 이 중 28개의 사업은 집행률이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업 집행률이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75] 대륙별로 살펴보았을 때 중남미 국별협력사업의 집행률은 8.6%로 전체 신규사업의 집행률보다 25.2%p가 낮음.

< 2023년 국가원조 신규사업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3년 본 예산 (A)	전용·조정액	추경·미교부액	예산현액	집행액 (B)	본예산 집행률 (B/A)
국별협력사업 신규사업 총계	**14,597**	**△5,807**	**△3,247**	**5,543**	**4,933**	**33.8**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원조 신규사업 계	**3,302**	**△1,453**	**△939**	**910**	**684**	**20.7**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신규사업 계	**6,856**	**△2,556**	**△884**	**3,416**	**3,268**	**47.7**
중동 CIS지역 국가원조 신규사업 계	**1,055**	**50**	**△311**	**794**	**692**	**65.6**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신규사업 계	**3,384**	**△1,848**	**△1,113**	**423**	**290**	**8.6**
베트남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23-'26/930만불)	100	△100	-	-	-	0.0%
베트남 전쟁피해 집중지역 취약계층 취·창업 연계형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23-'27/1,200만불)	492	△480	-	12	-	0.0%
베트남 폭력피해 여성/여아 예방 및 보호모델 강화사업(UNFPA)('23-'26/500만불)	100	△80	△11	9	2.3	2.3%
인도네시아 유료도로 운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23-`26/700만불)	50	-	△42	8	-	0.0%
캄보디아 ICT 분야 직업기술훈련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환경구축 사업('23-'27/800만불)	100	△97	-	3	3.0	3.0%
캄보디아 국립 축산물 안전 및 위생 연구원 설립 사업('23-'27/900만불)	448	△448	-	-	-	0.0%
필리핀 경찰청 범죄수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23-'28/690만불)	700	-	△582	118	0.4	0.1%

75) 전체 국별협력사업의 집행률은 85% 이상임.

사업명	23년 본예산 (A)	전용·조정액	추경·미교부액	예산현액	집행액 (B)	본예산 집행률 (B/A)
필리핀 카라바오 낙농 개량 체계(NDHI) 구축 및 농가 역량강화 사업(`23-`28/700만불)	50	-	△41	9	0.5	1.0%
방글라데시 플랫폼 기반의 통계 서비스 역량강화사업('23-'26/965만불)	100	-	△83	17	-	0.0%
라오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디지털 농지정보관리 플랫폼 구축사업('23-'26/880만불)	57	-	△47	10	-	0.0%
라오스 항만 관리 정보화 시스템(Port-MIS) 구축 사업('23-'27/425만불)	55	△38	△14	3	0.5	0.9%
피지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역량강화사업('23-'26/700만불)	100	△50	△42	8	-	0.0%
피지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전문의료인력 교육 및 연구 역량강화사업('23-'27/977만불)	100	△50	△42	8	-	0.0%
카메룬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23-'28/1,400만불)	470	△390	-	80	77.1	16.4%
모로코 마라케시 친환경 전기버스 교통체계 구축사업('23-'26/1,300만불)	450	△376	-	74	68.9	15.3%
이집트 한-이집트 기술대학 교육역량 강화 및 교원 양성 사업('23-'26/800만불)	594	△191	△364	39	0.2	0.0%
우즈베키스탄 하원 전자의회 도입과 디지털화를 통한 열린 의정활동 지원 사업('23-'25/600만불)	50	-	-	50	1.9	3.8%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스마트 기술기반 산림 도시 녹화 역량강화사업('23-'28/770만불)	50	124	△145	29	-	0.0%
이라크 쿠르드 지역학교 내 난민통합교육 강화사업('23-'28/1,200만불)	100	△4	△64	32	19.6	20.0%
키르기스스탄 가축 품종개량 및 인공수정인력 역량강화사업('23-'27/750만불)	50	△48	-	2	1.3	2.7%
키르기스스탄 국가 에너지시스템 개선을 위한 중앙 집중 AMI 시스템 구축사업('23-'26/1,050만불)	50	△50	-	-	-	0.0%
타지키스탄 전력소외 지역 전력망 구축 2차 사업('23-'26/1,400만불)	50	-	△49	1	0.9	1.9%
우크라이나 키이우주 재활의료 역량강화 사업('23-'27/500만불)	50	△50	-	-	-	0.0%

중남미국가 지역원조는 2023년 예산액으로 6개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음. 2023년 신규사업 예산액은 33억 8,400만원이고 전용·조정액 및 미교부액

으로 각각 18억 4,800만원, 11억 1,3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4억 2,300만원으로 2023년 예산액의 12.5%이며, 신규사업 전체 예산액의 8.6%인 2억 8,96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년 중남미 국별협력사업 신규사업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3년 본예산 (A)	전용·조정액	추경·미교부액	예산현액	집행액 (B)	본예산 집행률 (B/A)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신규사업 계	**3,384**	**△1,848**	**△1,113**	**423**	**290**	**8.6**
페루 클라우드 기반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3-'27 / 850만불)	730	-	△700	30	3.2	0.4
볼리비아 엘알또시 모성보건역량 개선사업('23-'27 / 900만불)	645	△475	△83	87	58.8	9.1
파라과이 농민조합 육성을 통한 원예경쟁력 강화사업('23-'28 / 1,200만불)	500	△500	-	-	-	0.0
도미니카공화국 디지털화 및 시민참여를 통한 국가자연보호지역 관리 역량 강화사업('23-'27 / 600만불)	1,020	△873	△47	100	83.2	8.2
에콰도르 쿠엔카시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통합 관리 및 자원순환 역량강화사업('23-'29 / 900만불)	345	-	△283	62	3.5	1.0
엘살바도르 소외지역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 및 모자보건서비스 접근성 강화사업('23-'26 / 504만불)	144	-	-	144	141.0	97.9

신규사업 중 '엘살바로드 소외지역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 및 모자보건서비스 접근성 강화사업('23-'26/504만불)'만 사업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않았으며,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기관 내 집행이 원활한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전용 또는 조

정을 실시하거나 예산을 교부하지 않았음.

< 2023년 중남미 국별협력사업 신규사업 R/D[76] 체결 경과 >

사업명	협의경과
페루 클라우드 기반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3-'27 / 850만불)	○ 23. 3월: 심층기획조사 실시 ○ 23. 9월: R/D 체결
볼리비아 엘알또시 모성보건역량 개선사업('23-'27 / 900만불)	○ 23. 1월: 심층기획조사 실시 ○ 23.11월: R/D 문안 최종본 도출 ○ 24. 4월: R/D 서명 장관보고 진행중[77]
파라과이 농민조합 육성을 통한 원예경쟁력 강화사업('23-'28 / 1,200만불)	○ 23. 3월: 심층기획조사 실시 ○ 23. 9 - 24. 3월: R/D 문안 검토[78] ○ 24. 3월: R/D 체결
도미니카공화국 디지털화 및 시민참여를 통한 국가자연보호지역 관리 역량 강화사업('23-'27 / 600만불)	○ 23. 3월: 심층기획조사 실시 ○ 23.10월: R/D 체결
에콰도르 쿠엔카시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통합 관리 및 자원순환 역량강화사업('23-'29 / 900만불)	○ 23. 6월: 심층기획조사 실시 ○ 23. 8월: R/D 체결
엘살바도르 소외지역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 및 모자보건서비스 접근성 강화사업('23-'26 / 504만불)	○ 22. 9월: 심층기획조사 실시 ○ 23. 8월: R/D 체결 ○ 23.12월: PMC 계약 체결

신규사업의 R/D체결 경과를 살펴보면, '볼리비아 엘알또시 모성보건역량 개선사업('23-'27/900만불)', '파라과이 농민조합 육성을 통한 원예경쟁력 강화사업('23-'28/1,200만불)' 등 2 사업은 수원국의 사정 변경으로 2024년에 R/D를 체결하였음.

'엘살바도르 소외지역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 및 모자보건서비스 접근성 강화사업('23-'26/504만불)'의 경우 N년에 R/D 체결 및 PMC 계약을 체결하여 사전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

76) Record of Discussion, 협의의사록

77) R/D는 KOICA - 수원총괄기관 - 보건부 - 엘알또市 등 사업 이해관계 주체 서명이 필요하다는 볼리비아 요청에 따라 사업이 다소 지연됨.

78) 집행계획 수립 및 수원기관 측 신임장관 취임(2023. 8.) 이후 '우리 무상협력사업 절차 및 사업 세부내용 설명 요구'에 따라 수원기관 리더십의 사업 이해 및 R/D 문안 검토에 상당한 시일 소요

한국국제협력단은 N-2년 기발굴된 사업에 대해 통상 국회로부터 N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N-1년 12월경) 사업 수행을 위해 '심층기획조사'를 통해 수원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대한 R/D 문안 협의를 시작함.

따라서 국회 예산 심의를 완료(정부 예산 확정, N-1년 12월경)하기 전에 심층 기획조사를 수행하고, 기획조사결과에 기반하여 수원국과 사업에 대한 구체 계획이 담긴 R/D를 협의하고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수원기관 측의 R/D 문안 검토에 필요한 기간과 세부 절차는 국가별·사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때로는 기발굴된 사업 추진 환경이 상당 부분 변화하여(약 1~1.5년 경과) 세부 협의사항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상기의 엘살바도르의 사례에서는 N-1년 3분기에 사업 전 단계인 심층기획조사를 실시하였고 국회 예산 심의가 완료된 후 R/D 문안 작성에 대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N년 3-4분기에 R/D 체결 및 PMC 체결이 완료되었음.

ODA 사업은 수원국 수원총괄기관과의 공식사업요청서 및 수원국 요청서에 따른 검토 및 보완 후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심사하고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예산 심의 후 수원국의 정부 또는 기관과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조사, 사업계획 및 분담사항을 확정하고 있음.

ODA 사업의 특성상 수원기관과의 정식 R/D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PMC 선발 지연 등으로 인하여 신규 사업의 경우 첫해에는 국가 간 약정 체결 및 사업 착수에 시일이 걸려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수원국 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ODA 사업의 특성상 신규사업의 예산 수립시 RD 협의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고 예산 집행률이 부진한 다수의 사업이 사업기획단계의 예산만 집행하고 있으므로 RD 협의과정이 모호한 국별협력사업의 경우 1차년도에 사업기획단계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향후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

또한 국별협력사업은 사업기간 전후의 프로젝트 사이클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사업효과성 제고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엘살바도르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심사에 통과된 사업의 심층기획조사를 사업효과성제고비로 집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층기획조사를 N-1년 3-4분기에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 국별협력사업 총사업비 관리 철저

2023년 국별협력사업 예산액으로 집행한 기획조사비는 총 6억 6,206만원임. 그 중 중남미 국별협력사업은 '볼리비아 볼리비아 엘알또시 모성보건 역량 개선사업('23-'27/900만불)' 및 '도미니카공화국 디지털화 및 시민참여를 통한 국가자연보호지역관리 역량 강화사업('23-'27/600만불)'의 기획조사를 위하여 1억 2,588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3년 국별협력사업 기획조사비 집행 현황 >

(단위: 원)

내역사업명	집행액
르완다 산업표준화ICT 역량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사업('23-'28/700만불)	82,229,736
몽골 자동차 검사 역량 제고 및 시설개선을 통한 교통안전강화사업('23-'27/1,300만불)	176,417
세네갈 콜다주 통합적 접근을 통한 미곡 가치사슬 강화사업('23-'28/1,450만불)	37,508,019
모로코 마라케시 친환경 전기버스 교통체계 구축사업('23-'26/1,300만불)	64,929,926
알제리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대기관리 역량강화사업('23-'27/550만불)	49,187,439
카메룬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23-'28/1,400만불)	1,882,965
에티오피아 낙농가치사슬 및 이해관계자 역량강화를 통한 유제품 품질개선사업('23-'28/1,000만불)	84,969,954
우간다 마케레레대학교 ICT 교육환경 조성사업('23-'28/1,220만불)	37,698,000
이라크쿠르드 지역학교 내 난민통합교육 강화사업('23-'28/1,200만불)	19,599,000
탄자니아 도도마시 및 아루샤 농촌지역 상수도시설 모델구축 시범사업('23-'26/382만불)	47,223,575
탄자니아 여성청소년 STEM 교육지원사업('23-'27/1,000만불)	54,726,394
탄자니아 잔지바르 여성 어업종사자 대상 해양수산업 가치사슬 구축사업('23-'27/550만불)	56,047,532
국별협력사업(중남미 제외) 기획조사비 계	536,178,957

내역사업	승인일자	적요	집행액
볼리비아 엘알또시 모성보건 역량 개선사업('23-'27/900만불)	2023-01-31	기획조사 전문가 항공권	23,241,900
	2023-01-11	기획조사 전문가 체재비	11,819,193
	2023-04-21	기획조사 전문가 자문료 지출	23,287,500
도미니카공화국 디지털화 및 시민참여를 통한 국가자연보호지역관리 역량 강화사업('23-'27/600만불)	2023-03-10	기획조사단 비정산 경비 지급	7,581,136
	2023-03-10	기획조사 사무소 출장경비 송금	14,712,314
	2023-06-02	기획조사 항공료, 전문가 인건비 등	45,242,176
중남미 지역 국별협력사업 기획조사비 계			125,884,219

「KOICA 예산집행지침」은 사업기간 전후의 프로젝트 사이클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 전 단계에 걸쳐 투입되는 공통성 경비를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사업발굴·예비조사·사업기획 등 사전조사, 실시협의, 사후관리 비용 등을 '사업효과성제고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면서 국별협력사업 총사업비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사업기획단계인 기획조사경비는 '형성기획'에 편성[79]하고 있고 「국별협력사업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층기획조사는 지출연도와 무관하게 '형성기획' 항목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80]

따라서 코이카는 기획조사를 실시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효과성제고비-형성기획' 예산항목에서 집행하여야 했음.

79) 2023년 중남미 형성기획 예산은 21억원임.

80) 「KOICA 예산집행지침」 사업효과성 제고비

국별협력사업 총사업비는 본사업 추진과 KOICA의 본사업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① 사업시행자의 용역비, 시공비, 기자재 및 교육훈련 비용 등 사업의 주요 목적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 ② 협력단의 홍보, 모니터링, 평가 등 본사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임.

사전조사, 실시협의, 사후관리 비용 등 “사업효과성제고비”와 같이 사업별 예산으로부터 별도로 편성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국별협력사업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것임.

기획조사경비를 국별협력사업 총사업비로 집행할 경우 총사업비를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총사업비 변경의 원인이 되는 기획조사경비는 사업효과성제고비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임.

구분	세부구분	정의	활용 예시	비고
형성기획	사업 기획 단계	사업심사에서 통과된 사업을 대상으로 심층기획을 통해 사업 세부 디자인 및 모니터링 지표 개발, 위험요소 사전 관리	·기획조사단 파견 ·기초선 조사비	·「국별협력사업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예비조사 및 심층기획조사는 “사업효과성제고비-형성기획” 항목에서 집행(단, 전략사업의 경우, 사업발굴 당해연도에 사업예산이 수시배정되는 점을 감안, 전략사업비로도 집행 가능)

4) 중동·CIS지역원조

□ 우크라이나·타지키스탄 대상 개발협력 사업의 확대 필요

한국국제협력단은 매년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을 지정하고 있으며, 중동·CIS 지역에서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4개국임.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경우 각 국가를 대상으로 약 100억원 상당의 개발협력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중동·CIS 지역의 중점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총 14개 사업에 142억 300만원의 개발협력 사업 예산을,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총 9개 사업에 7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2023년도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 현황 >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남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	가나,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12개국	7개국	4개국	4개국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타지키스탄은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임에도 불구 2023년도에 각각 1개 사업 5,000만원의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집행된 금액은 100만원에 불과함. 이는 중동·CIS 지역 일반협력 국가인 이라크나 아제르바이잔 등에 집행된 예산과 비교해도 상당히 저조한 수준임[81].

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상 수원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나 수원국의 의지에 따라 그 집행 가능성이 수시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계획대로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은 감안하더라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지정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사업형성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등을 통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실질적 사업 추진을 통한 수원국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한국국제협력단은 중점협력국 지정의 의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중점협력국 지정 시 현실적인 사업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중점협력국과 일반협력 국가 사이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81) 2023년 이라크 대상 ODA 사업은 총 9건으로 224억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199억 3,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아제르바이잔 대상 ODA 사업은 총 4건으로 22억 8,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21억 1,07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음.

18. 한·아프리카재단

가. 개 요

한・아프리카재단은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경제・문화・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외교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임.

나. 수 입

2023년도 한·아프리카재단의 수입예산은 정부출연금 47억 7,100만원, 이자수입 및 잡수익을 합한 자체수입 100만원 등 총 47억 7,200만원임.

< 한·아프리카재단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	증 감	예산현액 (A)	실 적 (B)
1. 정부출연금	4,771	-	4,771	4,771
2. 자체수입 (이자수입, 잡수익)	-	1	1	1
계	**4,771**	**1**	**4,772**	**4,772**

다. 지 출

2023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 17억 1,800만원, 경상운영비 5억 3,000만원, 사업비 25억 2,300만원으로 총 47억 7,100만원이었으며, 그 중 45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700만원을 불용하여 전체 집행률은 95.0%임.

< 한·아프리카재단 지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	증감	전년이월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D=A-B-C)	집행률 (E=(B+C)/A)
1. 인건비	1,718	-	-	1,718	1,625	-	93	94.6
2. 경상운영비	530	-	-	530	507	-	23	95.7
3. 사업비	2,523	-	-	2,523	2,403	-	120	95.2
가.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협력 지원	844	-	-	844	818	-	26	96.9
나.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관계 증진을 위한 공공부문 교류 지원	119	-	-	119	113	-	6	95.0
다.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951	-	-	951	870	-	81	91.5
라.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609	-	-	609	601	-	8	98.7
계	**4,771**	**-**	**-**	**4,771**	**4,534**	**-**	**237**	**95.0**

< 한·아프리카재단 사업비 등 세출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예산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B-C)	집행률 (B/A)	집행률 (B/A')
	본예산 (A)	증감 (A'-A)	예산현액 (A')					
사업출연금 합계	**2,523**	**-**	**2,523**	**2,403**	**-**	**120**	**95.2**	**95.2**
1.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협력 지원	**844**	**-**	**844**	**818**	**-**	**26**	**96.9**	**96.9**
1.1 아프리카 경제 비즈니스 세미나/포럼	155	104	259	258	-	1	166.5	99.6
1.2 창업아이디어대회 및 한-아프리카 스타트업 교류	444	△4	440	425	-	15	95.7	96.6
1.3 한-아프리카 중소기업 협력 강화	245	△145	145	135	-	10	55.1	93.1
2.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관계 증진을 위한 공공부문 교류 지원	**119**	**-**	**119**	**113**	**-**	**6**	**95.0**	**95.0**
2.1 국회-주한아프리카외교단 네트워킹 및 의원외교 지원	11	37	48	43	-	5	390.9	89.6
2.2 지자체-아프리카국가 교류협력 촉진	38	△37	1	1	-	0	2.6	100.0
2.3 아프리카현지 국제회의 참가 민관 사절단	70	-	70	69	-	1	98.6	98.6
3.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951**	**-**	**951**	**870**	**-**	**81**	**91.5**	**91.5**
3.1 한-아프리카 청소년캠프 및 청년교류 활성화	413	△143	270	247	-	23	59.8	91.5
3.2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 육성 교육	210	60	270	261	-	9	124.3	96.7
3.3 국내아프리카전문가 네트워킹(아프리카동창회,Af-PRO)	67	-	67	36	-	31	53.7	53.7
3.4 아프리카주간(Africa Week) 등 사회문화 인식제고	261	83	344	326	-	18	124.9	94.8
4.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609**	**-**	**609**	**601**	**-**	**8**	**98.7**	**98.7**
4.1 아프리카관련 정보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축적	368	△36	332	329	-	3	89.4	99.1
4.2 연례국제학술회의(서울아프리카대화) 및 연구증진	241	36	277	272	-	5	112.9	98.2

라. 검토의견

1) 경상운영비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경상운영비 확보 노력 필요

정부의 예산절감 취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2023년 감액된 후 2024년에도 감액이 됨에 따라 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운영비도 매년 삭감추세에 있음.

<2021~2024 한-아프리카재단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4,155	4,155	-	-	-	4,155	3,935 [3,782]	94.7 [91.0]	94.7.0 [91.0]	-	220 [153]
2022	5,193	5,193	-	-	-	5,193	5,193 [4,971]	100.0 [95.7]	100.0 [95.7]	-	[222]
2023	4,771	4,771	-	-	-	4,771	4,771 [4,534]	100.0 [95.0]	100.0 [95.0]	-	[236]
2024	4,425	4,425	-	-	-	4,425	-	-	-	-	

<2021~2024 경상운영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 대비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 대비	예산 현액	전년 대비
경상운영비	**558**	530	**558**	537	-	**530**	507	**△28**	**461**	**△69**
운영비	293	288	358	348	65	364	343	6	348	△16
여비	22	1	14	12	△8	19	18	5	4	△15
업무추진비	24	23	24	23	-	24	24	-	18	△6
직책수행경비	47	46	50	49	3	50	49	-	50	-
일반연구비	120	120	60	52	△60	22	21	△38	20	△2
공사비	-	-	15	15	15	40	40	25	-	△40
자산취득비	52	52	37	37	△15	13	12	△25	21	9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재단은 경상운영비의 삭감으로 인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복지 비용 동결 및 직원교육비를 축소해 왔으며, 열악해지는 처우로 인하여 인력유출이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최근 4년간 업무역량강화 교육비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전년 이월	전용 등					
2020	20	-	△13.6	6.4	6.3	-	0.1	31.5%
2021	20	-	△10	10	9	-	1	45.0%
2022	20.3	-	△8.3	12	11.1	-	0.9	54.7%
2023	11.5	-	△7.5	4	3.6	-	0.4	31.3%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최근 4년간 복리후생비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전년 이월	전용 등					
2020	8.6	-	-	8.6	8.3	-	0.3	96.5%
2021	8.9	-	-	8.9	8.6	-	0.3	96.6%
2022	10.5	-	-	10.5	10.5	-	-	99.9%
2023	10.4	-	-	10.4	9.8	-	0.6	94.2%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연도별 직원 현황 및 퇴사율>

(단위 : 명, %)

연도	정원	현원	퇴사자	퇴사율
2021	30	21	6	29%
2022	30	23	5	22%
2023	30	21	9	43%

※ 현원: 연도별 12.31.자 기준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실제로 재단은 2023년도에 관리운영직군의 대거 퇴사로 인한 업무결손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계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경상운영비 감액으로 인해 고정적 지출경비(공과금 등)를 제외한 여비, 일반연구비, 공사비, 자산취득비의 감액을 점진적으로 실행해 옴에 따라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이 곤란하고, 직원들의 장기 근속 환경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음.

예산 절감의 정부 취지도 중요하지만,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비용이 포함된 경상운영비의 삭감은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구성원의 처우 질이 나빠지는 결과를 야기함.

더욱이 한-아프리카재단과 같이 소규모 조직의 경우 경상운영비의 부족은 일정 수준의 고정적인 경상경비 지출을 감당해야 함에 따라 재단 운영에 상당한 제약을 주어 운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재단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향후 재단은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경상운영비 확보에 힘쓸 필요가 있음.

2)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관계 증진을 위한 공공부문 교류 지원

□ 지자체-아프리카국가 교류협력 촉진 사업 부진 및 사업 재검토 필요

‘지자체-아프리카국가 교류협력 촉진’은 중앙정부 간 협력을 넘어 보다 세분화되고 다층화된 한-아프리카 교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아프리카와 협력을 희망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아프리카국가(도시)를 연결,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액 3,800만원 중 ‘국회-주한아프리카외교단 네트워킹 및 의원외교 지원’ 사업비 증액 필요에 따라 3,700만원을 감액 전용하여 100만원을 집행하였음.

<지자체-아프리카국가 교류협력 촉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전년이월	전용 등					
지자체-아프리카국가 교류협력 촉진	38	-	△37	1	1	-	-	2.6

<아프리카국가와의 관계증진을 위한 공공부문 교류협력 지원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기승인 예산액	예산변경	증감
2.1 국회-주한아프리카외교단 네트워킹 및 의원외교 지원	11	48	37
2.2 지자체-아프리카국가 교류협력 촉진	38	1.3	Δ37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집행률을 보면, 코로나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2024년도는 재단 사업비 감액으로 인하여 동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음.

<최근 4년간 지자체-아프리카국가 교류협력 촉진 결산>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A)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전년이월	전용 등					
2020	43	-	-	43	43	-	-	100.0%
2021	38	-	-	38	37	-	1	97.4%
2022	38	-	△14	24	23	-	1	60.5%
2023	38	-	△37	1	1	-	-	2.6%

동 사업의 2023년도 집행액은 '지자체-아프리카국가 교류협력 사례 웹페이지 운영' 비용으로, '국내 지자체와 아프리카 간 교류 현황 및 사례'를 웹페이지로 구축하여 우리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관련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9년 시작한 것임.

< 지자체-아프리카국가 교류협력 사례 웹페이지 운영 집행 내역 >

(단위: 만원)

계약시기	계약액	집행액	수탁기관	계약내용
2019. 7.	913	913	㈜카레나인터렉티브	홈페이지 초기구축
2021. 5.	132	55*	㈜카레나인터렉티브	홈페이지 유지보수 (2021.6월~2022.5월)
2022. 7.	66	121	㈜카레나인터렉티브	홈페이지 유지보수 (2022.7월~12월)
2023. 1.	132	132	㈜카레나인터렉티브	홈페이지 유지보수 (2023.1월~12월)

* 2021.6~12월 유지보수 미수행으로 계약금액 중 77만원 미집행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그런데 재단은 재단 홈페이지 관리용역 업체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교류협력 웹페이지를 별도로 생성하여 타 업체에 운영을 맡기고 있는데, 동 사업의 집행부진 속에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할 실익이 없어 보임.

< 재단 홈페이지 관리·운영 집행 내역 >

(단위: 만원)

지출일	사업명	비목	수령인	건명	지출액
04.24.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조사 · 연구	[210-14] 일반용역비	(주)인디엔피	2023 아프리카대륙 통신원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게시판 추가	55
06.05		[210-14] 일반용역비	(주)인디엔피	재단 홈페이지 아프리카 지식정보 개편 일반용역비 선급금	840
12.21		[210-14] 일반용역비	(주)인디엔피	재단홈페이지 아프리카 지식 정보 개편 일반용역비 잔금 지급	360
07.04	재단 행정경비	[210-15] 관리용역비	(주)인디엔피	`23년 재단 홈페이지 유지보수 정산(상반기)	47
12.21		[210-15] 관리용역비	(주)인디엔피	`23년 재단 홈페이지 유지보수 정산(하반기)	7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한편, 재단은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 전액 삭감은 전체 재단사업의 예산 감액으로 인한 불가피한 삭감이었으며, 향후 동 사업예산을 배정받아 사업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바,

재단은 사업부진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하고, 동 사업 웹페이지 운영은 재단 홈페이지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등 면밀한 사업 계획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YPA) 국제기구 파견교육 사업 내실화 노력 필요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Young Professionals on Africa, YPA) 국제기구 파견교육은 차세대 아프리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 청년들을 아프리카지역 소재 국제기구에 11개월간 파견하여 해당기관 업무파악, 동향보고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실질적 업무 경험을 진작시키려는 것임.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1억 7,000만원이며, 이 중 1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하였음.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YPA) 국제기구 파견교육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3예산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B)	집행률 (B/A)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YPA) 국제기구 파견교육 사업	170	167	-	3	98.2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YPA 파견자에게는 항공임, 기본지원비, 현지체재비, 파견준비금 등을 지원하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현지체재비 및 기본지원비 중 근무일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반납받고 있음.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 연도별 파견 현황>

연도	파견인원	파견기구	파견기간	비고
2019	2	아프리카연합(AU)	2019.9.2.~2020.9.1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2019.9.2.~2019.11.30	· 중도포기(개인사유)
2020	-	-	-	· 3인 선발했으나 파견 무산 - 코로나19 파견 지연, - 파견철회(개인사유)
2021	3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세네갈	2021.7.1.~2022.5.31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우간다	2021.7.1.~2022.5.31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르완다	2021.7.1.~2021.8.9	· 개인사유로 계약해지
			2021.9.1.~2022.5.31	· 차점자 파견
2022	2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르완다	2022.7.1.~2023.5.31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세네갈	2022.7.1.~2023.2.17	· 개인사유로 계약해지
2023	3	이슬람교육과학문화기구(ICESCO)	2023.7.1.~2024.5.31.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코트디부아르	2023.7.1.~2024.5.31.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르완다	2023.7.1.~2024.5.31.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그런데 2023년을 제외하면 매년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파견종료 이후 사후 관리 시스템도 정비되어 있지 않아[82] 동 사업 파견자 및 파견종료자에 대한 관리가 미비한 측면이 있어 보임.

동 사업의 연도별 지원자 현황을 보면 매년 꽤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재단은 향후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대상인원을 확대하고, 신규 파견기구를 발굴하여 사업의 내실을 다지며,

82) 재단은 자체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은 없으나 코웍스(KOWORKS)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YPA 계약 종료 후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사후 개별 모니터링을 통해 취업 및 진로 상황 등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고 함.

파견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파견 종료 이후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아프리카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 지원 연도별 경쟁률 >

연도	공고기간	모집인원(명)	지원인원(명)	경쟁률
2019	2019.4.9.~2019.5.6	2	27	13.5:1
2020	2019.12.30.~2020.1.27	2	10	5:1
2021	2021.2.16.~2021.3.14.	3	23	7.6:1
2022	2022.4.12.~2022.5.1.	2	8	4:1
2023	2023.2.1.~2023.3.31.	3	27	8.3:1
2024	2024.2.1.~2024.3.31.	3	31	10.3:1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Ⅲ. 국제교류기금 결산

1. 총 괄

국제교류기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83]에 따라 설치되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의해 운용・관리되고 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공외교법」 제1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공공외교의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음.

가. 수 입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재원[84]은 국제교류기여금[85],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과 그 밖의 기금운용 수익

8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기금의 설치・운용)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관리한다.
③ <삭 제>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3.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8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기금의 모금)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금으로 조성됨.

2023년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은 총 1,518억 700만원이었으나, 계획 대비 131.3% 수준인 1,993억 1,800만원이 수납되었음.

당초 계획대비 수입이 초과 발생한 주요 원인은 민간출연금이 당초계획 20억 1,300만원 대비 446% 수준인 89억 7,000만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계획액 대비 기부수입이 초과함에 따른 것임.

자체수입[86](국제교류기여금[87], 기부수입, 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은 계획 대비 106.1% 수준인 794억 1,800만원이 수납되었고, 2022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않음에 따라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음.

< 수입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B)	계획액 대비 수납액 비율 (B/A)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계	**151,807**	**199,318**	**199,318**	**131.3**	**-**	**-**
자체수입	74,838	79,418	79,418	106.1	-	-
정부내부수입	560	-	-	-	-	-
차입금	-	-	-	-	-	-
여유자금회수	76,409	119,899	119,899	156.9	-	-

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 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86) 자체수입액은 국제교류기여금(675억 2,800만원), 기부수입(89억 7,000만원), 이자수입(22억 800만원) 및 기타 잡수입(7억 1,200만원)으로 총 794억 1800만원이 수납됨.

87) [참고자료 1] 최근 10년간 국제교류기여금 권종별 수납건수 및 금액 참조.

나. 지 출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지출부문 현황을 보면, 총 지출액은 1,993억 1,800만원으로 계획대비 131.3%를 집행하였고, 사업비는 631억 2,600만원으로 계획대비 112.2%를 집행하였으며, 기금운영비[88](기관운영 경비)는 147억 7,400만원으로 계획대비 100.8%를 집행하였음.

여유자금 운용액은 1,214억 1,700만원으로 계획 528억 8,900만원 대비 229.6%를 집행하였으며, 집행률 증가의 주요 원인은 2022년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에 따른 자산 이관 등의 사유로 여유자금 운용액이 확대됨에 따른 것임.

< 지출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지출계획액 (A)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51,807	160,746	199,318	131.3%	-	30,282
사업비	56,261	65,200	63,126	112.2%	-	2,074
기금운영비	14,657	14,983	14,774	100.8%	-	209
정부내부지출[89]	28,000	28,000	-	-	-	28,000
차입금원금상환	-	-	-	-	-	-
차입금이자상환	-	-	-	-	-	-
여유자금운용	52,889	52,563	121,417	229.6%	-	-

88) 기금운영비 : 임직원 인건비, 국제교류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89) 동 지출항목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액임.

다. 기금 재정 변동 상황

국제교류기금의 2023년도 자산은 839억 3,400만원으로 전년 855억 7,000만원 대비 16억 3,600만원(△1.9%)이 감소하였음. 자산 감소의 주요인은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자산가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2023년도 부채는 2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70억 4,000만원 대비 67억 9,700만원(△96.5%)이 감소하였음. 부채 감소의 주요인은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운용자산과의 상계처리에 따른 것임.

2023년도 순자산은 836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785억 3,000만원 대비 51억 6,100만원(6.6%)이 증가하였음. 순자산 증가는 2022년 대비 여권발급시 부과하는 국제교류기여금 수입증가에 따른 것임.

< 기금 재정상태[90] 변경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 감	
			증감액(A-B)	전년도 대비 증감 비율 (A-B)/B
자산[91]	83,934	85,570	△1,636	△1.9
부채[92]	243	7,040	△6,797	△96.5
순자산[93]	83,691	78,530	5,161	6.6

90)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 지침」**, 기획재정부, p4
재정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국가회계실체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재정상태표는 민간기업의 경우 재무상태표와 같은 것이며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재무제표이다.

91) 자산(Assets) :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국가회계실체 등에 의하여 소유 또는 통제되고, 미래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거나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라. 재정운영 변동 상황

국제교류기금의 2023년도 프로그램 순원가[94]는 전년도 659억 4,400만원 대비 74억 2,400만원이 증가(11.3%)한 733억 6,800만원이었고, 증가사유는 코로나-19의 종식으로 축소됐던 인적교류사업 등을 재개하였기 때문임.

관리운영비[95]는 전년도 46억 9,900만원 대비 1억 6,900만원이 증가(3.6%)한 48억 6,800만원이었고, 증가사유는 코로나-19의 종식 후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한 것임.

비배분비용[96]은 전년도 5,800만원 대비 3,600백만원이 감소(△62.1%)한 2,200만원이었고, 감소사유는 2022년도 아세안문화원 도서관을 전시실로 용도 전환함에 따른 자산폐기 손실이 2023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임.

---

92) 부채(Liabilities)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하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구분됨.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93) 순자산(net assets) :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을 말하며,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함.

94) **「원가계산준칙」**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14호,
제14조(프로그램순원가) ①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② 프로그램순원가는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순원가**를 말하며, 징수하여야 할 국세나 부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95) 제15조(관리운영비) ①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한다.
② 기업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그 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한 관리업무비**를 말함.
* 항목 :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여비 등

96) 제17조(비배분비용) ①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② 비배분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평가손실, 2. 자산감액손실, 3. 자산처분손실, 4. 이자비용, 5. 기타비용 등**

비배분수익[97]은 전년도 12억 5,300만원 대비 11억 1,000만원이 증가(88.6%)한 23억 6,300만원으로, 이는 부담금 수입 증가로 인한 여유자금 운용의 증가에 따른 운용 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비교환수익[98]은 전년도 408억 8,500만원 대비 372억 8,400만원이 증가(91.2%)한 781억 6,9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코로나-19의 종식 이후 여권 발급량 회복으로 인해 국제교류기여금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기금 재정운영[99] 변경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 감	
			금 액(A-B)	증감비율 (A-B)/B
Ⅰ.프로그램순원가	73,368	65,944	7,424	11.3 %
Ⅱ.관리운영비	4,868	4,699	169	3.6 %
Ⅲ.비배분비용	22	58	△36	△62.1 %
Ⅳ.비배분수익	2,363	1,253	1,110	88.6 %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75,895	69,448	6,447	9.3 %
Ⅵ.비교환수익 등	78,169	40,885	37,284	91.2 %
Ⅶ.재정운영결과(Ⅴ-Ⅵ)	△2,274	28,564	△30,838	△108.0 %

재정운영결과는 285억 6,400만원 대비 △308억 3,800만원 증가한 △22억 7,400만원임.

---

97) 제18조(비배분수익) ①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을 말한다.**
② 비배분수익에는 다음 각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이자수익, 2. 평가이익, 3. 감액손실 환입, 4. 자산처분이익 등**

98)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 지침」**, 기획재정부, p.59.
비교환수익이란 국가회계실체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말함.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

99)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재정운영표)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마. 주요사업 개관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주요사업인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① 글로벌 한국학진흥, ② 국제협력네트워킹, ③ 문화교류협력강화, ④ 지정기부금 운영, ⑤ 국제교류정보화로, 총 5개의 단위사업과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총 계획액 1,518억 700만원 중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등 외교행정지원 계획액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통화금융기관 예치 등 여유자금 운용 계획액을 제외한 재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주요사업인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계획액은 562억 6,100만원이고, 이 중 계획액의 112.2%에 해당하는 631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음.

주요사업 계획액 집행내역(총액 대비 비율)은 인적교류 관련사업 및 정책연구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된 국제협력네트워킹 사업 211억 6,200만원(33.5%),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 및 한국전문가 육성 등 한국학 관련 사업 179억 4,700만원(28.4%), 문화교류협력강화 사업 120억 5,500만원(19.1%), 지정기부사업 91억 9,600만원(14.6%), 국제교류정보시스템 운영사업 27억 6,600만원(4.4%) 순으로 각각 지출되었음.

< 국제교류기금 주요사업 개관 >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2 결산	2023			2024 계획액
				계획액(A)	결산(B)	B/A	
계			58,652	56,261	63,126	112.2	54,017
[2600]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58,652	56,261	63,126	112.2	54,017
	[2632] 글로벌 한국학 진흥		16,539	18,644	17,947	96.3	19,634
		[401] 한국학기반확대	16,539	18,644	17,947	96.3	19,634
	[2633] 국제협력네트워킹		19,085	21,326	21,162	99.2	19,497
		[401] 글로벌인적교류	3,758	5,894	5,430	92.1	3,850
		[402] 정책공공외교강화	8,336	8,837	9,239	104.5	8,474
		[403] 공공외교기반확대	2,214	2,301	2,167	94.2	2,048
		[404] 글로벌 협력 강화	4,777	4,294	4,326	100.7	5,125
	[2634] 문화교류협력강화		13,435	11,613	12,055	103.8	10,361
		[401] 한국문화해외확산	5,715	6,190	6,572	106.2	5,507
		[402] 글로벌문화교류	7,720	5,423	5,482	101.1	4,854
	[2635] 지정기부금운영		7,041	1,912	9,196	481.0	1,759
		[401] 지정기부사업	7,041	1,912	9,196	481.0	1,759
	[2636] 국제교류정보화		2,553	2,766	2,766	100.0	2,766
		[401] 국제교류정보시스템 운영	2,553	2,766	2,766	100.0	2,766

2. 검토의견

가. 수 입

□ 코로나 및 기여금 요율 인하에 따른 적립금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국제교류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국제교류기여금(법정부담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100]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모금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여권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

< 최근 10년간 법정부담금 권종별 수납건수 및 금액 >

(단위: 백만원, 건)

구분	복수여권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합계	
	10년 (15,000원권/$15)		5년 (12,000원권/$12)		1년이내 (5,000원권/$5)		임시 여권 (2000원권/$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	2,106,229	31,620	434,713	5,226	155,051	777	6,277	13	2,702,270	37,636
2015	2,672,060	40,132	568,884	6,849	152,751	767	6,222	13	3,399,917	47,761
2016	2,944,374	44,277	555,874	6,708	131,402	663	5,921	13	3,637,571	51,661
2017	3,661,835	55,048	756,548	9,109	141,051	711	6,742	15	4,566,176	64,883
2018	3,461,947	52,032	695,101	8,363	116,405	586	7,885	17	4,281,338	60,998
2019	3,416,277	51,484	617,310	7,445	93,060	472	8,763	20	4,135,410	59,421
2020	1,035,431	15,738	182,181	2,223	22,596	117	3,856	9	1,244,064	18,087
2021	515,083	7,891	84,055	1,050	4,260	23	803	2	604,201	8,966
2022	1,721,317	26,090	224,042	2,764	12,841	68	773	2	1,958,973	28,924
2023	4,037,946	60,821	524,888	6,365	65,784	339	1,237	3	4,629,855	67,528

100)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기금의 모금)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 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코로나19 영향기간 동안(2020~2022년) 여권발급건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기금의 주요 재원인 국제교류기여금 수입이 급감하였으나, 2023년 수입(675억원)이 과거 10년 최대치인 2017년(649억원)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였고 코로나와 같은 통제불가한 외부환경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여권발급수요는 당분간 2023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최근 10년간 기금 적립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378억원이었던 적립금이 2019년 최고점인 1,863억원에 이르렀음.

코로나19로 인하여 2023년 적립금은 2019년(1,863억원) 대비 36.7%인 684억원으로 2023년 지출액(687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지출액은 과거 10년 전 2014년(543억원) 대비 25.8%p 증가한 2023년 687억원으로 점차 사업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코로나 발생시기에 수입이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성 사업의 성격으로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출액이 증가하여 기금적립금의 감소추세가 더욱 빨라졌음.

< 최근 10년간 기금 수입, 지출 및 적립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입	42,682	51,675	53,703	76,811	67,215	64,372	24,326	16,993	30,855	70,449
지출	54,309	45,884	46,680	49,581	57,415	65,556	55,886	62,421	65,564	68,704
적립금	137,821	142,746	155,701	176,218	183,631	186,339	154,540	108,382	72,471	68,396

※ 작성기준
- 수입: 자체수입(국제교류기여금, 운용 이자수입, 잡수입, 단, 지정기부금(민간출연금) 제외)
- 지출: 사업비(지정기부사업 제외), 기금운영비
- 적립금: 여유자금운용 기말 잔액(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27일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기여금의 요율 인하 및 면제를 추진하여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단수여권(5,000원) 및 여행증명서(2,000원) 발급수수료는 면제하고 5년 및 10년 기한 복수여권은 각각 12,000원, 9,000원으로 기여금 요율을 인하함에 따라 향후 연간 기여금수입이 종전에 비하여 20% 정도(140억원 수준) 감소할 것으로 보여 현재의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금 고갈이 우려됨.

< 2024년 기여금 요율 인하 및 면제 추진 현황 >

구 분	2차 개정 (2004.12.31)	3차 개정 (2024.07.01. 예정)	비 고
1.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가. 일반여권			
(1) 복수여권	15,000원/$15(10년), 12,000원/$12(5년)	12,000원/$12(10년), 9,000원/$9(5년)	◦10년:만18세이상 ◦5년:만8세~18세미만
-거주여권	(일반여권에 포함)	(일반여권에 포함)	
(2) 단수여권	5,000원 / $5	-	
나. 여행증명서	2,000원 / $2	-	

재단은 지속가능한 공공외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출 구조조정, 사업 효율화 방안 및 민간출연금 확대, 기금사업의 일반회계로 전환 등 재정수입 구조의 개편 등 다양한 관점의 정책적 고민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나. 지 출

1) 총괄

□ 「해외한국학지원사업 시행지침」,「회계규정」등 KF 내부지침 정비 필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991년 「한국국제교류재단법」제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1992년 한국학 교수직 설치 지원사업, 해외 인사초청 사업, 방한연구 펠로십 사업, 해외 정책연구소 지원사업, 해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 지원사업 등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KF 내부규정(128개)을 마련하여 운용 중에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규정의 현행화를 통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재단은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회계규정」을 운용하고 있음. 「회계규정」제5조[101]는 재단의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필요시 재단 자체수익 사업에서 조성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와 별도로 수익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회계운용세칙으로

101) **「회계규정」**
제5조(회계구분) ① 재단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재단법" 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처리한다.
③ 특별회계는 재단법 제15조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보조 또는 기부에 의한 자금을 보유 운용할 때 설치하며 필요시 재단 자체수익 사업에서 조성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와 별도로 수익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회계운용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단은 2009년 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기준 적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없이 기금회계를 적용하고 있고 정부 외의 자의 출연은 기금회계의 정부외 기부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운용세칙 또한 제정하지 않고 국가회계편람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해외한국학지원사업 시행지침」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해외에서의 한국학과 이에 관련된 한국학을 활성화, 체계화하는 제반활동을 지원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목표로 1994년에 제정된 지침임.

< 유관기관 사업 현황 비교 >

구분	외교부(KF)	교육부	문체부(세종학당)	재외동포청
사업 대상	정규 과정	정규 과정	비정규 과정	비정규 과정
	대학 강좌 수강생	초중고교생/교육대생	일반 대중	일반 대중
사업 분야	한국어 및 한국학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사업 내용	대학 정규 과정 한국어 · 학 강좌 운영 지원	초중고 한국어 채택 및 한국어반 운영 지원	일반인 대상 한국어 보급	한글학교 운영 및 교사연구 지원, 온라인 학습 사이트 운영

동 지침 제4조(지원대상)[102]는 초·중·고등 교육기관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재단은 교육부,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중복 지원방지를 위해 업무분장을 통해 해외대학 한국학 정규과정(학점 인정)을 지원하고 초·

102) **「해외한국학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조(지원대상)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국내 및 해외 대학교/대학원/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2. 해외 각급 도서관
3. 국내 및 해외 연구단체
4. 한국학 관련 국내외 학회
5.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

중·고등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음.

재단이 1990년대 설립되면서 제정된 내부 지침이 사업의 다양화 및 분화 등을 거치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현행화 작업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재단은 전면적으로 내부 지침을 검토하여 현재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지침을 정비하여야 할 것임.

□ 청년인턴 보수 및 해외사무소 해외경상이전 등 경비의 성격을 고려한 예산집행 절차 수립 필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청년 일경험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조기 채용 및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응하여 경상경비 절감분 및 사업비 잉여분 등 자체활용가능한 예산을 재원으로 2023년도 「청년일경험사업 운영가이드라인」에 따라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하였음.

이에 공공외교기반확대, 글로벌인적교류, 글로벌문화교류, 한국학기반확대, 글로벌협력강화 등 5개 세부사업에서 2023년 11월까지의 청년인턴보수를 일반수용비에서 1억 3,576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말에 부족한 청년인턴보수 12월분은 기금운영비-기타운영비[103]의 일반수용비에서 1,88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음[104].

---

103) KF의 기금운영지원을 위한 기관운영비임.

104) 「예산집행지침」은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를 일용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3년 청년인턴 예산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프로그램	세부사업	예산과목	청년인턴 보수 지급 내역	금액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2600)	공공외교기반확대	일반수용비	○디지털혁신부 1명(5-11월)	14,780
	글로벌인적교류		○글로벌네트워크사업부 2명(5~11월) ○글로벌센터사업부 1명(5~11월) ○경영관리부 1명(9~11월)	50,179
	글로벌문화교류		○아세안문화원 2명(5~11월) ○경영관리부 1명(5~6월)	32,075
	한국학기반확대		○펠로십사업부 2명(5~11월) ○경영관리부 1명(7~8월)	33,611
	글로벌협력강화		○한·중아협력포럼사무국 1명(5~7월)	5,113
외교행정지원(7000)	기타운영비		○청년인턴 보수 12월분	18,796
계				154,554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23년도 「청년일경험사업 운영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경상경비 절감분 및 사업비 잉여재원 전용 등 기관별로 활용 가능한 자체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도 예산집행지침」은 경비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방안에 따라 청년인턴을 채용할 경우 경상경비 절감분 등을 활용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간과한 것으로 보임.

한편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105]는 기금운용계획 변

105)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

경을 통해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KF는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하면서 11월까지의 보수는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2600 프로그램)'에서 12월분 보수는 '외교 행정지원(7000)'에서 집행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또한 KF 해외사무소는 현지 수요대응 기획사업 추진 및 본부사업 현지화를 위해 본부가 전도한 해외경상이전(340-01)[106] 경비 연간 총 11억원 규모의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3년 기준 해외사무소의 82건 자체사업 중 해외대학 및 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이 70건(85%)이고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수집을 위한 사무소 주관사업이 12건(15%)임.

해외기관 지원사업과 달리 해외사무소가 직접 수행하는 주관사업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해외경상이전(340-01)이 아닌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비별 성격을 고려하여 집행되어야 하나, KF는 해외경상이전으로 자체사

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10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

업 전체를 편성·집행하여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음.

향후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적절한 집행 절차를 수립하고, 경비의 성격에 부합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글로벌 한국학 진흥

「글로벌 한국학 진흥」 사업은 재단 사업의 핵심인 한국학 확대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것으로, 해외대학의 한국학 교수직 설치 및 강좌 운영 등을 통해 장기적 한국학 발전과 지한(知韓)인사 지속 배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해외 한국 연구자 및 학생들에 대한 학업단계별 연구·장학 지원 프로그램, 외국 중고교 교육자 대상 한국학워크숍과 한국학 특강 등을 통해 각국에서 활동할 현지 한국 전문가 육성 및 지한(知韓)인맥 확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이해 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글로벌 한국학 진흥」 사업은 1개의 세부사업(한국학 기반 확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도 글로벌 한국학 진흥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한국학 기반확대	18,644	-	△527	-	18,117	17,947	-	170	19,634
계	18,644	-	△527	-	18,117	17,947	-	170	19,634

2023년도 계획액은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에 186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고, 5억 2,700만원이 감액 전용되어 계획현액은 181억 1,700만원이며, 이 중 179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대학원생 장학지원사업 변경(협약형 폐지→공모형 전환)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지침 개정 등 사전계획 미흡

대학원생 장학지원사업은 해외에 소재한 대학에서 한국 관련 전공 또는 연구를 하는 외국인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형과 협약형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공모형은 북미, 유럽, 대양주를 대상지역으로 공모 후 현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고 협약형은 일본을 대상지역으로 협약대학 추천 및 공모 후 국내 서면 심의하거나 그 밖의 중국 등 대상지역[107]은 협약대학 추천 후 재단 승인을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였음.

< 대학원생 장학지원 장학금: 공모형 및 협약형 비교 >

구분	공모형	협약형
주요내용	한국학이 비교적 발전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인 신청 및 현지 심의를 통하여 수혜자 선발	한국학 집중 육성이 필요한 국가의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협약을 맺고 추천을 통해 수혜자 선발
대상지역	북미 · 유럽 · 대양주	동북아(일본, 중국, 몽골), 동남아(인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유라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재단은 2000년대 초반 대비 협약형 장학지원 국가 내 안정적인 한국학 발전 현황을 감안하여 2023년부터 협약형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공모제로 일괄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대학원생 장학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공모

107) 협약형Ⅱ: 중국, 몽골, 인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형 사업을 협약형 사업보다 과소 편성한 후 협약형 사업으로 기금을 집행하고 있음.

2021년~2022년의 경우 협약상 배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협약형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계획된 인원만큼 수혜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추천자가 장학금 수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할 수 없으므로 편성액과 집행액 간 차이가 발생하였고,

2023년도 사업 예산에도 협약형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3년도에 전면 공모형으로 사업 개편이 진행됨에 따라 편성액과 집행액 간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 편성 시점과 사업개편 시점의 시차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 연도별 대학원생 장학지원 장학금 예산집행 내역 >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명	계획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2021	공모형	399,000	741,996	△342,996	
	협약형	1,382,997	802,092	580,905	
2022	공모형	440,000	787,824	△347,824	
	협약형	1,000,000	741,637	258,327	
2023	공모형	498,316	1,126,069	△627,753	
	협약형	1,064,060	-	1,064,060	

또한 재단은 한국전공 대학원생 장학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한국전공 대학원생 장학지원 시행지침」을 운용하고 있음.

재단은 2023년 대학원생 장학지원사업부터 협약형을 전면 폐지하고 공모형만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사업 추진 전에 「한국전공 대학원생 장학지원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당초 사업 여건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었음.

향후 재단은 사업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단계부터 적정하게 계획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사업추진에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3) 국제협력네트워킹

「국제협력네트워킹」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글로벌 인적교류」는 해외유력·고위인사 방한초청을 통해 타 국가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권역별 차세대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양국 차세대 지도자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정책공공외교강화」는 자국 정부나 의회 대상 정책 제언을 하는 주요국 싱크탱크의 한국 관련 연구를 지원하여 한국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공공외교 기반확대」는 대학생, 일반인 등에 대한 공공외교 교육을 시행하고,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여 공공외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며, 「글로벌 협력강화」는 주요 외교 현안 관련 양자 및 다자포럼 등을 통해 각종 글로벌 이슈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운영을 통해 한-중앙아 협력사업의 효과적 이행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2023년 국제협력네트워킹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글로벌 인적교류	5,894	-	△397	-	5,497	5,430	-	67	3,850
정책공공외교강화	8,837	-	443	-	9,280	9,239	-	41	8,474
공공외교 기반확대	2,301	-	△125	-	2,176	2,167	-	9	2,048
글로벌 협력강화	4,294	-	92	-	4,386	4,326	-	60	5,125
계	21,326	-	13	-	21,339	21,162	-	177	19,497

2023년도 계획액은 총 213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300만원이 증액 전용되어 계획현액은 213억 3,900만원이고, 이 중 211억 6,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 7,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사업기간과 회계주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글로벌인적교류」의 내역사업인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는 국제 교류 및 진출 기회가 적은 우리 청년(대학생)들에게 국내외 어학 및 국제이해 교육, 활동, 해외 탐방 기회를 제공, 우리 청년들의 글로벌 진출 역량을 함양하고 세계시민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신규사업임.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는 참가자 국내연수(온라인, 집합교육) 및 국외연수 시행 및 지원, 성과발표회 시행, 참가자 안전관리 등 실무 전반을 위탁운영하고 모집 및 선발, 국내연수(7~8월), 해외연수(8~12월) 후 최종 성과발표회를 다음연도 1월에 개최하고 있어 사업주기와 회계주기를 일치시키지 않고 2개년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시기	내용	상세내용
5~6월	모집 및 선발	- 참가자 선발공고, 대외홍보, 선발
	▼	▼
7~8월	국내연수	- 어학교육, 국제이해 강연 등
	▼	▼
8~12월	해외연수	- 해외어학교육, 문화체험 등
	▼	▼
차년도 1월	성과발표	- 프로그램 참여자 성과 발표회

이에 계약금 1차 선금은 계약 착수 후, 2차 중도금은 해외 연수 종료 후(해당연도 12월 중) 지급하고 있으며, 3차 잔금은 다음연도 과업 종료 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 집행은 사고이월에 해당되므로 3차 잔금에 해당하는 예산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음.

<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 운영 예산집행 내역 >

(단위: 천원)

사업명	계약금	지출구분	집행액	지출일자
2022(-2023) KF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 ('22.7.12.~'23.1.31.)	1,081,608	1차 선금	813,600	2022.07.22
		2차 중도금	159,847	2022.12.27
		3차 잔금*	108,160	2023.02.09
2023-2024 KF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 ('23.4.6.~'24.1.31.)	1,095,000	1차 선금	876,000	2023.05.15
		2차 중도금	109,500	2023.12.27
		3차 잔금*	109,500	2024.02.19

* 다음연도 예산액으로 집행

KF는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 사업은 2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계약기간 또한 다음연도에 종료되므로 다음연도에 별도의 예산액을 편성하여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계약체결내역의 주요사업인 모집 및 선발, 국내외 연수 등이 당해연도에 실시되고 있으며, 다음연도에는 성과발표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KF는 사업기간과 회계주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공공외교 및 상호교류 취지에 부합도록 청년교류사업 개선 필요

「글로벌인적교류」의 내역사업인 '청년교류사업'은 미래 공공외교의 주역이 될 청년 간의 국제교류를 통해 상호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임.

우리나라에 초청된 청년은 방한기간 동안 한국에 대한 브리핑, 전문가 강의, 한국 청년과의 토론, 주요 문화유적지 및 산업시찰 등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상대국으로 파견하는 한국 청년 역시 강의, 문화유적지 방문, 현지 청년과의 교류활동을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됨.

2023년은 한·일 대학생교류, 한·베 청년교류, 호주청년예비언론인 방한 초청사업을 추진하였음.

< 2023년 청년교류사업 추진 내역 >

구 분		기간	인원	경비부담
한 · 일 대학생교류	방한	9일	30명	상호주의: 한국
	방일	9일	29명	상호주의: 일본
한 · 베 청년교류	방한	10일	30명	한국: 왕복항공료, 비자 등 체제비 전액
	방베	7일	10명	한국: 왕복항공료, 숙박비, 보험, 비자 베트남: 현지 교통비, 식사, 통역비 등
호주청년예비언론인 초청	방한	7일	13명	초청자(한국) 부담

한·베 청년교류는 2013년 한-베 정상회담 후속사업으로 2014년부터 베트남 내무부와 협력하여 베트남 국가 청년공무원을 방한 초청하는 사업으로 연간 40명을 초청하였음.

2019년 12월 KF와 베트남 내무부는 기존의 일방 초청 방식 사업을 변경하여 쌍방향 교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5개년(2020~2024) 협약을 갱신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다가 2023년 제1회 한·베청년교류사업이 시행된 것임.

한·베 청년교류는 쌍방향 교류방식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할 때 가급적 상호주의 방식에 따라 교류대상, 인원, 기간을 베트남 참가자와 유사하게 맞추어 협정을 체결하고 동 사업의 목표가 청년들 간 상호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므로 상호 교류에 따른 교류대상자 간의 인적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음.

< 한·베 청년교류사업 MOU 체결 내역 >

구 분		방한초청	방베사업
체결기관		(한국) KF, (베트남) 내부무	
대표단 나이		24세 이상	
경비부담	한국	국제선 왕복항공료, 보험, 비자, 통역비 등 한국 체제비 전액	국제선 왕복항공료, 보험, 비자, 숙박비 및 한국에서 발생하는 비용
	베트남	대표단 조직 비용 일체	현지 교통비, 식사, 통역비 등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체재비용
인원수(2023년)		최대 30명(30명)	최대 15명(10명)
기간		10일	7일

그러나 한·베청년교류사업은 인원수, 방문기간, 경비부담 등 모든 조건이 상호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베트남측의 편의를 배려하되 부담을 최소화하여 협정을 체결하였음.[108] 2023년 한·베 청년교류사업 추진 결과 총 소요액 약

1억 3,000만원 중 방베단을 위한 집행액은 약 3,000만원, 방한단을 위한 집행액은 약 1억원임.

< 2023년 한·베 청년교류사업 실시내역>

<한베청년교류(방한단)>

일시	일정
6.11.(일)	입국(하노이 → 서울)
6.12.(월)	서울시 면담 및 시청 투어
6.13.(화)	농협중앙회, aT 화훼공판장, 하나로마트 견학
6.14.(수)	글로벌지식협력단지, 현대모터스튜디오 관람
6.15.(목)	농촌진흥청 면담, 스마트팜 혁신밸리 견학
6.16.(금)	농식품부 면담
6.17.(토)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6.18.(일)	[부산] 남천문화마을, 아세안문화원, 해운대 전망대
6.19.(월)	[울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견학
6.20.(화)	출국(부산 → 하노이)

<한베청년교류(방베단)>

일시	일정
7.23.(일)	출국(서울 → 하노이)
7.24.(월)	내무부 · 보건부 · 보건부 면담, 국가행정아카데미 방문
7.25.(화)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방문, 하노이 취업지원센터 방문
7.26.(수)	탕롱황성, 호치민 묘소, 호아로 수용소 방문
7.27.(목)	한국 기업(CAP Global) 방문, 화빙성 내무부 면담
7.28.(금)	마이쩌우현 인민위원회 면담
7.29.(토)	입국(하노이 → 서울)

2023년 방한단과 방베단은 별도의 상호 교류 없이 방문대상지의 면담이나 견학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졌음. 한·베 청년교류사업이 과거 초청 방식의 사업에서 쌍방향 교류 방식으로 변경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보임. 청년교류사업 중 한일대학생교류사업은 교류대표단 간의 워크숍, 방한단 교류회, 홈스테이, 현지학생과의 교류 등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베 청년교류사업 협정은 대표단의 나이를 24세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KF는 베트남 내무부 측에 가급적 40세 이하의 중앙 및

108) 「차세대지도자교류사업 시행지침」 제11조는 국내인사를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공동주관기관과의 양해각서에 따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경비를 분담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자체 공무원으로 방한단 구성을 요청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베트남 방한단은 대다수가 40세 이상이고 내무국 처장, 국장, 부국장 등 고위급 간부도 포함하고 있어 청년교류사업의 대상인 청년층 인사, 초급 공무원의 범주에 벗어나고 있으며, 반면 방베단은 지자체 주무관으로 20대 말이나 30대 초반임을 고려할 때 상호간 참가자의 연령이나 직급이 상당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 인적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참가자 구성이 적정한지 모호함.

< 한·베 청년교류사업 참가자 현황 >

연령별	20-30	30-40	40-50	50-60	계
방한단	-	10명	13명	7명	30명
방베단	6명	4명	-	-	10명

* 방한단은 34세부터 60세까지 있고, 방베단은 26세부터 38세까지 임.

따라서 한·베 청년교류사업이 과거 초청 방식의 사업에서 쌍방향 교류방식으로 변경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할 필요가 있음.

호주청년예비언론인 초청사업은 호주 주요 언론사 및 언론관련 기관에서 한국을 잘 이해하는 언론인 그룹을 양성하고자 2015년부터 사업비를 일부 지원함. 2022년부터 KF와 호주한인공익재단이 체결한 사업 공동주최 MOU에 의거해 참가자(인솔자 포함) 방한 사업비(항공료, 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등)를 KF에서 부담함.

2022년 및 2023년 방한사업은 각각 호주대학 언론관련학을 전공하는 예비언론인 10명, 인솔자 3명 등 총 13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음. 인솔자는 호주한인공익재단 임원진 3명[109]이고 이들은 한인으로 2년 동안 인솔자로 참가하였는데, 참가자 10명에 인솔자 3명은 과다한 측면이 있으며, 가급적 인솔자도 공공외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지대학교의 교수나 조교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었음.

109)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Ⅳ. 국제질병퇴치기금 결산

1. 총 괄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동 기금은 한국국제협력단(국제질병퇴치기금팀)에서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질병 예방·퇴치를 위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가. 수 입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른 기금은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110]과 기금운용수익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정부출연금도 그 재원으로 명시되어 있음.[111]

---

110)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출국납부금의 납부 등) 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천원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항공기 좌석 등급에 구분이 있는 경우 상위 등급의 좌석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좌석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출국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1)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생 략)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5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이하 “출국납부금”이라 한다)
3. 기금운용수익금

< 수입 개요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계획액 대비 수납액비율
			23년	22년	
합 계	48,005	41,622	41,622	59,105	86.7
기타재산수입	223	330	330	175	148.0
법정 부담금	35,496	29,383	29,383	6,697	82.8
기타 경상이전 수입	386	110	110	272	28.5
기금 예수금	10,000	10,000	10,000	48,730	100.0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112]	1,900	1,799	1,799	3,063	94.7

2023년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은 총 480억 500만원이었으나, 징수 결정액은 계획 대비 86.7% 수준인 416억 2,200만원이 수납되었음.

112) 2019년 연중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수입과목을 신설한바, 이는 2017년도 외교통일위원회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지적에 대한 조치로 2019년 1/4분기 자산운용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여유자금을 중장기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조치임.

나. 지 출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지출부문 현황을 보면,

총 지출액은 416억 2,200만원으로 지출계획 대비 86.7% 집행하였고, 사업비는 360억 9,500만원으로 지출계획 대비 98.1%를 집행하였으며, 기금운영비[113]는 5억 5,500만원으로 지출계획 대비 69.1%를 집행하였음.

여유자금 운용은 지출계획 대비 40.4%인 36억 5,200만원임.

< 지출 개요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지출계획액	지출계획 현액 (A)	지출액		집행률 (B/A)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B)	2022년			
합계	48,005	48,005	41,622	59,106	86.7	-	988
사업비	36,786	36,786	36,095	55,997	98.1	-	691
기금운영비	803	803	555	600	69.1	-	248
기금간거래	1,369	1,369	1,320	710	96.4	-	49
여유자금운용	9,047	9,047	3,652	1,799	40.4	-	-

※ 여유자금운용(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과목은 불용을 특정하지 않는 예산과목임.

113) 기금운영비: KOICA 국제질병퇴치기금팀 인건비 및 기금 운용 위한 행정성 경비

다. 기금 재정상태 및 운영현황

2023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 자산은 74억 1,051만원, 부채는 593억 1,948만원이고, 순자산은 △519억 897만원이고, 기금 재정운영순원가(378억 382만원)에서 부담금수익(309억 2,472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68억 7,910만원임.

< 2023년도 기금 재정상태 >

(단위 : 백만원)

자산	부채	순자산
7,411	59,319	△51,908

< 2023년도 기금 운영현황 >

(단위 : 백만원)

과 목	총원가	수 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114]	36,526	△110	36,416
Ⅱ.관리운영비[115](인건비)	-	-	277
Ⅲ.비배분비용[116]	-	-	1,443
Ⅳ.비배분수익[117](이자수익)	-	-	333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	-	37,803
Ⅵ.비교환수익[118](부담금수익)	-	-	30,924
Ⅶ.재정운영결과(Ⅴ-Ⅵ)	-	-	6,879

11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32호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②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115) ③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더하고, 제3호의 수익은 빼서 표시한다.
1. 관리운영비: 기관운영비와 같이 기관의 여러 정책이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에는 관리업무비를 말한다)

116) 2. 비배분비용: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

117) 3. 비배분수익: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

118) 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①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라. 주요사업 개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주요사업은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는바, 동 프로그램은 국제질병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ⅰ)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 ⅱ)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 ⅲ)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 ⅳ)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수수료 사업, 이상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에는 총 예산액 367억 8,600만원의 86.7%에 해당하는 360억 9,500만원이 집행되었는바, 각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NGO 등과의 민관협력사업을 위해 9,200만원,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위해 113억 8,800만원,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에 232억 5,400만원,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지급으로 13억 6,100만원이 각각 집행됨.

<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 주요사업 개관 >

(단위 :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A)	결산(B)	B/A	
[2400] 국제개발협력			55,997	36,786	36,095	98.1	91,333
	[2439] 질병퇴치사업		55,997	36,786	36,095	98.1	91,333
		[401]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1,510	114	92	80.7	159
		[402]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	10,773	11,627	11,388	97.9	16,427
		[403]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43,445	23,270	23,254	99.9	73,026
		[404]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269	1,775	1,361	76.7	1,721

②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환수익: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2. 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

□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 결산 내역

외교부는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에 당초 116억 2,700만원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13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조정 내용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집행액/계획액)	
WHO 항생제내성 등 신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대응 능력 향상사업	감염병에 대한 대응계획 및 감시 체제 구축, 연구소 역량강화를 통한 4개국(요르단, 라오스, 페루, 말리)의 항생제 내성 등 신규 감염병 대응능력 향상	(당초) '17~'22년 →(조정) '17~'23년	130	130	-	100	-
WHO 전염병 대응역량강화를 위한 보건관리 서비스 개선사업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관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및 국별 정책 수립을 통해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의 예방, 대응력, 회복력 강화	(당초) '18~'22년 →(조정) '18~'23년	916	912	4	99.6	-
WHO사하라이남 4개국 소외열대질환 퇴치사업	4개국(DR콩고, 마다가스카르, 나이지리아, 남수단) 50개주 소외열대질환 예방을 위한 대량투약(MDA) 커버리지 확대, NTD 관련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능력 강화, 의료품 조달 및 관리 역량 강화 지원	(당초) '19~'22년 →(조정) '19~'23년	1,289	1,284	5	99.6	-
수단 UNICEF 지역사회기반의 수인성 질환 예방사업	수단 6개 주 내 사업 대상지에서 수인성질환을 예방하여 5세 미만 아동 설사유병률 감소에 기여	(조정없음) '19~'23년	1,793	1,783	10	99.4	-
탄자니아 UNICEF 콜레라 퇴치사업	탄자니아 잔지바르 지역 콜레라 퇴치를 통한 5세 이하 영아 및 모성사망률 감소에 기여	(조정없음) '19~'23년	1,613	1,604	9	99.4	-
사헬지역 5개국 MMV 계절성말라리아 화학예방요법 확산을 통한 말라리아 퇴치사업	사헬지역 5개국 대상 계절성 말라리아 화학예방요법(SMC) 확산을 통해 말라리아 퇴치에 기여	(당초) '20~'24년 →(조정) '20~'25년	1,770	1,752	18	99	5,894

세사업 명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조정 내용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집행액/계획액)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7개국 TB Alliance 신규 치료요법 도입을 통한 다제내성결핵 퇴치사업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7개국 TB Alliance 신규치료요법 확산을 통해 다제내성 결핵 퇴치에 기여	(당초) '20~'24년 →(조정) '20~'25년	929	921	8	99.1	3,682
네팔 모잠비크 IVI 콜레라 예방 사업	네팔 내 콜레라 발병 감지, 대응 및 감염병 예방역량 강화, 모잠비크 내 콜레라 관리 로드맵 개발 및 콜레라 예방	(당초) '20~'24년 →(조정) '20~'25년	1,643	1,631	12	99.3	3,291
결핵 고위험 국가 Stop TB Partnership 혁신 제품 개발 및 확산을 통한 결핵 퇴치 사업	결핵 진단 및 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도입·확산을 통한 결핵 퇴치 촉진	(당초) '22~'24년 →(조정) '22~'26년	1,264	1,238	26	97.9	3,265
사업개발관리비			280	133	147	47.5	295
합 계			**11,627**	**11,388**	**239**	**97.9**	**16,427**

□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 결산 내역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은 국제감염병 퇴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국제보건기구(감염병혁신연합(CEPI), 글로벌펀드, 글로벌소아마비퇴치기구(GPEI)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 감염병 예방 및 퇴치에 기여하는 사업임. 한편, 우리 바이오 기업들은 동 사업을 통해 정부가 기여하고 있는 국제보건기구에 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개별 국제기구들의 조달 절차를 통해 공급하고 있음[119].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 상승에도 불구 글로벌 보건 기여 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매년 그 규

119) 감염병백신연합(CEPI)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대조백신 확보 등을 위해 2.6억불 상당을 지원하였고, 셀트리온, SD바이오센서 등은 글로벌펀드 제6위 필수 의료품목 공급자이자 제3위 진단키트 공급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LG화학은 글로벌소아마비근절이니셔티브(GPEI)와 8천만불 상당의 소아마비 백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모를 늘리고 있음. 외교부는 2023년 글로벌 국제질병퇴치기금사업에 232억 7,000만원의 지출을 계획하였고 이 중 232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음.

<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사업 내용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집행액/계획액)	
UNITAID 백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병퇴치 활동 (`23/500만불)	HIV/AIDS, 결핵, 말라리아를 중심으로 한 진단방법 간소화, 백신 및 의약품 보급, 의약품 가격 인하, 질병 발생 모니터링 등	6,450	6,450	-	100	6,505
GAVI 백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병퇴치 활동 (`21-`25/3,000만불)	어린이들의 생명보존에 필수적인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의약품 시장 형성, 의약품의 가격 인하, 의약품 및 백신 보급 등	6,430	6,430	-	100	6,505
Global Fund 백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병퇴치활동 (`20-`22/2,500만불)	공공·민간 재원 공동 조성을 통해 ATM(AIDS(에이즈), Tuberculosis(결핵), Malaria(말라리아)) 치료 및 예방 약·물품 관련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유도하여 저가로 물품을 구매한 뒤 지원 대상 국가에 조달	10,320	10,311	9	99.9	32,525
사업개발관리비		70	63	7	90	170
합 계		**23,270**	**23,254**	**16**	**99.9**	**45,705**

2. 검토의견

□ 출국납부금 제도 폐지 이후에도 국제기구와의 약정을 안정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주된 수입이 되는 출국납부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폐지할 계획임을 밝힌바 이에 따라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공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정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을 2024년 7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2025년 1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입장임.

출국납부금 제도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재량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나, 현재 출국납부금으로 형성된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국제기구 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글로벌 보건 기여를 하고 있고 이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글로벌 보건 기여는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 확보, 우리 바이오 기업에 대한 환류 효과 감안 시 그 중요성이 상당함.

따라서 외교부는 동 사업을 한국국제협력단의 보건 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식,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 중 비지정 기여는 국제기구분담금(일반회계)으로 편성하는 방식 등을 예산 당국과 협의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임.

Ⅴ. 외교부 통합 재무결산 분석

1. 총 괄

국가재정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을 근간으로 한 「국가회계법」이 제정(2007. 9)되고, 결산보고서의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한 「국가회계법」이 개정(2008. 12) 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각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는 2009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모든 기금에 대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의 국회제출이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의무화되었음.

이하에서는 외교부 일반회계, 국제교류기금 및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한 통합재무제표를 분석하고자 함.

2. 재정상태표[120] 분석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3(A)	2022(B)	증 감 (A-B)	
				금 액	비 율
자산	일반회계	5,252,750	5,137,332	115,418	2.2%
	국제교류기금	83,934	85,570	△1,636	△1.9
	국제질병퇴치기금	7,411	4,012	3,399	84.7
	계	5,344,095	5,226,914	117,181	2.2%
부채	일반회계	55,698	53,088	2,610	4.9%
	국제교류기금	243	7,040	△6,797	△96.5
	국제질병퇴치기금	59,319	49,042	10,277	21.0
	계	115,260	109,170	6,090	5.6%
순자산	일반회계	5,197,052	5,084,243	112,809	2.2%
	국제교류기금	83,691	78,530	5,161	6.6
	국제질병퇴치기금	△51,909	△45,030	△6,879	△15.3
	계	5,228,834	5,117,743	111,091	2.2%

가. 자 산[121]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자산은 전년도 5조 1,373억 3,200만원 대비 1,154억 1,800만원(2.2%)이 증가한 5조 2,527억 5,000만원이며, 그 주요 증가 요인은 재평가이익 증가 등으로 인해 유형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자산은 839억 3,400만원으로 전년 855억 7,000

120)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121)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하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성자산으로 구분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만원 대비 16억 3,600만원(△1.9%)이 감소하였음. 자산 감소의 주요인은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자산가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자산은 74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40억 1,200만원 대비 33억원 9,900만원(84.7%)이 증가하였음. 자산 증가의 주요원인은 출국납부금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임.

나. 부 채[122]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부채는 전년도 530억 8,800만원 대비 26억 1,000만원(4.9%)이 증가한 556억 9,800만원이며, 그 주요 증가사유는 퇴직급여충당금 추정액 증가에 따른 것임.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의 부채는 2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70억 4,000만원 대비 67억 9,700만원(△96.5%)이 감소하였음. 부채 감소의 주요인은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운용자산과의 상계처리에 따른 것임.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부채는 593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490억 4,200만원 대비 102억 7,800만원(21.0%)이 증가하였음. 부채 증가의 주요원인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자금 예수에 따른 것임.

---

122)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하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등으로 구분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다. 순자산[123](=자산-부채)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순자산은 전년도 5조 842억 4,300만원 대비 1,128억 900만원(2.2%)이 증가한 5조 1,970억 5,200만원으로 재정운영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따른 것임.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순자산은 836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785억 3,000만원 대비 51억 6,100만원(6.6%)이 증가하였음. 순자산 증가는 2022년 대비 여권발급시 부과하는 국제교류기여금 수입증가에 따른 것임.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순자산은 △519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450억 3,000만원 대비 68억 7,900만원(△15.3%) 감소하였음. 순자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자금 예수에 따른 것임.

123)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으로 구분함.

3. 재정운영표[124] 분석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3(A)	2022(A)	증 감 (A-B)	
				금 액	비 율
Ⅰ.프로그램 순원가	일반회계	2,831,015	2,586,834	244,181	9.4%
	국제교류기금	73,368	65,944	7,424	11.3
	국제질병퇴치기금	36,416	56,120	△19,704	△35.1
	계	2,940,799	2,708,898	231,901	8.6%
Ⅱ.관리운영비	일반회계	233,528	225,238	8,290	3.7%
	국제교류기금	4,868	4,699	169	3.6
	국제질병퇴치기금	277	343	△66	△19.2
	계	238,673	230,280	8,393	3.6%
Ⅲ.비배분비용	일반회계	1	735	△734	△99.9%
	국제교류기금	21	58	△37	△62.1
	국제질병퇴치기금	1,444	865	579	66.9
	계	1,466	1,658	△192	△11.6%
Ⅳ.비배분수익	일반회계	274,716	235,665	39,051	16.6%
	국제교류기금	2,363	1,253	1,110	88.6
	국제질병퇴치기금	334	171	163	95.3
	계	277,413	237,089	40,324	17.0%
Ⅴ.재정운영 순원가(Ⅰ+Ⅱ+Ⅲ-Ⅳ)	일반회계	2,789,827	2,577,142	212,685	8.3%
	국제교류기금	75,895	69,448	6,447	9.3
	국제질병퇴치기금	37,804	57,157	△19,353	△33.9
	계	2,903,526	2,703,747	199,779	7.4%
Ⅵ.비교환수익 등	일반회계	-	-	-	-
	국제교류기금	78,169	40,885	37,284	91.2
	국제질병퇴치기금	30,925	8,230	22,695	275.8
	계	109,094	49,115	59,979	122.1%
Ⅶ.재정운영 결과(Ⅴ-Ⅵ)	일반회계	2,789,827	2,577,142	212,685	8.3%
	국제교류기금	△2,274	28,564	△30,838	△108
	국제질병퇴치기금	6,879	48,927	△42,048	△85.9
	계	2,794,432	2,654,633	139,799	5.3%

124)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임.(「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가. 프로그램순원가

프로그램순원가[125]는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제적 자원의 소모액을 의미하며 정부회계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자원 소요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외교부 프로그램순원가 산출단위는 총 17개의 프로그램임.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도 2조 5,868억 3,400만원 대비 2,441억 8,100만원(9.4%)이 증가한 2조 8,310억 1,500만원이며, 이는 주로 국제기구분담금 프로그램에서 1,539억원,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에서 1,468억원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의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도 659억 4,400만원 대비 74억 2,400만원이 증가(11.3%)한 733억 6,800만원이었고, 증가사유는 코로나-19의 종식으로 축소됐던 인적교류사업 등을 재개하였기 때문임.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도 561억 2,000만원 대비 197억 400만원 감소(35.1%)한 364억 1,600만원으로, 감소사유는 글로벌 및 국제기구협력사업 약정금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125)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나.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 정부행정기관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경비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각종 수수료, 제세공과금, 교육훈련비, 여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연구개발비 등이 이에 해당함.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관리운영비는 전년도 2,252억 3,800만원 대비 82억 9,000만원(3.7%)이 증가한 2,335억 2,8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경비 증가에 의한 것임.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의 관리운영비는 전년도 46억 9,900만원 대비 1억 6,900만원이 증가(3.6%)한 48억 6,800만원이었고, 증가사유는 코로나-19의 종식 후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한 것임.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관리운영비는 전년도 3억 4,300만원 대비 6,600만원이 감소(19.2%)한 2억 7,700만원이었고, 감소사유는 주로 출연비 감소에 따른 것임.

다. 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국가의 자산 매각 시 발생하는 자산처분 손실과 같이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과 직접적·간접적인 대응관계가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비용을 의미함.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비배분비용은 전년도 7억 3,500만원 대비 7억

3,400만원(△99.9%)이 감소한 100만원이며, 이는 주로 대손상각비 감소 및 기타비용 감소에 따른 것임.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의 비배분비용은 전년도 5,800만원 대비 3,600백만원이 감소(△62.1%)한 2,200만원이었고, 감소사유는 2022년도 아세안문화원 도서관을 전시실로 용도 전환함에 따른 자산폐기 손실이 2023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임.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비배분비용은 전년도 8억 6,500만원 대비 5억 7,900만원이 증가(66.9%)한 14억 4,400만이었고, 증가사유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자금 예수에 따른 예수 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라. 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자산처분이익, 평가이익 등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발생하거나 프로그램 외의 업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의미함.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비배분수익은 전년도 2,356억 6,500만원 대비 390억 5,100만원(16.6%)이 증가한 2,747억 1,6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수수료 수익 증가에 따라 기타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의 비배분수익은 전년도 12억 5,300만원 대비 11억 1,000만원이 증가(88.6%)한 23억 6,300만원으로, 이는 부담금 수입 증가로 인한 여유자금 운용의 증가에 따른 운용 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비배분수익은 전년도 1억 7,100만원 대비 1억 6,300만원이 증가(95.3%)한 3억 3,400만원으로, 이는 여유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이 증가한데 따른 것임.

마. 비교환수익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을 의미함.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의 비교환수익은 2023년과 2022년 모두 발생하지 않았음.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의 비교환수익은 전년도 408억 8,500만원 대비 372억 8,400만원이 증가(91.2%)한 781억 6,9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코로나-19의 종식 이후 여권 발급량 회복으로 인해 국제교류기여금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임.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비교환수익은 전년도 82억 3,000만원 대비 226억원 9,500만원 증가(275.8%)한 309억 2,5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출국납부금 수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바.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126]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뺀 것을 의미함.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2조 5,771억 4,200만원 대비 2,126억 8,500만원(8.3%)이 증가한 2조 7,898억 2,700만원이며,

2022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285억 6,400만원 대비 △308억 3,800만원 증가한 △22억 7,400만원임.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489억 2,700만원 대비 420억 4,800만원 감소(85.9%)한 68억 7,900만원임.

126)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은 더하고 비배분수익은 뺀 액수를 의미함.

4. 순자산변동표[127] 분석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3(A)	2022(B)	증 감 (A-B)	
				금 액	비 율
Ⅰ.기초순자산	일반회계	5,084,243	5,424,154	△339,911	△6.3%
	국제교류기금	78,530	108,527	△29,997	△27.6
	국제질병퇴치기금	△45,030	3,897	△48,927	△1,255.5
	계	5,117,743	5,536,578	△418,835	△7.6%
Ⅱ.재정운영 결과	일반회계	2,789,827	2,577,142	212,685	8.3%
	국제교류기금	△2,274	28,564	△30,838	△108
	국제질병퇴치기금	6,880	48,927	△42,047	△85.9
	계	2,794,433	2,654,633	139,800	5.3%
Ⅲ.재원의 조달 및 이전	일반회계	2,817,787	2,555,797	261,990	10.3%
	국제교류기금	-	-	-	-
	국제질병퇴치기금	-	-	-	-
	계	2,817,787	2,555,797	261,990	10.3%
Ⅳ.조정항목	일반회계	84,848	△318,566	403,414	-
	국제교류기금	2,887	△1,433	4,320	301.5
	국제질병퇴치기금	-	-	-	-
	계	87,735	△319,999	407,733	127.4%
Ⅴ.기말순자산(Ⅰ-Ⅱ+Ⅲ+Ⅳ)	일반회계	5,197,052	5,084,243	112,809	2.2%
	국제교류기금	83,691	78,530	5,161	6.6
	국제질병퇴치기금	△51,909	△45,030	△6,879	△15.3
	계	5,228,834	5,117,743	111,091	2.2%

127) 순자산 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임.

가. 기초순자산

기초순자산은 전기(前期)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 금액임.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기초순자산은 5조 842억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99억 1,100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 기초순자산은 785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9억 9,7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임.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은 △450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9억 2,700만원 감소한 규모임.

나.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표에서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이나 사업의 원가에서 재정운영에 대한 원가회수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지표로 앞의 재정운영표에서 증감요인을 설명하였음.

다. 재원조달 및 이전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년도 2조 5,557억 9,700만원 대비 2,619억 9,000만원이 증가한 2조 8,177억 8,700만원이며 이는 국고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임.

라. 조정항목

조정항목은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순자산의 증감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의 조정항목은 전년도 △3,185억 6,600만원 대비 4,034억 1,400만원 증가한 848억 4,800만원으로, 그 주요 증가원인은 유형자산재평가이익의 증가에 따른 것임.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조정항목은 전년도 △14억 3,300만원 대비 43억 2,000만원이 증가한 28억 8,700만원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투자증권평가이익에 따른 것임.

마. 기말순자산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빼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과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출하는 개념임.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기말순자산은 전년도 5조 842억 4,300만원 대비 1,128억 900만원이 증가한 5조 1,970억 5,200만원이며,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의 기말순자산은 전년도 785억 3,000만원 대비 51억 6,100만원이 증가한 836억 9,100만원임.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은 △450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9억 2,700만원 감소한 규모임.

Ⅵ. 외교부 성과관리 분석

1. 총 괄

「성과관리제도」란 기존의 투입 · 통제 중심의 방식을 벗어나 성과관리를 통해 획득된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예산의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위주로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함.

「국가재정법」 제85조의5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6호에서는 성과관리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 · 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 능률성 ·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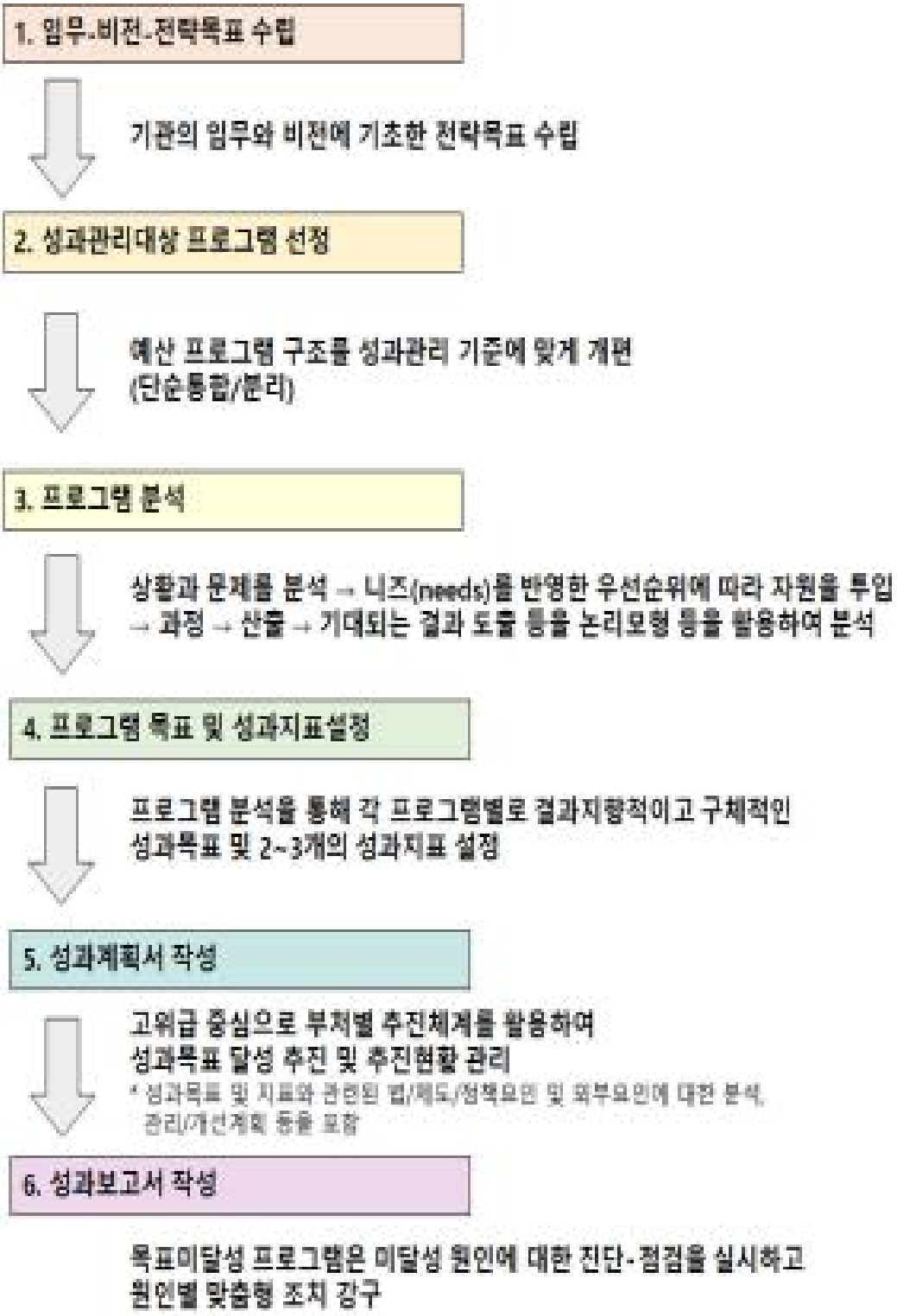
즉, 성과관리란 각 기관이 그 임무달성을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후, 조직의 역량과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이나 자원배분, 개인의 성과보상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근거하여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바, 각 정부기관은 성과계획서에 그간의

정책성과, 해당연도의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의 조직, 인원 등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성과목표체계에 따라 임무, 비전,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표를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순차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프로그램 목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임무,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및 그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 및 성과 달성률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목표달성 기여도와 목표달성 과정 및 성과미달성 원인분석과 향후 성과이행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 성과목표관리 주요 절차 >


1. 임무-비전-전략목표 수립
기관의 임무와 비전에 기초한 전략목표 수립
2. 성과관리대상 프로그램 선정
예산 프로그램 구조를 성과관리 기준에 맞게 개편
(단순통합/분리)
3. 프로그램 분석
상황과 문제를 분석 → 니즈(needs)를 반영한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투입
→ 과정 → 산출 → 기대되는 결과 도출 등을 논리모형 등을 활용하여 분석
4. 프로그램 목표 및 성과지표설정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각 프로그램별로 결과지향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목표 및 2~3개의 성과지표 설정
5. 성과계획서 작성
고위급 중심으로 부처별 추진체계를 활용하여
성과목표 달성 추진 및 추진현황 관리
* 성과목표 및 지표와 관련된 법/제도/정책요인 및 외부요인에 대한 분석,
관리/개선계획 등을 포함
6. 성과보고서 작성
목표미달성 프로그램은 미달성 원인에 대한 진단-점검을 실시하고
원인별 맞춤형 조치 강구

2. 성과체계 현황

외교부의 임무는 “외교부는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고, 전 세계의 자유, 평화,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한다.”이며,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체계는 6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프로그램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 외교부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

전략목표 (Strategic Goal)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6	13	33	95

외교부의 2023회계연도 예산 3조 5,05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 예산 총액은 1조 5,603억원이며, 결산액 기준으로는 1조 4,928억원임.

< 외교부 사업별 재정운용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 액(A+B)		32,339	30,955	35,059	34,028
성과관리 대상	일반재정	14,260	13,921	15,603	14,928
	정보화	26	26	0	0
	R&D	0	0	0	0
	소계(A)	14,286	13,947	15,603	14,928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성과관리 비대상	인건비	7,009	6,760	3,865	3,717
	기본경비	2,380	2,225	2,797	2,714
	교부금	0	0	0	0
	예비비	0	0	0	0
	차입이자 상환	0	0	0	0
	내부거래	1,806	1,407	294	13
	보전지출	0	0	616	1,251
	기타	6,859	6,616	11,884	11,405
	소계(B)	18,053	17,008	19,456	19,100

2023년도 결산의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전략목표 3 :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에 1조 3,056억원(87.5%), “전략목표 4 :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에 1,229억원(8.2%) 등 외교부의 6개의 전략목표 중 상위 2개 전략목표에 전체 재원의 95.7%인 1조 4,285억원을 투입하였음.

<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결산액	비중
□ 전략목표 1 : 한반도 평화 · 번영 및 동북아 안정 · 협력에 기여한다.	220	1.5
□ 전략목표 2 : 상생 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161	1.1
□ 전략목표 3 :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13,056	87.5
□ 전략목표 4 :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1,229	8.2
□ 전략목표 5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147	1.0
□ 전략목표 6 :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115	0.8

< 외교부 2023년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외교부는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고, 전 세계의 자유, 평화,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전략목표 I	전략목표 II	전략목표 III	전략목표 IV	전략목표 V	전략목표 VI
한반도 평화번영 및 동북아 안정협력에 기여한다	상생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대한다.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 I-1	프로그램목표 II-1	프로그램목표 III-1	프로그램목표 IV-1	프로그램목표 V-1	프로그램목표 VI-1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	아세안·동남아·유럽 지역 및 중앙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공영의 지역별 맞춤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강화한다.	UN 등 주요 국제기구에 적극적인 참여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역할 강화를 통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 구축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외교지평을 확대한다	문화·지식·정책 공공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내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지지를 증진한다.	다자경제외교 및 주요국과의 지역경제외교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한다.	외교연구와 교육을 강화하여 역량 있는 외교인재를 양성한다.
	프로그램목표 II-2	프로그램목표 III-2	프로그램목표 IV-2	프로그램목표 V-2	
	중남미·아중동지역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생협력 강화 및 아프리카 중동 지역으로 외교지평을 확대한다.	원자력 비확산·군축 분야 국제협력강화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국제 군축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한다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기후·환경·에너지·과학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프로그램목표 III-3	프로그램목표 IV-3		
		SDG 달성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선진적 전략적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한다.	해외체류 우리국민의 영사서비스 접근성을 지속 제고하고 재외동포의 정체성 및 역량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 III-4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주도하고,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3. 2023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외교부의 2023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를 보면, 13개의 프로그램 목표에 총 27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음. 27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130% 이상)은 6개, 달성(100~130%)은 17개, 미달성(100% 미만)은 4개임.

< 외교부 2023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단위 :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6	13	27	6	17	4
		100%	22.2%	63.0%	14.8%

< 전략목표별 달성 현황 >

전략목표	사업규모 (억 원)	성과지표 실적	
Ⅰ. 한반도 평화·번영 및 동북아 안정·협력에 기여한다.	279	성과지표 수	2
		달성 / 미달성	2 / 0
Ⅱ. 상생 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172	성과지표 수	4
		달성 / 미달성	4 / 0
Ⅲ.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13,547	성과지표 수	8
		달성 / 미달성	7 / 1
Ⅳ.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1,297	성과지표 수	7
		달성 / 미달성	4 / 3
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180	성과지표 수	4
		달성 / 미달성	4 / 0
Ⅵ.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128	성과지표 수	2
		달성 / 미달성	2 / 0

< 202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연번	예산/기금	사업명	예산(억원)		최종 평가	
			'23년	'24년	점수	등급
1	일반회계	인도적지원(ODA)	2,994	7,401	96	우수
2	일반회계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38	18	95.7	우수
3	일반회계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ODA)	95	141	95.2	우수
4	일반회계	국내외 교육훈련	80	74	95.2	보통
5	일반회계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30	27	94.9	보통
6	일반회계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56	53	94.8	보통
7	일반회계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33	39	94.5	보통
8	일반회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국제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31	21	93.1	보통
9	일반회계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	56	25	92.9	보통
10	일반회계	공공외교 역량강화	163	161	91.9	보통
11	일반회계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80	54	91.8	보통
12	일반회계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33	35	91.8	보통
13	일반회계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6	27	91.7	보통
14	일반회계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33	30	91.5	보통
15	일반회계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74	67	91.1	보통
16	일반회계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1	33	90.6	보통
17	일반회계	기후변화 녹색환경 외교강화	55	98	90.4	미흡
18	일반회계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41	37	89.4	미흡
19	일반회계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37	36	84.6	미흡
20	일반회계	글로벌 프로그램(ODA)	2,296	3,137	92.9	우수
21	일반회계	민관협력사업(ODA)	480	570	92.3	보통
22	일반회계	중남미지역 국가원조(ODA)	972	737	88.5	보통
23	일반회계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ODA)	2,426	2,756	87.4	보통
24	일반회계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ODA)	2,385	3,066	86.9	보통
25	일반회계	중동CIS지역 국가원조(ODA)	816	1,333	86.2	미흡
26	일반회계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48	44	91.8	보통
27	기금	국제기구협력국제질병퇴치(ODA)	116	164	95	우수
28	기금	글로벌 국제질병퇴치(ODA)	233	730	95	우수
29	기금	글로벌인적교류	55	39	93.9	보통
30	기금	정책공공외교강화	93	85	92.4	보통
31	기금	한국문화해외확산	66	55	92.4	보통
32	기금	글로벌 협력 강화	44	51	92.1	보통
33	기금	글로벌문화교류	55	49	91.8	보통
34	기금	한국학기반확대	181	196	91.7	미흡

Ⅶ.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예비비 지출내역 >

(단위 : 백만원)

사항	예비비사항 내역	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지 출 내 역
일반 예비비	정상 및 총리외교 (1231-401)	32,859	28,548	1,071	3,240	대통령 · 국무총리 해외순방행사 및 외빈 접수행사 소요 비용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1432-403)	4,896	3,023	947	926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준비 및 준비기획단 운영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5032-301)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5034-302) 인건비(7101-101) 기본경비(총액) (7111-201) 기본경비(7111-251) 사무환경조성(7112-251)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정보화)(7131-30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7131-303)	21,997	21,997 (이체)	-	-	재외동포청 신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2231-421)	2,820	322	2,004	494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관련 준비기획단 운영
합 계		62,572	53,890	4,022	4,660	-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정상 및 총리외교’를 위해 328억 5,900만원, ‘한-아프리카특별정상회의’를 위해 48억 9,600만원, ‘재외동포청 신설’에 219억 9,700만원, ‘제3차 민주주의정상회의’에 28억 2,000만원 총 625억 7,20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배정받아 집행하였음.

□ 본 예산의 적정 편성으로 과도한 예비비 편성 지양

< 예비비 지출내역 >

(단위 : 백만원)

사항	예비비사항 내역	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지 출 내 역
일반 예비비	정상 및 총리외교	32,859	28,548	1,071	3,240	- 대통령 및 총리 외교 활동 지원
합 계		32,859	28,548	1,071	3,240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정상 및 총리외교'를 위해 328억 5,90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배정받아 285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 7,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배정액의 9.9%, 32억 4,000만원을 불용시켰음.

집행액 285억 4,800만원은 예비비 편성 목적에 따라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 및 외빈 방한 관련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었는데, 기획정된 다자회의 일정 이외에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제고, 외교 지평 확대에 따라 정상 순방 외교 및 외빈 방한 수요 급증 추세,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 물가상승, 2023년 11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교섭 추진 등에 따른 것임.

< 2022년 대비 사업증가 내역 >

연 도	대통령 순방	총리 순방	외빈접수
2022	4회, 9개국	6회, 12개국	17개국
2023	13회, 20개국	8회, 21개국	25개국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및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2023년 예산액은 2022년보다 21.5% 증가한 248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본 예산(248억 6,800만원)의 132%인 328억 5,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128]하였음.

< 연도별 정상 및 총리외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8	19,608	19,608	5	-	6,385	25,998	24,644	125.7	94.8	703	651
2019	23,301	23,301	703	-	1,589	25,593	23,475	100.7	91.7	-	2,118
2020	21,191	11,191	-	△7,000	-	4,191	1,941	17.3	46.3	-	2,250
2021	22,502	22,502	-	-	-	22,502	19,283	85.7	85.7	709	2,510
2022	20,472	20,443	709	-	6,308	27,460	26,199	128.2	95.4	71	1,190
2023	24,868	24,868	71	-	32,859	57,798	53,094	213.5	91.9	1,071	3,633

정상 및 총리외교는 타국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임박해서 결정되는 관계로 사업 특성상 그 일정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경비를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정하게 계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해외 순방 횟수, 기간, 순방국가 증가 및 방문국의 현지물가 수준 등 변동에 따라 예산의 조정 가능성은 상존함.

2023년 예비비 편성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다보스 포럼·NATO 정상회의·G7 정상회의 참석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등 정상외교 일정이 추가되고,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전

128) 기획재정부로 2023. 8. 14. 예비비를 배정받음.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이 예비비 편성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2023년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추진내역 >

구 분	방문기간	순방국가	주요행사
대통령	1.14.-21.	UAE, 스위스	UAE 국빈방문 및 다보스 포럼 참석
	3.16.-17.	일본	일본 방문
	4.24.-30.	미국(워싱턴, 보스턴)	미국 국빈방문
	5.19.-21.	일본	G7 정상회의 참석
	6.19.-24.	프랑스, 베트남	제172차 BIE 총회 참석 및 베트남 국빈방문
	7.10.-16.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2023 NATO 정상회의 참석 및 폴란드 공식방문
	8.17.-20.	미국(워싱턴)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9.5.-11.	인도네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공식방문 및 한-아세안/아세안+3/EAS · G20 정상회의 참석
	9.18.-23.	미국(뉴욕)	제78차 유엔총회 참석
	10.21.-26.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 카타르 국빈방문
	11.15.-18.	미국(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 참석
	11.20.-26.	영국, 프랑스	영국 국빈방문 및 프랑스 방문
	12.11.-15.	네덜란드	네덜란드 국빈방문
국무총리	5.4.-11.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및 스웨덴 · 오스트리아 · 루마니아 공식방문
	7.2.-9.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카리콤 정상회의 참석 및 파나마 공식방문
	9.11.-15.	체코, 폴란드	체코 및 폴란드 방문
	9.23.-24.	중국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석
	10.8-.15.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 방문
	10.29.-11.4.	말라위, 토고, 카메룬, 노르웨이, 핀란드	말라위, 토고, 카메룬, 노르웨이, 핀란드 방문
	11.12.-15.	프랑스	프랑스 방문
	11.26.-30.	프랑스	제173차 BIE 총회 참석

외교부는 기확정된 다자회의 일정 및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액을 편성하고 있으나, 코로나 이후 외교지평 확대에 따

른 정상 외교 및 외빈방한 수요 급증 추세, 거시경제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예산액을 과소편성하고 예비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있음.

향후 외교부는 정상순방 외교 및 외빈방한 수요, 거시 경제 여건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비비의 편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외교부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예비비의 보충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제3차 민주주의정상회의 개최 준비기획단 예비비 이월 부적정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사업은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준비기획단의 운영비 및 관련 사업을 위한 것으로 예비비 2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 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9,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제3차 민주주의정상회의 예비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예비비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준비기획단 운영	520	259	-	261
- 일용임금(110-04)	52	8	-	44
- 일반수용비(210-01)	85	85	-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9	7	-	2
- 특근매식비(210-05)	6	1	-	5
- 임차료(210-07)	129	51	-	78
- 사업추진비(240-01)	4	4	-	-
- 직책수행경비(250-02)	6	3	-	3
- 고용부담금(320-09)	10	0	-	10
- 무형자산(440-00)	219	100	-	119
· 공동주최국 · 시민사회 협의	92	63	-	29

- 일반수용비(210-01)	30	27	-	3
- 임차료(210-07)	12	5	-	7
- 국내여비(220-01)	5	0	-	5
- 국외업무여비(220-02)	30	21	-	9
- 사업추진비(240-01)	15	10	-	5
· 홍보 및 광고지원 용역	**1,000**	**0**	**806**	**194**
- 일반용역비(210-14)	1,000	0	806	194
· 정상회의 조정 메커니즘	**1,208**	**0**	**1,198**	**10**
- 일반용역비(210-14)	1,208	0	1,198	10
합 계	2,820	322	2,004	494

외교부는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두 건의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반용역비 예산액 22억 800만원 중 집행액 없이 20억 400만원을 이월하였음.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일반용역계약 내역>

(단위 : 백만원)

계약명	예산액	계약금액 (계약서 기준)	수탁기관	계약기간	계약 유형	비고
제3차민주주의 정상회의 시민사회관여 플랫폼(PEC)	1,208	371	OGP	23.12-24. 6	수의계약	1,198 이월
		371	IDEA			
		350	OECD			
		46	COD			
		60	EAI			
제3차민주주의 정상회의 홍보 및 광고지원 용역	1,000	792	피알하우스	24.2-6	일반경쟁	806 이월
합계	2,208	1,990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시민사회관여 플랫폼(PEC)’ 용역은 2023년도 말에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액 11억 9,8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에 대해 외교부는 4개 국제기구·기관과의 용역계약에 있어 각 국제기구·기관별 계약체결 절차 등이 상이한바, 보다 신중한 과업 지시 및 충실한 계약체결 절차 준

수를 위해 부득이 이월하였다고 설명함.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홍보 및 광고지원 용역’은 2024년 1월에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예산액 8억원 및 조달수수료 600만원으로 총 8억 6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외교부는 이에 대해 홍보대행사 입찰 평가를 개최하였으나 적격업체가 없어 유찰되었고, 이후 재입찰공고 후 이월이 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외교부가 재정당국에 예비비를 요청할 당시, “2024년 3월 동 정상회의 개최까지 약 6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재원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입찰·계약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외교부가 동 용역을 긴급공고로 게시한 것이 12월 6일로 당초 용역사업 시행 자체가 꽤 지체가 된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29]」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전체 예비비 예산 28억 2,000만원의 11.4%에 해당하는 3억 2,200만원만 집행하고 71.1%에 해당하는 20억 400만원을 이월한 것은 예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이므로,

외교부는 향후 예비비 편성 및 배정 시점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예비비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사업 준비 미흡으로 인한 예비비 배정 지연 부적절

외교부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사업 예산액 28억 2,000만원 중

129) 예비비 이월 최소화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144)

선술한 바와 같이 20억 400만원의 이월액 외에도 17.5%에 해당하는 4억 9,400만원을 불용하였음.

외교부는 예산 배정 후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130]에 따른 근무자의 신원조회 등 관련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기간제 인원 충원이 지연되었으며, 예산 배정 단계에서 기 논의되던 준비기획단 사무실 임차가 불가해져 다른 조건의 건물을 임차 계약하게 되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외교부의 신원조회 절차는 사업 준비 시 미리 계산했어야 하는 사안이며, 예산배정 없이 사무실 임차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이행이 담보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이는 예비비 배정일이 2023년 10월 12일로 지연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개최 결정이 2023년 3월[13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정상회의의 개최 준비를 위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동년 9월 7일에야 마련이 되었음.

외교부는 동 훈령이 제정된 이후에야 준비기획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예비비 편성근거를 마련하여 재정당국과 협의에 들어갔으며, 예비비 배정

130)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신원조사 대상)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3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I급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재외공관 대한민국 국적 행정직원
4.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5. 비정규직원으로서 본부, 외교원 및 재외공관에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자

131)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23.3월)를 미국 등 공동주최국들과 성공적으로 공동주최하였으며, 동 회의 계기 우리의 제3차 정상회의의 개최를 대내외 발표

(10.12.)이 완료된 이후인 10월 13일 기간제 인력 채용공고를 하여 11월 1일 선발전형이 완료되었음.

9월 초 준비기획단 출범 후 10-11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력이 파견됨에 따라 업무 진행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외교부는 이에 대해 타부처 인원을 차출하고 인원을 결정해야 하는 준비위원회의 구성[132]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의 정원 협의 등에 시간소요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동 정상회의 개최 결정이 3월이었던 만큼 사전에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예산을 배정받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132)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준비위원회의 구성) ①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준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대통령경호처·국무조정실·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조달청·방위사업청·산림청·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의 차관급 공무원(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차관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정상회의등이 개최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경제인연합회·중견기업연합회·한국무역협회의 회장
4.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기관의 인사 및 민간 전문가
③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으로 한다.

Ⅷ.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검토의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시 외교부는 총 63건(2건 중복)의 시정, 주의, 제도개선을 받은 바, 이에 대해 조치완료 59건(2건 중복) 및 조치 중 4건이라는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음.

<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총괄표 >

조치 결과	구분				소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징계	
조치완료	6	21(2)	32(1)	-	59(2)
조치 중	2	2	-	-	4
소 계	8	23(2)	32(1)	-	63(2)

* 주의 2건, 제도개선 1건 중복 포함

통일부 소관 : 전문위원 김사우

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개요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2023년도 세입은 전년 대비 29.3% 감소한 19억 3,700만원이 수납되었고, 예산액 20억 600만원 대비 96.5%가 수납되었음.

2023년도 세출은 전년 대비 13.7% 감소한 2,562억 4,700만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 3,274억 4,700만원 대비 78.3%가 집행되었음.

남북협력기금전출금(예산 572억원 집행) 제외 시 일반예산은 1,990억 4,7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2,233억 4,000만원 대비 89.1%가 집행되었음.

<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전년도 결산액	전년 대비 증감율
	예산현액(A)	결산액(B)	수납률 또는 집행률(B/A)		
세 입	2,006	1,937	96.5	2,739	△29.3
세 출	327,447	256,247	78.3	296,757	△13.7
-일반예산	227,447	256,247	78.3	196,757	1.2
-기금전출금	100,000	57,200	57.2	100,000	△42.8

자료: 통일부

2. 세입 결산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9.9% 증가한 20억 600만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21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9% 감소하였음.

2023년도 수납액은 19억 3,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8.6%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억 4,900만원임.

< 2023년도 세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2023년	2,006	2,185	1,937	96.5	88.6	-	249
2022년	1,673	2,910	2,739	163.7	94.1	-	171
증감률	19.9	△24.9	△29.3	-	-	-	45.6

자료: 통일부

3. 세출 결산

가. 총괄 내역

2023년도 세출 예산액은 3,233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41억 700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3,274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이 중 집행액은 2,562억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8.3%임.

< 2023년도 세출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23,340	327,447	256,247	79.3	78.3	110	71,090
-일반예산	223,340	227,447	199,047	89.1	87.5	110	28,290
-기금전출금	100,000	100,000	57,200	57.2	57.2	-	42,800
2022년	329,911	331,889	296,757	90.0	89.4	4,107	31,025
증감율	△2.0	△1.3	△13.7	△10.7	△11.1	△97.3	129.1

자료: 통일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작년에 비해 11.1%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000억원 중 572억원만 자금 배정되어 428억원의 불용이 발생한 것에 주로 기인함. 기금 전출금을 제외한 일반예산의 집행률은 전년보다 4.3%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권이 계획 대비 저조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2300) 프로그램의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액(108억 9,500만원 불용)과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비(18억 9,000

만원 불용)에서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부지변경에 따른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지연으로 북한정세분석(1500) 프로그램의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59억 5,600만원 불용)에서 불용이 발생함.

< 2023년도 일반회계 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1000 통일정책	15,774	1,312	17,086	15,537		1,549
1031 평화통일기반조성	15,774	1,312	17,086	15,537		1,549
1500 북한정세분석	16,228	2,736	18,964	12,203		6,761
1533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	4,274	2,407	6,681	5,900		781
1535 북한자료센터 운영	11,954	330	12,284	6,303		5,981
2100 인도적 문제해결	6,735		6,735	6,048		687
2133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1,181		1,181	1,125		56
2135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4,081		4,081	3,521		560
2137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1,473		1,473	1,402		71
230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88,372		88,372	74,960		13,412
2331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54,767		54,767	54,140		627
233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33,605		33,605	20,820		12,785
3000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5,117		5,070	4,391		679
3031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3,224		3,224	2,961		263
3032 개성공단 사업 지원	883		836	747		89
3036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1,010		1,010	683		327
4000 남북회담	2,516		2,438	2,246		193
4031 남북회담 추진	354		276	147		130
4032 남북회담본부 운영	2,162		2,162	2,099		63
5000 통일교육	23,507		23,507	22,337		1,170
5002 국립통일교육원 인건비	5,546		5,546	5,075		471
5018 국립통일교육원 기본경비	1,257		1,257	1,233		24
5031 통일교육추진	15,202		15,202	14,596		606
5033 통일교육원 시설운영	1,502		1,502	1,433		69
7000 통일행정지원	65,216	58	65,274	61,328	110	3,946
8400 회계기금간거래	100,000		100,000	57,200		42,800
합 계	323,340	4,107	327,447	256,247	110	71,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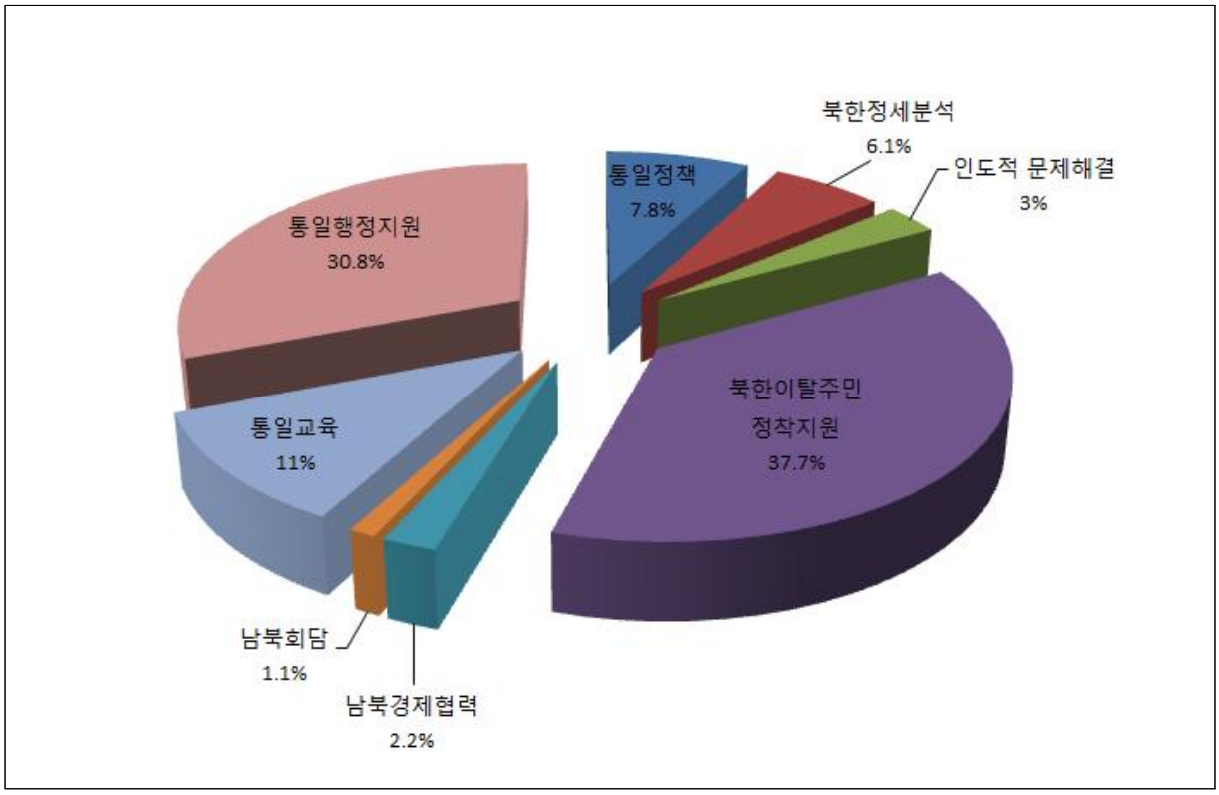
자료: 통일부

일반예산에서 각 프로그램별 결산 지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약 3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통일행정지원 프로그램이 약 30.8%,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약 11.2%의 비중이며, 통일정책 프로그램이 약 7.8%, 북한정세분석 프로그램이 약 6.1%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예산의 총 지출액에서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 남북회담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1~3% 내외임.

<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프로그램별 결산 지출액 비중 >



자료: 통일부

나. 이월·불용 내역

2023년도 이월액은 1억 1,000만원으로, 총액인건비 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등의 이월에 따른 것임.

< 2023년도 주요 이월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내 역	이월액
합 계		110
총액인건비 대상·비대상 기본경비	기본경비 이월 (기본경비 예산총액의 15% 범위 내 이월 가능)	110

자료: 통일부

2023년도 불용액은 710억 9,000만원으로, 주요 불용 내역은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자금 미배정액 428억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집행잔액 108억 9,500만원,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집행잔액 18억 9,000만원,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59억 5,600만원, 인건비 집행잔액 38억 2,500만원 등임.

< 2023년도 주요 불용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불용액
합 계		71,090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자금 미배정	42,800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주거지원금 등 각 분야 정착금 지급액 감소	10,895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하나원 교육생 구호교정비 등 관련 교육훈련비	1,890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통일정보자료센터	5,956
북한인권재단 운영	북한인권재단 미출범으로 인한 출연금 전액	475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발생	686
기타	인건비 집행잔액, 사업 집행잔액	8,388

자료: 통일부

다. 이용·이체·전용 내역

2023년도 이용은 1억 2,50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체 내역은 없었으며, 전용액은 9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600만원(35.1%)이 증가하였음.

< 2023년도 이용·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감(A-B)	증감률
이용	합 계	125	-	125	-
	일반회계	125	-	125	-
전용	합 계	910	674	236	35.1
	일반회계	910	674	236	35.1

자료: 통일부

주요 전용 내역은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위한 일반용역비 등 2억 3,000만원, 조직 개편에 따른 폐지부서 기본경비 부내 재조정 4억 1,600만원 등임.

< 2023년도 주요 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전용액
합 계		**910**
통일정책추진	사회적대화 의제개발 및 운영방식 설계 일반연구비	65
이산가족문제해결 지원	2023년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따른 기념행사 일반용역비	18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위한 일반용역비 등	230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2023북한인권보고서 발간비 관련 일반수용비	22
통일교육 지원체계 및 구축	재외동포 어린이용 도서 발간 교재개발 관련 일반연구비	13
기본경비	행정인턴 채용 관련 기관운영 기본경비 부족, 12월 고용부담금 및 퇴직연금	146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부서 기본경비 부내 재조정 등	416

자료: 통일부

라. 예비비 사용

2023년도 예비비 사용 실적은 없음.

4. 202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 주요 검토내용

가. 총괄검토

□ 남북 교류협력 및 대화·협상능력 유지 필요

통일부의 2023년도 일반예산의 지출액 중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 43억 9,100만원, 남북회담 프로그램 22억 4,600만원으로, 총 지출액에서 남북 교류협력 및 대화·협상능력 유지에 필요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2.3%, 1.1%에 불과한 실정임.

<최근 10년간 남북교류협력 / 남북회담 관련 예산 변동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일반회계 예산액					비고 (남북협력기금 교류협력 사업 계획금액)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관련		남북회담 관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5년	229,983	3,288	1.4	3,222	1.4	465,367
'16년	243,072	4,051	1.7	5,905	2.4	498,363
'17년	244,762	2,701	1.1	6,769	2.8	267,957
'18년	227,498	2,807	1.2	2,360	1.0	357,511
'19년	219,875	3,310	1.5	3,958	1.8	524,897
'20년	218,569	3,371	1.5	3,156	1.4	577,945
'21년	229,355	4,747	2.1	3,250	1.4	586,301
'22년	230,881	6,043	2.6	2,425	1.1	613,412
'23년	223,340	5,117	2.3	2,516	1.1	476,454
'24년	222,027	4,399	2.0	2,355	1.1	278,145

자료: 통일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기본 임무와 역할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2024년 3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해산되었으며, 북한은 지난 2023년 4월 이후 남북 통신연락 채널을 통한 소통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우선 남북 간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평화를 정착시킨 후 통일을 추구하는 점진적·단계적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1990년 8월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역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남북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대화의 단절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임에는 분명한바,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 교류협력 및 대화·협상능력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용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왔던 통일부의 남북 교류협력 및 대화·협상능력을 유지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시설물 등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방안 검토 필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은 다음과 같은 시설물 및 부지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코로나19로 시설물들의 이용이 통제되거나 제한되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외부활동 증가에 따라 시설물 이용 및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통일부 및 소속기관 소유 시설물 및 부지 현황 >

기관명	시설물·부지명	용 도	이용현황	비 고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	남북통합문화센터	전시시설 및 업무시설	방문인원('23년 기준) : 연 6만7천여명	서울시
통일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기념관 전시동·사무동	전시시설 및 업무시설	방문인원('23년 기준) : 연 36,684명	파주시
남북 관계 관리단	남북관계관리단 청사·회담장	업무시설 및 회담장	업무시설 각종 회의 개최	서울시
	전방사무소·자유의집 등	업무시설, 남북연락망운용	업무시설 판문점 견학지원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경의선)	출입심사시설, 물류시설	업무시설 철도역(도라산역) 물류창고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동해선)	출입심사시설, 물류시설	업무시설 철도역(제진역) 물류창고	고성군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교육관(본관)	행정지원시설	행정지원시설	안성시
	교육동(하나둘학교)	교육시설	교육시설	안성시
	제2교육관(훈련과)	교육시설	교육시설	안성시
	직업교육관	교육시설	교육시설	안성시
	생활관	합숙시설	합숙시설	안성시

기관명	시설물·부지명	용 도	이용현황	비 고
	숙소동	합숙시설	합숙시설	안성시
	봉사관	행정지원시설	직원봉사관	안성시
	체육관	체육시설	교육생 체육시설	안성시
	환경실	위생시설	정화조 시설	안성시
	면회실	복지시설	면회실	안성시
	관사	관사	관사	안성시
	제2하나원 교육관	교육시설	교육시설	화천군
	제2하나원 체육관	체육시설	체육시설	화천군
국립 통일 교육원	국립통일교육원 청사	교육연구시설	교육인원('23년 기준) : 1,500명	서울시
	오두산전망대	관광휴게시설	방문인원('23년 기준) : 연 243,332명	파주시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	통일관	사무실 및 통일체험연수시설	대강당, 모둠방 등	연천군
	미래관	통일미래체험관	체험연수시설	연천군
	한반도관(A관, B관)	생활관	합숙시설	연천군
	어울림관	체육관, 구내식당	체험연수시설 및 식당	연천군
	야외시설	한반도투어링장,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야영장 등	체험연수시설 및 체육시설	연천군
	관사	직원숙소	직원 숙소	연천군

자료: 통일부

이를 고려하여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지도교사에 대한 우울증 예방 및 치료 등 보유한 시설물 및 부지를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개발·운영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교육생 감소에 따른 시설물의 효율적 활

용을 위해 수료교육생 대상 심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부인사 대상 방문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3년 11월 18일에는 북한이탈주민 300여 명을 하나원에 초청하여 탈북민들의 '제2의 고향, 친정집' 방문 행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제2하나원의 기존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개소함으로써 탈북 과정 및 우리 사회 정착지원 과정에서 겪는 탈북민의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2014년 개관 이래 2023년까지 총 228,457명을 대상으로 체험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체험연수를 재개하여 2023년 한해 28,891명을 대상으로 체험연수를 진행하였고,

효율적인 체험연수 진행을 위해 대강당 대형 LED 설치, 노후 CCTV 24대 교체, 야외 홍보용 전시구조물 설치 등 기반시설 개선·확충 사업과 보도블럭 보수, 오수처리시설 보강, 한반도투어링장 하천 경사면 복구 등 시설안전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음.

< 통일부와 소속기관의 시설물 활용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사업명	2023년 결산액	사업내용	활용내역 (시설물, 부지)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3,324	전시관, 프로그램 및 행사 통합문화 콘텐츠 창작지원 상담센터 평화통일 도서관 등 운영	공연장, 강의실, 체험관, 상담센터, 도서관, 사무실 등
통일부 (국립6.25	6.25전쟁납북자 기념관 운영	1,402	전시·교육 운영, 유물 수집·관리, 시설 운영 등	전시동, 사무동

기관명	사업명	2023년 결산액	사업내용	활용내역 (시설물, 부지)
전쟁납북자 기념관)				
남북 관계 관리단	남북출입사무소 유휴부지 활용 및 견학	-	물류시설 국유재산 사용허가 출입심사시설 견학 지원	물류시설 출입심사시설 및 도라산역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북한인권기록센터 인권조사	-	기초교육생 대상 인권실태조사	제2교육관
	사회적응교육 기획	122	외부인사 방문 및 홍보	교육관
	초기정착지원	20	교육생 정착지원 준비 및 정착지원 상담	교육관, 제2교육관
	초기정서안정지원	103	교육생 대상 정서안정프로그램 운영	제2교육관
	사회적응기본교육	284	대상별 분별교육 및 정보화 교육	제2교육관
	진로지도 프로그램	626	기초교육생 및 심화교육생 직업교육	직업교육관
	우리사회체험교육	177	주말프로그램, 홈커밍데이, 친정집나들이 등	제2교육관, 체육관
	하나둘학교 운영	103	하나들학교 분반수업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교육동
	하나의원 운영	158	교육생 진료 및 하나의원 운영	교육관
	교육생 지원	766	교육생 숙식 등 지원	생활관, 교육관
	경비업무	2,858	특수경비업체 사무실 및 숙소	봉사관
	제2하나원 직무교육	27	보호담당관 과정, 재외공관탈북민담당관 과정, 탈북학생지도교사 과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협의회 과정, 지자체 공무원 과정 등 운영	교육관
	제2하나원 사회적응교육 및 초기정착지원	97	교육프로그램운영, 심리정서안정, 멘토링프로그램 등 운영	교육관
	제2하나원 진로지도프로그램	156	기초직업훈련, 진로상담, 기타직업 체험교육, 직종특화교육 등 운영	교육관

기관명	사업명	2023년 결산액	사업내용	활용내역 (시설물, 부지)
	제2하나원 우리사회체험교육	65	현장체험학습, 보충프로그램운영, 주말프로그램운영, 생활관리, 수료총무단 네트워크 구축관리 등 운영	교육관, 체육관
	제2하나원 하나의원 운영	32	교육생 외부병원진료 및 하나의원 일반운영	교육관
	제2하나원 힐링프로그램운영	89	탈북민 대상 힐링프로그램 운영	교육관, 체육관
	제2하나원 교육생지원	225	교육생 생활지원, 교육생 행사지원, 탈북민 인식개선 등 교육생지원	교육관
국립 통일 교육원	통일교육 운영	-	초중등교사, 공무원, 유관단체 등 통일교육 전문성 향상	교육관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	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924	기획 및 홍보 프로그램개발 및 기획 프로그램 운영	통일관, 미래관, 한반도관, 어울림관, 야외시설 등
	미래센터 시설관리 운영	2,433	통일미래체험관 운영 시설관리(공무직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 등)	센터시설 전체

자료: 통일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은 보유한 시설물 및 부지를 활용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추후 운영 예정인 프로그램들에 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프로그램간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이 보유한 시설물 및 부지의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개최실적 제고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행정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와 자문위원회로 구분되고,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위원회는 반드시 법률로, 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통일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등을 설치·운영 중임.

< 통일부 소속 행정위원회 현황 >

(단위: 회, 천원)

행정기관위원회명	설치 근거 법령	회의 개최 실적	2023년도	
			예산액	집행액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2	14,760	4,849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북한인권법 제5조	0	20,100	0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7조	3	7,400	2,600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4	9,000	9,000
북한인권증진위원회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5	-	15,399

자료: 통일부

이 중 법령상 국회의 위원 추천이 필수인 2개 위원회(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경우, 국회의 위원 미추천 및 추천 지연으로 2023년에 위원회가 운영되지 못하거나 지연 구성·운영됨.

먼저,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2023년 6월 20일 국회의 추천으로 하반기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출석 대면으로 한 차례 개최(10.18.)하고,[133]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2023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안)을 심의함.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는 2023년에 총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2023년 11월 2일 개최한 대면 회의에서 '억류자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처음 인정하였으며, 이후 서면 회의(11.21.~22.)를 추가로 개최하여 억류자 가족(5명)에 위로금을 총 8,900만원 지급하였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경우 그 구성·운영이 외부적 요인(국회의 위원 미추천)에 기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의 개최가 서면 3회에 불과함.

한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는 재단 출범 전까지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134]를 통일부훈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음.

---

133) 2023년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서면으로 개최한 실무위원회 제외

134)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통일부훈령 제651호, 2023.3.6. 제정)
제2조(기능)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준비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인권재단 출범 준비
2.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전문가·대국민 의견수렴, 공감대 확산
3.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과제 발굴
4. 시민사회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5. 그 밖에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동 위원회는 정례(분기별) 및 수시 회의, 현안 자문, 언론 기고 등 운영을 통해 북한 인권 증진 민간협력 및 공감대 확산 방안 논의·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2023년에 5차례 개최하였고, 편성예산이 없으나 1,540만원을 집행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간의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출석·대면회의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서면(비대면)회의 보다는 시간 활용 및 거리 제약 등을 고려하여 화상회의(웨벡스 등)를 활용하여 개최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행정기관의 장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해 각 기관의 부령에 근거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해 성별·지역별·직능별 등을 고려하여 위원이 균형 있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135)]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부문) 조직 지표에서 비수도권 위원 위촉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일부 소속 행정위원회(4개)의 비수도권 위원 위촉비율은 8.3%, 여성위원 위촉비율의 경우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13%,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경우 8%에 불과함.

여성대표성이나 지역대표성은 위원 위촉 시 상대적으로 반영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는 바, 통일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 공정성 및 신중성을 제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135)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나. 일반회계

(1)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사업(4억 1,8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연구과제 총 41건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수행되었으며, 비공개 비율은 20% 이상인바, 통일부는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도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반경쟁을 통한 과제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11억 8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동 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출범한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운영 실적이 매우 부진하였는 바, 회의 개최 실적을 제고하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도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51억 3,8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2023년 9월 첫 통일센터로 호남권 센터(목포)를 개관하였으나 강원·경기·충청 통일센터 신설 사업의 추진이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바, 통일+센터 설치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체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4)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사업(8,0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었으나 일반용역비 1억원을 조성하고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용역 관련 비용으로 8,000만원을 집행한 바,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통일인식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충실한 사업계획을 통해 정규 예산에 편성하고 기재부의 예산안 심사 및 국

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5)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사업(15억 5,4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2030세대 통일공공외교 활동 지원’에서 1억 3,200만원 등 일반수용비 1억 5,000만원이 불용됨. 정부부처 간의 예산협의 과정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가 반영되지 못한 채 예산이 확정됨으로써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바, 통일부는 향후 필요한 적정 예산과목의 반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50억 2,2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고양시의 부지변경 요구(’23.11)로 부득이 착공 등 사업 일정이 연기되었는데, 통일부는 향후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고 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7)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1억 1,3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납북피해자’ 위로금 지급을 위해 9,500만원을 편성하고 재북 억류자(6명)를 「전후납북자법」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인정하여 그 가족들에게 8,900만원을 지급한 바, 앞으로도 ‘억류자’를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면, 향후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류자’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8)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사업(9,9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당초 이 사업에는 임차료가 편성되지 않았지만 통일부는 동 세부사업 내 조정을 통해

800만원을 조성하고,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인권영화 다시보기'를 위한 장소 임차료로 집행한 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 조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9) 조사결과 활용 사업(1억 1,7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당초 『2023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전용 및 세목 조정 등을 통해 집행함. 동 사업은 국회의 예산 심사 및 승인을 거치지 않은 사업에 과도한 전용 등을 통해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과다한 전용 등을 통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충실한 사업 계획을 통해 필요한 사업비를 정규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10)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4억 7,500만원 전액 불용)과 관련하여, 「북한인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동 재단이 이사 구성 지연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바,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어 예산집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출범 후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1)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사업(2억 1,0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2023년도 11월 말에 예산을 전용하여 12월에 사업을 집행한 사업으로, 향후 국회의 예산 심사 및 승인을 받지않는 방식의 단기적 관점의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12)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11억 4,9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동 사업 예산의 집행을 계기로 정보화사업의 성과 달성도를

측정함이 바람직하고, 그 경우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의 이용자 변동 추이 등을 성과지표에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13)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100억 8,6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현액 209억 8,100만원 중 100억 8,600만원을 집행하여 48.1%의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하였는데,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향후 국제정세 및 북한의 동향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4)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사업 중 경의선 옥외전광판 교체 사업(1억 4,700만원)을 취소하고 해당 예산 전액을 조정하여 안전시설 보강 공사 등의 용도로 집행하였음. 향후 통일부는 출입사무소 관련 시설·설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임의로 사업을 취소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안전·보안 관리 사업은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음.

(15) 분야별 회담 추진 사업(1억 7,000만원 집행) 관련, 남북회담 사후조치의 일환으로 30년이 경과된 남북회담문서를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열람 건수가 저조함. 통일부는 열람 장소를 확대하고, 전자적 열람 방안을 마련하여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홍보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6) 통일교육 자료 개발 보급 사업(29억 2,200만원 집행) 관련, 증강현실(AR)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공급하고 있는데, 공급자 명의를 통일부

또는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일원화하고 미사용 앱을 삭제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범용성 확장과 홍보 확대 등을 통해 AR 앱의 다운로드 수를 늘려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7)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사업(4,200만원 집행)과 대학(원)생 통일논문 및 통일 홍보 영상 공모 사업(4,400만원 집행)의 응모 및 입상 수가 감소하는 추세임. 응모·입상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상금을 올리고,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예비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는 동시에 입상 후 연계활동을 개발하는 등 응모사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8) 정책연구개발 사업(2억 9,2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총 43건 중 32건(74.4%)을 수의계약에 의해 수행하였으며, 비공개 비율은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향후에는 정책연구과제의 과도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비공개 보고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주요 내용 공개와 부분 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다. 남북협력기금

(1) 남북협력기금 수입과 관련하여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출한 금액 중 대출원금은 '기타민간 융자원금 회수사업(52억 8,000만원 수입)'을 통해 상환처리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기타민간 이자수입(14억 4,000만원 수입)'에서 수입처리하고 있으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매년 만기도래금액 대비 3~5% 수준임. 향후 대출 부실화 위험에 주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채권 회수 계획의 수립 및 관리가 요구됨. 또한, 이자 상환유예조치는 원금상환유예와 달리 이자액이 누적·증가하여 기업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므로 보다 상환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기타잡수입(2,800만원 수입)의 주요 수입액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연수자 연수비 및 숙박비임. 2023년 총 체험연수자 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의 72%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에 비해, 이용료 수입액은 21%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숙박 체험연수자 수의 회복이 더디기 때문임. 보다 심도깊은 통일체험과 연수과정을 제공하여 통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또는 지자체와 협력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숙박체험연수자 수를 늘릴 필요가 있음.

(3)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사업(33억 5,7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동 센터가 2014년에 개관하여 체험 시스템·장비 등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체험시설은 연수자들이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들을 실

제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과 도구를 제공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함. 따라서 체험시설을 최신화하여 체험자의 감정 이입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 사업(2억 7,000만원을 집행)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내 10년 이상 노후화된 CCTV 등 시설 및 장비를 교체하려는 사업이나 32억 4,200만원을 이월하였음. 이월 사유를 보면, 계약 및 협의절차 지연과 세목변경을 위한 계획변경 절차 진행에 의한 것임. 향후 통일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예산편성과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세부절차간 혼선을 피하고 사고이월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5) 개성공단 운영대출 사업(20억 2,700만원을 집행)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운영비를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동 재단은 2024년 3월 해산을 결정하였는데, 남북협력기금에서 재단에 지원한 대출액 중 788억원과 157만 달러의 미상환금이 남아있는 상황임. 대출상환을 위해 재단 자산의 매각·양도가 필요한 상황이나 주요 자산이 북한 개성공단에 있어 평가액 산정과 현금화가 어려운바, 통일부는 대출상환을 위한 장단기 방침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고정적인 이자 부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Ⅱ.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별 검토

1. 세 입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20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9% 감소한 21억 8,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9억 3,700만원이 수납(징수결정액 대비 88.6% 수납)되었으며, 2억 4,900만원은 미수납됨.

< 2023년도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2023	2,006	2,185	1,937	96.5	88.6	-	249
2022	1,673	2,910	2,739	163.7	94.1	-	171
증감율	19.9	△24.9	△29.3	-	-	-	45.6

자료: 통일부

수납액 세부내역은 건물대여료 등 재산수입 3억 3,3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경상이전수입 11억 9,800만원, 오두산통일전망대 입장료수입 등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4억 500만원임.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 체납자 재력 부족 및 거소 불명, 지자체 국고보조금 반납절차 지연 등 2억 4,900만원임.

< 2023년도 세입 미수납액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명		내 용	미수납액
경상이전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보조금 등 발생이자	2
	과태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6
	가산금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1
	기타경상이전수입	소송비용 및 지자체 국고보조금 반납절차 지연	240
합 계			249

자료: 통일부

□ 제재부가금 계정신설 및 부과·징수 강화 필요

통일부의 2023년도 징계부가금 세입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1,7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되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은 공무원의 징계에 따른 징계부가금 400만원과 사인(私人)에 부과된 제재부가금 1,300만원으로, 제재부가금을 위한 별도의 계정이 없어 실무적으로 불가피하게 징계부가금 계정에 포함시킨 것임[136].

< 2023년 징계부가금 부과 내역 >

구 분	납부자(단체)	금 액	사유
징계부가금	○○○	400만원	부당지시 등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제재부가금	사단법인 ○○○○○센터	1,300만원	간접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자료: 통일부

< 최근 4년간 징계부가금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20	-	-	-	-	4	4	-	100.0	-	-
'21	-	-	-	-	-	-	-	-	-	-
'22	-	-	-	-	-	-	-	-	-	-
'23	-	-	-	-	17	17	-	100.0	-	-

자료 통일부

136) 제재부가금 수입처리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이 없어 각 부처별로 징계부가금 계정, 과징금 계정, 과태료 계정 등에 포함하는 등 상이한 상황임.

"징계부가금"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137]에 따라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게 징계 외에 수수 또는 횡령·유용한 금전의 5배내의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고,

"제재부가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138]에 따라 거짓

---

137)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⑤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13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

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결정을 취소하여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등의 경우, 반환받는 보조금의 5배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것임.

징계부가금 부과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에 따라 각 기관에서 인사혁신처 또는 기관내 징계위원회에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면, 징계위원회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 후 각 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은 이를 근거로 당사자에게 징계 및 징계부가금 처분 및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제재부가금 부과는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중앙관서의 장(사업부서)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부가금을 결정하고 이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음.

< 세입 과목 구분 >

관	항	목	내 역
경상이전수입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벌금 및 과료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 과료, 즉결재판에 의한 벌금, 과료
		몰수금 및 추징금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몰수금, 몰수물품, 압수물 공매대금 및 가액에 대한 추징금
		과태료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태료 등(법령상 이행강제금 포함)
		징계부가금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징계부과금 등
		과징금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징금 등

자료: 기획재정부(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히 2023년도에 부과된 제재부과금은 2023년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23.1.30.~2.24.)에서 보조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에 사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 유류비를 환수 조치하면서 환수액의 3배인 1,3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는데,

통일부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의 위법성·고의성 등을 확인한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제재부가금 부과 요건을 충족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이며 이는 2016년 제재부가금 부과 제도 도입 이후 통일부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함.[139]

< 2023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23.1.30.~2.24.) 결과>

기관명	연번	지적 내용	처분
VVV 센터	1	o **센터장 활동비 집행 부적정** - **(직원선물 지급 부적정)** aa센터, bb센터는 '21.2.~9. 설·추석·연말에 센터장 활동비(업무추진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하나센터 내부 직원 선물을 구입하는데 집행 - **(월별 한도액 초과집행)** cc센터 등 13개 센터는 센터장 활동비를 업무매뉴얼상 월별 한도액 30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	주의 주의
	2	o **업무용 차량 관리 부적정** -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 WWW센터 센터장은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에 사용 • XXX센터 센터장은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	주의시정
		- **(업무용 차량 보험료 지출 부적정)**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센터 명의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차량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dd센터 등 5개 센터에서 법인 차량에 대해 보험료 지급	주의

139) 통일부는 이 건은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재부가금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해당 감사담당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표창을 수여 받았다고 설명함.

기관명	연번	지적 내용	처분
	3	o 사무실 임차료 지급 부적정 - 업무매뉴얼에 사무실 임차료 규정이 없음에도 YYY센터는 사무실 임차료로 지출	주의
ZZZ 학교 (1건)	1	o 급식 업무처리 부적정 - (계약업무 부적정) • '21년 ㈜ㄱㄱㄱ와 '22년 ㈜ㄴㄴㄴ과 각각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별로 계약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 또한 '21년 ㈜ㄱㄱㄱ는 위탁급식 계약이 2천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위탁급식 수의계약을 체결	주의
		- (위탁급식비 정산 부적정) • 학생들을 위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 교직원들 급식비에 지출	시정
ㄷㄷㄷ협회 (1건)	1	o 선물구입 부적정 - 전체 보조금의 42%에 해당하는 햅쌀을 구입, 특별한 행사 없이 모든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등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에 집행	주의

자료 통일부

우선 정부는 민간에 대한 제재부가금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통해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관련 내용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부는 통일 사업의 특성상 이를 직접 수행하기보다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해당 민간단체로 하여금 위탁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바[1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140) 통일부는 2023년도에 통일정책,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협력 기반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등과 관련하여 19개의 보조사업(예산 230억원)을 실시하였음.

2. 통일정책(1000 프로그램)

가. 개 요

통일정책 프로그램은 통일 및 통합 대비 정책 개발·연구, 북핵·평화구축 정책 수립 등 통일대비 중장기 통일정책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국민·국제사회 대상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반사업 추진 등 국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화통일기반조성 1개 단위사업에 3개 세부사업(통일정책추진, 국내통일기반조성, 국제통일기반조성)으로 이루어져 있음.

< 2023년도 통일정책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12,869	15,774	15,774	17,086	15,537	14,788
□평화통일기반조성(1031단위사업)	12,869	15,774	15,774	17,086	15,537	14,788
○ 통일정책추진(300)	1,953	3,878	3,878	3,823	3,090	2,049
○ 국내통일기반조성(301)	8,365	8,735	8,735	10,147	9,726	10,144
○ 국제통일기반조성(302)	2,551	3,161	3,161	3,116	2,721	2,595

자료: 통일부

평화통일기반조성 단위사업에서 각 세부사업이 차지하는 결산 지출액 비중을 보면,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이 62.6%,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이 17.5%, 통일정책추진 사업이 19.8%를 차지하고 있음.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통일정책추진(1031-300)

통일정책추진 사업은 남북 통합을 위한 중장기적 통일정책을 마련하고, 통일 공감대 형성과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8억 2,300만원 중 30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고, 7억 3,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통일정책추진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878	3,878	-	△55	3,823	3,090	733	79.6	80.8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통일 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사업에 7억 500만원, '통일대북정책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에 12억 7,700만원,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에 11억 8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3년도 통일정책추진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통일정책추진	3,878	3,878	△55	3,823	3,090	733
· 통일 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809	809	△55	754	705	49
· 통일대북정책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운영	1,569	1,569	-	1,569	1,277	292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1,500	1,500	-	1,500	1,108	392

자료: 통일부

□ 정책연구용역의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필요

내역사업인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사업’은 향후 통일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통일 이후 통합까지 미리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 및 분야별 제도·법제를 준비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3년도 정책연구비(260-02목)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억 900만원 중 4억 200만원이 집행되고, 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사업 정책연구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책연구비 (260-02목)	409	409	-	409	402	-	7

자료: 통일부

2023년도 정책연구비 집행에 따른 연구용역의 세부 내역을 보면, 과제별로 최대 7,000만원에서 최소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11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하였는데, 11건의 연구과제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수행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141]에 따른 비공개 대상 연구과제는 총 5건이었음.

14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023년도 정책연구과제 수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과제명	집행액	계약 방식	수행 기간	수행 기관	공개 여부	비공개 기한
글로벌 통일 이니셔티브 추진방안	16	수의	2023.4.~8.	통일연구원	공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개편안 연구	33	수의	2023.4.~9.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비공개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가칭) 제정안	20	수의	2023.4.~7.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	비공개	2년
통합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 방안 연구	37	수의	2023.4.~12.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공개	
지정학적 불이익 극복을 위한 소다자주의 협력 모델 시사점	30	수의	2023.6.~11.	한국세계지역 학회	비공개	
탈북민 수기를 바탕으로한 지역사회 통일공감 문화확산 연구	30	수의	2023.8.~12.	숭실대 산학단	공개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통일 문제 연구	70	수의	2023.9.~12.	한국국가전략 연구원	비공개	
북한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방안	46	수의	2023.10.~12.	육군3사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	
유엔사의 한반도 통일에서의 역할 및 협력방안 연구	30	수의	2023.10.~12.	한국국가전략 연구원	비공개	
기존 통일법제 연구성과 분석·평가 및 향후 활용 방안 마련	50	수의	2023.10.~1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	
정부 내 통일준비인력 육성·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40	수의	2023.10.~12.	한국행정연구원	공개	
합 계	402					

자료: 통일부

또한, 최근 3년간의 수의계약 및 비공개 과제 현황을 보면, 총 과제 건수 36건 모두 수의계약에 의해 수행하였으며, 11건을 비공개 함에 따라 비공개 비율은 30% 이상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및 비공개 과제 현황 >

구 분	과제 건수	수의계약 건수(비율)	비공개 건수(비율)
2021년도	12건	12건	3건(25%)
2022년도	13건	13건	3건(23.1%)
2023년도	11건	11건	5건(45.5%)
합 계	36건	36건(100%)	11건(30.5%)

자료: 통일부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42]의 연구용역비(260목) 공통지침에 따르면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되,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143]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따라 계약하여야 하고,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또는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 등에 관해서는 예외적

142) 기획재정부「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87 연구용역비(260목) 공통지침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한다.

1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됨.

통일부의 2023년도 정책연구과제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1억원 이하의 계약으로, 일부 과제들은 학술연구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11건 모두 수의계약에 따라 과제를 선정함에 따라 일반경쟁에 따른 과제선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통일부는 정책연구과제 선정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과도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경쟁을 통한 정책연구과제 선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운영 실적 제고 필요 등

내역사업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통일 미래전략 구상·수립,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통일미래 관련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5억원 중 11억 8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9,200만원이 불용됨.

< 2023년도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통일정책추진	3,878	3,878	△55	3,823	3,090	733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1,500	1,500	-	1,500	1,108	392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3년 1월 업무보고를 통해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신설 추진을 보고하고, 이후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전문성, 경험 등을 중심으로 부 내외 추천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위원을 인선하였음.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2023.2.28., 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르면,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통일기획관이 간사가 되며, 위원 임기는 1년(연임 가능)이고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권인도, 국제협력 분야의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144)]

< 2023년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

회의		일자	참석위원	안건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3.15.	위원장 등 30명	· 통일미래 청사진 수립 방향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운영계획 등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정치·군사	3.30.	분과위원장 등 8명	· 분과별 통일미래 청사진 수립 방향 · 공론화 사업 추진방향 등
	경제	3.31.	분과위원장 등 7명	
	사회·문화	3.29.	분과위원장 등 6명	
	인도·인권	4. 4.	분과위원장 등 5명	
	국제협력	3.31.	분과위원장 등 5명	
특별위원회 회의		3.31.	특별위원장 등 8명	· 통일미래 청사진 수립 방향
위원장단 회의		4. 5.	위원장 등 7명	· 통일미래 청사진 수립 방향 · 공론화 사업 추진방향 등
특별위원회 회의		4.21.	특별위원장 등 8명	· 통일미래 청사진 수립 방향
위원장단 회의		5. 3.	위원장 등 7명	· 공론화 사업 추진방향 ·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통일부-위원회 원탁회의		5. 3.	위원장 등 12명	· 통일미래 청사진 기본방향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정치·군사	4.27.	분과위원장 등 8명	· 통일미래 청사진 기본방향
	경제	5. 1.	분과위원장 등 7명	
	사회·문화	4.24.	분과위원장 등 5명	
	인도·인권	4.26.	분과위원장 등 4명	
	국제협력	5. 1.	분과위원장 등 5명	
위원장단 회의		6.20.	위원장 등 10명	· 통일미래 청사진 기본방향 · 공론화 사업 추진경과 등
위원장단 회의		8. 2.	위원장 등 6명	· 통일미래 청사진 구상안 경과보고 · 위원회 하반기 운영계획 등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8. 9.	위원장 등 28명	· 통일미래 청사진 구상안 경과보고 · 위원회 하반기 운영계획 등
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정치·군사	9. 4.	분과위원장 등 6명	·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 통일 공론화 사업 등
	경제	9. 1.	분과위원장 등 6명	
	사회·문화	8.18.	분과위원장 등 5명	
	인도·인권	8.21.	분과위원장 등 5명	
	국제협력	9. 1.	분과위원장 등 5명	

144)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권인도, 국제협력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관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의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복수의 분과위원회에 속하는 사항 등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 또는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회의		일자	참석위원	안건
위원장단 회의		9.15.	위원장 등 11명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하반기 운영계획 등
특별위원회 회의		10.23.	특별위원장 등 5명	· 통일미래 청사진 수립 방향
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	정치·군사	10.20.	분과위원장 등 5명	· 분과별 공론화 중점사업
	경제	10.17.	분과위원장 등 7명	
	사회·문화	9.26.	분과위원장 등 4명	
	인도·인권	10.12.	분과위원장 등 4명	
	국제협력	10. 5.	분과위원장 등 4명	
위원장단 회의		11.14.	위원장 등 10명	· 전체회의, 국제협력대화 등 계획
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	사회·문화	11.15.	분과위원장 등 8명	· 사회문화분과 공론화 사업 등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12.20.	위원장 등 23명	· 통일 담론 연구용역 결과 토론 ·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등

자료: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분기별 개최하도록 규정한 전체회의를 2023년에 3차례, 매월 개최하도록 규정한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당 4차례(사회·문화의 경우 5차례)만 개최하여 동 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출범한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실적이 다소 부진하였는 바, 법령에 규정된 회의 운영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여 회의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통일 미래전략 구상·수립, 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통일부장관 직속의 민간 자문기구인 만큼,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145]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145)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688호, 2024. 5. 9. 타법개정, 연혁 2008. 4.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정책의 수립·발전 및 북한의 제반실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협력 등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도적 대북지원, 북한인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5. 남북회담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새로운 정책의 건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관이 요청하는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에 응할 수 있다.

2)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은 통일정책 홍보 및 의견수렴, 지역사회 통일관련 서비스 종합지원 및 민간-정부 간 소통·협력 거점 마련,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및 통일문화행사 등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01억 4,700만원 중 97억 2,600만원이 집행되고, 4억 2,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8,735	8,735	1,312	+100	10,147	9,726	-	421	111.3	95.9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에 25억 2,000만원, 통일$^{+}$센터 설치·운영에 38억 2,600만원,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에 9억 1,900만원, 통일문화진흥에 10억 6,900만원,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에 8,0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3년도 국내통일기반조성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국내통일기반조성	8,735	8,735	+100	10,147	9,726	421
·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2,696	2,696	+3	2,699	2,520	179
· 통일+센터 설치·운영	3,877	3,877	-1	5,188	5,138	51
·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1,002	1,002	-	1,002	919	83
· 통일문화진흥	1,160	1,160	-2	1,158	1,069	89
· 통일인식 · 북한이해 제고	-	-	+100	100	80	20

자료: 통일부

□ 통일+센터 구축 사업의 연례적 이월,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내역사업인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종합적인 통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을 권역별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지역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센터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확보하되 센터 건립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5 : 5로 매칭하는 보조금 사업임.

통일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총 7개 지방자치단체에 권역별 통일+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인 바, 인천 통일+센터(송도) 시범운영을 토대로 권역별 거점이 되는 모델을 마련하였고, 2023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첫 통일+센터로 9월 8일 호남권 통일+센터(목포)를 개관하였음.

< 통일+센터 설치 현황 및 계획 >

<table>
<tr><th>2018.9</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h>2026</th></tr>
<tr><td>■ 시범센터 1개소(인천) 개관·운영</td><td>■ 인천지역 협업체계 구축</td><td>■ 인천센터 운영성과 평가(3~5월)</td><td colspan="6">■ 인천센터 확대운영 추진</td></tr>
<tr><td colspan="2" rowspan="4"></td><td rowspan="3">■ 신규센터·예산확보</td><td colspan="2">■ 신규 설치 (호남센터)</td><td colspan="4">■ 신규 운영 (호남센터)</td></tr>
<tr><td colspan="2">■ 신규 설치 (강원센터)</td><td colspan="3" rowspan="2">■ 신규 운영 (강원·충청·경기센터)</td></tr>
<tr><td>■ 신규센터 예산확보</td><td colspan="2">■ 신규 설치 (충청·경기센터)</td></tr>
<tr><td colspan="3">■ 신규센터 예산확보</td><td>■ 신규 설치 (2개소)</td><td>■ 신규 운영 (2개소)</td></tr>
<tr><td colspan="5">1개소 개소·운영
[인천 시범센터]</td><td>1개소 신설
[총 2개소]</td><td>3개소 신설
[총 5개소]</td><td>2개소 신설
[총 7개소]</td></tr>
</table>

자료: 통일부

< 통일+센터별 운영주체, 건립예산, 진행 현황 등 >

연번	센터	공모 시기	설치 착수	운영 주체	건립예산[주]			개소 (예정)	추진현황
					국비	지방비	총액		
시범	인천(송도)	-	'18년	통일부	* 1개층 일부임차			'18.9.10.	운영중
1	호남(목포)	'20년	'21년	전남도	31.5억	31.5억	63억	'23.9.8.	운영중
2	강원(춘천)	'20년	'21년	강원도	32.5억	32.5억	65억	'24.10월	'23.3.27. 착공
3	경기(의정부)	'21년	'22년	경기도	40억	40억	80억	'25.6월	'24.5.30. 본공사 착공
4	충청(홍성)	'21년	'22년	충남도	40억	60억	100억	'25.10월	'24. 8월 착공 예정

자료: 통일부
주) 건립예산은 국비:지방비 1대1 매칭(단 충남은 자체적으로 도비 추가 편성)

< 2023년도 통일+센터 건립 등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목	세목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330	01	전라남도	200	200	200	200	-	200	186	200	186	-	14	93
330	03	전라남도	300	300	300	300	-	300	299	300	299	-	1	99.8
330	03	강원도	-	-	812	812	2,210	3,022	3,022	812	812	-	-	-
330	03	충청남도	1,600	1,600	1,600	1,600	400	2,000	356	1,600	-	1,644	-	-
330	03	경기도	1,000	1,000	1,500	1,500	1,457	2,957	202	1,000	-	2,755	-	-

자료: 통일부

강원권 통일+센터(춘천)의 경우 2023년에 신규 편성된 국비 예산은 없었으나, 강원도 기준으로 전년도에 사업지연 등으로 통일부가 교부하지 아니한 8억 1,200만원을 교부받고 전년도 이월예산(22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2,200만원(국비)을 금년 상반기 준공을 예정으로 하여 집행 완료하였음.

현재 남은 공사는 지방비로 집행 중이며, 동절기 공사중단기간 발생 등으로 인해 일정이 계획보다 다소 지연(8월 준공 예정)되었지만, 통일+센터 개관은 당초 계획대로 2024년 10월 개관 예정임.

경기권 및 충청권 센터 역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경기권 통일+센터(의정부)의 경우, 2023년도에 전년도 이월액 14억 5,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9억 5,700만원 중 2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27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충청권 통일+센터(홍성)의 경우, 2023년도에 전년도 이월액 4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0억원 중 3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4,400만원을 이월하였음.

경기권 통일+센터의 경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가치 실현,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일정이 지연되었고, 공사입찰 과정에서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이 발생하는 등 공사계약 절차가 지연되었지만,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진행하여 2024년 1월 우선 시공분을 착공하였으며, 2024년 5월 본계약 체결을 통해 본공사로 전환되어 12월말 준공, 2025년 6월 개관 예정임.

< 통일+센터별 건립 추진 현황 등 >

연번	센터	당초 계획 ('21년 9월 기준)	2023년 12월말 기준	2024년 6월말 기준
시범	인천	인천 센터 2018년 9월부터 시범운영 중		
1	호남	호남센터(목포) 개관(2023년 9월)·운영 중		
2	강원	- (2021.3. ~ 8.) 건축기획 용역 - **(2021.9. ~ 11.)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 - (2021.11. ~ 2022.6.) 설계 - (2022.6. ~ 2023.9.) 공사	- (2021.10. ~ 12.)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 - (2022.1. ~ 2023.2.) 설계 - (2023.3. ~) 착공, 공사	**2024년 10월 개관 예정** - (~ 2024. 8.) 공사 완료 - (2024. 8~10.) 개관 준비
3	경기	- (2022.1. ~ 4.) 건축기획 용역 - **(2022.2. ~ 4.)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 - (2022.5. ~ 10.) 설계 - (2022.11. ~ 2024.6.) 공사	- (2022.1. ~ 5.) 건축기획 용역 - (2022. ~ 2023.2.)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 - (2023.5. ~ 12.) 설계	**2025년 6월 개관 예정** - (2024. 1. ~ 12.) 공사 *우선시공분 1월 착공, 본공사 5월 착공
4	충청	- (2022.1. ~ 4.) 건축기획 용역 - **(2022.3. ~ 5.)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 - (2022.5. ~ 12.) 설계 - (2023.1. ~ 2024.6.) 공사	- (2022.2. ~ 12.) 건축기획 용역 - (2022.3. ~ 12.)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 - (2023.1. ~) 설계공모 및 용역	**2025년 10월 개관 예정** - (~ 2024. 6.) 설계 - (2024.8. ~ 2025.10.) 공사

자료: 통일부

충청권 통일+센터의 경우에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심사' 절차를 거치는 등 공공건축물 건립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이 발생하였고, 설계용역 중 공사비 정밀 계산에 따라 건립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립계획 조정 검토를 위한 절차와 설계용역 재반영에 시일이 소요되었으나, 통일부는 금년 6월 중 설계가 완료되고 7월 공사 발주, 8월 착공 및 2025년 10월 개관 예정으로 추가적인 지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통일부는 균형 있는 통일행정 서비스의 제공, 지역사회 통일 거점의 확보

및 통일미래 역량 강화, 통일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통일+센터 건립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당초 계획에 없던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사업의 신규 추진

내역사업인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사업의 경우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변경 집행을 통해 일반용역비(210-14) 1억원을 조성[146] 하여 신설한 사업으로,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탈북민 토크콘서트)’ 용역 관련 비용으로 8,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0	0	-	100	100	80	-	20	1,226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연두업무보고(’23.1.27.) 시 대통령의 지시(‘우리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에 따라, 2023년 9월 통일인식확산팀을 신설하고 대통령 지시사항의 연내 이행을 위해 동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권역별로 전국의 5개 도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 없는’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개최 횟수를 최소화하고 기존사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소요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설명함.

146) 통일정책추진(1031-300)의 일반용역비(210-14)에서 5,500만원, 국제통일기반조성(1031-302)의 일반수용비(210-01)에서 4,500만원을 각각 내역변경(2023. 8.29.)하여 1억원을 조성함.

< 2023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행사 개최 >

날짜	장소	강연자	내 용	참석자	세부내역
9.20	서울	정○○(방송인), 정○○(대학생)	▪ 젊은 탈북민들이 말하는 생생한 북한의 실상	장마당 세대, 청중 100여 명	용역사업비 (210-14) 80백만원 * 무대 설치, 행사운영비, 홍보비 등
10.6	부산	조○○(영화감독), 박○○(영화감독)	▪ 탈북민 출신 영화인들의 북한인권 이야기 ▪ 부산국제영화제, 동네방네비프 협업(인권영화'타인의 삶'상영)	지역주민 50여 명	
11.3	대전	정○○(방송인), 정○○(대학생)	▪ 장마당 세대와 청년세대가 함께하는 책에 없는 북한이야기	민주평통 대전 청년자문위원 등 100여 명	
11.25	목포	김○○(한의사)	▪ 북한 의료인이 겪은 무상의료제도의 허상	지역주민 70여 명	
12.6	춘천	강○○(통일전담 교육사), 엄○○(통일교육원 교수)	▪ 북한 무상교육의 실태와 사교육 현실 등	지역주민, 대학생 등 70여 명	

자료: 통일부

그러나 내역변경 통해 사업을 추진할 정도의 긴급성에 대해서는 의문시되는 바,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통일인식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충실한 계획을 통해 정규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고 국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적정한 규모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봄.[147]

147)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토크콘서트 확대(17회) 추진을 위해 2024년도에는 3억 3,000만원을 정규예산에 편성하였음.

3) 국제통일기반조성(1031-302)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1억 1,600만원 중 27억 2,100만원이 집행되었고, 3억 9,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161	3,161	-	△45	3,116	2,721	395	86.1	87.3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주요국 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 강화'에 4억 1,800만원,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에 15억 5,400만원,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에 7억 4,9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3년도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국제통일기반조성	3,161	3,161	△45	3,116	2,721	395
· 주요국 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 강화	431	431	-	428	418	10
·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1,860	1,860	△45	1,818	1,554	264
·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870	870	-	870	749	121

자료: 통일부

□ 적정 예산과목 편성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2023년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는 재외동포 통일공감대 형성에 1,200만원, 대북정책 설명에 7,400만원, 국제회의 및 통일공공외교 활동에 2억 5,100만원 등 총 3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국내통일 기반조성(1031-301)의 ‘2023 방방곡곡 北스토리’ 사업 용역(210-14)을 위해 4,500만원을 내역변경하고, 국제사회통일공감대 사업 관련 임차료 충당에 2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예산현액은 2억 9,000만원임.

이 중 1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000만원을 불용함.

< 2023년도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사업, 일반수용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337	337	-	△47	290	140	-	150	149

자료: 통일부

일반수용비 불용의 주요 내용은 ‘국제회의 및 통일 공공외교 활동’ 내 ‘해외여론주도층 활동 지원’에서 1,800만원, ‘2030세대 통일공공외교 활동 지원’에서 1억 3,200만원임.

당초 2023년 통일부의 사업예산 편성시 국외업무여비(220-02)와 업무추진비(240-01)를 포함하여 기재부에 제출하였으나, 예산 협의 과정에서 해당 과목들이 제외되고 일반수용비(210-01) 2억 3,500만원과 국내여비(220-01) 1,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음.

사업의 취지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회의 참가, 글로벌 캠페인 개최·참여, 현장견학 워크숍 등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고 이에 필요한 국외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함께 편성되었어야 했지만,

정부 제출 예산안에 해당 예산과목들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일반수용비가 불가피하게 불용되었다는 설명임.

통일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148]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적정 예산과목을 반영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48) 통일부는 2024년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과목(일반용역비)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인 바, 낙찰차액 외에는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임.

3. 북한정세분석(1500 프로그램)

가. 개 요

‘북한정세분석’ 프로그램(1500)은 북한정세분석 체계구축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적시성과 실효성 있는 정세분석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일·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역량 강화’, ‘북한자료센터 운영’ 등 2개의 단위사업과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정세분석 역량 강화, 북한자료센터 운영, 통일정보자료센터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도 북한정세분석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13,928	16,228	16,228	18,964	12,203	13,998
□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 (1533 단위사업)	10,513	4,274	4,274	6,681	5,900	4,159
○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302)	376	360	360	360	348	-
○ 정세분석 역량 강화(307)	1,415	1,846	1,846	1,846	1,764	2,282
○ 북한 종합 DB 운영(정보화)(501)	532	-	-	-	-	-
○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502)	8,190	2,068	2,068	4,475	3,789	1,877
□ 북한자료센터 운영(1535 단위사업)	3,416	11,954	11,954	12,284	6,303	9,839
○ 북한자료센터 운영(308)	641	1,307	1,307	1,307	1,281	1,011
○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310)	2,774	10,647	10,647	10,977	5,022	8,828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1533-302)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표준화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경제활동·주민생활·주민의식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며 공개 보고서 발간 등 조사 정보를 활용하는 연구용역 사업임.

<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 내용 >

과업	내용
공개용 보고서 발간	- 탈북민 대상 2013~2022년 실시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발간
파일럿 설문 조사	- 기존 설문문항 개편 및 관련 파일럿 설문조사 실시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3억 6,000만원으로, 이 중 96.7%인 3억 4,800만원이 집행되고, 낙찰차액 900만원, 집행잔액 300만원 등 1,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60	360	-	-	360	348	12	96.7	96.7

자료: 통일부

예산 집행 상세내역을 보면 조사 수행을 위한 인건비 1억 3,500만원, 면접 사례비·조사원 수당·면접수집활동비 등의 경비 1억 5,100만원 등이 집행됨.

< 2023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비목(세목코드)	예산편성내역(연구비 산출근거 포함)		세부집행내역	
	내 용	금액	내 용	금액
일반수용비(210-01)	자문·평가사례비, 회의준비비 등	11	자문·평가사례비, 회의준비비 등	9.8
국내여비(220-01)	면접수행 및 업무협의	1.8	면접수행 및 업무협의	0.1
사업추진비(240-01)	업무협의 등 간담회비	3.2	업무협의 등 간담회비	3.2
일반연구비(260-01)	북한 심층정보 수집 용역비	344	북한 심층정보 수집 용역비	335
	인건비(연구팀·조사팀)	170	인건비(연구팀·조사팀)	135
	경비(여비, 조사사례비, 전산처리비 등)	119	경비(여비, 조사사례비, 전산처리비 등)	151
	기타(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 등)	55	기타(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 등)	49
합 계		360		348

자료: 통일부

2) 정세분석 역량 강화(1533-307)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은 국내외 북한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공개정보관리실(舊 북한공개정보센터) 및 정보상황실 운영, 북한 관련 정보의 체계적 수집·정리·분석 등을 통해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8억 4,600만원 중 95.6%인 17억 6,400만원이 집행되고, 낙찰차액 900만원, 집행잔액 7,300만원 등 8,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846	1,846	-	±18	1,846	1,764	82	95.6	95.6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는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 ‘공개정보관리실 운영’, ‘정보상황실 운영’, ‘위성정보센터 운영’, ‘통일·북한연구 신진학자 양성’,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 사업이 있음.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에 1억원, ‘공개정보관리실 운영’에 3억 300만원, ‘정보상황실 운영’에 8억 9,200만원, ‘위성정보센터 운영’에 7,200만원, ‘통일·북한연구 신진학자 양성’에 8,000만원,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에 3억 1,6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3년도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정세분석 역량 강화	1,846	1,846	±18	1,846	1,764	82
·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	133	133	-	133	100	33
· 공개정보관리실 운영 (舊 북한공개정보센터)	290	290	+14.5	290	303	2
· 정보상황실 운영	919	919	△17.7 +1.7	919	892	10
· 위성정보센터 운영	74	74	+1.5	74	72	3
· 통일·북한연구 신진학자 양성	80	80	-	80	80	-
·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	350	350	-	350	316	34

자료: 통일부

3)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1533-502)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사업은 북한정보 자료수집 확대 및 정보제공의 다양성 필요에 따라 1차 사업은 내부 분석시스템 구축, 2차 사업은 내부 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대국민포털 개편사업으로 진행됨. 내부적으로 북한정보 관련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체계를 구축하며, 「북한정보포털」개편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북한정보서비스를 확충함. 2023년도에는 본예산(유지관리) 20억 6,800만원 및 이월액(구축) 24억 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44억 7,500만원이었으며, 4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8,600만원이 불용됨.

< 2023년도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068	2,068	2,407	-	4,475	3,789	-	686	183.2	84.7

자료: 통일부

2023년 주요 사업추진 내용은 △북한정보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고도화 △북한정보포털 개편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등임.

< 2023년 예산안 상세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안 상세 편성내역	비목	상세 집행내역	불용액
① AI·빅데이터 구축(이월) : 2,407 - 인프라 증설 - 인공지능 모델 개발 - AI·빅데이터 기반 대국민 포털 구축 - 빅데이터 정비·관리	자산취득비 (430-01) 일반연구비 (260-01) 관리용역비 (210-15)	2,407	-
② AI·빅데이터 유지관리 : 1,964 - 분석시스템·북한정보포털 유지관리	관리용역비 (210-15)	1,284	680
③ 기타운영(감리비 등 기타) : 104 - 국내 데이터 거버넌스 등 : 104 * 각종 수수료(조달수수료 등) 92백만원 * 업무추진비 12백만원	일반수용비 (210-01) 사업추진비 (240-01)	98	6
합 계		3,789	686

자료: 통일부

4) 북한자료센터 운영(1535-308)

북한자료센터 운영사업은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축적·관리하여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북한정세분석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3억 700만원 중 98.0%인 12억 8,1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및 사업 낙찰차액 2,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북한자료센터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307	1,307	-	±8	1,307	1,281	26	98.0	98.0

자료: 통일부

2023년 주요 사업추진 내용은 북한자료 디지털화, 파본 북한자료 복원·수리, 통일·북한 관련 원문 DB 구축 등이 있고, 센터 소장 도서·영상 등 자료 지원과 센터 내 견학 및 촬영 지원을 추진하였음.

< 2023년도 북한자료센터 운영 사업 추진 실적 >

사업 내용	추진 실적
북한자료 디지털화 사업	'조선신보' 등 마이크로필름자료 12,181점 393,272면
파본 북한자료 복원 및 수리 사업	'봇나무' 등 69권 5,702면
통일 및 북한관련 원문 DB 구축 및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통일부 발행도서 10종 2,509면 DB화
북한 전자자료 구입 사업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등 전자자료 5,389점

자료: 통일부

5)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1535-310)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서초)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북한자료센터를 확대·개편하기 위하여 직접 센터를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00억 6,470만원 중 47.1%인 50억 2,200만원이 집행되었고, 고양시의 부지변경 요청('23.11)으로 공사 일정이 순연('24.12월 착공 예정)되면서 59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0,647	10,647	330	-	10,977	5,022	-	5,955	47.1	45.7

자료: 통일부

□ 부지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면밀한 사업추진 필요

동 사업은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을 통해 현재 공간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던 “북한자료센터”를 확대·개편하고, 통일·북한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9억원, 부지 6,600㎡(약 2,000평), 건축연면적 8,463㎡(약 2,560평) 규모로 고양시에 부지를 선정하여 2023년도에는 착공 및 공사를 시작하고 2025년도 말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음.

< 기존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계획 >

항목	주요 내용	비고
주요기능	△통일·북한도서관으로서의 핵심기능 강화(전문·대표도서관) △북한자료 디지털화 및 대국민 이용편의 제고(디지털도서관) △통일사료의 체계적 수집·보관·전시(통일사료관) - 주요시설 : 보존서고, 어린이열람실, 일반열람실, 북한·특수 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연구공간, 강의실, 세미나실, 사무공간, 강당, 전시관 등	
건립규모	△부지 6,600㎡(약 2,000평), △건축연면적 8,463㎡(2,557평) - 지하1·지상3층	
총사업비	△489억(보상비 201억, 공사비 252억, 설계비 11억, 감리비 25억, 부대비 0.6억)	

<사업 집행절차 및 일정>

신축 계획 협의 (부지 관할 지자체) ('21. 1 ~ 12)	→ 기재부 예산 협의 (총사업비 관리 등) ('21. 2∽12)	→ 부지 계약 및 매입 ('22. 9.)
		↓
개관 준비 ('25년말)	← 공사 조달 발주·계약 / 착공·공사 ('23. 10. / '23. 11. ∽ '25.)	← 기본 및 실시설계 ('22. 9. ∽ '23. 9.)

자료: 통일부

<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조감도 >



자료: 통일부

그러나, 고양시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세차례의 부지변경 요청('22.9월/'23.6월/'23.11월)에 따라 고양시와 부지변경 계약을 체결('24.5.24)하였고 부득이 착공 등 사업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음.

부지변경 요청 사유로는 첫째, 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에 인접한 곳이 국토교통부 사업인 K-UAM 수도권 2단계 실증노선 및 버티포트 구축지역[149]으로 최종 확정('23. 5월) 됨에 따라 인접 부지개발에 따른 소음과 안전문제 발생우려를 제기하였고, 둘째, 해당 부지에 고양시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계약한 부지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이에 따른 착공 진행 불가에 따른 설계 중지로 설계비 기성금 잔액 5,000만원, 공사비 등 59억 500만원, 총 59억 5,500백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149)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K-UAM: Urban AIr Mobility)은 헬기처럼 수직으로 이륙과 착륙이 가능한 비행체이고, 정해진 이착륙장을 버티포트(vertiport)라고 함. 국토교통부는 '23년에 K-UAM 1단계 비도심 개활지 실증을 시작으로, '24년에는 2단계 도심 실증에 착수할 계획임.

<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기능·비목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 통일정보자료 센터 건립	10,647	10,647	330	-	10,977	5,022	10,647	4,742	-	5,955	8,828
- 건설보상비 (410-00)	4,742	4,742	-	-	4,742	4,742	4,742	4,742	-	-	4,662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109	-	109	109	-	-	-	-	-
- 실시설계비 (420-02)	-	-	221	-	221	171	-	-	-	50	-
- 공사비 (420-03)	5,445	5,445	-	-	5,445	-	5,445	-	-	5,445	3,776
- 감리비 (420-04)	435	435	-	-	435	-	435	-	-	435	373
- 시설부대비 (420-05)	25	25	-	-	25	-	25	-	-	25	17
합 계	10,647	10,647	330		10,977	5,022	10,647	4,742	-	5,955	8,828

자료: 통일부

현재 통일부는 2024년 내에 착공 및 공사가 시작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지연된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계획을 조정하였음.

< 조정 후 사업계획 변경 주요내용 >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건립위치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707-1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706	부지 변경계약 체결 (24.5.24)
부지대금	186억원	162억 9,673만원	
건립규모	△부지: 6,600㎡(약 2,000평) △건축연면적: 8,463㎡(2,557평) - 지하1·지상3층	△부지: 4,120㎡(1,246평) △건축연면적: 8,463㎡(2,557평) - 지하1·지상3층	
총사업비	△489억 - 보상비 201억 - 공사비 252억 - 설계비 11억 - 감리비 25억 - 부대비 0.6억	△474억 - 보상비 177억 - 공사비 252억 - 설계비 19억 - 감리비 25억 - 부대비 0.6억	설계비 증액분 7.9억 고양시 부담
사업일정	△착공 '23.11. △준공 '25.10. △개관 '25.말	△착공 '24.12. △준공 '26.11. △개관 '27.상반기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부지변경에 따라 사업 지연이 발생한 것이 계약 상대방인 고양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향후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고 변경된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인도적 문제해결(2100 프로그램)

가. 개 요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은 이산가족, 납북피해자 문제, 북한인권개선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 및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등 총 3개의 단위사업과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등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도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3,798	6,735	6,735	6,735	6,048	10,254
□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2133 단위사업)	1,018	1,181	1,181	1,181	1,125	1,326
○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302)	414	422	422	422	412	504
○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306)	235	323	323	323	311	406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 (정보화)(505)	369	436	436	436	402	416
□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2135 단위사업)	1,337	4,081	4,081	4,081	3,520	7,509
○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302)	333	2,484	2,484	2,442	2,407	5,794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303)	602	722	722	764	717	860
○ 북한인권재단 운영(304)	0	475	475	475	0	475
○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501)	402	400	400	400	397	380
□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2137 단위사업)	1,443	1,473	1,473	1,473	1,402	1,419
○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301)	1,443	1,473	1,473	1,473	1,402	1,419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2133-302)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 사업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이산가족 초청 위로행사를 운영하고,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및 홍보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4억 2,200만원 중 4억1,200만원이 집행되고, 1,0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22	422	-	±18	422	412	10	97.6	97.6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로는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지원에 8,200만원, 이산가족 초청행사 및 지원 사업에 3억 3,0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3년도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	422	422	±18	422	412	10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지원	100	100	-18	82	82	-
· 이산가족 초청행사 및 위로사업	322	322	18	340	330	10

자료: 통일부

2)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2133-306)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고 납북피해자의 복지향상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액 4억 6,000만원 중 2억 3,500만원이 집행(집행률 51.1%) 되었고, 2023년도 예산액 3억 2,300만원 중 3억 1,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3%) 되었으며, 1,2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23	323	-	-	323	311	12	96.3	96.3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 1억 8,500만원,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1억 1,300만원(납북자보상심의위 운영 등 지원 9,800만원,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 용역 1,500만원),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에 1,3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3년도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323	323	-	323	311	12
·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	185	185	-	185	185	-
·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119	119	-	119	113	6
·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19	19	-	19	13	6

자료: 통일부

□ 억류자에 대한 정의 등 관련자 보상을 위한 법률 보완 필요

통일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후납북자법')에 근거하여 2023년에 '납북피해자' 위로금 지급을 위한 기타 보전금(310-04)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고 이 중 8,900만원을 집행함.

< 2023년도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내내역사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타 보전금(310-04)	95	95	-	95	89	6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은 납북피해자(「전후납북자법」에 따른 납북자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150]에게 정착금, 피해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법률상 납북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의미함.

북한에 현재 억류 중인 사람들 중에는, 입북(入北) 이후 구금, 체포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류 중인 사람들이 있고, 통일부는 이를 실무적으로 "억류자"로 분류하였음.

---

150) 「전후납북자법」에 따르면,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이고,
- "귀환납북자"란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귀환한 납북자(다만, 남한으로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처벌 받은 자를 제외)"이며,
- "납북피해자"란 "①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② 3년 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과 ①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 ③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통일부는 1953년 7월 휴전협정 체결 이후 총 3,835명이 납북되었고 이 중 3,319명(86.5%)이 귀환하여 현재 북한 내 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66건을 접수하여 그 중 443건을 인정하여 피해위로금 등을 지급하였음.[151]

< 전후납북자법에 따른 납북피해자 현황 >

(단위: 명)

구 분		계	어부	KAL기	군·경	기타	
						국내	해외
피납자		3,835	3,729	50	30	6	20
귀환자	송환자	3,310	3,263	39	-	-	8
	탈북귀환자	9	9				
미귀환자(억류자)		516	457	11	30	6	12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억류자'도 「전후납북자법」에 따른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2023년 11월 2일(제58차), 21일~22일(제59차, 서면) 「전후납북자법」에 따른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종전까지 억류자로 분류되던 김정욱 선교사 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그 가족에게 피해위로금을 지급하였음.

통일부는 북한 당국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는 점에서 '납북자'와 '억류자'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

151) 『2024 북한인권보고서』 p. 29.

려는 「전후납북자법」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억류자도 납북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결과 >

구분	성명 (생년)	억류시기	혐의 (北주장)	北 재판결과	가족	피해위로금주
제58차 (4명)	김정욱 (64년생)	'13.10.~	정보원 첩자	무기노동교화형 ('14.5.30.)	아내, 아들 2명	총 89,284천원
	김국기 (54년생)	'14.10.~	정보원 첩자	무기노동교화형 ('15.6.23.)	아내	
	탈북민 김ㅇㅇ	'16. 3.~	-	-	재남 가족 (딸, 손녀2)	
	탈북민 박ㅇㅇ	'16. 3.~	-	-	재남 가족 (母)	
제59차 (1명)	최춘길 (59년생)	'14.12.~	정보원 첩자	무기노동교화형 ('15.6.23.)	아들	

자료: 통일부(개인별 지급한 피해위로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한편, 국군포로[152]와 납북자에 대한 지원은 각각 개별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지만, 억류자[153]에 대한 지원은 '억류자가 납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함.[154]

따라서 통일부는 앞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억류자를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 등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억류자'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152) 국방부 소관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군포로송환법')

153) 2013년 이후 현재 6명.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하여 여섯 명을 장기간 강제 억류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오던 우리 국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채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음.

154) 억류자가 발생한 원인 자체가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현실에 기인한다는 측면에서, 「전후납북자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경우 억류자 및 그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보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3)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2133-505)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 사업은 이산가족 교류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4억 3,600만원 중 4억 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2%)되었고, 3,4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36	436	-	-	436	402	34	92.2	92.2

자료: 통일부

4)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사업은 북한인권 정책 수립·추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국제사회 논의를 지원하고, 북한인권 실상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24억 8,400만원이고, 예산현액 24억 4,200만원 중 98.6%인 24억 700만원이 집행되었고, 3,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484	2,484	-	△42	2,442	2,407	35	96.9	98.6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로 '북한인권 개선 정책기획 조정' 사업에 4,000만원,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사업에 2억 6,800만원,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사업에 9,900만원,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에 20억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484	2,484	△42	2,442	2,407	35
· 북한인권 개선 정책 기획 조정	55	55	△13	41	40	1
·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323	323	△28	296	268	28
·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105	105	△1	105	99	6
·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2,000	2,000	-	2,000	2,000	-

자료: 통일부

□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집행 관리 필요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은 북한인권의 실상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북한인권 참고자료 개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환기 등 인식 조성을 위해 익숙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사업으로,

2023년도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9,9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105	105		105	99	6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북한인권영화 다시 보기: 진실을 비추다’ (9.13.~15.) 사업을 추진하였음.

당초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사업에는 임차료(210-07)가 편성되지 않았지만, 동일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 간 조정을 통해 총 800만원을 조성하고 ‘북한인권영화 다시보기’를 위한 장소 임차료로 집행하였음.

콘텐츠 개발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계획에도 없던 ‘북한영화 상영’을 위

한 장소를 임차하기 위한 임차료로 집행하였는 바, 상업성이 없는 영화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영화상영 장소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통일부는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 조정을 최소화하고 집행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리 강화 필요

‘북한인권 증진 활동 지원’은 북한인권의 증진을 위한 인력양성, 문화행사, 공론화 등의 시민사회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20억원을 편성하고 공모를 통하여 18개 민간단체(상반기 15개, 하반기 3개)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 2023년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320-01)	2,000	2,000		2,000	2,000	-

자료: 통일부

< 2023년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민간단체 공모현황 >

구 분	신청 단체 수	총 신청액	비고
상반기	36개	42억원	15개 단체 선정, 총 18.6억 원 교부
하반기	16개	9.8억원	3개 단체 선정, 총 1.4억 원 교부

자료: 통일부

< 2023년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선정 보조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보조기관명	교부액	집행액	잔액	사업평가
1	(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	120	119	1	미흡
2	(재)국제학술원	150	150	-	
3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92	76	16	미흡
4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28	27	1	

구분	보조기관명	교부액	집행액	잔액	사업평가
5	(사)북한인권	103	101	2	
6	북한인권개선과 자유 통일을 위한 모임	26	25	1	
7	(재)북한인권과 민주화실천운동연합	154	154	-	
8	(사)북한인권시민연합	250	249	1	
9	(사)북한인권정보센터	235	230	5	
10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183	183	-	
11	(사)세이브엔케이	139	139	-	
12	자유와인권을위한탈북민연대	88	88	-	
13	통일맘연합회	30	30	-	
14	(사)통일아카데미	50	44	6	
15	평화한국	150	137	13	
16	(사)프리덤스피커즈인터내셔널	47	46	1	
17	피스브릿지	78	74	4	미흡
18	(사)휴먼아시아	77	62	15	
합 계		**2,000**	**1,934**	**66**	

자료: 통일부

2023년 신규사업인 동 사업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평가용역'을 진행하였음.

보조금사업 참여단체의 개별 사업 및 지원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환류, 민간단체 대상 교육·컨설팅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이 용역에서 대면·실사평가를 통해 사업평가(기본역량, 사업과정, 사업성과) 및 회계평가를 진행(최종평가 총 200점, 사업평가 100점, 회계평가 100점)하였음.

18개 보조금 단체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 ㈜과거청산통합연구원, 피스브릿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3개 단체는 '미흡'으로 평가되었으며, 교부액의 일부액(9~20%)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단체도 일부 발견됨.

< 2023년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 미흡 평가 >

수행기관명	사업평가[1)]	회계평가[2)]
(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	54.28(18위)	80.00(7위)
피스브릿지	56.32(17위)	80.00(6위)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61.00(15위)	70.00(18위)

자료: 통일부
주1) 사업평가: 기본역량, 사업과정 및 사업성과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
주2) 회계평가: 회계관리를 계량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산출

통일부는 2023년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평가용역' 결과가 '미흡'으로 평가된 보조기관(단체) 및 교부액의 일부액을 집행하지 못한 보조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분석하고, 향후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조기관(단체)에 대한 사전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155)]

155) 통일부는 사업의 평가결과는 차년도 보조금 공모사업 선정시 감점요소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함.

5)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2135-303)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은 「북한인권법」 제13조[156]에 따라 북한주민의 전반적인 인권실태 및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기록하고,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수집·연구·보존·발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7억 2,200만원이고 예산현액 7억 6,400만원 중 93.8%인 7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고 4,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722	722	-	±42	764	716	47	99.3	93.8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5억5,800만원,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사업에 4,200만원, '조사결과 활용' 사업에 1억1,7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722	722	42	764	717	47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633	633	±33	602	558	44
·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43	43	△1	44	42	2
· 조사결과 활용	44	44	+74	118	117	1

자료: 통일부

156) 「북한인권법」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기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계획에 없던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위한 전용 등 부적절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위한 예산이 2023년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전용 및 세목조정 등을 통해 총 1억 4,100만원을 집행함.

<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비용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발간비	감수비 번역비 포함	발송비	소계	총계
국문판 (3.30 발간)	44	8	7	59	141
영문판 (7.7 발간)	51	21	10	82	

자료: 통일부

당초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2135-303)의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을 위한 예산(4,400만원) 중 자료 발간을 위한 일반수용비(210-01)는 2,0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2135-302)의 일반수용비에서 4,200만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의 국내여비, 일반연구비에서 2,250만원, ‘북한인권기록 운영’ 및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일반수용비에서 각각 3,500만원과 2100만원 등 총 1억 2,100만원을 마련하였음.

<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위한 전용 등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3.5.2.)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	210-01	42	북한인권기록 센터 운영 (2135-303)	210-01	2023북한인권보고서 발간비
전용 ('23.6.28.)	북한인권기록 센터 운영 (2135-303)	220-01	12.5	북한인권기록 센터 운영 (2135-303)	210-01	2023북한인권보고서 발간비
		260-01	10			
내역 사업간 조정	북한인권기록 센터 운영 (2135-303) 북한인권기록 운영	210-01	35.5	북한인권기록 센터 운영 (2135-303)	210-01	2023북한인권보고서 발간비
	북한인권기록 센터 운영 (2135-303) 조사수집 및 문헌조사	210-01	21	조사결과 활용		

자료: 통일부

이 외 총액인건비 비대상 북한인권기록센터 기본경비(7018-264)에서도 인권보고서 추가 인쇄를 위해 2,541만원을 집행한 바 있음.[157]

또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동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하여 북한인권알리기 토크콘서트(5.10), 독일 설명회(5.29.-6.2.), 주한 외국공관 대상 설명회 2회(10.19, 12.19) 등 『북한인권보고서』 홍보사업을 위해 2,242만원을 집행함.

157) 7011-257(인도협력국 기본경비) → 7018-264(센터 기본경비): 2,500만원 전용 등 포함

< 북한인권 실태 설명회 등 세부 집행내역 >

(단위: 천원)

행사명	집행액(예산과목별)	
북한인권알리기 토크콘서트(5.10.)	국내여비(220-01)	40
「2023북한인권보고서」 설명회 (독일, 5.29~6.2.)	임차료(210-07)	800
	국외여비(220-02)	14,111
	사업추진비(240-01)	1,906
	소계	16,817
주한 외국공관 대상 북한인권 실태 설명회 개최(1차 10.19)	일반수용비(210-01)	330
	국내여비(220-01)	70
	사업추진비(240-01)	207
	소계	607
주한 외국공관 대상 북한인권 실태 설명회 개최(2차 12.19)	일반수용비(210-01)	4,123
	국내여비(220-01)	116
	사업추진비(240-01)	715
	소계	4,954
합 계		**22,418**

자료: 통일부

통일부의 사업추진 경과 설명자료 중 통일부장관의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2022. 8.17.)에서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가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바,[158] 2023년도 예산안에 동 사업을 반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

158) **< 통일부의 사업추진 경과 설명자료 >**

구 분	내 용
발간 목적	o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실태를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함. - 그간 국회에 북한인권 관련 보고해 왔으나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추진 경과	o 통일부장관,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표명('22.8.17, 동아일보 인터뷰) * "북한 인권관련 여러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그 해의 북한인권 상황을 인권백서 형식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 o 「(가칭)북한인권현황」 추진 방향 '북한인권정책협의회' 보고('22.8월) o 「2023 북한인권보고서」 기초 자료 정리 및 초안 작성 o 전문가 감수·자문 * △북한인권 전문가 △탈북민 출신 전문가 △법률 전문가 감수 o 유관기관(법무부·외교부)·북한인권증진위원 대상 의견조회 실시 및 공개·발간 o 발간 계기 내신기자단 테마브리핑(3.30), 외신기자단 간담회(4.10) 등 실시
편집 방향	o 일반 국민들이 북한인권 실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태' 중심으로 기술 o '최근' 북한인권 상황을 중심으로 작성('17년~'22년) o '균형된' 시각으로, 권리별 실태를 '객관적'으로 기술
자료 출처	o '17년~'22년 사이 북한인권 실상에 관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진술 * '17년~'22년간 3,412명 조사

됨.

동 사업은 국회의 예산 심사 및 승인을 거치지 않은 사업에 과도한 전용 등을 통해 추진한 측면이 있음.

통일부는 향후 세사업 추진에 있어서 과다한 전용 등 변경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충실한 사업 계획을 통해 필요한 사업비를 정규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6) 북한인권재단 운영(2135-304)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남북 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3년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75	475	-	-	475	-	475	-	-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은 2023년도 예산 4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지연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 예산 세부 편성내역 및 합계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재단 사무실 설치	▪ 설치공사비(인테리어, 전기·소방·설비 등) 365 ▪ 설계 및 감리·부대비 10	375	-	-
사무실 임대·관리비	▪ 2개월분 사무실 임대·관리비 100	100	-	-
합계		475	-	-

자료: 통일부

□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 필요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3월 3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159]에 근거, 법 시행일에 맞추어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법 제12조[160]에 따른 재단 이사 구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5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9	800	800	-	800	-	-	-	800
2020	500	475	-	475	-	-	-	475
2021	475	475	-	475	-	-	-	475
2022	475	475	-	475	-	-	-	475
2023	475	475	-	475	-	-	-	475

자료: 통일부

159) 「북한인권법」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1.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나.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2.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160) 「북한인권법」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에 따라 출범예정 연도인 2016년도 예비비 46억 7,600만원, 2017년도 117억 5,500만원, 2018년도 108억 5,800만원, 2019년 8억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각각 4억 7,500만원 등의 예산액(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되었음.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목적은 북한인권 실태조사,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등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

따라서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어 예산 집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출범 후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161]

161) 참고로,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하여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이사 추천 협조 요청 공문을 총 13차례 발송한 바 있으며, 「북한인권법」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에 따라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할 경우 재단 출범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임.

< 재단 이사추천 관련 통일부 공문발송(총 13회) >
2016년 4회(8.11, 10.5, 11.4, 12.15), 2017년 1회(8.24) 2018년 3회(3.2, 4.19, 11.9), 2019년 1회(8.28), 2020년 1회(3.27), 2022년 1회(7.25), 2023년 1회(8.30.), 2024년 1회(7.31.).

7)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2135-501)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각종 정보 및 북한인권 침해 사건을 기록·보존하기 위해 DB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북한인권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4억원 중 99.3%인 3억 97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낙찰차액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00	400	-	-	400	397	3	99.3	99.3

자료: 통일부

8)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2137-301)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사업은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0. 9. 27. 시행)에 근거하여 6.25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납북피해자에 대한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 14억 7,300만원 중 14억 200만원이 집행되고, 7,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473	1,473	-	-	1,473	1,402	71	95.2	95.2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전시납북자 가족단체 지원에 1억원, 기념관 운영에 13억 2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2023년도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1,473	1,473	-	1,473	1,402	71
· 전시납북자 가족단체 지원	100	100	-	100	100	-
· 기념관 운영	1,373	1,373	-	1,373	1,302	71

자료: 통일부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2300 프로그램)

가. 개 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교육 강화, 자립·자활 기반 확충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정착 및 행정지원 등 2개의 단위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73,473	88,372	88,372	88,372	74,960	83,897
□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2331 단위사업)	53,183	54,537	54,537	54,767	54,140	52,838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300)	15,760	16,322	16,322	16,552	15,930	15,987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302)	36,913	37,061	37,061	37,061	37,061	36,273
○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500)	510	1,154	1,154	1,154	1,149	578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2337 단위사업)	20,290	33,835	33,835	33,605	20,820	31,059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301)	10,268	20,981	20,981	20,981	10,086	18,757
○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302)	10,022	12,854	12,854	12,624	10,734	12,302

자료: 통일부

2023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집행액은 749억 6,000만원으로, 2023년 통일부 일반회계에서 회계기금간거래 전출금 572억원을 제외한 집행액 1,990억 4,700만원의 37.6%에 해당하는 금액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사용되고 있음.

각 세부사업별 결산 지출액 비중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49.4%,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1.3%,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13.4%,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4.3%,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이 1.5% 순이며, 대부분의 예산이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등으로 집행되고 있음.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정부·지자체·민간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체계적인 정착지원 제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63억 2,200만원 중 97.6%인 159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6,322	16,322	-	230	16,552	15,930	622	97.6	96.2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에 3억 7,400만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에 45억 6,000만원,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에 33억 2,400만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5억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71억 2,800만원,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에 1억 4,4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6,322	16,322	230	16,552	15,930	622
·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	167	167	230	397	374	23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	4,827	4,827	-	4,827	4,460	367
·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3,549	3,549	-	3,549	3,324	225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500	500	-	500	500	-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7,128	7,128	-	7,128	7,128	-
·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	151	151	-	151	144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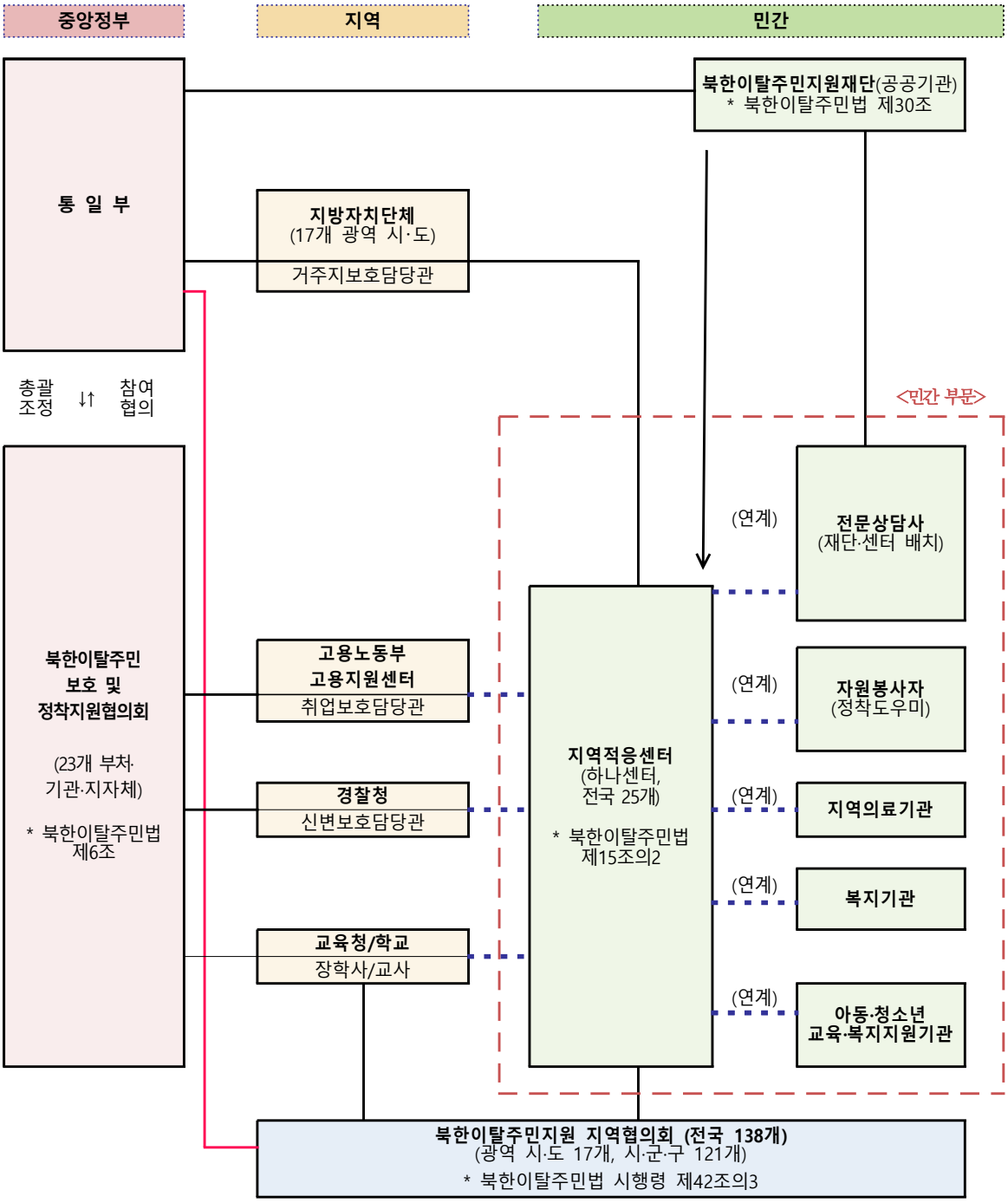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은 정부·지자체·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체계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지 차원[16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라 함)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지역 실정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 차원에서는 남북하나재단 및 지역적응센터가 지역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있음.

162) 거주지 차원에서는 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지역적응센터, 지역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구성도 >



자료: 통일부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함)에서는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12주간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에서는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최초로 거주지로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2주간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동안 통일부 및 남북하나재단을 비롯한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취업지원, 사회보장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게 됨.

<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주요 내용 >

구분	항목	내용
사회적응교육	기본교육(하나원)	• 하나원 12주 400시간 교육 * 연령대·성별 7개반 운영(영아, 유치, 초등, 청소년, 성인남성, 성인여성, 경로) * 우리사회 이해, 성평등·법정교육,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 등 5개 분야
	지역적응교육(지역적응센터)	• 전국 지역적응센터 8일, 50시간 초기집중교육 및 지역적응지원 * 지역사회 이해, 진로 및 취업지원, 사회적응, 정서안정 등
정착금	기본금	• 1인 세대 1,000만원, 2인 세대 1,600만원, 3인 세대 2,100만원, 4인 세대 2,600만원, 5인 세대 3,100만원, 6인 세대 3,600만원, 7인 세대 이상 4,100만원 * 초기지급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분기별 분할 지급
	지방거주 장려금	• 지방 2년 계속 거주 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 연령가산금(보호결정일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800만원 • 장애가산금 : 1,540만원(중증장애), 360만원ㅊ ※「장애인복지법」내 장애 등급 폐지('19.7.1. 시행)로 장애가산금 지원 금액 변경, 중증은 기존 1~3급, 경증은 기존 4~6급 •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시) : 1개월에 80만원(최대 9개월분까지 지급)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보호결정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 : 세대 당 400만원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 만 16세 미만 아동 1인당 450만원
주거	주택알선	• 영구·국민·다세대 임대주택 알선(2년간 임대차계약 해지불가,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변경불가)
	주거지원금	• 1인 세대 1,600만원, 2인~4인 세대 2,000만원, 5인 이상 2,300만원 * 보증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지급
취업*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취업 장려금	• 3년간 취업 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새출발장려금	• 기존 취업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절반 이하로 적게 받은 북한이탈주민 중 • 24.1.1. 이후 신규취업하여 6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200만원씩 지급(3번까지 신청가능)
	고용지원금(채용기업주에 지급)	• 임금의 1/2를 50만원 한도에서 기본 3년, 최대 4년간 지원 ※ 고용지원금은 20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 적용(24년 2분기 자연일몰예정)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적립목적 :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등 - 지원기간 :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 적용대상 :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 - 약정금액 : 소득의 30% 범위 내, 월 최대 50만원
	기타	• 취업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 취업지원 바우처
사회보장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 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 대학진학 희망 시 정원 외 특례입학
	학비 지원	•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상담	-	•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사후 지원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예산이 없던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의 전용을 통한 추진

통일부는 2023년 12월 총 2억 1,000만원의 비용을 집행하여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였는데, 동 사업은 관련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는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2337-302)’내의 일반수용비(210-01)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의 일반용역비, 일반수용비, 임차료로 전용하여 필요 예산을 마련하였음.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업 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3.11.03.)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2337-302)	210-01	200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210-14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개최
전용 (‘23.11.22.)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2337-302)	210-01	30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210-01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개최(210-01 15백, 210-07 15백)
					210-07	

자료: 통일부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업 집행 내역 >

세목	집행금액(원)	내역
210-14 (일반용역비)	30,046,500	일자리박람회 행사장 사용비
	109,999,000	홍보물 제작, 광고비, 인건비, 개막식 및 행사 운영경비
	55,000,000	전시부스 설치 및 장비 사용비
소계	**195,045,500**	
210-07 (임차료)	4,000,000	일자리박람회 참석인원 (서울, 경기) 수송경비
	1,595,000	일자리박람회 참석인원 (충청) 수송경비

세목	집행금액(원)	내역
	4,530,000	일자리박람회 참석인원 (경북, 경남) 수송경비
	99,000	일자리박람회 물품 이송 차량 임차비
소계	**10,224,000**	
210-01 (일반수용비)	1,000,000	일자리박람회 안내책자 인쇄 및 제본비
	358,400	일자리박람회 행사 물품 구입비
	165,000	일자리박람회 행사 진행 아나운서 경비
	1,250,000	정착 성공사례 발표자 사례비
	1,495,000	일자리박람회 현수막 설치 및 철거비(서울, 인천)
	528,000	일자리박람회 감사서한 발송비
소계	4,796,400	
합계	**210,065,900**	

자료: 통일부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참가인원 >

(단위: 명)

총 참가인원	개인 등록자	단체 참가자(755명)		미등록 참가자
		하나센터 등	대안학교 등	
1,248	293	478	277	200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동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였고, 과거에 비해 중견기업 공기업 등 질 높은 일자리 기업 참여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탈북민의 적극적 참여, 구직활동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동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한다면, 국회의 예산 심사 및 승인을 받아 2024년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2023년도 11월 말에 예산을 전용하여 12월에 사업을 집행한 것은 다소 급하게 사업이 추진된 측면이 있음.

통일부는 향후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사업과 같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회의 예산 심사 및 승인을 받지 않는 방식의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2)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2331-500)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별 맞춤형, 생애 주기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입국 시부터 초기 정착지원과 이후 거주지 정착지원 등 전 과정에 걸친 현황과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도에는 위기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속한 탐지 및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였음.

이에 따라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예산은 전년도 보다 시스템 구축비 6억 2,800만원 등이 증가한 11억 5,400만원이 되었고 이 중 99.6%인 11억 4,900만원이 집행되고, 낙찰차액인 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154	1,154	-	-	1,154	1,149	-	5	99.6	99.6

자료: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사업을 위한 성과평가 필요

통일부는 2023년도에 신규 세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에 7억 2,500만원을 집행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세부사업의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된 11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집행내역 >

세사업 명	예산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424백만원** - 북한이탈주민 종함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421백만원 - 기타 운영지원 : 3백만원(기술평가수당 2백만, 본인인증서비스 1백만)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725백만원** -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유지보수 (97백만) -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개선(615백만), 개선사업 감리(13백만)**

자료: 통일부

< 2020~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비비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실집행액				
2020	1,298	1,298	-	-	-	1,298	1,279	98.5	98.5	-	20
2021	324	324	-	-	-	324	324	69.1	69.1	-	7
2022	430	430	93	-	-	430	509	118.4	118.4	93	14
2023	1,154	1,154	-	-	-	1,154	1,149	99.6	99.6	-	5
2024	578	578	-	-	-	578	-	-	-	-	-

자료: 통일부

「전자정부법」 제68조제1항[163]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202-25호) 제4조[164]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시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추진실적 및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이에 통일부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인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대상에는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및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이 포함되어 성과관리를 하고 있음.

이와 별개로 「국가재정법」 제85조의6[165], 제85조의7[166] 및 기획재정부

163) 「전자정부법」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여러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추진실적 및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64)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 ① 사전협의 및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대상사업은 예산과목을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전자정부사업
가.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개선 등 정보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업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나. 여러 부처 연계 및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공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정보자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다.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정보화업무를 출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전자정부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당해연도에 신규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등은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2. 시,도는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3. 시,군,구는 사업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계속사업
4.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유지관리·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구매·임대·설치, 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콘텐츠 제작 사업

165)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정보화예산이 10억 이상인 경우 성과평가 수립 및 성과지표 관리가 필요한데,

통일부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사업에 관하여 2021년도 3억 2,400만원, 2022년도 5억 900만원을 집행하여 각각 10억원 미만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유지관리·운영 사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성과측정 및 성과관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2023년도에는 전체 1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였음에도 「국가재정법」 제85조의6, 제85조의7 및 기획재정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른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20~'24년도 성과예산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4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스템 운영 종합평가점수 (정보화)(점)	목표	96.7	-	-	-	-	-	해당년도의 전체 개선요청건수 대비 요청기한 내 개선완료 건수를 측정 종합평가점수 = (요청기한 내 개선완료 건수/총 개선요청건수) * 100점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내에 '시스템 개선요청방', 시스템 증적자료 작성
	실적	96.7	-	-	-	-			
	달성도	96.7	-	-	-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스템 만족도(정보화) (점)	목표	-	60	-	-	-	-	정착지원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점수 ('21년부터 변경)	설문조사
	실적	-	86	-	-	-			
	달성도	-	143.3	-	-	-			

자료: 통일부

166) 「국가재정법」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일부는 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사업을 성과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성과 달성도를 측정함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보화사업에 대해 임의적으로 성과관리를 제외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2337-301)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자활의지 제고를 위해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정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209억 8,100만원 가운데 48.1%인 100억 8,600만원이 집행되고, 108억 9,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0,981	20,981	-	-	20,981	10,086	10,895	48.1	48.1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로는 주거지원금 38억 6,600만원, 정착장려금 47억 3,300만원으로 주로 집행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20,981	20,981	-	20,981	10,086	10,895
· 정착기본금	3,721	3,721	-	3,721	895	2,826
· 주거지원금	10,228	10,228	-	10,228	3,866	6,362
· 정착장려금	5,907	5,907	-	5,907	4,733	1,174
· 보로금	937	937	-	937	426	511
· (정착)가산금	163	163	-	163	158	5
· 고용지원금	25	25	-	25	8	17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동 세부사업의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의 지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인원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입국인원 및 입소·수료인원 >

(단위: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입국인원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196
입소인원	1,311	1,528	1,352	1,189	1,167	437	73	59	176
수료인원	1,297	1,444	1,367	1,111	1,371	538	87	50	144

자료: 통일부

□ 연례적 집행부진에 따른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내역사업은 예산 현액 209억 8,100만원 중 100억 8,600만원을 집행하여 48.1%의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 기간인 2021~2022년도와 유사한 집행률을 기록한 것임.

<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4년 예산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20	39,321	29,334	-	-	-	29,334	24,315 [24,315]	82.9	82.9	-	5,019
2021	33,865	33,865	-	△1,655	-	32,210	14,823 [14,823]	43.8	46.0	-	17,387
2022	28,005	28,005	-	-	-	28,005	10,268 [10,268]	36.7	36.7	-	17,737
2023	20,981	20,981	-	-	-	20,981	10,086 [10,086]	48.1	48.1	-	10,895
2024	18,757	18,757	-	-	-	-	-	-	-	-	-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동 세부사업의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이유는 2023년도 예산은 탈북민 550명을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실제 탈북민 입국인원이 196명에 불과하였고, 코로나19 영향 및 국경폐쇄의 지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인원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입국인원 >

(단위: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입국인원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196

자료: 통일부

북한의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가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탈북민 입국인원 추계의 정확성 부족[167]으로 인해 예산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으로 이는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것인바, 향후 국제정세 및 북한의 동향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67) 2023년도 예산요구안 작성시 2022년 3월말 기준 입국인원 11명, 6월말 기준 입국인원 19명

4)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2337-302)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하고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중 2억 3,000만원 자체전용을 포함한 예산현액 126억 2,400만원 가운데 85%인 107억 3,400만원이 집행되고, 18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2,854	12,854		-230	12,624	10,734	-	1,890	83.5	85.0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하나원 교육훈련'은 82억 9,300만원, '제2하나원 교육훈련'은 24억 4,1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2,854	12,854	△230	12,624	10,734	-	1,890
· 하나원 교육훈련	9,832	9,832	168 △394	9,606	8,293	-	1,313
· 제2하나원 교육훈련	3,022	3,022	20 △24	3,018	2,441	-	577

자료: 통일부

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2331-302)

1) 결산 개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168]'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 및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임.

< 2023년도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예산	증감	예산현액			
총 계(A+B)	39,358	443	39,801	37,319	2,482	93.8
정부예산(A)	38,407	424	38,831	36,633	2,198	94.3
1. 사업비	27,776	-	27,776	25,879	1,897	93.2
가.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3,593	△76	3,517	3,513	4	99.9
나. 자립·자활지원	4,663	△279	4,384	4,315	69	98.4
다. 교육개발 및 지원	2,758	△8	2,750	2,727	23	99.2
라.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1,543	403	1,946	1,929	17	99.1
마.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2,262	△40	2,222	2,210	12	99.4
바. 정착금 지급	12,957	-	12,957	11,185	1,772	86.3
2. 인건비	9,051	-	9,051	8,786	265	97.1
3. 경상비	1,580	-	1,580	1,556	24	98.5
4. 예비비*	-	424	424	412	12	97.2
기부금(B)	951	19	970	686	284	70.7

자료: 통일부

주1) 2023년도 정부예산(38,831백만원) = 출연금 37,061백만원 + 결산잉여금 1,770백만원

주2) 예비비 424백만원은 경영평가성과금 충당 비용

16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재단이 아닌 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재단이 대외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재단은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별칭 사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3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내부 사용지침을 제정하고, 「상표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업무표장 등록을 거쳐 별칭을 사용하고 있음.

2010년 3월 26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남북하나재단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고, 동년 9월 27일에 설립됨. 이후 6차에 걸친 조직 개편을 거쳐 2024년 6월 현재는 2실 4부 1팀(정원 171명, 현원 170명)으로 운영 중임.

남북하나재단의 2023년 수입·지출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06억 7,000만원 중 373억 1,900만원이 집행되어 정부출연금 8억 4,000만원, 결산잉여금 13억 5,800만원과 기타수입 8억 6,900만원 및 기부금 집행잔액 2억 8,400만원을 합하여 총 33억 5,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수입·지출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내역	출연금예산	소계	39,276	424	39,700	36,633	3,067
		정부출연금	37,061	-	37,061	36,221	840
		결산잉여금	1,346	424	1,770	412	1,358
		기타 수입[169]	869	-	869	-	869
	기부금		951	19	970	686	284
	계			**443**	**40,670**	**37,319**	**3,351**

자료: 통일부

169) 출연금 환입 552백만원, 이자수입 302백만원, 기타수입 15백만원

2) 사업별 검토

2023년 남북하나재단의 사업비(예산현액 기준)는 277억 7,600만원으로, 이 중 93.2%인 258억 7,900만원이 집행되고, 18억 9,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사업별	예산액	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27,776	-	27,776	25,879	1,897	93.2
1.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지원	3,593	△76	3,517	3,513	4	99.9
2. 자립·자활지원	4,663	△279	4,384	4,315	69	98.4
3. 교육개발 및 지원	2,758	△8	2,750	2,727	23	99.2
4.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1,543	403	1,946	1,929	17	99.1
5.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2,262	△40	2,222	2,210	12	99.4
6. 정착금 지급	12,957	-	12,957	11,185	1,772	86.3

자료: 통일부

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35억 1,300만원, 자립·자활지원 사업에 43억 1,500만원, 교육개발 및 지원 사업에 27억 2,700만원,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사업에 19억 2,900만원,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사업에 22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정착금 지급 사업에 111억 8,500만원이 집행되었음.

사업별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정착금 지급 46.7%, 자립·자활 지원 16.8%,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12.9%, 교육개발 및 지원 9.9%,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8.1%,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5.6% 순으로 나타남.

6.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3000 프로그램)

가. 개 요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3000) 프로그램은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개성공단 사업지원’,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3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사업은 철도·도로 관련 출입시설 및 물류센터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임. ‘개성공단 사업지원’ 사업은 개성공단 중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개성공단 기업 지원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하며 남북간 통행 발생시 원활한 통행 지원을 위한 남북전자출입 종합지원관리시스템 관리를 위한 사업임.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사업은 민간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기반 마련 등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이 중 ‘개성공단 사업지원’은 2020년까지 별도 프로그램이던 ‘개성공단 지원’(3200) 프로그램이 2021년부터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3000) 프로그램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3000)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5,677	5,117	5,117	5,070	4,391	4,399
□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3031 단위사업)	3,909	3,224	3,224	3,224	2,961	3,417
○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300)	3,909	3,224	3,224	3,224	2,961	3,417
□ 개성공단 사업지원 (3032 단위사업)	818	883	883	836	747	733
○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303)	527	592	592	545	458	453
○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운영(정보화) (506)	291	291	291	291	289	280
□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3036 단위사업)	950	1,010	1,010	1,010	683	249
○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312)	950	1,010	1,010	1,010	685	249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3031-300)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사업은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및 물류센터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이는 청사시설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용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의 경우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남북 출입경 역량을 유지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특구 등 북한 내 남북협력지구로의 통행 재개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관리가 요구됨.

2023년 예산액 32억 2,400만원 중 91.8%인 29억 6,1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년도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224	3,224	-	±1	3,224	2,961	263	91.8	91.8

자료: 통일부

□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사업 관련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집행 필요

세부사업인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사업'은 출입사무소의 시설운영,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옥외전광판 교체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32억 2,400만원 중 29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2023년								2023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3,224	3,224	-	±1	3,224	2,961	-	263	3,417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경의선 출입사무소의 옥외전광판 교체를 위해 공사비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을 위해 집행하지 않고 전액을 조정하여 안전시설보강과 옥상 방수 공사 등의 시설 보수 공사비로 집행하였음.

< 내역사업 조정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사업 조정 ('23.10)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3031-300)	420-03 (공사비)	147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3031-300)	420-03 (공사비)	안전시설보강, 방수 등 시급한 시설 보수에 충당

자료: 통일부

이러한 사업집행 방식에 대해 2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첫째,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경의선 출입사무소 옥외전광판 교체공사는 2006년에 개성공단 출입 지원을 위해 설치한 옥외전광판이 노후화로 작동하지 않아 고해상도 LED전광판으로 교체하려던 것으로 남북교류에 대비한 관련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옥외전광판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출입사무소를 관리되지 않는 시설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바 사업의 취소가 적절하지 않아 보임.

둘째, 옥외전광판 교체공사 대신 실시한 안전시설 보강 공사, 옥상 방수공사, 냉난방기 교체, CCTV 부분 교체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는 안전 및 보안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음.

중대재해 점검에 의해 지적받은 유류저장고 환기 시설 설치와 시설관리 직원의 요청에 의해 보완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은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보다 선제적으로 조치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교체 대상인 CCTV 역시 2006년에 설치되어 17년이 경과한 만큼 교체 필요성에 대해 미리 검토하였어야 함.

< 안전시설보강 공사비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집행액	세부내역
경의선 안전시설 보강 공사	55	·중대재해 점검시 지적받은 유류저장고 환기시설 설치 ·수직사다리 등에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경의선 C동 옥상 방수 공사	13	·공무직 상시근무시설(C동)의 지붕 누수에 따른 방수
경의선 철도출입시설 냉난방기 교체	45	·철도출입시설 냉난방기의 노후 고장으로 교체
경의선 철도출입시설 CCTV 부분 교체	34	·국정원 보안측정시 지적받은 노후 CCTV 교체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추진 중 안전 및 보안문제의 시급성이 대두되어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목적 내에서 내역사업을 변경하였다고 하지만, 경의선 옥외전광판 교체 사업을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분류하여 취소하고 해당 예산 전액을 편의적으로 집행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향후 통일부는 출입사무소 관련 시설·설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임의로 사업을 취소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함. 아울러, 경의선·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는 2006년에 준공되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고 있으므로, 문제 발생 이후에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종합적인 시설관리방침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의해 안전·보안관리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3032-303)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사업은 개성공단 중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개성공단 기업 지원 관련 후속조치와 경영정상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023년 예산액 5억 9,200만원 중 77.3%인 4억 5,8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년도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592	592	-	△47	545	458	87	77.3	84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개성공단 운영 체계화 4,400만원,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 4억 1,4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3년도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592	592	△47	545	458	87
· 개성공단 운영 체계화	57	57	△6	51	44	7
·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	535	535	△41	494	414	80

자료: 통일부

3)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운영(정보화)(3032-506)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운영(정보화)’ 사업은 RFID 및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간 도로를 통한 통행·통관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남북간 통행 발생시 원활한 통행 지원을 위한 남북전자출입 종합지원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2023년도 예산액은 2억 9,100만원으로 이 중 99.3%인 2억 8,9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년도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91	291	-	-	291	289	-	99.3	99.3

자료: 통일부

4)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3036-312)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은 민간의 정책과정 참여 및 소통 확대, 지자체 교류협력 거버넌스 강화,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기반 마련, DMZ 통일걷기 지원,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10억 1,000만원 중 6억 8,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7.8%임.

<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010	1,010	-	-	1,010	683	327	67.8	67.8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500만원, ‘지자체 교류협력 거버넌스 강화’ 600만원,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기반 마련’ 1억 2,800만원, ‘DMZ 통일걷기 지원’ 3억 4,800만원, ‘남북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 1억 4,6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1,010	1,010	-	1,010	683	327
·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133	133	-	133	55	78
· 지자체 교류협력 거버넌스 강화	11	11	-	11	6	5
·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기반 마련	181	181	-	181	128	53
· DMZ 통일걷기 지원	385	385	-	385	348	37
·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	300	300	-	300	146	154

자료: 통일부

7. 남북회담(4000 프로그램)

가. 개 요

남북회담 프로그램은 남북대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면서 남북 간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인도 분야별 남북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남북 간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 2023년도 남북회담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1,947	2,516	2,516	2,438	2,246	2,355
1. 남북회담 추진 (4031 단위사업)	295	354	354	276	147	305
가. 남북회담 추진(300)	295	354	354	276	147	305
2.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4032 단위사업)	1,652	2,162	2,162	2,162	2,099	2,050
가.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302)	1,652	2,162	2,162	2,162	2,099	2,050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남북회담 추진(4031-300)

남북회담 추진 사업은 분야별 모의회담 개최, 회담역량 및 전문성 강화, 분야별 회담의제 개발 및 전문가·유관기관 의견 수렴, 전략수립 및 운영체계 개선 등을 통한 남북회담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3억 5,400만원 중 41.5%인 1억 4,7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년도 남북회담 추진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54	354	-	△78	276	147	129	41.5	53.3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분야별 회담 추진' 8,000만원, '남북회담 역량 강화' 400만원, '회담 운영 및 지원' 6,3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3년 남북회담 추진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남북회담 추진	354	354	△78	276	147	129
· 분야별 회담 추진	241	241	△71	170	80	89
· 남북회담 역량 강화	38	38	△7	31	4	28
· 회담 운영 및 지원	75	75	-	75	63	12

자료: 통일부

□ 남북회담문서 공개사업의 열람 방식 확대·개선 필요

내역사업인 '분야별회담 추진 사업'은 북한과의 분야별 회담·접촉을 추진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2억 4,100만원 중 1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8,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분야별회담 추진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41	241	-	△71	170	80	-	89	191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남북회담 사후조치의 일환으로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628호, 2022. 1. 1., 제정)을 제정하고 30년이 경과된 남북회담문서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실제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2차례씩 남북회담 문서를 공개한 바 있음.

< 남북회담문서 공개 경과 및 현황 >

o 2022.1.1.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
  - 상·하반기 각 1회씩 남북회담문서를 공개
    * '22년 두 차례('22.5.4., 12.30.), '23년 두 차례('23.7.6., 12.28.) 공개
o 2029년부터 30년 경과된 당해연도 사료 1년치씩 공개
o 2024년 상반기 공개 대상: '81.12월~'87.5월까지의 남북회담 문서

자료: 통일부

한편, 2022년과 2023년의 남북회담문서 자료 열람건수를 보면 각각 19건과 11건으로 열람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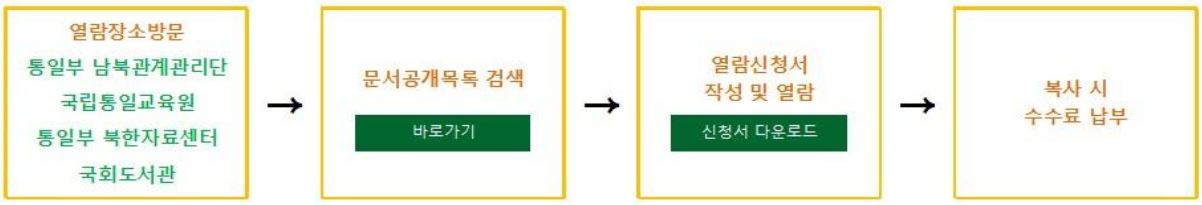
< 남북회담문서 공개 사업 문서 열람 건수 >

연도	남북관계관리단	북한자료센터	국립통일교육원	국회도서관	합계
2022년	10건	6건	0건	3건	19건
2023년	5건	5건	1건	0건	11건

자료: 통일부

열람 건수가 적은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남북회담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가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국립통일교육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회도서관으로 숫자가 적을뿐더러 모두 수도권에 위치함. 또한 현재 전자적 방법으로는 공개문서 목록만 확인 가능하며, 실제 남북회담문서 자료는 상기 열람장소에 방문해야만 열람할 수 있어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

< 남북회담문서 열람 절차 >



자료: 통일부

따라서, 통일부는 남북회담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고, 전자적 열람 방안을 마련하여 접근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홍보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4032-302)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사업은 남북회담본부가 관리하는 자유의 집과 전방사무소 등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남북회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남북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21억 6,200만원 중 97.1%인 20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3년도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162	2,162	-	-	2,162	2,099	63	97.1	97.1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인 '남북통신망 운영'의 예산액은 9억 7,700만원이며, 전액을 집행하였음. 남북통신망 간 통화는 2020년 이후 세 차례(2020. 6. 9. ~ 2021. 7. 26., 2021. 8. 10. ~ 2021. 10. 3., 2023. 4. 7. ~ 현재) 중단되었음. 남북통신망은 남북회담에 대비한 상시 중요시설로 보안 및 통신시설로서의 중요성과 지속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도통신망에 준해 KT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경비로서 관리용역비 9억 7,700만원을 전액 집행함.

< 2023년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2,162	2,162	-	2,162	2,099	63
· 남북통신망 운영	977	977	-	977	977	-
· 청사시설 관리	1,075	1,075	-	1,075	1,018	57
· 자유의집 시설개선	47	47	-	47	46	1
· 남북회담 영상회의실 운영	63	63	-	63	58	5

자료: 통일부

8. 통일교육(5000 프로그램)

가. 개 요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통일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학교 및 사회의 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와 올바른 인식개선을 통해 통일 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도 주요 사업은 '통일교육 추진' 및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의 2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이버통일교육센터운영(정보화)',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도 통일교육 프로그램 결산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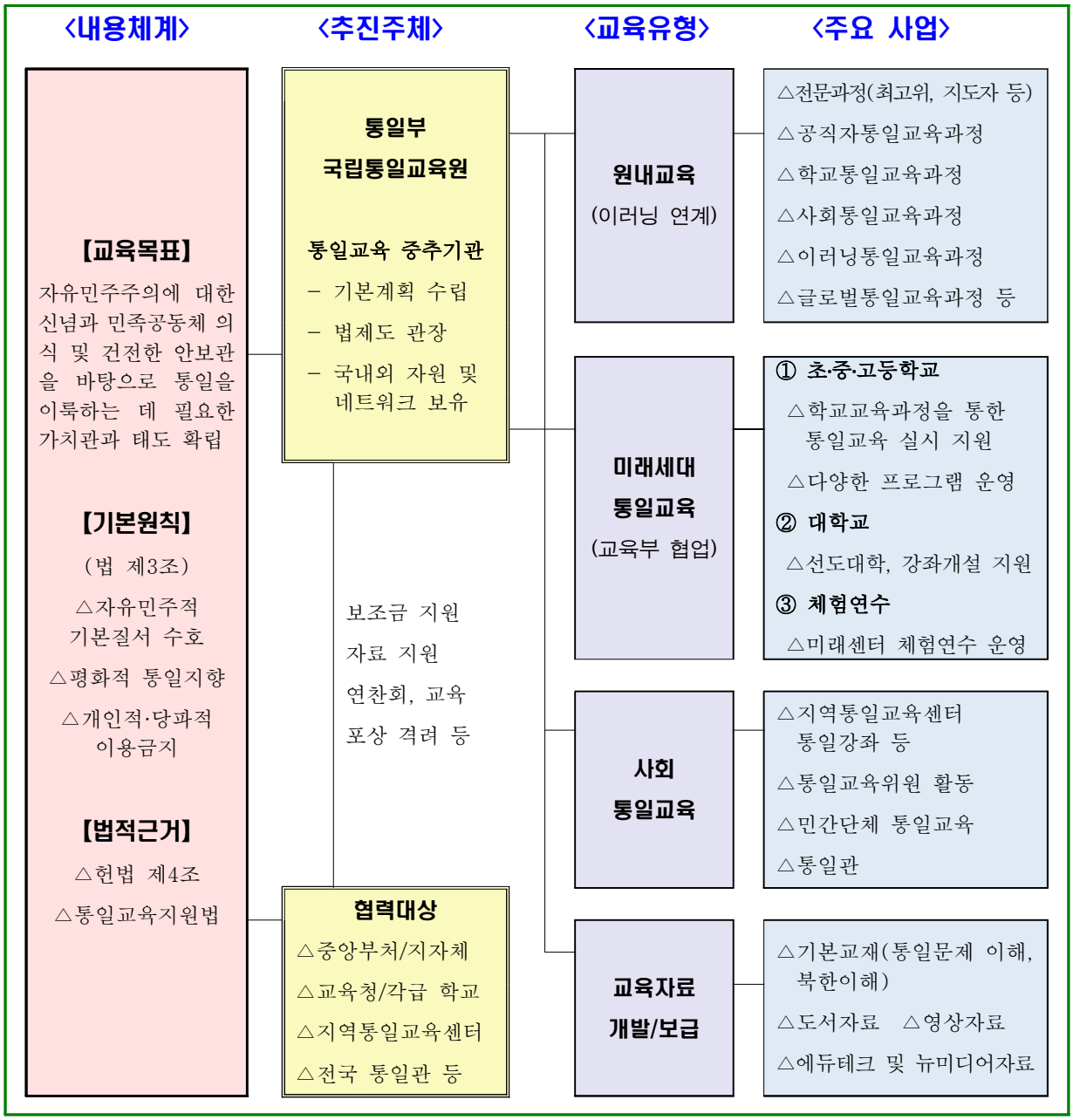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22,867	23,507	23,507	23,507	22,337	22,861
□ 국립통일교육원 인건비(단위사업 5002)	4,941	5,546	5,546	5,546	5,075	5,691
○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100)	4,941	5,546	5,546	5,546	5,075	5,691
□ 국립통일교육원 기본경비(단위사업 5018)	1,207	1,257	1,257	1,257	1,233	1,397
○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200)	237	250	250	254	243	250
○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250)	970	1,007	1,007	1,003	990	1,147
□ 통일교육추진(단위사업 5031)	14,298	15,202	15,202	15,202	14,596	14,308
○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304)	4,305	5,070	5,070	5,100	4,873	5,695
○ 학교 통일교육 강화(308)	4,655	4,895	4,895	4,865	4,685	4,412
○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309)	4,831	4,728	4,728	4,728	4,530	3,717
○ 사이버통일교육센터운영(정보화)(507)	508	509	509	509	508	484
□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단위사업 5033)	2,421	1,502	1,502	1,502	1,433	1,465
○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308)	2,421	1,502	1,502	1,502	1,433	1,465

자료: 통일부

정부 통일교육 추진체계를 보면, 통일부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등을 연계하여 학교 통일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통일부 및 국립통일교육원을 주축으로 지자체, 지역통일교육센터, 민간단체, 통일관 등과 연계하여 사회통일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 통일교육 추진체계 >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5031-304)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고, 통일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범국가적 차원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제협력을 통한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통일문제와 북한 관련 각종 자료를 발간·보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1억원 중 48억 7,3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2억 2,7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5,070	5,070	-	365 △335	5,100	4,873	227	96.1	95.5

자료: 통일부

동 세부사업은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통일교육 원내과정', '통일교육연구센터 운영', '통일교육 자료개발 보급', '통일교육 자료센터 운영'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2023년도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070	5,070	365 △335	5,100	4,873	227
·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340	340	±9	340	328	12
· 통일교육 원내과정	1,400	1,400	187 △157	1,430	1,341	89
· 통일교육연구센터 운영	230	230	±120	230	229	1
· 통일교육 자료개발 보급	3,044	3,044	±49	3,044	2,922	122
· 통일교육 자료센터 운영	56	56	-	56	53	3

자료: 통일부

□ 통일교육 AR앱의 체계적 관리와 홍보강화 필요

내역사업인 ‘통일교육 자료 개발 보급’은 통일문제와 북한에 관한 각종 자료를 발간·보급하는 사업으로 일반 교재 외에도 영상, AR 교재 등 다양한 사이버통일교육 콘텐츠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음.

2023년 예산액 30억 4,400만원 중 29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2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통일교육 자료 개발 보급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3,044	3,044	-	±49	3,044	2,922	-	122	2,006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은 2022년부터 증강현실(AR)[170] 기술을 기반으로 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학교교육 현장에서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는데, 2022년에 개발했던 통일봄 애플리케이션은 2023년에 개발한 알통(ArTong) 앱으로 통합·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통일교육원의 휴대폰 앱 제공 및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첫째, 통일교육을 위한 앱의 제공자 명의가 통일부 또는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음[171].

170) 증강현실(增强現實, 영어: augmented reality, AR)은 가상현실(VR)의 한 분야로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마치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임.

통일교육원이 개발·공급하는 통일교육 앱은 국가의 일관된 통일관을 확인하고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명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제공자가 일원화되어야 잠재적 이용자들이 구글 및 애플 스토어에서 통일부의 다른 통일교육 앱들을 인지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둘째,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2022년의 통일봄 앱이 2024년 5월 기준으로 여전히 앱스토어에서 제공되고 있었음[172].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앱의 지속적인 노출은 사용자에게 혼선을 주고 최신 업데이트된 앱의 활용을 저해시키는바, 통일교육 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통일교육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공급 현황 >

연도	명칭	내용	제공자 명의		다운로드 수
			구글 스토어	애플 스토어	
2022	통일봄	o 학생 대상으로 디지털 민주시민 의식 고양과 통일교육 방법의 다각화를 위해 증강현실(AR)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 o 통일봄 앱은 2023년 알통 앱으로 대체되어 더 이상 활용하지 않음	국립통일교육원	Jeeheon Ryu	IOS:확인불가 안드로이드 : 1천회 이상
2023	알통 (ArTong)	o 학생 대상의 카메라를 통한 이미지 인식 기반의 증강현실(AR) 통일교육 콘텐츠 뷰어 앱 o 학교교육 현장에서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활용	국립통일교육원	Institute for Peace Affairs	IOS: 228건 안드로이드 : 1,410건

자료: 통일부(2024.5. 기준, 통일봄 앱은 현재 알통 앱에 기능이 흡수·대체되어 정확한 다운로드 수 파악 곤란)

171) 2024년 5월을 기준으로 앱스토어에서 2022년 통일봄의 제공자는 Jeeheon Ryu, 2023년 알통의 제공자는 Institute for Peace Affairs로 보여지고 있음
통일부는 앱 개발 당시 통일교육원측의 계정정보가 미비한 상황에서 앱스토어 등재 완료 시한을 맞추기 위해, 개발기관의 앱스토어 계정으로 등록한 이후 국립통일교육원으로 명의변경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조치중에 있음.

172) 이와 관련, 국립통일교육원은 2024. 6월 현재 구글 앱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통일봄 앱을 삭제하였음.

셋째, 2024년 5월 기준 현행 통일교육 앱인 알통(ArTong)의 다운로드 수가 IOS 228건, 안드로이드 1,410건으로 미흡한 상황임.

통일부는 통일교육 앱의 주요 용도가 학교교육 현장에서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교육용 도구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의 다운로드가 많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AR 앱 연동 교보재의 보급을 늘려 많은 학급에서 학생이 보다 자발적·능동적으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필요함. 나아가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AR 앱의 다운로드 수를 늘려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은 전국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가 실시하는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48억 6,500만원 중 46억 8,5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1억 8,0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895	4,895	-	△30	4,865	4,685	180	95.7	96.3

자료: 통일부

동 세부사업은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은 '초·중·고 학교통일 지원' 10억 4,500만원,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23억 6,900만원,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12억 7,100만원이 각각 집행됨.

< 2023년도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학교 통일교육 강화	4,895	4,895	△30	4,865	4,685	180
· 초·중·고 학교 통일교육 지원	1,148	1,148	△10	1,138	1,045	93
·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2,415	2,415	△20	2,395	2,369	26
·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1,332	1,332	-	1,332	1,271	61

자료: 통일부

□ 교직원 및 대학(원)생 대상 통일논문 등 공모사업 활성화 노력 필요

내역사업인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사업은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우수한 통일수업 사례 발굴 및 보급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통일부·교육부 공동 주최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대학(원)생 통일논문 및 통일 홍보 영상 공모' 사업은 대학생·대학원생의 창의적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통일과 한반도 발전 방안에 대한 관심 고취를 위해 1982년부터 시작한 사업임.

< 2023년도 공모사업별 집행액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내내역사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64	64		64	42	22
대학(원)생 통일논문 및 통일 홍보 영상 공모	90	90	△20	70	44	26

자료: 통일부

먼저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액이 2021년 5,500만원에서 2023년 4,200만원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응모 수는 74편에서 30편인 41% 선으로, 입상 수는 14편에서 6편으로 43%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최근 3년간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응모	입상
2021년	66	55	74편	14편
2022년	64	50	61편	12편
2023년	64	42	30편	6편

자료: 통일부

이와 같이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응모와 입상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통일부는 교사들의 학교장·교감 승진에 대한 욕구 하락으로 입상시 연구평점 부여가 큰 유인책이 아니게 되었고, 학교 현장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 저하 등에 따라 연구대회 출품작 수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음.

다음으로 대학(원)생 통일논문 및 통일 홍보 영상 공모 사업은 집행액이 2021년 8,900만원에서 2023년 4,400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었으며, 통일 논문 응모 수와 입상 수가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반면 통일 홍보 영상의 응모 수와 입상 수는 최근 3년간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대학(원)생 통일논문 및 통일 홍보 영상 공모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응모	입상
2021년	97	89	논문 28편, 홍보영상 10편	논문 7편, 홍보영상 3편
2022년	90	78	논문 19편, 홍보영상 11편	논문 6편, 홍보영상 3편
2023년	70	44	논문 15편, 홍보영상 9편	논문 4편, 홍보영상 2편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홍보 시 통일·외교 관련 네트워크의 활용이 부족하였고, 북한 및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등에 의해 응모 실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렇게 응모·입상 수가 급감하고 있는 공모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통일부는 대회 입상자 대상으로 해외 통일현장 체험연수 참여 기회 부여 등 연구

대회 응모 동기를 지속 부여하고, 공모전 사이트 게시 등 기존의 홍보 외에 응모 가능성이 높은 유관 기관 구성원에 직접 전달 등 홍보 측면도 강화할 계획임.

일반적으로 응모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상 인센티브를 높이고,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예비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거나, 입상 후 연계활동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응모·입상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상금을 올리는 한편, 논문 공모의 경우 우수・장려상은 학・석사 부문을 분리하여 시상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논문 제출 이후의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5031-309)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업은 ① 사회통일교육 기관·단체 대상 통일교육 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 통일교육 인프라 확충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②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통일관 지원, ③ 2030세대 특성을 반영한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통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사회통일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47억 2,800만원 중 45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9,8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728	4,728	-	±146	4,728	4,530	-	198	95.8	95.8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21억 6,800만원,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통일관 지원'에 21억 8,800만원,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에 1억 7,4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3년도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4,728	4,728	-	4,728	4,530	-	198
· 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2,197	2,197	-	2,197	2,168	-	29
·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통일관 지원	2,349	2,349	-	2,349	2,188	-	161
·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182	182	-	182	174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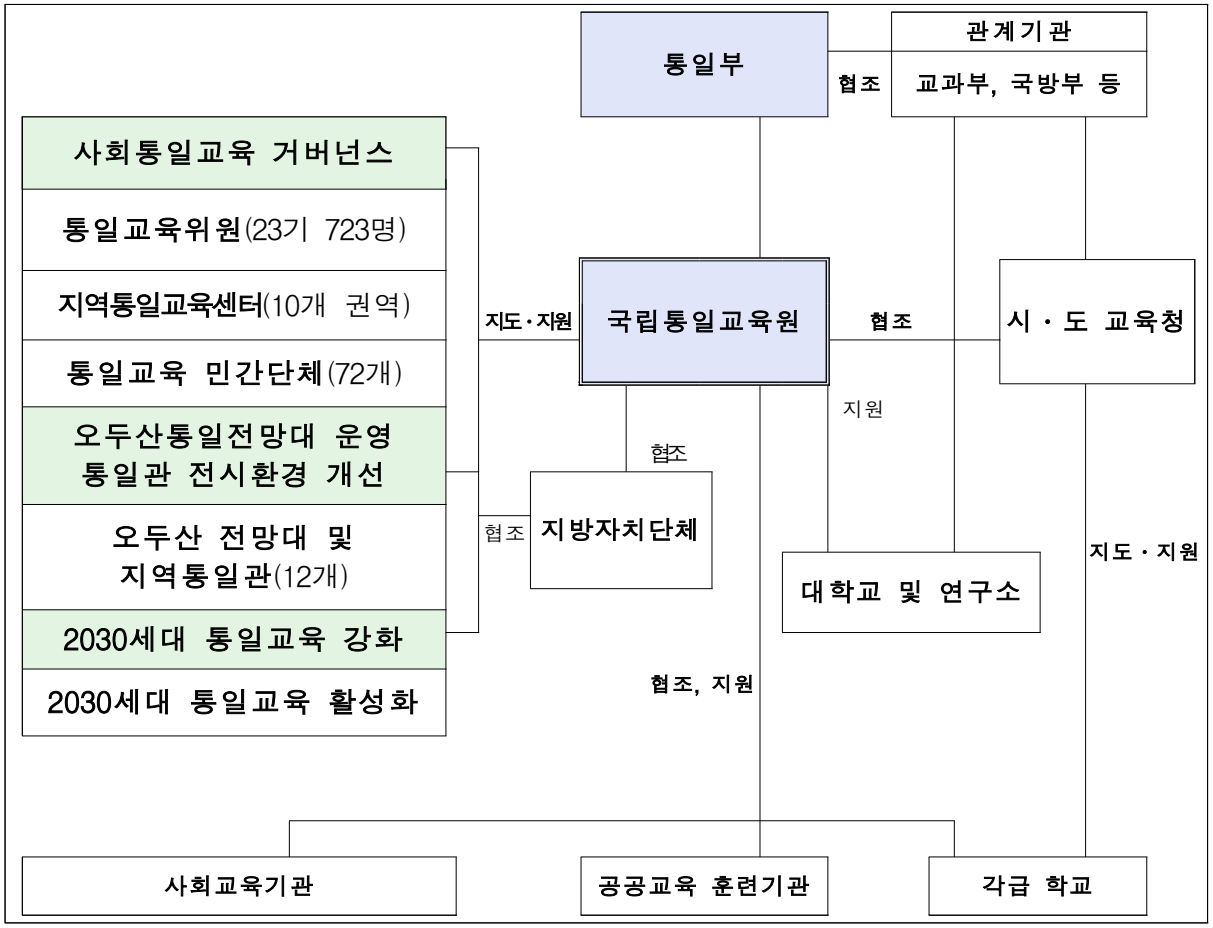
자료: 통일부

정부는 지역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10개 권역에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음.

또한, 1987년부터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들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사회 통일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영역의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통일교육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통일부는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통일교육·전시 공간으로 오두산통일전망대와 전국에 12개 통일관을 운영 중이며, 동 세부사업의 체계는 다음 표와 같음.

< 사회통일교육 사업체계 >



자료: 통일부

4)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5033-308)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 사업은 국립통일교육원 청사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노후한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시설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5억 200만원 중 14억 3,300만원이 집행되었고, 6,9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502	1,502	-	-	1,502	1,433	69	95.4	95.4

자료: 통일부

9. 통일행정지원(7000 프로그램)

가. 개 요

‘통일행정지원’ 프로그램은 통일부 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여건 조성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통일부 직원 인건비, 본부 및 소속기관 기본경비 등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2023년도 예산현액 651억 4,900만원 중 613억 3,2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2%임.

< 2023년도 통일행정지원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62,219	65,091	65,091	65,274	61,328	66,562
□ 인건비(7001 단위사업)	44,099	47,503	47,503	47,357	44,590	48,454
□ 본부 기본경비(7011 단위사업)	4,966	5,056	5,056	5,343	5,075	5,360
□ 소속기관 기본경비(7018 단위사업)	3,128	3,303	3,303	3,344	3,206	3,251
□ 통일업무 R&D(7031 단위사업)	349	371	371	371	292	271
□ 통일업무지원(7032 단위사업)	465	467	467	467	461	1,085
□ 대북활동지원(7033 단위사업)	1,360	1,947	1,947	1,947	1,386	1,882
□ 통일정보화(7034 단위사업)	2,948	1,986	1,986	1,986	1,914	1,837
□ 본부 전산운영(7035 단위사업)	4,904	4,458	4,458	4,458	4,404	4,422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총액인건비 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00)

‘총액인건비 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기관운영 및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경비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9억 5,100만원 중 18억 5,500만원이 집행되고, 예산액 대비 100.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액은 3,000만원이며, 불용액은 6,600만원임.

< 2023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840	1,840	40	166 △95	1,951	1,855	66	100.8	95

자료: 통일부

□ 계획에 없던 행정인턴 채용 사업의 전용을 통한 추진 부적절

통일부는 2023년에 행정인턴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사업'에서 '총액인건비 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으로 1억 3,300만원을 전용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 행정인턴 채용을 위한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7001-100)	110-01 (보수)	△133	총액인건비 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00)	110-04 (일용임금)	행정인턴 채용에 따른 기관운영기본경비 부족분 충당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3년에 12명의 행정인턴을 채용하여 각 실국에 배치하였음. 부서와 담당업무는 아래 표와 같음.

< 행정인턴 채용 현황 >

연번	채용기간	배치부서	담당업무
1	'23.5.1.~ 10.31.	통일정책실 통일미래추진과	○각종 회의 및 행사준비 지원 ○정책 관련 연구자료, 해외사례 등 정리 ○홍보 및 언론 모니터링 지원
2	'23.5.1.~ 10.31.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남북협력기금 관리 업무 지원 ○예산·국회 관련 대내외 협조업무 지원
3	'23.5.1.~ 10.31.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통일방송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자료조사 ○통일방송 프로그램 제작 아이템 발굴 ○통일방송 운영 및 프로그램 제작 업무 지원 등
4	'23.5.1.~ 10.31.	통일협력국 참여소통과	○통일+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 지원 ○국민 참여 사회적 대화 행사 지원
5	'23.5.1.~ 10.1.	정보분석국 북한정보서비스과	○북한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 고도화업무 지원 ○북한자료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전산시스템 관리 지원 ○소장자료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지원

연번	채용기간	배치부서	담당업무
6	‘23.5.1.~ 10.31.	정보분석국 북한정보서비스과	○북한 관련 해외 공개정보자료 조사·수집·관리 및 영어 번역 ○북한 관련 해외동향 분석 업무 지원
7	‘23.5.1.~ 10.31.	통일협력국 국제협력과	○통일 공공외교사업 지원 ○국제회의 등 각종 행사 지원
8	‘23.5.1.~ 10.31.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	○남북통합문화센터 전시관 기획·관리 ○남북통합문화센터 행사 지원 ○남북통합문화센터 SNS 채널 운영, 홍보 업무 ○남북통합문화센터 이용실적 통계 작성 등
9	‘23.5.1.~ 10.31.	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통일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개발 지원 ○통일교육 교재개발 관련 인적 교류 경험 및 사업 추진 지원
10	‘23.5.1.~ 10.31.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통계 지원 ○기록물 이관 자료 및 자료실 자료 정리 등 ○그 외 기록센터 행정 업무 지원
11	‘23.6.1.~ 11.30.	인권인도실 북한인권기획과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 세미나 기획운영 ○북한인권 관련 이슈 모니터링 및 국제사회 협력업무
12	‘23.7.1.~ 12.31.	국립통일교육원 스마트교육팀	○스마트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등 지원 ○메타버스, SNS 등 기반 디지털 통일교육 사업 추진 지원

자료: 통일부

행정인턴 사업은 청년들이 실무 경험과 관련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업임.

다만, 2023년의 행정인턴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을 전용을 통해 집행하여 「국가재정법」상 전용의 범위[173]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음.

통일부는 2024년 이후 관련 예산을 반영·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2023년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173)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2)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기관운영 및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경비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8억 3,000만원 중 17억 2,5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105.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액은 8,000만원이며, 불용액은 2,500만원임.

< 2023년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629	1,629	18	390 △207	1830	1725	25	105.9	94.2

자료: 통일부

3) 정책연구개발(R&D)(7031-300)

정책연구개발(R&D)은 통일 및 북한문제 등과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민간연구소 등의 외부전문가에게 정책개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하여 통일·대북정책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3억 7,100만원 중 2억 9,2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78.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액은 7,900만원임.

< 2023년도 정책연구개발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71	371	-	-	371	292	79	78.7	78.7

자료: 통일부

□ 정책연구용역의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및 비공개 보고서 공개방안 마련 필요

세부사업인 ‘정책연구개발(R&D)’에서는 전액을 외부 전문가에게 정책개발 관련 조사 및 분석, 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액 3억 7,100만원 중 2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7,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정책연구개발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371	371	-	-	371	292	-	79	271

자료: 통일부

2023년도 정책연구용역의 세부 내역을 보면, 과제별로 최대 4,900만원에서 최소 1,000만원을 집행하면서 13건 중 12건을 수의계약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174]에 따른 비공개 대상 연구과제는 비공개 4건, 부분공개 1건이었음.

17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023년도 정책연구과제 수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과제명	집행액	계약 방식	수행 기간	수행 기관	공개 여부	비공개 기한
억류자 · 납북자 상징사업 추진방안 연구	20	수의	'23.04 ~ '23.07	㈜브랜드메이저	비공개	'25.9.26
통일부 업무 발전 방향 : 지자체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20	수의	'23.08 ~ '23.11	한국행정학회	비공개	'25.11.30
대북통일정책 관련 효과적인 메시지 기획관리 방안 연구	30	수의	'23.05 ~ '23.11	(사)한국매거진미디어융합학회	공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수요분석 및 서비스 공급체계에 관한 연구	49	경쟁	'23.06 ~ '23.11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	
김정은 시기 법 집행과 사회통제	17	수의	'23.04 ~ '23.09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	
북한 법령 신구비교를 통한 북한정책 변화 연구	20	수의	'23.10 ~ '23.12	한국법제연구원	공개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 이후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관련 사료 수집	20	수의	'23.06 ~ '23.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개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 이후 여성·가족 분야 변천 과정 관련 사료 수집	17	수의	'23.05 ~ '23.12	베트남 성별·개발 연구소	공개	
탈북민 경험 구술(생애사·주제사) 사업 설계를 위한 연구	20	수의	'23.07 ~ '23.11	통일연구원	부분 공개	'25.12.13
남북 산업기술 기반 협력사업 모델 발굴 및 실행전략	30	수의	'23.04 ~ '23.09	㈜이코노바이저	비공개	'25.6.12
비교연구를 통한 통일교육 선도대학 공통 평가지표 개발	20	수의	'23.06 ~ '23.09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	
청년세대 통일인식 심층조사를 통한 통일교육 방안 모색	20	수의	'23.05 ~ '23.07	조원씨앤아이	공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계획	10	수의	'23.11 ~ '23.12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비공개	'26.12.31
합 계	292					

자료: 통일부

또한, 최근 3년간의 수의계약 및 비공개 과제 현황을 보면, 총 43건 중 32건(74.4%)을 수의계약에 의해 수행하였으며, 비공개 비율은 20% 이상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최근 3년간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및 비공개 과제 현황 >

구 분	과제 건수	수의계약 건수(비율)	비공개 건수(비율)
2021년도	18건	11건(61.1%)	2건(11.1%)
2022년도	12건	9건[175](75%)	4건(33.3%)
2023년도	13건	12건(92.3%)	5건[176](38.5%)
합 계	43건	32건(74.4%)	11건(25.6%)

자료: 통일부

이와 같이 과도한 수의계약 비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177]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78]에 따른 일반경쟁계약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79]에서 수의계약 사유를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175) 자체경쟁 후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에서 제외함.

176) 부분공개 1건 포함.

17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178) 기획재정부「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87 연구용역비(260목) 공통지침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한다.

17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있음.

통일부는 통일·북한 문제와 관련한 다년간의 연구이력을 보유하고 독보적 전문성과 권위를 가진 전문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 위탁하였기 때문에 수의계약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2023년도에는 1건을 제외한 대부분을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어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일반경쟁을 통한 연구자 선정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론을 가진 다양한 연구자들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 등에서 바람직하며, 수의계약은 선정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또한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수의계약에 의한 연구자 선정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통일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일정부분 관여해야 하는 입장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반적인 주요 내용 공개, 부분 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통일업무지원(7032-303)

통일업무지원 사업은 정부혁신·창의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요 역사기록관리 및 특수기록 보안성 확보를 통해 통일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체계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자료 제작 및 합동 절차연습을 시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의무 이행을 통한 안전보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며, 재난대응 태세 구축을 통해 유사시 정부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4억 6,700만원 중 4억 6,1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98.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액은 500만원임.

< 2023년도 통일업무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67	467	-	±31	467	461	5	98.7	98.7

자료: 통일부

Ⅲ. 2023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 결산 개요

1. 남북협력기금 결산 총괄

가. 기금 총괄

2023년도 남북협력기금 수입·지출 결산액은 6,629억원(전년 3,913억원)으로 계획현액(1조 8,004억원) 대비 36.8%임.

수입금 6,629억원 중 4,996억원을 사업비·기금운영비·공자기금예수금상환 등에 지출하고, 1,634억원은 여유자금[180]으로 운용하였음.

< 수입·지출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계획현액 (A)	실 적 (B)	달성률 (B/A)
수입	합 계	1,800,388	1,800,388	662,924	36.8
	자 체 수 입	38,512	38,512	13,179	34.2
	정부내부수입	1,671,653	1,671,653	487,200	29.1
	여유자금회수	90,223	90,223	162,545	180.2
지출	합 계	1,800,388	1,800,388	662,924	36.8
	사 업 비	1,210,118	1,210,118	22,434	1.9
	기금운영비	2,356	2,356	2,256	95.7
	공자기금원리금상환	503,914	503,914	474,873	94.2
	여유자금운용	84,000	84,000	163,361	194.5

자료: 통일부

180) 기금 여유자금이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을 의미한다. 여유자금은 운용기간에 따라 단기자산과 중장기자산으로 분류된다. 단기자산은 1년 미만으로 운용되는 자산으로서 연중 사업에 집행될 "사업대기성 자금"과 연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적정 유동성 자금"의 용도로 활용된다. 중장기자산은 장래 지출수요에 대비하거나, 기금의 향후 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1년 이상 운용되는 자산을 의미하며, 확정금리형, 채권형, 주식형, 대체투자 등의 자산군으로 구성된다.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2018. 10. 15. 기획재정부훈령 제396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여유자금"이라 함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사업성 대기자금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가. 금융기관 예치금, 유가증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자산운용 목적의 대출 등 금융자산
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나. 수입 결산

2023년도 남북협력기금 수입총계는 6,629억원으로, 계획현액 1조 8,004억원 대비 36.8%임.

자체수입은 132억원(전년 95억원)으로 계획액 385억원 대비 34.2%이고, 전년대비 증가는 주로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증가 때문임.

정부내부수입은 4,872억원으로 계획액 1조 6,717억원 대비 29.1%이며, 여유자금회수는 1,625억원으로 계획액 902억원 대비 180.2%임.

< 수입 결산 세부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3당초계획	'23계획현액 (A)	실 적 (B)	달성률 (B/A)	비고
총 계	1,800,388	1,800,388	662,924	36.8	
자체수입	**38,512**	**38,512**	**13,179**	**34.2**	
○ 재산수입	6,225	6,225	4,793	77.0	
▪ 건물대여료	39	39	15	38.6	미래센터 임대료
▪ 기타민간이자수입	3,856	3,856	1,440	37.3	대출이자수입
▪ 기타재산수입	2,330	2,330	3,338	143.2	여유자금운용수입
○ 경상이전수입	10,956	10,956	3,078	28.1	
▪ 민간출연금	150	150	-	-	자발적 민간출연
▪ 기타경상이전수입	10,806	10,806	3,078	28.5	사업비 정산·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090	3,090	28	0.9	
▪ 기타잡수입	3,090	3,090	28	0.9	미래센터 연수비 등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8,241	18,241	5,280	28.9	
▪ 융자원금회수	18,241	18,241	5,280	28.9	대출원금 회수
정부내부수입	**1,671,653**	**1,671,653**	**487,200**	**29.1**	
○ 일반회계전입금	100,000	100,000	57,200	57.2	정부출연금
○ 공자기금예수금	1,571,653	1,571,653	430,000	27.4	경수로 차입금 상환
여유자금회수	**90,223**	**90,223**	**162,545**	**180.2**	운용기관예치원금회수

자료: 통일부

다. 지출 결산

2023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출총계는 6,629억원으로 계획현액 1조 8,004억원 대비 36.8%임.

사업비 집행액은 224억원(전년 779억원)으로 계획현액 1조 2,101억원 대비 1.9%이고, 기금운영비는 23억원으로 계획현액 24억원 대비 95.7%이며, 공자기금예수금원리금상환은 4,749억원으로 계획현액 5,039억원 대비 94.2%이며, 여유자금운용은 1,634억원으로 계획현액 840억원 대비 194.5%임.

전년 대비 사업비 집행액 555억원 감소('22년 779억원 → '23년 224억원)는 남북경협 중단 장기화로 대북인도적지원 및 남북경제협력사업 등의 전반적인 집행 감소 때문임.

< 지출 결산 세부 현황 >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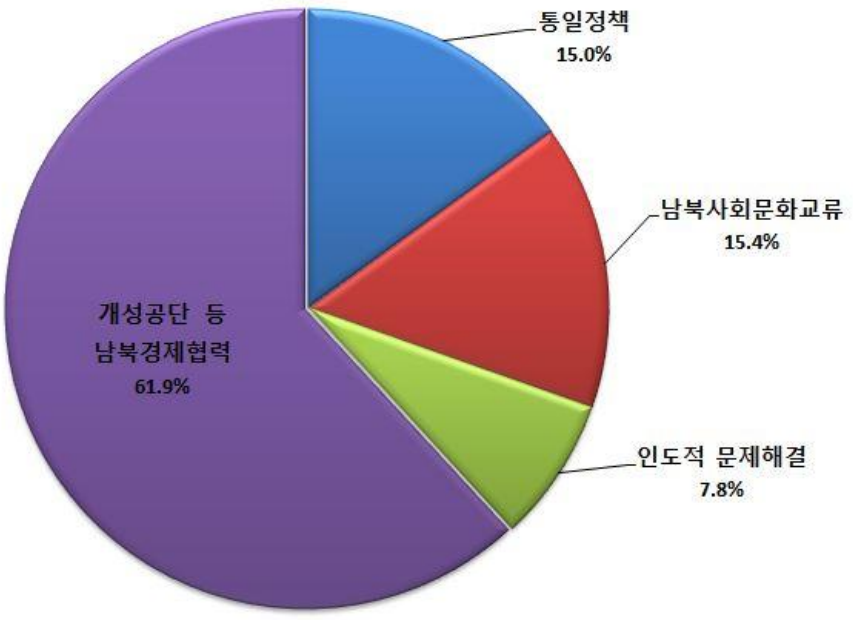
구 분		계획			실적 (B)	달성률 (B/A)
		'23년 계획	전년도 이월	계획 현액(A)		
사업비	**통일정책**	**3,660**	**-**	**3,660**	**3,357**	**91.7**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3,660	-	3,660	3,357	91.7
	남북사회문화교류	**21,520**	**-**	**21,520**	**3,456**	**16.1**
	- 사회문화교류지원	21,520	-	21,520	3,456	16.1
	인도적문제해결	**730,004**		**730,004**	**1,745**	**0.2**
	- 이산가족교류지원	18,027	-	18,027	993	5.5
	- 구호지원	107,008	-	107,008	-	-
	- 민생협력지원	604,969	-	604,969	752	0.1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454,934**	**-**	**454,934**	**13,876**	**3.1**
	- 경제교류협력보험	4,275	-	4,275	-	-
	- 경협기반(무상)	231,266	-	231,266	3,908	1.7
	- 경협기반(융자)	180,025	-	180,025	-	-
	-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10,000	-	10,000	-	-
	- DMZ 평화적 이용	12,027	-	12,027	2,828	23.5

구 분		계획			실적 (B)	달성률 (B/A)
		'23년 계획	전년도 이월	계획 현액(A)		
	- 개성공단 운영 대출	8,282	-	8,282	2,027	24.5
	- 개성공단 기반조성	9,059	-	9,059	5,113	56.4
	소 계	1,210,118	-	1,210,118	22,434	1.9
기금운영비		2,356	-	2,356	2,256	95.7
공자기금예수금 원리금상환		503,914	-	503,914	474,873	94.2
여유자금운용		84,000	-	84,000	163,361	194.5
총 계		1,800,388	-	1,800,388	662,942	36.8

자료: 통일부

2023년 기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에서 각 프로그램별 결산 지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사업비 총 지출액 224억 3,400만원 중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이 약 61.9%(138억 7,600만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남북사회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약 15.4%(34억 5,600만원), 통일정책 프로그램이 약 15.0%(33억 5,700만원),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약 7.8%(17억 4,500만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3년 결산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중 프로그램별 결산 지출액 비중 >



자료: 통일부

최근 3개년간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집행 현황을 분야별로 보면,

통일정책의 경우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체험연수 운영과 시설관리 운영 경상경비 지출 등으로 3년간 평균 집행률은 85.9%[('21) 81.5% → ('22) 84.6% → ('23) 91.7%]로 양호한 편임.

남북사회문화교류의 경우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등으로 집행률은 16.4%를 기록하였고, 인도적 문제해결 및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경우 최근 3개년 모두 저조한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음.

<최근 3개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3년간 평균 집행률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통일정책	3,831	3,121	81.5	3,415	2,888	84.6	3,660	3,357	91.7	85.9
남북사회 문화교류	19,097	3,426	17.9	22,095	3,353	15.2	21,520	3,456	16.1	16.4
인도적 문제해결	653,645	3,989	0.6	661,489	4,393	0.7	730,004	1,745	0.2	0.5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567,594	20,645	3.6	595,278	67,282	11.3	454,934	13,876	3.1	6.0
합 계	1,244,168	31,179	2.5	1,282,277	77,916	6.1	1,210,118	22,434	1.9	3.5

자료: 통일부

2. 남북협력기금 수입 결산 검토

가. 건물대여료

‘건물대여료’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구내식당 위탁운영 및 시설 대관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 수입으로, 2023년도 계획액은 3,900만원이고, 실제 수납실적은 1,500만원임.

< 2023년도 건물대여료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A)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39	-	39	15	15	-	38.6

자료: 통일부

전년(2백만원) 대비 수납률의 다소 증가는 ’23년 상반기 엔데믹 전환 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내 시설물 외부 대여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계획액 대비 수납액은 저조함.

< 2023년도 건물대여료 수입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구내식당 위탁운영	13	9	9	-
시설 대관	26	6	6	-
합 계	39	15	15	-

자료: 통일부

나. 기타민간이자수입 및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재산수입 중 '기타민간이자수입(54-544)'은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의 융자금으로부터 회수되는 이자수입으로, 2023년 계획액은 38억 5,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억 4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억 4,000만원으로 계획액 대비 수납률은 37.3%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754)'는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에 대한 대출원금 회수 수입으로, 2023년 계획액은 182억 4,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1억 7,800만원이며 수납액은 52억 8,000만원으로 계획액 대비 수납률은 28.9%임.

< 2023년도 기타민간이자수입 및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A)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기타민간 이자수입	3,856	-	3,856	3,604	1,440	2,164	37.3
기타민간 융자원금회수	18,241	-	18,241	32,178	5,280	26,898	28.9

자료: 통일부(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3.12월말 결산일 기준)

기타민간이자수입과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의 최근 5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남북경협 중단 및 개성공단 폐쇄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협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1년마다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181]를 실시하고 있는 바, 경협기업의 규모가 대체로 영세하며 최근에는 코로나19,

181) 남북경협 중단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상환 유예와 기존 대출에 대해 금리 조정{예시: 2021년의 경우에도 21. 6. 10. 기준 기금대출 연체가 아니며, 금리가 1.5% 이상인 대출[264개사(중복제외), 394건 대출잔액 245,488백만원]에 대해 0.5%p인하. 이자경감 규모는 연간 약 12억 3천만원, 2023년의 경우는 금리인하 조치 없음}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이자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원금 수납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 기타민간이자수입 및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도	계획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기타민간 이자수입	2019	7,002	2,876	1,842	26.3	64.0
	2020	4,992	2,850	1,712	34.3	60.0
	2021	4,062	3,052	1,384	34.1	45.3
	2022	3,411	2,513	804	23.6	32.0
	2023	3,856	3,604	1,440	37.3	40.0

구 분	연 도	계획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기타민간 융자원금 회수	2019	36,041	27,101	6,647	18.4	24.5
	2020	62,143	32,555	10,552	17.0	32.4
	2021	73,099	36,798	9,218	12.6	25.0
	2022	10,600	32,522	6,166	58.2	19.0
	2023	18,241	32,178	5,280	28.9	16.4

자료: 통일부

참고로,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남북경협 중단 지속으로 기업들의 경영애로를 고려하여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228개 기업 1,414억원 규모임.

<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상환 유예 현황 >

(단위: 개사,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개성공단	기업수	117	112	104	96	95
	금액	38,537	68,046	85,476	79,077	78,227
개성공단 외	기업수	155	154	144	135	135
	금액	84,650	99,797	149,798	48,216	63,181
합 계	기업수	268	264	247	229	228
	금액	123,187	167,843	235,274	127,293	141,408

자료: 통일부(중복 제외)

기타민간이자수입과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의 징수결정액은 해당 회계연도에 원리금 만기가 도래한 금액으로, 상환유예 또는 만기연장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에서 제외됨.

< 2023년 남북협력기금 융자 잔액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2023년말 융자잔액	융자대상	2023년 만기도래액(원금)			
			계	상환액	상환유예	미상환액
경협기반(융자)[주1]	271,415	조선무역은행	10,460	0	0	10,460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178,284	㈜아난티 등 193개	66,126	633	63,181	2,312
개성공단운영대출	184,174	재영솔루텍㈜ 등 128개	125,148	4,647	119,849	652
계	633,873[주2]	308개[주3]	201,734	5,280	183,030	13,424

자료: 통일부

주1) 2007년 조선무역은행 앞 차관방식으로 제공한 경공업차관(북측의 의복,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자재장비차관(경의선, 동해선 북측구간 철도, 도로 및 역사 기자재관련 차관)

2) 미달러화 대출은 '23.12.29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1,289.40원) 적용하여 원화 환산

3) 중복 기업수 제외

2023년 결산일 기준 해당 회계연도에 원리금 만기가 도래한 금액 중 상환 유예 또는 만기 연장 경우 등을 제외한 징수결정액은 융자금 321억 7,800만원, 이자 36억 400만원이나, 이를 상환하지 못한 융자금 및 이자의 연체 규모는 56개 기업 290억 6,300만원임.

< 남북협력기금 원금 및 이자 연체내역 >

(단위: 개사, 백만원)

구 분		원금(A)		이자(B)		계(A+B)	
		기업	금액	기업	금액	기업	금액
경협대출		2	5,800	2	484	2	6,284
특별대출	교역·경협·금강산	31	8,945	30	882	31	9,827
	개성공단	22	12,071	22	795	22	12,867
교역대출		2	82	2	3	2	85
합 계		56	26,898	55	2,164	56	29,063

자료: 통일부(중복기업 수 제외)

대출 원리금 연체 사유는 금강산 관광 중단, 2010년 5.24조치,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경협·교역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 및 사업기반 약화임.

□ 남북 경제협력사업 추진 위해 민간에 대출한 채권의 부실화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

남북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남한기업에 대출한 금액과 관련하여 대출원금은 '기타민간 융자원금 회수사업'을 통해 상환처리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기타민간 이자수입'에서 수입처리하고 있음.

먼저 민간에 대한 대출원금의 상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4년간 '기타민간 융자원금 회수사업'의 결산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음.

< 최근 4년간 기타민간 융자원금 회수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연도말 채권 원금 잔액	만기도래 채권 원금 (A)	징수 결정액 (B)	만기도래 원금 대비 징수 결정액 비율(C/A)	수납액 (D)	만기도래 채권액 대비 원금상환액 (D/A)
'20		282,332	258,259	32,555	12.6	10,552	4.1
'21		273,278	303,073	36,798	12.1	9,218	3.0
'22		287,185	208,530	32,522	15.6	6,166	3.0
'23	기존대출	257,430	215,201	32,170	14.9	5,280	2.5
	'22년 신규대출 182)	24,220	8	8	100	-	-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남북경협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통일부 지침에 의거 1년 단위로 원금 및 이자에 대해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며, 원금 중 상환유예된 금액은 징수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그 결과 만기도래 채권 원금 대비 징수결정액의 비율은 12~16%의 범위에 있음.

182) 2022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에 따라 남북경협 중단 피해기업에 대해 특별대출을 지원하였으며, 78개사 앞 245억원 대출 집행

2023년에는 기존 대출액의 만기도래 원금 2,152억원 중 14.9%인 321억 7,000만원에 대해 징수결정을 하였고 이 중 52억 8,000만원이 수납되었음. 징수결정액 중에서 수납액이 실제 원금 상환액이므로 만기도래 채권 원금 중 2.5%만이 상환되었음을 알 수 있음. 이 비율은 2021, 2022년에도 3%에 불과하여 실제 원금 상환실적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다음으로 민간에 대한 대출원금의 이자 상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4년간의 '기타민간 이자수입'의 결산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음.

< 최근 4년간 기타민간이자수입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연도말 채권 이자 잔액	만기도래 채권 이자액(A)	징수 결정액 (B)	만기도래 이자액 대비 징수 결정액 비율(C/A))	수납액 (D)	만기도래 이자액 대비 이자상환액 (D/A)
'20		34,087	9,300	2,850	30.6	1,712	**18.4**
'21		39,207	39,477	3,052	7.7	1,384	**3.5**
'22		41,762	14,216	2,513	17.7	804	**5.7**
'23	기존대출	43,417	23,969	3,434	14.3	1,270	**5.3**
	22년 신규대출	258	428	170	39.7	170	**39.7**

자료: 통일부

통일부의 상환유예 지침에 따라 이자도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상환유예된 이자금액 역시 징수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023년에는 기존 대출액의 만기도래 이자액 239억 6,900만원 중 14.3%인 34억 3,400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하였고 이 중 12억 7,000만원이 수납되어, 만기 도래 채권 이자액 중 5.3%가 상환되었음. 이 비율은 2021, 2022년에도 3~6%에 불과하여 실제 이자 상환실적 또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

음.

위와 같은 낮은 이자 상환실적은 원금 상환에 비해 보다 주의깊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자 상환유예조치는 이자 감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누적되어 대출총액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임.

한편, 손실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미리 설정하는 대손충당금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말 기준 채권잔액 대비 25.3%를 적립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점차 적립율이 높아지고 있음. 전입액은 차주의 재무상태, 연체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채권 상환가능성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4년간 대손충당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채권 원금 잔액	대손충당금 잔액 (비율)	대손충당금 전입액	상계액	비고
'20	282,332	58,537 (20.7%)	797		
'21	273,278	62,384 (22.8%)	3,848		
'22	287,185	67,997 (23.7%)	5,613	4,245	
'23	281,650	71,334 (25.3%)	3,336		

자료: 통일부

주1) 연체 중인 이자(미수납액)는 미수수익 등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상 대손충당금 적립 및 상계처리와 무관하여 원금에 대해서만 작성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할 수 있음.

첫째, 원금 및 이자의 저조한 상환율은 향후 대출 부실화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채권 회수 계획의

수립 및 관리가 요구됨.

둘째, 이자 상환유예와 원금 상환유예에 대해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는 원금에 비해 보다 상환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통일부는 상환유예 결정은 원금과 이자가 아닌 기업의 경영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있으며, 남북경협 기업들 대부분이 영세한 기업으로 취약차주 보호 및 채권 회수가능성 확보를 위해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자 상환유예조치는 이자가 계속 누적되어 대출총액 증가와 기업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세 기업의 재무 상황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하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기준을 달리 정하여 이자에 대해서는 상환을 보다 독려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장기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기타재산이자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기금 여유자금 예치에 따른 운용수익 등으로, 2023년도 계획액 23억 3,000만원의 143.2%인 33억 3,800만원이 수납되었음.

< 2023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A)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2,330	-	2,330	3,338	3,338	-	143.2

자료: 통일부

전반적인 이자율 상승 기조에 따라 단기 금융상품 운용수익률 상승으로 전년(수납액: 1,389백만원) 대비 수납액이 증가되었음.

라.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기금 무상사업비를 개산급[183]으로 지급한 이후의 정산에 따른 환입금 수입 및 지난 2013년, 2016년 개성공단 가동중단 시 지급된 경협보험금 회수액으로, 2023년 계획액은 108억 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0억 7,800만원으로 수납률은 28.5%임.

<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A)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10,806	-	10,806	3,078	3,078	-	28.5

자료: 통일부

세부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환입금 수입으로 29억 500만원과 경협보험금 반납으로 1억 7,300만원이 수납되었음.

<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환입금 수입	2,432	2,905	2,905	-
경협보험금 환입	8,374	173	173	-
합 계	10,806	3,078	3,078	-

자료: 통일부

‘환입금 수입’ 29억 500만원은 화살머리고지 기념관 건립사업 환입금 7억 5,000만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환입금 5억 5,500만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환입금 3억 8,200만원 등에서 발생하였음.

183) 개산급(槪算給): 갚거나 주어야 할 돈의 액수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때 그 금액을 미리 대강 계산하여 주는 일(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환입금 수입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화살머리고지 기념관 건립사업 환입금	750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환입금	555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환입금	382
북한 아동 콩기름 지원사업 환입금	350
북한 어린이 쌀 지원사업 환입금	350
긴급분유지원사업 환입금	230
남북공동 유해발굴 자재장비 지원사업 환입금	145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사업 환입금	48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사업 환입금	17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사업 환입금	17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환입금	14
대북 콩기름 지원사업 환입금	10
기 타(대북협력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사업 환입금 등)	36
합 계	2,905

자료: 통일부

한편, ‘경협보험금 환입수입’은 당초 계획액을 83억 7,400만원으로 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억 7,300만원으로 계획액 대비 수납률이 2.1%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중단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기업들이 반납해야 하는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경협보험금 환입관련 현황을 보면 약관[184]에 따라 경협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이를 남북협력기금의 세입으로 회수하고 있음.

184) **「지분 등 투자보험 약관」 제27조의2(대위권 등의 행사)** ③ 기금은 대위권 등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반납기한을 정하여 보험금 반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3년의 경우 4월 개성공단 사업 중단 후 지급된 59개 기업대상 보험금 1,761억원에 대해서는 같은 해 9월 개성공단 재개 이후 총 1,311억원을 자산평가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기금의 세입으로 환입 받았음.

< 기타경상이전수입 경협보험금 연도별 반납 현황 >

(단위 : 개사, 억원)

연 도	기업수	반납금액	비 고
2013년	40	1,166	
2014년	10	87	6개기업 중복
2015년	7	54	7개기업 중복
2016년	-	-	가지급금 초과지급분 및 회수금 통지 지연에 따른 초과지급분 반환 제외
2017년	-	-	-
2018년	-	-	-
2019년	1	0.1	1개기업 중복
2020년	1	0.4	1개기업 중복
2021년	1	0.6	1개기업 중복
2022년	1	1	1개기업 중복
2023년	1	1.2	1개기업 중복
합 계	44	1,311	연도별 중복 반납기업 제외

자료: 통일부

그리고 2013년 보험금을 지급받고 사업 재개 이후에도 반납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피해기업에게 지원해야 할 피해지원금에서 이를 갈음하는 형식으로 지원한 바 있음. 따라서 개성공단 사업이 다시 재개되지 아니하는 한 보험금 환입 대상 기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개성공단 재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경협보험금 미반납 현황 >

(단위 : 개사, 억원)

보험금 지급		보험금 회수		사업 포기		보험금 미회수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59	1,761	44주)	1,311	5	59	14주)	391

자료: 통일부(2023년 말 기준, 보험금 일부반납기업 4개사 포함)

마.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은 교역보험 및 경제협력사업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료 수입,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연수자 연수비 및 숙박비 등으로, '23년 계획액은 30억 9,000만원이고 수납액은 2,800만원으로 수납률은 0.9%임.

< 2023년도 기타잡수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A)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3,090	-	3,090	28	28	-	0.9

자료: 통일부

세부내역을 보면,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2017년 이후 교역·경협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수입은 계속 없었고, 통신관로 임차료 수입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KT간 체결한 「남북철도시설이용에 관한 계약」(2018. 1. 20.)에 따라 KT로부터 통신관로 사용료를 약 700만원 수납하였음.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연수비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엔데믹 전환 후 통일체험연수가 활성화되면서 전년(4백만원) 대비 다소 증가한 약 2,100만원을 징수·수납함.

< 기타잡수입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보험료 수입	2,867	-	-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연수비	223	21	21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통신관로 임차료 수입 등	-	7	7	-
합 계	3,090	28	28	-

자료: 통일부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숙박 연수생 유치에 노력할 필요

기타잡수입 계정[185]에서의 주요 수입액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연수자 연수비 및 숙박비이며, 2023년에는 2,122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음.

< 기타잡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세부내역
2021년	7	7	o KT통신관로 임차료수입 7백만원 등
2022년	11	11	o 미래센터 체험연수비 및 숙박비 4백만원, KT통신관로 임차료 수입 6백만원 등
2023년	28	28	o 미래센터 체험연수비 및 숙박비 21백만원, KT통신관로 임차료 수입 6백만원 등

자료: 통일부

그간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2020~2022년 제6중앙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되어 정상적인 통일체험 연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으나, 2023년에는 총 체험연수자가 28,891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의 72% 수준으로 연수자 수가 회복되었음.

반면에 이용자 수에 비해 이용료 수입액이 2,100만원으로 2018년의 21%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비숙박 체험연수자 수가 크게 증가한 데 비해 숙박 체험연수자 수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임.

185) 기타잡수입 계정에 포함되는 교역보험 및 경제협력사업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료 수입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유로 수입액이 없음.

<연도별 체험연수자 수 및 이용료 수입액>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체험연수자 수(명)			이용료 수입액[186](백만원)
	합계	숙박	비숙박	
2018	39,999	25,731	14,268	99
2019[187]	23,289	13,867	9,422	50
2020	5,814	555	5,259	-
2021	1,986	0	1,986	-
2022	9,044	2,959	6,085	4
2023	28,891	9,450	19,441	21

자료: 통일부

또한, 숙박 체험연수자가 감소하면서 한 번에 총 488명의 숙박 체험연수자가 이용할 수 있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숙박시설의 이용률도 크게 떨어졌는데, 2018년 연간 이용률은 87%에 달하지만 2023년의 숙박시설 연간 이용률은 57.6%에 불과한 상황임[188].

<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숙박시설 현황 >

(단위: 실, 명)

2인실	수용 인원	4인실	수용 인원	8인실	수용 인원	가족 빌리지 등	수용 인원
44	88	56	224	12	96	18	80
총 수용인원 488							

자료: 통일부

186)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프로그램 이용 단가 > (1인당 이용료, 단위: 원)

구 분		사용료 (VAT 면제)			
		초	중	고	교사
숙박비(1박)		8,000	8,000	8,000	8,000
식비(1식)		5,500	5,800	6,000	7,000
체험연수비	2박3일	10,000	10,000	10,000	-
	1박2일	5,000	5,000	5,000	-
	당일	무료	무료	무료	-

187) 2019년에는 돼지열병 유행에 의해 9.21. 이후 연수 중단

188) ○ 이용률 산출식{(연간 연수 운영일 / 연간 시설 운영일) X 100 = 연간 이용률}
○ 연간 이용률 통계 - 2018년 : 235일 / 270일 X 100 = 87.03%
- 2023년 : 147일 / 255일 X 100 = 57.64%

숙박 체험연수자가 감소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수입액 감소와 숙박 시설 공실률 증가 외에도, 보다 심도깊은 통일체험과 연수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에 있음.

통일부는 숙박 체험연수자를 늘릴 수 있도록 교육기관 또는 지자체와 협력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통일의식 고취에 기여하고 기관의 설립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바.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금예수금

일반회계전입금은「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정부출연금으로 2023년도 계획액 1,000억원(재정당국의 엄격한 건전재정 기조 下, 428억원 수납받지 못함) 대비 572억원(57.2%)만 수납하였음. 수납액은 2023년에 도래하는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예수금의 이자 상환분 286억 7,400만원과 남북협력사업비 충당분 285억 2,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이하 “기금예수금”)은 경수로사업 관련 공자기금 원금상환과 남북협력사업 수요의 변동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만으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예수하는 것으로, 2023년도의 경우 당초 계획액은 1조 5,716억 5,300만원 이었으나, 계획액의 27.4%인 4,300억원을 수납하였음.

< 2023년도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금예수금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A)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	-	100,000	57,200	57,200	-	57.2
공자기금 예수금	1,571,653	-	1,571,653	430,000	430,000	-	27.4

자료: 통일부

기금예수금 4,300억원은 경수로사업 관련 기존 공자기금 예수 원금 중 2023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이며, 남북협력사업 관련 계획액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사업 집행률 저조와 여유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예수하지 않음.

3. 남북협력기금 지출 결산 검토

가. 통일정책

‘통일정책’ 프로그램은 접경지대에 남북교류의 공간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남북청소년 교류 및 국내외 청소년 대상 통일체험연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도 통일정책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계 획
		계 획	결 산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2,888	3,660	3,357	4,592
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2,888	3,660	3,357	4,592

자료: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최대 48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일체험 연수시설이자 남북교류 지원시설로, 2014년 11월 개관하여 2015년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음.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현황 >

o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남계로 408
o 총 사업비: 493억원(건축비)
o 사업 기간: 2011년~2014년(2014년 9월 준공, 11월 개관)
o 시설 규모: 부지 273,074㎡(약 82,600평), 건축연면적 17,362㎡(약 5,200평)
- 주요시설 현황: 운영센터 및 연수관(지상 2층), 체험관, 체육관 및 식당, 생활관(4층), 가족빌리지, 직원숙소,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야외공연장, 한반도 투어링장 등
o 최대 수용인원: 488명

자료: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통일체험연수는 전국 일선 학교(초·중·고)를 대상으로 당일, 1박 2일,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과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 해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화프로그램, 일반인 대상의 통일체험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 상반기 엔데믹 전환 후 '대면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총 118개 학교·단체 등, 연인원 28,891명 대상의 통일체험연수를 실시하였음.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의 2023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33억 5,700만원이 집행되어 계획현액(36억 6,000만원) 대비 집행률은 91.7%임.

< 2023년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3,660	0	3,660	3,357	-	303	91.7	91.7

자료: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의 집행률이 전년(84.6%)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상반기 엔데믹 전환에 따른 연수 정상화 재개로 대면 통일체험 연수 실시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 장비·시스템 최신화 필요

세부사업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은 청소년 대상 통일미래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미래세대를 양성하고 센터 시설관리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임. 2023년에는 계획액 36억 6,000만원 중 33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3,660	3,660	-	-	3,660	3,357	-	303	4,592

자료: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통일체험연수 전문기관으로 체험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과 체험시설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음.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현황 >

o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남계로 408

o 총 사업비: 493억원(건축비)

o 사업 기간: 2011년~2014년(2014년 9월 준공, 11월 개관)

o 시설 규모: 부지 273,074㎡(약 82,600평), 건축연면적 17,362㎡(약 5,200평)

- 주요시설 현황: 운영센터 및 연수관(지상 2층), 체험관, 체육관 및 식당, 생활관(4층), 가족 빌리지, 직원 숙소,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야외공연장, 한반도 투어링장 등

o 최대 수용인원: 488명

자료: 통일부

한편,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2014년에 개관하여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있는데, 특히 체험연수에 핵심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체험시설·시스템·장비 등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노후화 되어 보완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주요 목록은 아래 표와 같음.

< 노후화로 인해 보완이 필요한 체험시설 현황 >

연번	설치시스템	설치연도	개선보완 사유
1	시스템 전원관리 기기	2014	-기기 노후화로 전반적인 전원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
2	(자원영역) 광물 AR 체험기기	2014	-초창기 기술로 청소년 흥미유발 한계 -최신AR 기술 도입 필요
3	(관광영역) 여행성향 체험기기	2014	-청소년 흥미유발 한계 -신규 콘텐츠 도입 필요
4	(물류영역) 퀴즈대결 체험기기	2014	-기기 노후화로 수시 고장 발생 -초창기 기술로 흥미유발 한계 -흥미유발을 위한 체험기기 변경 및 콘텐츠 개선 필요
5	(문화영역) 아나운서 체험기기	2014	-기기 노후화로 수시 고장 발생 -초창기 기술로 흥미유발 한계 -실감형 시스템으로 개선 필요
6	KTX-통일호 VR 체험기기	2018	-VR 초기버전 기기로 인해 해상도 등 전반적인 업그레이드 필요 -몰입감 향상을 위한 실감형 영상시스템 및 콘텐츠 변경 긴요
7	(물류영역) 주행(아시안하이웨이) 체험기기	2018	-당시 기술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기술 -유지보수가 곤란, 최신기술 기기 도입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필요
8	(문화영역) 통일한국 신문제작 체험기기	2018	-복잡한 사용방법으로 흥미유발 한계 -단순한 사용방법과 실감형 시스템으로 개선 필요

자료: 통일부

체험시설은 체험연수자들이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과 도구를 제공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함. 효과적인 체험시설은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자의 감정 이입과 공감

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체험시설의 최신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선호도가 높은 체험코스 중 하나인 KTX-통일호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체험은 남북 분단과 통일노력에 대한 에피소드를 VR 기술를 통해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설치된 VR 기계가 노후되어 해상도가 낮아 화면이 흐릿하게 보이고 체험자의 몰입감을 떨어뜨리고 있음.

따라서, 통일부는 노후화된 체험시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업그레이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을 산출·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체험시설을 최신화시켜 통일 관련 체험효과 극대화를 통해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나. 남북사회문화교류

‘남북사회문화교류’ 프로그램은 남북간 주민 왕래 및 사회문화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해 남북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상호 호혜적 관계 구축 및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 사업은 예산구조 개편을 거쳐 2016년부터 ‘남북사회문화교류’라는 1개의 단위사업 아래에 ‘사회문화교류 지원’이라는 1개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편성되었음.

< 2023년도 남북사회문화교류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계 획
		계획	결산	
1. 남북사회문화교류	3,353	21,520	3,456	15,951
가. 사회문화교류지원	3,353	21,520	3,456	15,951

자료: 통일부

1) 남북사회문화교류

가) 사회문화교류지원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은 남북한 주민 왕래 및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사회문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통해 사회문화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 극복과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남북협력기금법」제8조제1호 및 제2호[189]에 근거하여 남북한 주민의 왕래와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액 215억 2,000만원의 16.1%인 34억 5,600만원이 집행되고, 180억 6,4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21,520	-	21,520	3,456	-	18,064	16.1	16.1

자료: 통일부

2023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육·학술협력사업은 계획액 26억 9,500만원 중 87.5%인 23억 5,8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인적왕래·기타협력사업은 계획액 188억 2,500만원 중 5.8%인 10억 9,800만원이 집행되었음.

189)「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8. (생 략)

< 2023년도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교육학술협력사업	2,695	-	2,695	2,358	-	337
·인적왕래·기타협력사업	18,825	-	18,825	1,098	-	17,727
합 계	21,520	-	21,520	3,456	-	18,064

자료: 통일부

기타 협력사업으로 집행된 10억 9,800만원의 내역은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전시 5억 700만원,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및 활용 4억 8,700만원, 개성만월대 디지털 기록관 운영 1억 400만원임.

< 2023년도 기타협력사업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원승인액	집행액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전시	507	507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및 활용	487	487
개성 만월대 디지털기록관 운영	104	104
합 계	1,098	1,098

자료: 통일부

다. 인도적 문제해결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교류를 촉진하고, 북한주민들의 식량난·재해 등 복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① 이산가족교류지원, ② 대북인도적 지원의 총 2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 2023년도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계 획
		계획	결산	
□ 이산가족교류지원	1,022	18,027	993	17,877
○ 이산가족교류지원	1,022	18,027	993	17,877
□ 대북인도적지원	3,371	711,977	752	571,621
○ 구호지원	-	107,008	-	96,307
○ 민생협력지원	3,371	604,969	752	475,314

자료: 통일부

1) 이산가족교류지원

가) 이산가족교류지원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은 남북 당국 간 및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산의 고통을 해소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계획액 180억 2,700만원 중 9억 9,300만원이 집행되어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5.5%임.

< 2023년도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18,027	-	18,027	993	-	17,034	5.5	5.5

자료: 통일부

세부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이산가족교류활성화기반조성 사업에 9억 9,3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산가족상봉행사 사업과 이산가족면회소운영 사업의 경우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계 획
		계 획	결 산	
○ 이산가족교류지원	1,022	18,027	993	17,877
· 이산가족상봉행사	58	12,211	-	12,211
· 이산가족교류활성화기반조성	964	1,453	993	1,303
· 이산가족면회소운영	-	4,363	-	4,363

자료: 통일부

2) 대북인도적지원

‘대북인도적지원’ 사업은 북한의 식량·경제·재해 등 인도적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과 농축산 협력 및 산림복구, 환경,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북인도적지원 1개의 단위사업 아래 구호지원 및 민생협력지원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2023년도 대북인도적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계 획
		계획	결산	
○ 대북인도적지원	3,371	711,977	752	571,621
· 구호지원	-	107,008	-	96,307
· 민생협력지원	3,371	604,969	752	475,314

자료: 통일부

가) 구호지원

‘구호지원’ 사업은 북한 지역의 자연재해 및 전염병, 식량난 등 인도적 위기상황 발생 시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북한주민의 고통 경감 및 기본적 생존권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은 1,070억 800만원이었으나 당국간 지원 합의가 없어 전액 미집행 되었음.

< 2023년도 구호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107,008	-	107,008	-	-	107,008	-

자료: 통일부

나) 민생협력지원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통해 통일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축산 협력 및 산림 복구, 환경,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190]

2023년 계획액 6,049억 6,900만원 중 7억 5,200만원이 집행되고, 6,042억 1,700만원이 불용됨으로써 집행률은 계획액 대비 0.1%임.

< 2023년도 민생협력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604,969	-	604,969	752	-	604,217	0.1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인도적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지원 사업은 계획액 15억 2,500만원 중 49.3%인 7억 5,200만원이 대북지원협력사업 통합관리체계구축 사업 등에 집행되었음.

내역사업 중 북한영유아지원, 보건의료협력, 농축산산림환경협력,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및 남북관계 경색 등 사업 추진 여건 악화로 전액 불용되었음.

190) 2016년도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개발협력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2015년도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및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세부사업을 ‘중점 인도적 지원’에 통합하고 명칭을 ‘민생협력지원’으로 변경하여, 예산구조를 주체와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체계에서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였고,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기존 ‘중점인도적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북한영유아 등 지원, 보건의료협력, 농축산산림환경협력,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 2023년도 민생협력지원 내역사업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북한영유아 지원	87,134	87,134	-	87,134	-	-	87,134
·보건의료협력	124,244	124,244	-	124,244	-	-	124,244
·농축산산림환경협력	391,566	391,566	-	391,566	-	-	391,566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	1,525	1,525	-	1,525	752	-	773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지원	500	500	-	500	-	-	500
합 계	**604,969**	**604,969**	**-**	**604,969**	**752**	**-**	**604,217**

자료: 통일부

□ 성과지표 ‘대북 인도적 지원(반출승인) 실적’ 개선 필요

통일부는 세부사업 ‘민생협력 지원’에서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로 2022년도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 실적(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사업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반출을 승인한 건수를 의미함.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경 개방 여부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2023년의 경우 5건을 목표로 하고 반출승인 신청 5건에 대해 모두 승인하여 성과보고서 상에 100%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 2023년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 >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대북 인도적 지원 (반출승인) 실적(건)	목표	신규	25	5	5	남북관계 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인도적 협력사업의 적정성 검토 후 사업의 요건을 갖춘 신청 건에 대한 반출승인 건수	통일부 및 유관기관 자체조사
	실적	신규	12	5	-			
	달성도	-	48	100	-			

자료: 통일부

2023년도의 실제 승인 내역을 보면, 신규 승인이 아니라 기존의 반출 승인 건에 대한 기간연장 승인, 즉 자체사업(민간 법인 등이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 3건 반출에 대해 기간연장 승인, 그리고 정부기금사업(2020년 이전에 남북협력기금 사업으로 승인) 2건 반출에 대한 기간연장을 승인한 것임.

< 2023년도 반출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5건) 내역 >

(단위: 백만원)

승인일자	단체명	반출 품목	금액		승인내역	비 고 (실제반출여부)
1.10.	(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목재 합판 등	350	기금 사업	기간연장 승인	반출
2. 6.	(사)전○○○○○○○○	방역물품	183	자체 사업		승인 후 취소
3.30.	(사)어○○○○○○	의약품	150			반출
3.22.	선○○○	탈지 분유	250			반출
11.13.	(사)하나누리	아동방한용품	72	기금 사업		반출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반출 승인 후 코로나19 및 북한의 국경 봉쇄, 남북관계 경색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실제로는 반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반출 '승인'과 실제 반출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2023년도 반출 승인된 총 5건 중 4건은 반출이 완료되었으나 1건은 반출되지 못하고 사업 단체가 취소하였다고 설명함.

통일부는 국내 민간단체는 물론 국제기구의 인도적 물자 지원의 북한 반입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에 도달한 지원물자의 수량보다는 정부의 지원 의지를 나타내는 과정지표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반출 승인 실적(건)으로는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프로그램 목표인 '인도적 문제해결'에 대한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실제 반출한 건수를 반영하는 등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라.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은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기반을 조성하고, 개성공단 내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 및 공단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현장에서 공단을 관리·운영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단위사업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에 경제교류협력보험, 경협기반(무상), 경협기반(융자),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DMZ 평화적 이용 5개의 세부사업과 단위사업 개성공단 조성에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및 개성공단 기반조성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2023년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계 획
		계 획	결 산	
□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32,521	437,593	6,736	248,421
○ 경제교류협력보험	-	4,275	-	3,847
○ 경협기반(무상)	11,563	231,266	3,908	127,152
○ 경협기반(융자)	-	180,025	-	99,014
○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9,264	10,000	-	9,000
○ DMZ 평화적 이용	11,694	12,027	2,828	9,408
□ 개성공단 조성	34,716	17,341	7,140	13,773
○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17,411	8,282	2,027	6,626
○ 개성공단 기반조성	17,350	9,059	5,113	7,147

자료: 통일부

1)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가) 경제교류협력보험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은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대북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에는 보험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라 계획액 42억 7,500만원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해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2023년도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4,275	-	4,275	-	-	4,275	-	-

자료: 통일부

나) 경협기반(무상)

‘경협기반(무상)’ 사업은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등 남북 당국 간 합의 또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경협기반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의 무상지원을 통해 남북의 경제적 격차와 통일비용을 줄이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여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도 계획현액은 2,312억 6,600만원으로, 이 중 39억 8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계획현액 대비 1.7%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4,200만원임.

< 2023년도 경협기반(무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231,266	-	231,266	3,908	3,242	224,116	1.7	1.7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민간위탁 사업에 32억 200만원,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에 4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사업 2,500만원,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 사업에 2억 7,0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년도 경협기반(무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남북공유하천공동이용	18,026	18,026	-	18,026	-	-	18,026
·남북교류협력민간위탁	3,486	3,486	-	3,486	3,202	-	284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161,548	161,548	-	161,548	-	-	161,548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	43,810	43,810	-	43,810	410	-	43,400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311	311	-	311	25	-	286
·남북관리구역통행체계 개선	4,085	4,085	-	4,085	270	3,242	573
합 계	**231,266**	**231,266**	**-**	**231,266**	**3,908**	**3,242**	**224,117**

자료: 통일부

□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개선 사업 공사비 등 사고이월 관련 체계적 집행 관리 필요

내역사업인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 사업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내 10년 이상 노후화된 CCTV 등 시설 및 장비 교체를 통하여 남북통행 재개 시 출입경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계획액 40억 8,500만원 중 2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32억 4,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7,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4,085	4,085	-	-	4,085	270	3,242	573	200

자료: 통일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시설·장비는 2011년에 설치된 이후로 10년 이상 미교체 상태로 잦은 고장과 화질·성능의 부족으로 인해 통행 안전 관리에 부족함이 있었음.

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방부는 남북관리구역의 시설·장비에 대한 협의를 통해 운영은 국방부가 담당하고 설치는 통일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상호 역할을 정리하고 CCTV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음.

<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개선 사업 개요 >

▪ 당초 사업기간 : ‘23.1.~’23.12.
▪ 총공사비 : 3,483백만원(△계약금액 3,190백만원)
▪ 사업내용 : CCTV 28개 교체, 전원·통신케이블 포설 5.7km, 통합관제시스템 2개소 구축 등
▪ 참여업체 : 시공·감리 9개 업체(감리1, 시공8)
  * 서해지구 3개사(시공3), 동해지구 3개사(시공3), 동·서해지구 통합 3개사(감리1, 시공2)

자료: 통일부

<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개선 사업 일정 변경 내역 >

당초	변경
(2023. 2.) 사업계약 조달의뢰	(2023. 2.) 설계용역 조달의뢰
(2023. 6.) 사업계약 체결	(2023. 8.) 설계용역 완료
	(2023. 8.) 공사계약 조달의뢰
	(2023. 12.) 공사계약 체결
(2023. 7. ~ 10.) 본공사	(2023. 12. ~ 2024. 3.) 본공사

자료: 통일부

이 사업은 본래 2023년에 공사완료가 목표였으나, 2023년 공사비 예산 34억 8,300만원 중 7백만원을 집행하고 31억 9,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바, 그 사유는 설계용역의 기술평가에 국방부가 참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공사계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도 조달청의 지역별·공사별 분리발주[191] 요청에 따른 계약지연이 발생하였기 때문임[192].

당초 계획은 전체 사업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일괄 조달계약 체결 후

191) 지역분리(서울, 강원), 공종분리(건축・전기・통신공사 등 6개 공종)

192) 보안성 검토(국방부 및 국정원) 지연(의뢰 7월 → 완료 11월)

공사 시행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으나, 변경된 계획에서 공사비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설계용역 계약과 공사용역 계약으로 나누어 시행해야 했고 국방부와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 지연까지 겹쳐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되었음.

한편,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에 통합상황실 설치와 5.7Km 구간의 전원·통신 케이블 포설 작업 등 공사비 필요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자산취득비로 일괄 편성한 결과, 공사비와 감리비 마련을 위해 자산취득비와 시설장비유지비를 대상으로 계획변경 절차를 거치기도 하였음.

< 계획변경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목	내역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협의변경* ('23.10.12.) * 기재부승인	430-01 (자산취득비)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	△3,483	조달청 계약변경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재원 마련
	420-03 (공사비)		3,483	
	210-09 (시설장비유지비)		△70	
	430-04 (감리비)		70	
합 계			±3,553	

자료: 통일부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예산 편성과 초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세부내용과 절차에 대한 이해와 세심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업 일정이 지연되어 사고이월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통일부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시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세부절차의 혼선과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 경협기반(융자)

‘경협기반(융자)’ 사업은 사업의 공공성이 크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남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개선사업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남북한간 경제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교류협력기반 조성에 기여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에는 계획액 1,800억 2,500만원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2023년도 경협기반(융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180,025	-	180,025	-	-	180,025	-	-

자료: 통일부

라)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은 해외 수출입 및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 위험도가 높고 일반 금융기관의 지원이 취약한 북측과의 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소요자금을 대출함으로써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에는 경제교류협력 자금대출 신규 대출수요 미발생에 따라 계획액 100억원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2023년도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10,000	-	10,000	-	-	10,000	-	-

자료: 통일부

마) DMZ 평화적 이용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은 DMZ 평화적이용에 대한 실현을 위해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남북공동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임.

2023년도 계획현액은 120억 2,700만원임. 이 중 28억 2,800만원이 집행되고 91억 4,1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계획현액 대비 23.5%임.

< 2023년도 DMZ 평화적 이용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12,027	-	12,027	2,828	58	9,141	23.5	23.5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DMZ 국제포럼은 계획현액 3억원 전액 불용되었고, DMZ 통합관리체계 구축은 계획현액 14억 6,100만원 중 10억 8,300만원 집행되고, 3억 2,000만원은 불용되었음.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계획현액 75억 1,700만원 전액 불용되었으며, 접경지역 공동위원회도 계획현액 4,000만원 전액 불용되었음.

판문점 견학 통합 운영 사업의 경우 계획현액 20억 7,900만원 중 13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4,800만원은 불용하였으며,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계획현액 6억 3,000만원 중 4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1,600만원은 불용하였음.

< 2023년도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의 내역사업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DMZ 국제포럼	300	300	-	300	-	-	300
·DMZ 통합관리체계 구축	1,461	1,461	-	1,461	1,083	58	320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7,517	7,517	-	7,517	-	-	7,517
·접경지역 공동위원회	40	40	-	40	-	-	40
·판문점 견학 통합 운영	2,079	2,079	-	2,079	1,331	-	748
·DMZ 평화통일문화 공간 조성	630	630	-	630	414	-	216
합 계	**12,027**	**12,027**	**-**	**12,027**	**2,828**	**58**	**9,141**

자료: 통일부

2) 개성공단 조성

‘개성공단 조성’ 단위사업은 ①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가동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건립·운영, ② 현장에서 공단을 관리·운영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운영비 지원, ③ 개성공단 기업·근로자 지원 등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및 개성공단 기반조성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2023년도 개성공단 조성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계 획
		계 획		결 산	
		당 초	변 경		
□ 개성공단 조성	34,761	17,341	17,341	7,140	13,773
○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17,411	8,282	8,282	2,027	6,626
○ 개성공단 기반조성	17,350	9,059	9,059	5,113	7,147

자료: 통일부

가)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사업은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통해 기반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기업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82억 8,200만원 중 20억 2,7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24.5%임.

< 2023년도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8,282	-	8,282	2,027	-	6,255	24.5	24.5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집행내역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 대출금으로 20억 2,700만원이 집행되었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상황 지속으로 공단 기반시설 지원 계획액 62억 2,400만원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2023년도 개성공단 운영대출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개성공업지구지원 재단 지원(유상)	2,058	-	2,058	2,027	-	31
공단 기반시설 지원(융자)	6,224	-	6,224	-	-	6,224
합 계	8,282	-	8,282	2,027	-	6,255

자료: 통일부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부채 상환을 위한 장단기 방침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

세부사업인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사업’은 개성공업지구의 행정·지원을 위해 설립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운영 및 개성공업지구 기반시설 복구·운영을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193]으로, 2023년 계획액 82억 8,200만원 중 20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62억 5,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8,282	8,282	-	-	8,282	2,027	-	6,255	6,626

자료: 통일부

동 재단은 2023년 12월말 기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 중단 장기화 등으로 ‘개성공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재단의 기본임무와 역할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판단됨[194].

남북협력기금에서 재단에 운영자금으로 대출한 내역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재단 운영비 등으로 937억원을 대출하였는데, 이 중 170억원(원금 149억원 및 이자 21억원)이 상환되어, 2023년 12월말 기준 미상

193)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개성공단 기반조성(3041-405) 사업에서 무상지원하고 있음.

194) 통일부는 2024.1.4. 동 재단의 해산 결정을 발표하고, 2024년 3월 동 재단의 이사회에서 해산을 의결하였음. 이후 청산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에 한정하여 사무를 집행하고 있음.

환 대출금은 788억원임. 그밖에 외화 대출도 $1,577,050[195] 남아있는 상황임.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액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대출	상환	대출 잔액
대출 원금 (2004~2023)	93,719	14,945	78,774
발생이자	10,966	2,046	8,920
합 계	104,685	16,991	87,694

자료: 통일부(2023.12말 기준, 외화 대출 잔액 $1,577,050 별도 계상)

동 재단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매각·양도를 고려해야 하지만, 주요 자산이 북한 개성공단에 소재하고 있어 평가액 산정과 현금화 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주요자산 목록 및 소재지 >

시설명	자산 종류	용도	소재지
아파트형공장	토지이용권, 건물	공장, 공동주택시설	개성공업지구 1단계
기술교육센터	토지이용권, 건물	교육시설	개성공업지구 1단계
폐기물처리장	토지이용권, 건물	폐기물처리	개성공업지구 1단계
정배수장	토지이용권, 건물	용수공급시설	개성공업지구 1단계 외곽
폐수처리장	건물	폐수처리시설	개성공업지구 1단계
탁아소	토지이용권, 건물	보육시설	개성공업지구 1단계 외곽
단지내시설	건물	공원, 도로 등	개성공업지구 1단계
응급의료시설	건물	의료시설	개성공업지구 1단계
소방서	토지이용권, 건물	업무시설	개성공업지구 1단계
제2차폐기물처리시설	건물	폐기물처리	개성공업지구 1단계

195) 정부는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시 입주기업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입주기업들이 북측에 미납한 임금 및 세금 등 1,300만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재단이 관리기관에 재대출)하여 대납하였음. 개성공단 재가동 후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신들이 납부했어야 할 북측 임금 등을 상환하였으나 북측과 기업의 주장이 달라 발생한 차이금액 등으로 인해 일부 잔액($1,577,050)이 남아있는 상태임.

시설명	자산 종류	용도	소재지
출퇴근버스 주차장	토지이용권, 건물	자동차 관련 시설	개성공업지구 1단계

자료: 통일부(토지이용권 기한은 2054.4.12.까지임.)

이와 같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더욱이 상환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대출 잔액 788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따라서, 동 재단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의 면밀한 방침 마련이 필요함. 예를 들어 부채의 경우 자산의 처분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자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동 재단의 부채 상환 문제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남북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복잡한 사안임. 따라서 통일부는 부채 상환에 대한 장단기 방침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이를 통해 고정적인 이자 부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성공단 기반조성

‘개성공단 기반조성’ 사업은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가동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을 건립·운영하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피해 기업 경영정상화 및 근로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90억 5,900만원 중 51억 1,3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56.4%임.

< 2023년도 개성공단 기반조성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9,059	-	9,059	5,113	-	3,946	56.4	56.4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지원에 51억 1,300만원이 집행되었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상황 지속으로 인해 공단기반시설 건설 지원과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협의이행 현장지원의 경우 전액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개성공단 기반조성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지원(무상)	5,219	-	5,219	5,113	-	106
· 공단 기반시설 건설 지원	3,740	-	3,740	-	-	3,740
· 공단 관련 당국간 협의이행 현장지원	100	-	100	-	-	100
합 계	**9,059**	**-**	**9,059**	**5,113**	**-**	**3,946**

자료: 통일부

마.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프로그램은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 및 사업관리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수출입은행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액 23억 5,600만원 중 22억 5,6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5.8%임.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계 획
		계 획	결 산	
1.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2,285	2,356	2,256	2,239
가. 기금관리비	56	72	42	65
나. 위탁수수료	2,170	2,182	2,182	2,101
다. 사업관리비	59	102	31	73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기금관리비가 계획액 7,200만원 대비 58.3%인 4,200만원 집행되었고, 위탁수수료는 21억 8,200만원, 사업관리비는 계획액 1억 200만원의 30.4%인 3,100만원이 집행되었음.

바. 기금간 거래

남북협력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 함) 예수원금 및 예수이자 상환 현황을 보면, 2023년도 남북협력기금은 공자기금 예수원금 4,300억원, 예수이자 448억 7,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748억 7,300만원을 상환하였는데, 공자기금 예수원금 4,300억원은 공자기금을 차입하여 상환하였고, 예수이자 448억 7,300만원은 일반회계전입금(정부출연금)으로 상환하였음.

< 2023년도 기금간 거래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계 획
		계획	결산	
1. 기금간 거래	148,587	503,914	474,873	596,209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원금상환	105,500	430,000	430,000	520,000
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자상환	43,087	73,914	44,873	76,209

자료: 통일부

공자기금 예수금은 1999년부터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임.

< 경수로사업 추진경과 및 청산현황 >

□ 추진경과

o ’94.10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서 체결

- 1,000MWe급 경수로 2기(46억$) 제공 등

o ’95.12 : KEDO-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 함경남도 신포에 경수로 2기 건설 계획

o ’97. 8 : 부지정지공사 착공식(협상단계→시행단계 진입)

o ’02.10 : 북한의 핵개발(고농축 우라늄 이용) 의혹 제기

- 경수로 사업 속도조절 결정(’03. 2)→ 사업중단(suspension) 결정(’03.11)

o '06. 5 : KEDO집행이사회, 사업종료 공식 결의

※ 사업공정률 : 34.5% ('03.11), 공사비 투입액 : 15.75억달러(한국 11.46억달러, 1.37조)

□ 청산현황

o KEDO-한전간 사업종결협약(Termination Agreement '06.12) 체결

- KEDO 소유의 북한 외부 기자재를 한전에 양도하고 한전은 청산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

o 한전의 청산 결과

- KEDO의 對 한전 미지급금(원자로 터빈 등 주기기 제작 투입 비용) : 약 6,100만달러
- 한전 하청업체 클레임 처리 : 약 2,600만달러
- 경수로 기자재 : 보관비용 약 6,440만달러, 수익 약 7,900만달러

o 남은 기자재는 △한수원 예비품, △교육·연구·전시용, △해체처분 등의 방법으로 처리

※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북미 제네바 합의('94.10)」 이후 한·미·일 3국은 '95.3.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합의

- 기능 및 역할: 1,000WMe급 원전 2기 대북 제공 및 재원 마련
  1호기 완성까지 대체에너지 공급 및 기타 제네바합의 이행 조치 수행
- KEDO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이사회'와 실무기구인 '사무국'으로 구성
  · 집행이사회: 한국(의장국), 미국, 일본, EU('97.9. 합류)
  · 일반회원국: 뉴질랜드, 캐나다, 폴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체코, 아르헨티나, 칠레, 우즈베키스탄 등 9개국

자료: 통일부

당초 정부는 대북 경수로사업의 사업실시기관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KEDO"라 함)와의 차관공여협정(1999. 7. 2.)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경수로 계정을 설정하고, 국채발행을 통해 조성된 공공자금관리금 예수금을 차입하여 KEDO에 공사비 총 1조 3,744억원을 지출하였음.

그러나, 2006년 경수로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북한-KEDO 간 채권채무 관계의 청산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협력기금은 공자기금에 대해 매년 기일이 도래하는 예수금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통일부는 경수로사업 이후 2011년도까지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공사비 원금(1조 3,744억원)과 이자를 공자기금을 재차입[196]하는 방식으로 상환하였음.

이 과정에서 발생 이자가 원금이 되어[197] 공자기금 차입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통일부는 2012년부터 공자기금 예수금 원리금 중 매년 기일이 도래하는 예수원금은 공자기금으로부터 재차입하여 상환하고, 매년 발생하는 공자기금예수금 이자는 일반회계전입금(정부출연금)을 통해 상환하고 있으며, 공자기금 차입금 규모는 2조 2,995[198]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음.

<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 차입 및 상환 현황('99~23년) >

(단위: 억원)

연 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차 입(❶)		1,498	2,549	3,100	5,050	8,230	3,100	4,100	9,400	5,216	1,475	810	8,750	1,044
상환	원금(❷)	-	-	-	1,498	2,549	3,100	2,820	7,730	5,330	500	100	7,700	-
	이자	-	190	391	626	701	795	838	967	984	963	1,002	1,048	1,051
	소계	-	190	391	2,124	3,250	3,895	3,658	8,697	6,314	1,463	1,102	8,748	1,051
잔 액(❶-❷)		1,498	4,047	7,147	10,699	16,380	16,380	17,660	19,330	19,216	20,191	20,901	21,951	22,995

연 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합 계
차 입(❶)		4,000	5,300	2,286	905	2,070	7,650	2,784	2,030	5,486	2,370	1,055	4,300	94,558
상환	원금(❷)	4,000	5,300	2,286	905	2,070	7,650	2,784	2,030	5,486	2,370	1,055	4,300	71,563
	이자	1,126	1,054	932	931	912	820	636	580	570	461	431	449	18,458
	소계	5,126	6,354	3,218	1,836	2,982	8,470	3,420	2,610	6,056	2,831	1,486	4,749	90,021
잔 액(❶-❷)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자료: 통일부

196)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을 갚기 위해 다시 국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함.

197) 예를 들면, 1999년 12월 8일 예수금의 경우 원금 1,498억원과, 이자 626억원(이자율 8.66%) 총 2,124억원을 만기일인 2002년 12년 6일 상환하기 위해 공자기금에서 2,124억원을 다시 차입함에 따라 이자 626억원이 원금이 됨.

198) 2011년 이후 잔액 2조 2,995억원은 대출원금 1조 3,744억원과 원금화된 이자 9,251억원의 합임.

사. 여유자금 운용

‘여유자금 운용’ 프로그램은 남북협력기금 조성액 중 사업비·기금관리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금을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자산운용 수익을 얻는 사업임.

2023년도 계획액 840억원은 통화금융기관예치분 301억 8,600만원과 비통화금융기관예치분 538억 1,400만원의 합으로, 이 중 통화금융기관예치 집행액은 계획액 대비 0.5%인 1억 4,000만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집행액은 계획액 대비 303.3%인 1,632억 2,100만원임.

< 2023년도 여유자금 운용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계 획
		계 획		결 산	
		당 초	변 경		
여유자금 운용	162,545	84,000	84,000	163,361	113,431
통화금융기관예치	189	30,186	30,186	140	4,855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62,356	53,814	53,814	163,221	108,576

자료: 통일부

Ⅳ.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1. 재정상태 분석

< 재정상태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3(B)	증 감	
			금액(C=A-B)	비율(C/B)
자산합계(a)	3,568,824	3,591,094	△22,270	△0.6
1. 유동자산	239,252	233,596	5,656	2.4
2. 투자자산	2,808,732	2,799,176	9,556	0.3
3. 일반유형자산	405,263	449,728	△44,465	△9.9
4. 무형자산	16,014	11,188	4,826	43.1
5. 기타비유동자산	99,562	97,407	2,155	2.2
부채합계(b)	2,306,947	2,305,612	1,335	0.1
1. 유동부채	527,159	435,979	91,180	20.9
2. 장기차입부채	1,779,500	1,869,500	△90,000	△4.8
3. 장기충당부채	-	-	-	-
4. 기타비유동부채	288	134	154	114.9
순자산(a-b)	1,261,877	1,285,482	△23,605	△1.8

자료: 통일부

< 회계별 재정상태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자산	356,229	3,212,594	3,568,824
부채	1,103	2,305,844	2,306,947
순자산	355,126	906,750	1,261,877

자료: 통일부

가. 자 산

자산은 3조 5,688억원으로 일반회계 3,562억원, 남북협력기금 3조 2,12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0.6%인 223억원이 감소하였음.

세부적으로 남북협력기금 단기자산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해 유동자산이 57억원, 환율 상승에 따른 장기대여금 증가 등으로 인해 투자자산이 96억원, 신규 소프트웨어 취득으로 무형자산이 48억원, 장기미수채권 증가로 기타비유동자산이 22억원 증가 하였으나, 자산 감액 및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 일반유형자산이 445억원 감소하였음.

일반회계의 자산은 3,562억원으로 토지, 건물 등 일반유형자산(3,392억원)이 전체 자산의 95.2%를 차지함.

< 일반회계 자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성내역	금 액	비 고
1. 유동자산	753	미수채권, 단기임차보증금 등
2. 일반유형자산	339,163	
o 토지	130,640	통일교육원, 남북회담본부 청사 부지 등
o 건물	167,76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건물 등
o 구축물	14,777	동해선 공동야드 정거장시설 등
o 기계장치 등	18,181	사무용 기계 및 비품 등
o 건설중인유형자산	7,802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관련 건설중인 토지 및 건물
3. 무형자산	16,014	개발소프트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
4. 기타비유동자산	299	장기임차보증금 등
합 계	356,229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의 자산은 3조 2,126억원으로 투자자산(2조 8,087억원)이 전체 자산의 87.4%를 차지함.

< 남북협력기금 자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성내역	금 액	비 고
1. 유동자산	238,499	
o 현금및현금성자산	76,591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등
o 단기투자증권	25,849	지분증권
o 미수채권	20,678	미수이자수익, 미수보험금
o 단기대여금	115,381	단기융자금
2. 투자자산	2,808,732	장기지분증권, 장기융자금
3. 일반유형자산	66,099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토지, 건물 등
4. 기타비유동자산	99,263	장기미수대여금이자수익
합 계	3,212,594	

자료: 통일부

나. 부 채

부채는 2조 3,069억원으로 일반회계 11억원, 남북협력기금 2조 3,058억원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13억원이 증가됨.

일반회계의 부채는 11억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등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됨.

< 일반회계 부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성내역	금 액	비 고
1. 유동부채	81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미지급금 ('24년 지급 예정),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2. 기타비유동부채	28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미지급금 ('25년 이후 지급 예정)
합 계	1,103	-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의 부채는 2조 3,058억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및 미지급이자로 구성됨.

< 남북협력기금 부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성내역	금 액	비 고
1. 유동부채	526,344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23년 만기도래), 미지급이자
2. 장기차입부채	1,779,500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24년 이후 만기도래)
합 계	2,305,844	-

자료: 통일부

다. 순자산

순자산은 1조 2,6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인 236억원 감소하였음.

2. 재정운영 분석

< 재정운영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C=A-B)	비율(C/B)
1. 프로그램순원가	174,511	112,205	62,306	55.5
2. 관리운영비	72,796	71,752	1,044	1.5
3. 비배분비용	46,125	43,358	2,767	6.4
4. 비배분수익	5,666	4,187	1,479	35.3
5. 재정운영순원가 (1+2+3-4)	287,766	223,127	64,639	29.0
6. 비교환수익 등	-	1,881	△1,881	△100.0
7. 재정운영결과(5-6)	287,766	221,246	66,520	30.1

자료: 통일부

재정운영결과는 일반회계의 경우 대부분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와 관리운영비로 구성되고, 남북협력기금은 차입금 이자비용(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 등으로 구성됨.

< 회계별 재정운영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1. 프로그램순원가	175,392	△881	174,511
2. 관리운영비	72,754	42	72,796
3. 비배분비용	11	46,114	46,125
4. 비배분수익	2,093	3,573	5,666
5. 재정운영순원가	246,064	41,702	287,766
6. 비교환수익 등	-	-	-
7. 재정운영결과	246,064	41,702	287,766

자료: 통일부

가. 프로그램순원가

프로그램순원가는 국가의 정책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총원가(사업비)에서 프로그램관련수익을 차감한 금액임.

프로그램순원가는 1,745억원으로 전년 대비 55.5%인 623억원이 증가하였음.

프로그램별로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남북회담, 통일정책 등이 증가하고, 통일교육, 인도적 문제해결 등은 프로그램순원가가 감소하였음.

< 프로그램순원가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C=A-B)	비율(C/B)
1. 프로그램순원가	174,511	112,205	62,306	55.5
o 통일정책	20,534	17,115	3,419	20.0
o 북한정세분석	6,395	3,963	2,432	61.4
o 남북사회문화교류	3,745	3,320	425	12.8
o 인도적 문제해결	7,338	8,739	△1,401	△16.0
o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75,867	73,570	2,297	3.1
o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1,623	△22,374	20,751	△92.7
o 남북회담	38,930	3,084	35,846	1162.3
o 통일교육	23,325	24,788	△1,463	△5.9

자료: 통일부

나.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 기관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경비를 의미함.

관리운영비는 72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인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및 감가상각비 등 기타경비 증가에 기인함.

다. 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직·간접적인 대응관계가 없거나, 프로그램원가로 분류하기 어려운 비용을 의미함.

비배분비용은 461억원으로 전년 대비 6.4%인 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자비용 및 자산처분손실 등 기타비용 증가에 기인함.

라. 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프로그램수익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수익을 의미함.

비배분수익은 57억원으로 전년 대비 35.3%인 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익 증가에 기인함

3. 순자산변동 분석

< 순자산변동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C=A-B)	비율(C/B)
1. 기초순자산	1,285,482	1,213,337	72,145	5.9
2. 재정운영결과	287,766	221,246	66,520	30.1
3.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63,709	300,758	△37,049	△12.3
4. 조정항목	451	△7,367	7,818	106.1
5. 기말순자산(1-2+3+4)	1,261,877	1,285,482	△23,605	△1.8

자료: 통일부

가. 기초순자산

기초순자산은 전기 말 순자산 금액으로 1조 2,855억원임.

나.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결과는 2,878억원으로 일반회계 2,461억원 및 남북협력기금 417억원으로 구성되며, 재정운영결과로 인해 순자산은 감소하였음.

다.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2,637억원으로 재원의 조달 2,660억원 및 재원의 이전 23억원으로 구성되며, 재원의 조달로 순자산이 증가하고 재원의 이전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였음.

재원의 조달은 국고수입 및 인사혁신처 등이 통일부를 대신하여 부담한 공무원연금 국가부담금 등이며, 재원의 이전은 국고이전지출 등임.

라. 조정항목

조정항목은 4.5억원으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변동 등으로 순자산이 증가함.

Ⅴ.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조치 결과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시 통일부는 18건의 주의, 2건의 시정과 29건의 제도개선 등 총 49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음.

<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조치 결과 현황 >

조치 결과	구분			소계
	주의	시정	제도개선	
조치 완료	18	1	20	39
조치 중	-	1	9	10
소 계	18	2	29	49

* 시정요구유형의 중복(시정·주의 : 1건)은 시정에 반영함.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조치완료 39건 및 조치 중 10건이라는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음.

<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1)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예산 편성 제고 필요	○[지적사항]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용액 발생 관련, 일부 사유는 충분한 현황 분석을 통해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중복하여 발생함 - 이는 예산 편성 시 각 상황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라는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안의 국회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제도개선	○ 탈북민 국내 입국 추이에 대한 면밀한 예측을 토대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큰 폭의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다만,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21년과 '22년에 비해 교육생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정착기본금, 주거지원금 등 정착금은 탈북민이 우리사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못했다고 볼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 여건과 각 상황에서의 사업 집행 경험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정 사업이 2년 이상 동일한 사유로 불용·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도 고려 필요 - 보수적 예측으로 과소 편성 시, 탈북민 입국이 증가할 경우 탈북민의 안정적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24년 정부 예산은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23년 탈북민 입국인원 증가 추세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편성 할 계획임 - '24년 하나원 예상 수료인원 500명('22년 770명, '550명)을 기준으로 정착금 예산은 '23년 대비 32.2억(209.8억→177.6억), 교육훈련 예산은 5.5억 (128.5억→123억) 감액 편성함 ○ 조치중 : '24년 12월 31일	
(2)건물 대여료 및 기타관유물 대여료 관련 국유재산 사용허가 절차준수 필요	○[지적사항] 건물대여료 세입(수납액 6,100만원) 및 기타 관유물대여료 세입(수납액 5,100만원)과 관련하여, 도라산 물류센터의 기존 5년 사용계약이 만료된 후 새로운 낙찰자가 선정되기까지 계약기간 공백이 발생함(2021.9.20.~2022.3.31.). 이 기간 동안 기존 업체가 점유하여 건물 및 기타관유물을 사용허가에 대한 계약 사실이 없이 임시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상의 사용료 선납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주의	○ 도라산물류센터 계약기간 종료('16.9.20.~'21.9.19.) 이후 신규업체 선정 절차가 계속 유찰(6차)되면서 기존 업체가 임시사용('21.9.20.~'22.3.31.)하게 됨. - 이후 신규업체 선정·계약이 체결되면서 임시사용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여 수납하였음.('22.1월, '22.3월) ○ '22년 신규계약('22.4.1.~'27.3.31.)후에는 매년 사용료 선납규정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법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국유재산법 및 국가계약법에 따른 사용허가와 계약 관리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준수할 것		령에 따라 국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겠음. ○ 조치완료일 : '22년 4월 1일	
(3)성과지표 중 통일·대북 정책 고객만족도 조사방법 개선 필요	○[지적사항] 통일부는 성과지표 중 하나인 통일·대북정책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2021년까지는 국내 정책고객 300여명과 국제회의 등 참석자 중 30명 내외의 외국인사를 대상으로 정책 만족도를 조사함 - 2022년에 조사대상을 변경하여 당해연도에 신설한 20~30대 통통국민참여단 50명으로 한정해서 조사하여 표본 집단의 일관성을 상실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정책만족도 조사가 신뢰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제도개선	○ 조사의 신뢰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23년 '통일·대북정책 고객만족도 조사'의 대상을 2030세대로 한정하지 않고, 2021년과 동일하게 정책고객 전체로 집계하였음 ○ 조치 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4)정책연구 용역의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및 비공개 보고서 공개방안 마련 필요	○[지적사항]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사업정책연구비 예산(4억 1,800만원 집행)은 남북통일·통합 관련 정책·법제 개발 및 해외사례 연구와 북핵·평화체제 조성 관련 연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주의	○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통일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하는 등 사실상 일반경쟁계약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해왔음 - 또한, 당초 나라장터를 통한 일반경쟁계약을 추진했음에도 유찰 등으로 인해 결국 수의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총 41건의 정책연구과제 모두 수의계약에 의해 수행하여 국가계약법의 일반경쟁계약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책연구보고서의 비공개 비율은 20%를 상회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정책연구과제의 과도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비공개 보고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주요 내용 공개와 부분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균형을 유지할 것		계약 전환이 이뤄진 사례도 있음 - 다만, 일반경쟁계약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음 ○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범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를 지속해 왔음 - 공개 비율 확대 노력의 결과는 수치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한 대북·통일 분야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그 비율이 낮은 수준은 아님 * 공개 비율 : '20년 56.2% → '21년 75% → '22년 76.9% - 앞으로도 국민들께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 조치 완료일 : '23년 12월 31일	
(5)예산 과소계상에 따른 반복적 세목조정 지양	○[지적사항]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활성화 사업'은 다양한 매체 및 광고 등을 활용하여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관련 소식을 국민에게 전파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인터넷 통일방송 출연자에 대한 부족한 출연료 지급을 위하여	주의	○ '23년 통일부는 통일방송 콘텐츠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 프로그램 제작 예산을 증액하는 등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 '23년도 예산은 시설장비 유지비를 감액(5,000만원)하고, 제작비인 일반수용비를 증액(5,000만원)하고, 편성하였음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2021년 뿐만 아니라 2022년에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일반수용비로 2,700만원을 세목조정하였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연례적인 동일 목적의 세목조정을 지양하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		○ 조치완료일 : '22년 12월 24일	
(6)국회가 승인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지적사항] '뉴미디어 모니터링 위탁'사업은 북한 관련 가짜뉴스 유통을 감시하고, 즉각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심사과정에서 2022년 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함. 통일부는 국회가 사업예산을 편성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함 * 사업내용변경: 북한 관련 가짜뉴스 유통감시 및 대응 → 통일·북한 관련 온라인 여론을 파악하여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관련 정책기획 및 소통의 참고자료로 활용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국회에 관련 내용을 소명하고, 향후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현저한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통해 집행할 것	주의	○ 해당 사업은 '뉴미디어 정보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북한 관련 가짜뉴스 대응'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된 사업임. -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언론통제 우려 등 지적을 고려하여 사업내용 확정, 앞으로는 국회 예산증액 사업 등의 경우, 국회 소통에 유의하며 사업을 추진하겠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2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7)메타버스 관련 사업예산 철저 관리 필요	○[지적사항] 뉴미디어 소통 강화사업으로 총 3개맵의 메타버스 개발에 2,160만원을 집행함. 개발된 메타버스 맵은 '22. 4～'23. 8월 현재까지 누적 14,000회, 월평균 777회의 방문을 기록하였음. '23. 8.22. 기준 3개 맵별 최근 방문객 수는 각각 28명, 2명, 2명에 불과함. - 메타버스 예산사업은 투입 대비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였고, 현재 사업 담당관 1명이 기초적인 사후 관리만 시행 중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어 통일부는 '23년 및 '24년 예산(안)에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단편성 사업으로 그쳤음 ○[시정요구사항]통일부는 단편성 홍보사업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뉴미디어 활용 홍보대책을 마련하며,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필요할 경우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명확한 정의 및 평가기준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	제도개선	○ 메타버스 제페토 월드맵 사업은 「2022년 통일부 정책홍보 온라인 위탁」 사업 예산의 일부(6.8%, 21,600천원)로 추진. - DMZ 관련 3개의 메타버스 월드맵을 제작하였으며, 해당 월드맵 모두는 '네이버 제페토' 메인 페이지의 '인기 크리에이터 맵' 등에 등재된 바 있음 - 다만,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줄어드는 경향에 따라, '23년도에는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지 않음 ○ 장기적인 시각에서 뉴미디어 활용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필요할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29일	조치완료
(8)통일+센터 관련 연구용역의 체계적인 수행 필요	○[지적사항] 통일+센터 설치 관련 연구용역 사업(2억 9,0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통일부가 수행한 표준조례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실제 통일+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제도개선	○ 통일부는 통일+센터 설치 관련 연구용역 사업 결과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2023년 하반기 이후 개관 예정인 지자체에서 활용하도록 조치함. - 센터별 개관(예정) 일정 : △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 이를 위해 연구용역 주제 선정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운영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통일+센터 설치 관련 연구용역 사업 결과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기준을 마련할 것		호남 '23.9. △강원 '24.10. △경기 '25.6. △충청 '25.9. ○ 조치완료일 : '23년 8월 31일	
(9)재외동포 통일문화 지원예산 집행 비목 부적절	○[지적사항] 국제사회 통일 공감대 형성 사업 내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 지원사업(1억 2천만원 집행)은 국외 재외동포 관련 단체 등의 통일문화 행사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일반수용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기타 소규모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비 및 회의참석사례금 등 각종 수수료를 위한 비목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집행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해외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다른 단체에 행사 진행 등을 맡기는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 또는 일반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	주의	○ 2023년 재외동포 통일문화 지원 사업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하여 추진함. ○ 조치완료일 : '22년 12월 23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10)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우십 지원 사업의 책임성 강화 필요	○[지적사항]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십 지원 사업(1억 9,800만원이 집행)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훈령으로 프로그램 참가자 선발, 자격 포기, 상실 및 기간연장 등 중요사항의 결정을 수탁업체에 위임하고 있는데, 통일부가 보다 책임있게 결정하는 방향으로 훈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구 시작 3개월 경과 후 펠로십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에 기존에 받은 지원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지원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참가자 선발, 상실 및 기간연장 등 참가자의 중요 이익과 관련한 사항의 결정 절차와 중도 포기시 지원금 반납규정을 보완할 것	제도개선	○ 훈령 개정 추진 중 - 펠로십 참가자 선발, 상실 및 기간연장 등 참가자의 중요 이익과 관련한 사항의 결정 절차, 중도 포기시 지원금 반납규정 보완 ※ 펠로십 참여 계약서에 중도 포기시 지원금 반납 명확하게 적시(2024.1.31.) ○ 조치예정일 : '24년 6월 30일	조치중
(11)예산 비목의 목적을 벗어난 예산집행 지양	○[지적사항] 동 사업은 북한이탈주민과 1:1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데, 탈북민 수가 감소함(2019년 1,047명→2022년 67명)에 따라 2022년에는 조사 비중을 줄이고, 통계자료의 연구·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 - 동 사업은 일반연구비	제도개선	○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은 2024년 폐지됨.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260-01)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통계자료 연구·분석 및 북한사회 테마별 분석 등의 연구는 정책연구비(260-02)에 해당하므로 예산비목의 목적을 벗어난 예산집행임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자료수집과 자료에 대한 연구·분석을 각각 일반연구비와 정책연구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12)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	○[지적사항]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2억 3,500만원 집행)은 전후납북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통해, 복지향상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2021년도에는 예산액 4억 6,000만원 중 3억 400만원을 집행(집행률 66.1%)하였고, 2022년도에는 예산액 4억 6,000만원 중 2억 3,500만원을 집행(집행률 51.1%)하여 과소집행으로 인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의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 '23년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 집행률은 96.3%로 '22년(51.1%)에 비해 집행률을 대폭 제고하였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1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유물 구매 및 전시 주제 선정 개선 필요	○[지적사항]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유물 구매 사업(9,7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구매 유물의 선정에는 상설전시와 매년 새롭게 기획하는 특별전시 주제가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구매 유물 중에는 시대가 맞지 않거나 일상생활 등 문화 일반에 관련되어 그 성격이 전시납북자 보다 전쟁·통일 일반에 관련되는 사례들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유물 구매 및 전시 주제 선정에 있어서 기념관 설립 취지에 따라 전시납북자 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	제도개선	○ '23년 유물구매 시 납북자 및 전쟁참상 등 인권 관련 유물 250여점 중점 구입함 * '23년 구매 유물 : 납북자 △「박열평전-투혼의 별은 살아있다」 △신정언(야담가)의 저서 「사비수」 △최영수의 만화 '전억망 일대기'의 예고기사가 수록된 신문(1933.10.3.자 동아일보) 등 ○ 조치완료일 : '23년 5월 31일	조치완료
(14)남북통합문화센터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지적사항] '통합문화 콘텐츠 창작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창작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에 총 15건의 공연·전시 등을 지원함 - 총 15건의 공연·전시 등이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발표되는 등 센터가 가진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북한이탈주민 창작자들이 개발한 콘텐츠가 센터에서 공연 또는 전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센터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 '22년도 결산 시정요구를 반영하여 '23년도 '통합문화 콘텐츠 창작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한 16건의 작품 중 5건을 센터에서 공연·전시하였음. ○ 센터에서 지원한 창작 콘텐츠의 공연·전시가 센터가 아닌 장소에서 발표된 이유는 센터의 △접근성(강서구 마곡 소재) △시설규모(공연장·전시공간) 등에 제약이 있기 때문임. - 센터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1층 강당은 공연장이 아닌 소규모 강당(좌석 105석)으로 설계되어 있음. - 전시공간(특별전시관, 약 15평 규모)의 경우, 전문작가들은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전시공간도 작품의 일부로 인식하고, 독립된 전시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지속적인 리모델링 등을 통해 향후에는 보다 많은 작품들이 센터에서 공연·전시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15)민간 공모 사업에 국가보조금에 준하는 관리 필요	○[지적사항] 재단은 통일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남북주민의 소통 및 화합 등을 위한 민간단체의 다양한 공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2년에 총 22개 단체를 선정하여 총 3억 6,600만원을 지원함. - 출연금을 지원받아 민간 공모사업을 진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민간 재정지원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약화될 소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출연금을 받아 재단이 추진하는 민간 공모사업에 대하여 국고 보조금에 준하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제도개선	○ 국회의 시정요구를 수용하여 2023년부터 재단의 민간 공모 사업은 국고보조금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음 - **(선발)** 기존 개별심사 방식을 1차 신청자격 검증 → 2차 심사위원 개별심사(내·외부 전문가 6~8명) → 3차 심사위원회 심의로 대폭 강화하였음 - **(정산)** 외부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과오 집행액과 이자 및 포인트 등을 환수 조치 - **(관리)** 정기적으로 사무검사와 회계감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단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음 ○ 조치예정일 : '24년 3월 31일	조치완료
(16)취업 연계 직업훈련 사업의	○[지적사항]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취업의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연계 직업훈련' 사업을	제도개선	○ 직업훈련사업의 수료율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2024년부터는 취업처가 확보된 기업(기관)중심의 기업연계형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성과제고	실시하고 있음 취업연계 직업훈련사업의 교육인원(84명) 대비 수료인원(67명) 비율은 79.7%이고, 수료인원 대비 취업인원(38명) 비율은 56.7%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통일부는 취업연계 직업훈련사업의 수료율 및 취업률 등의 사업성과를 제고할 것		훈련과정을 단기연수사업(유형2)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단기연수사업: 미취업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현장 연수를 통해 기술 습득 및 직업 적응 능력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 기업주에게는 예비 고용 후 검증된 인재 채용의 기회 제공 - 유형1(직장체험형): 조건 충족 연수기업과 연수자에게 연수비 지급 - 유형2(기업연계형): 취업처가 확보된 기관에 교육비, 훈련수당 → 수료 후 취업 연계(유형1과 동일하게 연수비 지급) ○ 조치완료일 : '24년 12월 31일	
(17)경영개선자금 사업의 신규 지원자 지원 강화	○[지적사항] 재단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북한이탈주민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원자 비율을 살펴보면, 2회 이상 기지원자에 대한 지원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신규지원자에 대한 지원 비율은 2018년도 99.1%에서 2022년도 50.6%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경영개선자금사업에서 신규지원자가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2024년부터는 신규 지원자 지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 심사 시 신규와 기존 신청자를 분리하여 선정하고 있음 ○ 또한 신규지원자 지원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대상자를 우선 지원하고 잔여 예산에 한하여 기존지원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조치완료일 : '24년 3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18)자립·자활지원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지적사항] 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자활사업단을 선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2022년 현재 운영되는 4개 자활사업단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참여율은 모두 40% 미만으로 당초 목표로 한 60%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자활사업단의 북한이탈주민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지원사업을 다른 북한이탈주민 소득지원 사업과 통폐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북한이탈주민의 자활사업단 참여는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모집되어야 하나, 최근 입국자 감소로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탈북민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재단은 기존 사업방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자립·자활 지원 사업을 탈북민 고용사업체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기업을 모집·선정하고 있음 ○ 조치완료일 : '23년 5월 31일	조치완료
(19)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비목 계상 필요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제2하나원 교육훈련'사업은 힐링프로그램 참여인원에 구호 및 교정비(320-06)를 집행함. - 힐링프로그램은 하나원을 퇴소하여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급식비용을 급식비(210-04)가 아닌 구호 및 교정비목으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함 * 통일부는 2023년 예산부터 힐링프로그램에	제도개선	○ '23년 예산부터 『힐링프로그램의』 식대와 간식비를 급식비(210-04) 목으로 조정·편성하여 운영 중임 ○ 조치완료일 : '22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식대를 구호 및 교정비(320-06)목이 아닌 급식비(210-04)목으로 편성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철저한 계획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비목을 계상할 것			
(20)DMZ 평화의 길 걷기 체험 사업 개편 필요	○[지적사항] DMZ 평화의 길 활성화 사업 중 평화의 길 걷기 체험사업(3억원 집행)은 12박13일로 진행되는 횡단코스 3회와 경기구간과 강원구간을 걷는 3박4일 코스 등 총 5회의 사업에 251명이 참여함 - 사업평가에 따르면 DMZ 평화의 길은 관계기관과 출입절차 협의를 거쳐야만 방문이 가능한 점, 장·단기간의 숙박일정으로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참여가 어려운 점,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점 등의 의견이 제시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평화의 길 걷기체험 사업을 사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방침임. - '24년 예산이 60백만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으나, 시정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예정일 : '24년 4월 22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21)특정 세목의 연례적 조정 집행 지양 필요	○[지적사항]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사업의 시설장비유지보수비(1억 3,100만원 집행)와 관련하여,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성격의 비용임에도 최근 3년간 매년 증액 조정을 통해 초과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시설장비유지보수비 필요 금액을 면밀하게 산정 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예산조정을 최소화 할 것	제도개선	○ 국립통일교육원은 '91년 건립 이후 시설 노후화로 최근 3년간 시설 개보수 공사가 많았으나, '23년부터는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더 이상 세목조정을 하지 않았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22)일반 용역비의 과도한 조정 및 편성목적과 다른 신규사업 추진 지양	○[지적사항]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43억 5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세목조정을 통해 일반수용비 등을 일반용역비로 조정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편성된 일반용역비 중 일부 금액을 신규사업을 위해 집행하는 등 일반용역비에 대한 예산 조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일반용역비의 과도한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	주의	○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에 일반용역비를 증액하는 등 '24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부내역을 조정하였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23)메타버스 관련 사업 중복방지 및 평가지표	○[지적사항]통일교육 자료개발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메타버스 개발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사업은 국내통일기반조성 세부사업(1031-301)	제도개선	○ '24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 미추진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마련 필요	중 뉴미디어 소통 강화(3억 8,200만원)의 일환으로 편성된 메타버스 사업과 유사함 - 또한,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명확한 평가 지표가 부재하며, 이용객 수뿐만 아니라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 마련 필요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각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명확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는 등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			
(24)대학생 통일 특강 및 강좌 수강생 확보 위해 차등화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지적사항] 통일교육원 대학생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6억 8,400만원 집행)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강 형식과 1학기 동안의 학점 과정인 통일 강좌로 나눠 지원하는 사업임 - 일부 특강의 특강 횟수가 다름에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거나, 일부 강좌의 경우 수강생의 수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이 균등하게 책정되어 학생 수 확보를 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통일 특강 및 강좌의 경우에	제도개선	○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4년 사업부터 개선 시행하고 있음 - 대학생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사업 참여대학에 수강생 최저 인원(20명)을 고지하고, 실적 미달 학교는 다음 학기 참여여부 평가 시 감점 적용 - 참여대학 모집 공고 시 모집 최저인원에 미달할 경우 총점에서 1점을 감점한다고 명시 ○ 조치완료일 : '23월 12월 19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수강 학생 수의 최저한도를 두는 등 차등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25)일반회계전입금 집행 시 기금집행 실적에 따른 전입규모 조정 필요	○[지적사항] 남북협력기금 수입 중 일반회계전입금(계획액 1,000억원)의 주요 용도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이고, 잔여액은 사업비로 충당됨 - 최근 남북협력사업의 부진으로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은 430억원 집행(집행률 47.3%)되었고, 기금 전체 사업비의 경우 779억원(집행률 6.1%)집행에 그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전입금은 계획액 전액(1,000억원)이 수납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일반회계전입금 수납규모를 공자기금 예수이자 및 사업비 집행 규모에 상응하여 수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	제도개선	○ 대북 경수로사업 관련 공자기금 연간 이자 상환액과 남북관계 상황 변화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일반회계전입금 유지 필요 - 공자기금 이자상환과 사업비 충당 감안 시, 연평균 1,416억원('18년~'22년)이 집행되고 있는 바, 일반회계전입금 1,000억원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전입금'의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25년 적정규모 예산편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조치예정일 : '24년 12월 31일('25년 예산편성 완료시까지)	조치중
(26)내역사업 변경 집행시 기금운용계획변경 절차 거칠 필요	○[지적사항]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사업(28억 8,8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일반수용비·피복비·사업추진비 등에 대하여 내역사업간 조정 절차 없이 혼용하여 집행하고 있음 -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여	주의	○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3년 내역사업간 조정 절차 없이 혼용하여 집행된 내역은 반납 조치 하였음. - 향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3년 11월 30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를 따라야 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기금의 내역사업 변경 집행 시 기금운용계획변경절차를 거칠 것			
(27)이산가족 상봉·기록 사업을 강화하고, 신규사업 개발 등 개편 방안 마련할 필요	○[지적사항] 2022년도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 계획액 202억 3,000만원 중 10억 2,200만원이 집행되고(집행률 5.1%) 192억 800만원이 불용(불용률 94.9%)되었음 -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고려하고, 통일부가 수립한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이산가족 상봉 정책이 필요함 - 과도한 불용 예산을 활용하여 기존의 영상편지 제작 및 유전자 검사 등 기록사업을 강화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과 기록사업을 강화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 개편 노력을 강화할 것	제도개선	○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및 유전자 검사 사업 적극 추진 - 이산가족 통합시스템 내 정보오류 대상자 등 정보 현행화 추진 중 ○ '23.6.~11. 처음으로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북미지역) ○ 이산가족 생애기록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산가족법 개정, '24.2.6.) ○ '24년 이산가족의 고령화 등에 따른 정책수요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 조기((기존) 5년 → (변경) 3년으로 개편)) 실시 예정('24년 하반기) ○ 이산가족 생애기록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 이산가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신규사업 추진 중('25회계년도 기금 반영 추진) ○ 조치예정일 : '24년 12월 31일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28)인도 지원·협력 체계구축 신규사업 집행방식 부적절	○[지적사항] 민생협력지원의 인도지원·협력체계구축·지원사업(8억 5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으로 남북 및 국제사회 대북협력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사업(1억원 집행)을 수행함 - 동 사업은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으로 직접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온라인 웹페이지 구축 등의 신규사업을 계획변경절차 없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회계연도 중 신규사업 추진 시 적절한 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	주의	○ 당초 남북 및 국제사회 간 인도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통지원을 위해 편성된 목적과 취지를 감안,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당시 코로나19로 국제사회 대면소통이 제약된 상황도 고려함 - 향후 사업성격을 보다 엄밀히 판단하여, 사업목적 및 수행 방식과 부합하는 형식으로 집행·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음 * 2023년부터 민간단체의 남북 국제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사업 정상화 ○ 조치완료일 : '23년 1월 31일	조치완료
(29)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건립 여건 미충족에 따른 전액 불용 부적절	○[지적사항]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건립사업(12억원 전액 불용)은 사업주체인 철원군의 사업중단 통보로 설계비 예산 12억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 철원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타당성 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고(2022.5.6.), 기념관 건립 후 관리·운영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중단을 결정함(2022.6.29.) - 통일부는 사업의 사전절차	주의	○ 신규사업 추진 시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추진 여건을 확인한 후 관련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겠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공립박물관 타당성 평가 전에 사업비를 편성함에 따라 기금계획의 비효율적인 편성·집행을 초래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보조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절차이행 등 보조사업 수행여건을 확인한 후 기금계획에 반영할 것			
(30)DMZ 평화통일 문화 공간 조성·운영 사업 유지여부 검토 필요	○[지적사항] DMZ 평화통일 문화공간 조성·운영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Uni마루 등을 활용한 전시 사업이 용역발주 유찰로 성사되지 못함에 따라 계획현액 27억 3,300만원 중 1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집행률 4.17%) 26억 1,900만원을 불용함 - 동 사업은 2022년도 사업 집행률 저조, 2023년 예산의 축소(6억 3,000만원) 및 방문객의 접근이 어려운 문화공간의 지리적 위치 등으로 사업 목적의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시정요구사항]통일부는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운영 사업의 유지여부 또는 개편을 검토할 것	주의	○ DMZ 평화통일문화공간은 지리적 특성·역사성·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남북출입사무소 상설 역사관으로 개편·유지하되, '22년 예산집행 부진 등을 감안하여 '24년도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 * (남북출입사무소 상설 역사관) 출입관련 사진, 문서, 영상 등 250점 상설 전시('23.11.21. 개관) ○ '24년에는 역사관 운영 관련, 주변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31)통일+센터 설치사업 일정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철저히 할 필요	○[지적사항]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38억 1,1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강원·충청·경기 지역의 센터 설립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전년도 이월액, 사업 공정률 및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이월이 발생하였음 - 강원·충청·경기 통일+센터 신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각 지자체의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가 지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통일+센터 설치사업의 사업추진 단계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의 보조금을 교부하며,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것	주의	○ 통일부는 통일+센터 설치사업의 사업추진 단계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의 보조금을 교부하며,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조치함 - 현재, 강원센터는 국고보조금 전체 예산(32.5억) 집행완료함 - 경기센터는 우선시공분 착공(1.29.)을 하였고 12월 준공 예정으로 올해 국고보조금 전체예산(40억) 집행 완료할 예정임 - 충청센터는 지속되는 건설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가 증가되어 추가로 도비를 증액(37.4억) 하여 8월 착공 예정으로 국고보조금 전체 예산(40억)을 집행 완료할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4년 4월 5일	조치완료
(32)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효율화 필요	○[지적사항] 동 사업은 북한 경제·주민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정책에 활용하고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함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감소에 따라 설문조사 모집단이 축소되었고, 수집된 정보의 대국민 공개가 미흡함	제도개선	○ 동 사업은 '24년에 폐지되었음 - '23년 사업의 결과물인 공개 보고서에 대한 대내외 홍보는 브리핑 및 관련 강연 등을 통해 2024년 연중 진행하고 있음 ○ 조치완료일 : '24년 1월 18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설문조사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인원의 감소에 따른 예산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튜브 영상 등 심층정보 수집방안의 다각화를 추진하며, 북한 실상 알리기 차원의 실태보고서 발간 시 대내외 홍보를 병행할 것			
(33)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추진 필요	○[지적사항] 동 사업은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구분하고 각각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추진함. 1단계 사업내용은 기본 인프라 구축 등이고, 2단계 사업내용은 기구축한 인프라 확장, 빅데이터화 확대 등임 - 1단계와 2단계 사업은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 업체가 2개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관계부처들과 동일한 협의 절차 반복, 각각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소요기간 등으로 사업 지연을 초래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조사를 기반으로 사전에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제도개선	○ 동 사업의 경우 최신 기술 적용 및 이에 따른 사업 방향 설정 등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2개년(1·2차)으로 나누어 추진하여 성공적 완료하였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19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4)체계적 사업관리를 통한 사업지연 방지	○[지적사항] 통일정보자료센터는 북한전문도서관 기능의 자료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 예산현액 32억 4,000만원 중 27억 7,400만원을 집행함 - 동 사업은 2022년 중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초 착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22년 9월에 설계사업자가 선정되어 2023년 3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등 사업지연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2023년 내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의 공사착수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등 단계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주의	○ 설계 착수 전 공공건축계획 사전검토(국토부 산하기관), 공공건축 기획심의(조달청), 고양시의 부지변경 요구 등으로 사업절차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었으나, - 이후 고양시와 부지변경 합의서를 체결('24.1.12)하여 추가 지연을 막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조치완료일 : '24년 1월 12일	조치완료
(35)계약 이행 경과에 따른 선금지급 필요	○[지적사항] 2022년도 사업설계비 예산액 12억 9,200만원 중 8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주의	○ 지적 이후 선금 지급 등 예산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유념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는 등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에 따르면, 사고이월이 불가피할 경우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통일부는 설계비 과업 수행기간이 2개월 미만임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하여야 했음에도 계약금의 70%를 선금으로 과다 지급함 ※ 설계용역 계약 후 2022년 11월 15일에 계약금액의 70%에 해당하는 7억 6,940만원을 선금으로 집행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6)탈북민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원 역할 재정립 필요	○[지적사항] 북한이탈주민이 급감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2300) 사업예산 948억원 중 77.5%인 734억원만 집행되어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18년 1,137명, '19년 1,047명, '20년 229명, '21년 63명, '22년 67명, '23년(6월) 99명	제도개선	○ 최근 코로나19 종료에 따라 '21년과 '22년에 비해 교육생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정착금은 탈북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4년 정부 예산은 '23년 탈북민 입국인원 증가 추세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 통일부는 조직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시사한 바 있으나, 교육생과 기 배출된 탈북민에 대한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등 하나원의 기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제2하나원에서 입국 후 처음 받는 교육인 기초교육의 교육생 수가 2022년 24명에 불과하여 교육생보다 직원이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2022년 제2하나원 직원 수: 49명, 전체 교육생 수: 431명(기초교육: 24명, 직무교육: 189명, 탈북민 힐링 프로그램: 175명, 탈북민 인식개선 교육: 43명) ※ 안성 하나원은 여성, 제2하나원은 남성을 교육생으로 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하나원이 탈북민의 초기 정착지원 역할과 함께 취업교육이나 직업역량 강화사업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늘리는 형태로 개편할 것 - 통일부는 제2하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24년 하나원 예상 수료인원 500명('22년 770명, '23년 550명)을 기준으로 정착금 예산은 '23년 대비 22.2억원(209.8억원→187.6억원), 교육훈련 예산은 5.5억원(128.5억원→123.0억원) 감액 편성 - '23년 입국인원은 196명으로 전년 동기(67명)대비 2.5배 이상 증가하였고, '24년에도 같은 흐름이 유지될 경우 탈북민 입국인원은 500명으로 예상됨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37)남북 통합 문화센터 민간위탁의 법령상 근거 마련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생활 참여기회를 확산하고, 남북주민간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동 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함 - 「정부조직법」제6조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데,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사업은 법령상 민간위탁의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음 ※ 감사원의 2021년도 정기감사(2022. 2.)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의 법령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	제도개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3.12.8. 국회 의결, '24.1.9. 공포) 하였음 -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에 민간위탁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개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음(시행령 시행일 '24.7.8. 예정) ○ 조치예정일 : '24년 7월 8일	조치중
(38)지역협의회 회의 활성화 및 북한이탈주민 위원 참여제고 방안 마련	○[지적사항]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착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 실집행액은 4억 200만원임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도개선	○ **(지역협의회 활성화)** 지역협의회 운영 매뉴얼(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회의 개최 시 논의 안건, 회의 시나리오 예시 등을 추가 반영하여 협의회 활성화를 제고 - 하나센터 대상으로 지자체 협조 필요사항(생계비 지원, 취업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에서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137개 지역협의회 중 약 19%가 규정에 따른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 ※ 2022년 현재 137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 1,528명 중 북한이탈주민 위원은 32명으로 2.1%에 불과함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 회의를 활성화하고, 북한이탈주민 위원의 참여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지원, 신변보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등)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지자체에 공유함으로써 지역협의회 개최 시 정착지원 현장의 애로사항을 빠짐없이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 ○ **(북한이탈주민 위원 참여)** 북한이탈주민 신규 위원 위촉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인근 지자체 또는 광역 시도에서 위촉한 북한이탈주민 위원을 협의회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청취를 하는 방안을 광역지자체와 협의('24.2.6., 지역협의회 워크숍) ※ (참고) '23년말 기준으로 138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 1,547명 중 북한이탈주민 위원은 68명(4.4%)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 → 북한이탈주민 위원 참여 등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매뉴얼' 배포('24.3.27.) ○ 조치완료 : '24년 3월 27일	
(39)재단 결산잉여금의 차년도 수입 반영 필요	○ [지적사항] 2022년 결산잉여금 28억 600만원 중 4억 2,400만원만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23억 8,100만원은 2024년도로 이월되는 등 3년 평균 15억 400만원의 결산잉여금이 차차기로 이월되고 있음	제도개선	○ 향후 출연금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예산관리를 강화하여 결산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 결산잉여금의 차년도 수입 반영·사용은 그동안의 운용기준*과 달라지는 점을 고려,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적사항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 결산잉여금이 차차년도로 이월될 경우 결산잉여금 발생 시점부터 수입계상 시점까지 여유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차차년도로 이월되는 재단의 결산잉여금을 차년도 수입으로 즉시 반영하고, 재단 출연금을 감액 조정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음. * 정부지침에 '결산잉여금을 미리 예측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 ○ 조치예정일 : '24년 12월 31일	
(40)계약업무 추진 시 면밀한 사업준비 필요	○[지적사항] 통일부는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통해 하나원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특수경비용역 계약의 기초가격 산정을 위한 시중노임 단가를 확인하지 않아 조달요청이 반려되는 등 2022년 용역계약을 제때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기존 용역계약업체와 수의계약(2개월)을 체결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향후 계약업무 추진 시 사전절차 및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등 사업준비를 면밀히 할 것	주의	○ 향후 계약업무 추진 시 사전절차 및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등 사업준비를 면밀히 추진하겠음 ○ 조치완료일 : '22년 12월 19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41)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전검토 필요	○[지적사항] '제2하나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공사비 5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 4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4,900만원을 불용하였음.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공사비에서 실시설계비 3,000만원, 감리비 1,0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집행함 - '제2하나원 리모델링 사업'예산에 실시설계비와 감리비를 미편성하여 세목조정을 통해 사업을 집행한 것은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임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할 것	주의	○ 향후 예산편성 시 세심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미반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음. ○ 조치완료일 : '23년 8월 31일	조치완료
(42)연구용역 추진시 수의계약 최소화 필요	○[지적사항] 민생협력지원의 보건의료협력사업(2억원 집행)은 보건의료협력 관련 연구용역사업 5건을 모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체결·집행함 - 연구용역 수의계약은 연구자를 기관 임의로 선정하게 되어 경쟁을 통한 연구수행자 선정을 사전에 차단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주의	○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 풀이 제한적이며, 질병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향후 국가계약법, 용역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계약업무를 철저히 관리하겠음. - 또한, 연구자 선정 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특정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 연구수탁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음.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연구용역비 집행 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일반경쟁계약으로 집행할 것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43)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지양 필요	○[지적사항] 경협기반(무상)사업,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사업,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사업, 개성공단 기반조성(융자)사업과 관련하여, 회계연도 초인 2022년 2월 14일 기금운용계획변경(총 574억원)을 통하여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 조치, 개성공단 운영중단 피해기업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음 - 남북경협·개성공단 운영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지원요구가 계속된 상황으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소요로 보기 어렵고, 장기적인 피해보상 계획 수립 및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의 반복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지양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주의) - 통일부는 경협기업, 개성공단입주기업 등에 대한 적정한 피해보상의 규모, 기준 등을 포함한 중	시정, 주의	○ 국회 공식요구, 코로나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 경협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지원(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음. - '23년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이 계획대로 예산 집행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장기적인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용을 체계적으로 할 것(시정)			
(44)DMZ 평화적 이용 사업 면밀한 검토 필요	○[지적사항] DMZ 평화적 이용사업(116억 9,400만원 집행)은 DMZ 그린평화지대화 실현을 위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남북공동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DMZ 평화적 이용 및 접경지역 활성화, 국민체감형 평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남북관계상황과 사업추진 지연으로 불용(176억 4,000만원)과 이월(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2022년도 65억 1,400만원 이월)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통일부는 신규 예산 편성 전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	주의	○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감액(전년대비 1,565백만원 감액)하여 북한과의 합의 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 ○ △남북관계 경색, △DMZ 지역의 특수성(생태보호지역, 군사지역 등), △다기관(지자체, 국방부 등) 협의, △코로나, ASF 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음. ○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면밀히 살피고, 사업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관리해 나감으로써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45)북한이탈 주민의 수 과다 예측에 따른 예산 불용 재발 방지	○[지적사항] 북한이탈주민 수가 급감하면서 2020년 이후 큰 폭의 예산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 2022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은 약 500명 수준의 북한이	제도개선	○ 최근 코로나19 종료에 따라 '21년과 '22년에 비해 교육생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정착금은 탈북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탈주민을 예측하여 책정하였으나 실제로는 67명이 입국하여 예측과 크게 어긋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를 보수적으로 예측하여 큰 폭의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24년 정부 예산은 '23년 탈북민 입국인원 증가 추세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 '24년 하나원 예상 수료인원 500명('22년 770명, '23년 550명)을 기준으로 정착금 예산은 '23년 대비 22.2억원(209.8억원→187.6억원), 교육훈련 예산은 5.5억원(128.5억원→123.0억원) 감액 편성 - '23년 입국인원은 196명으로 전년 동기(67명)대비 2.5배 이상 증가하였고, '24년에도 같은 흐름이 유지될 경우 탈북민 입국인원은 500명으로 예상됨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46)정책연구 용역 사업의 중복 개선 필요	○[지적사항] 통일부는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용역(R&D)'과 '통일정책추진' 2개 세부사업에서 중복 집행하고 있어, '통일정책추진'의 연구용역 사업은 폐지가 필요함 - 2022년 통일부는 '정책연구용역(R&D)' 사업에서 12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와 별도로 '통일정책추진' 사업의 '중장기 통일정책 관련 연구용역'으로 9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함	제도개선	○ 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일정책추진 및 정책연구용역(R&D) 사업을 '25년도 예산안에 개편하여 반영할 계획임. ○ 조치 예정일 : '24년 12월 31일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 2022년 '통일정책추진' 사업 중 장기 통일정책 관련 연구용역 목록(중장기 통일정책 관련 연구용역 집행액: 3억 2,900만원) 연번 / 연구용역명 1 북한 사회변동과 일상생활; 공장과 도시의 변화를 중심으로 2 민주주의와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미래 통일담론 연구 3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주요 이슈 전망 및 한반도 시사점 4 남북산업협력의 친환경 모델 구축방안 연구 5 체제전환국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 및 남북관계 시사점 6 북한 경제 분석을 위한 대체 데이터 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 7 사례연구를 통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전방향 구체화 8 기능주의 대북 접근법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9 냉전시기 서독의 대소련 외교정책 평가 및 시사점 ※ 2022년 '정책연구용역(R&D)' 사업 연구용역 목록 (정책연구용역(R&D) 사업 연구용역 집행액: 3억 4,800만원) 연번 / 연구용역명 1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 2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을 통한 대국민 협력 공감대 확산 방안 연구 3 안보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남북회담 의제 개발(비공개) 4 주요지표를 활용한 북한경제 평가 5 ICT 기반 남북 교류협력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비공개) 6 북한자료(특수자료) 국민 접근성 제고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비공개) 7 통일업무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8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중국 대외전략 연구 9 남북협력기금 평가 및 발전방안 10 북한이탈주민의 동일사업장 장기근속 요인분석(비공개) 11 6.25전쟁 납북 관련 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 체계화 및 관리방안 연구 12 조직진단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비공개)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세부사업 '정책연구용역(R&D)(7031-300)'으로 단일화하여 추진할 것			
(47)민간단체 지원방식 개선 필요	○[지적사항] 통일부는 민간통일운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3개의 민간단체에만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민족통일협의회는 '82년('01~'08년 제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03년, 통일교육협의회는 '02년부터 관행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22) 1,420백만원 → ('23) 전년동(민통 267, 민화협 630, 통일교육협의회 523)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민간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할 것	제도개선	○ '24년 예산은 민간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공모방식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음. - 全 민간단체 대상으로 공모 추진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4년 1월 1일	조치완료
(48)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 필요	○[지적사항]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이 매년 전액 불용되고 있음 -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으나, 재단 이사 구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제도개선	○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회의 추천을 받지 못하고 있음. * '16~'23.8월,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 총 12회 발송(가장 최근 '23.8.30.)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지연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또한 통일부장관 추천 재단 이사 2명 인선을 발표('22.9.)한 바 있음. * '22.9월, 통일부장관 추천 재단 이사 2명 인선 발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 o 정부는 국회와 보다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에서 재단 이사 추천 시 조속한 시일 내 재단을 출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 '21~'24년, 북한인권재단 출범 관련 예산 4.75억원 편성(연내 출범 시 예비비 편성) - 재단 출범 전까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운영 활성화(△'23년 '3.10.·4.13.·6.30.·9.22·11.21. 5회 개최 △'24년 3.12. 1회 개최, 2기 출범) △민간단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24년 예산 18억원 편성, 19개 단체 지원 중) 추진 ○ 조치예정일 : '24년 2월 이후 (재단이사 구성 완료시)	
(49)남북협력기금 운용 방식 개선 필요	○[지적사항] 2022년 1조 5,571억원으로 계획된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이 25.1%로 매우 저조하나, 2023년 계획액은 1조 8,003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함 - '북한영유아 등 지원'예산은 매년 871억 3,400만원이	시정	○ [북한영유아 등 지원] 코로나19에 따른 북중 국경 차단, 남한 지원거부 등 상황 지속 - 북중 국경개방 및 국제기구 직원들의 평양 복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인도주의 대북지원이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편성되고 있으나, 집행률은 2022년 기준 2.7%에 불과함 ※ 집행률: '18년 0%, '19년 12.2%, '20년 13.6%, '21년 0.8%, '22년 2.7% - '이산가족 영상편지'사업은 2005년 시작되어 2023년 현재까지 약 25,000편을 제작·보관하고 있으나, 북한으로 전달된 것은 2008년 단 1차례로 전달 편수도 20편에 불과함 ※ 영상편지 1건당 제작 단가는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매년 많게는 4억원, 적게는 2억 6,900만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음 -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은 2017년 이후 5년간 총 48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액이 0원이며, 2022년 'DMZ 평화의 길' 조성을 위한 예산 116억 9,200만원 중 54억 7,700만원이 불용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기계적·타성적으로 편성과 불용을 반복해 온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방식을 개선할 것		○ [이산가족 영상편지 사업] 2024년 영상편지 사업은 기존 사업방식(찾아가는 방식)과 시범 사업방식(개인 촬영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사업의 접근성 등 효율성 제고('24.4. 현재 사업공고 중) ○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은 예산집행 부진 등을 감안하여 24년도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 ○ [DMZ평화의 길 사업]은 DMZ 지역의 특수성(안보상황 변화, 사업지역의 출입제한 등) 등으로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 - 향후 DMZ 사업 추진 시 사업 추진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음 ○ 조치예정일 : '24년 12월 3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전문위원 김사우

I.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개요

1. 세입 결산

2023년도 세입예산액 500만원 중 3,2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2,000만원이 수납(예산액 대비 수납률 400.0%)되었음.

< 2023년도 세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세 입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
5	32	20	-	12	15	40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3년도 세입예산의 주요 수납 내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조직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운영비, 사업비)의 이자수입인 기타재산이자수입 200만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국가채권 세입 등의 기타경상이전수입 1,800만원 등임.

< 2023년도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
일반회계	5	32	20	-	12	15
11관 재산수입	3	2	2	-	-	△1
54항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3	2	2	-	-	△1
546목 기타재산이자수입	3	2	2	-	-	△1
12관 경상이전수입	2	30	18	-	12	16
59항 기타경상이전수입	2	30	18	-	12	16
596목 기타경상이전수입	2	30	18	-	12	1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 세출 결산

가. 총괄 내역

2023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340억 3,300만원이고, 이 중 96.7%인 329억 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1억 2,6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세출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34,033	-	34,033	32,907	1,126	96.7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3년도 세출예산 프로그램은 '통일정책자문·건의 성과제고(1000)'와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1100)'로 구성되어 있음.

'통일정책자문·건의 성과제고 프로그램(1000)'은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 조성(1031)', 정보화사업(1033)' 등 3개의 단위사업과 '자문회의 운영', 정보화사업 추진'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 프로그램(1100)'은 '지역협의회 활동지원(1131)', '사무처 인건비(1101)' 등 4개의 단위사업과 '자문위원 역량강화', '지역협의회 운영',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등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 사업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지역협의회 활동지원(1131) 사업에 199억 7,200만원이 집행되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 집행액(329억 700만원)의 60.7%를 차지하고 있음.

세부사업별로 보면, 자문회의 운영(1031-300) 사업 41억 9,800만원, 자문위원 역량강화(1131-300) 사업 28억 1,600만원, 지역협의회 운영(1131-301) 사업 122억 7,200만원, 지역협의회 활동추진(1131-302) 사업으로 48억 8,4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그 밖에 사무처 공무원 인건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87억 3,7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년도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합 계	34,033	-	34,033	32,907	1,126	96.7%
통일정책자문·건의 성과제고(1000)	4,850	-	4,850	4,655	195	96.0%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1031)	4,339	-	4,339	4,198	141	96.7%
자문회의 운영(300)	4,339	-	4,339	4,198	141	96.7%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1082)	37	-	37	36	1	97.3%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304)	37	-	37	36	1	97.3%
정보화사업(1033)	474	-	474	421	53	88.9%
정보화사업 추진(500)	474	-	474	421	53	88.9%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1100)	29,183	-	29,183	28,252	931	96.8%
사무처 인건비(1101)	6,948	-	6,954	6,185	769	89.0%
인건비(100)	6,948	-	6,954	6,185	769	89.0%
기본경비(1111)	1,750	-	1,744	1,720	24	98.6%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200)	367	-	361	345	16	95.6%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총액인건비비대상 기본경비(250)	1,201	-	1,201	1,193	8	99.3%
전산운영경비(251)	182	-	182	182	-	100.0%
지역협의회 활동지원(1131)	**20,102**	**-**	**20,102**	**19,972**	**130**	**99.4%**
자문위원 역량강화(300)	2,870	-	2,855	2,816	39	98.6%
지역협의회 운영(301)	12,337	-	12,337	12,272	65	99.5%
지역협의회 활동추진(302)	4,895	-	4,910	4,884	26	99.5%
시설관리(1132)	**383**	**-**	**383**	**375**	**8**	**98.0%**
청사관리 운영(303)	383	-	383	375	8	98.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최근 세출결산의 집행률 추이를 보면, 2019년도 95.0%의 집행률에서 2020년도에 90.4%로 낮아졌다가 2021년도에 95.0%로 회복하였고, 이후 2022년 96.9%, 2023년 96.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 5년 세출 결산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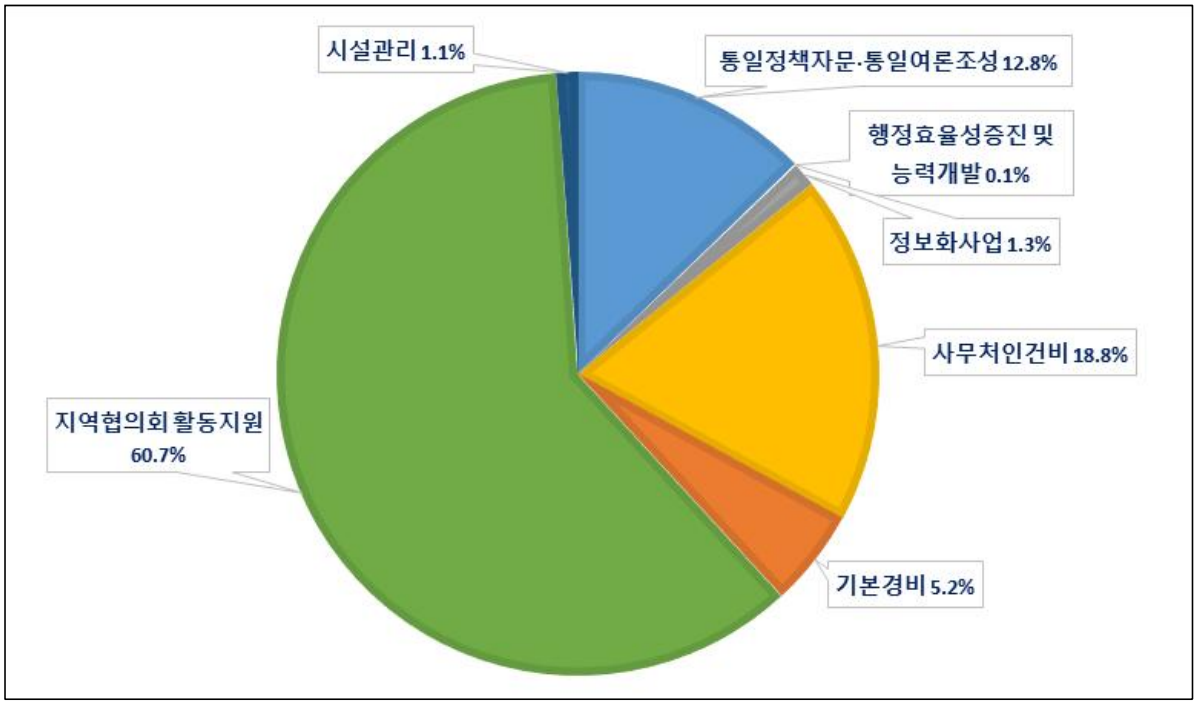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확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이용] (전용)	<세목조정> {내역변경}					
2019년	31,580	-	(±362)	<±674> {±43}	31,580	29,999	760	821	95.0
2020년	32,476	760	(±1,160)	<±546> {0}	32,819	29,683	-	3,136	90.4
2021년	32,918	-	(±134)	<±165> {±2}	32,918	31,262	-	1,656	95.0
2022년	34,025	-	(±76)	<±150> {±0}	33,728	32,686	-	1,042	96.9
2023년	34,033	-	(±120)	<±121> {±29}	34,033	32,907	-	1,126	96.7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7개 단위사업의 집행액 비중을 보면,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60.7%(199억 7,200만원), 사무처 인건비 18.8%(61억 8,500만원),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사업 12.8%(41억 9,800만원), 기본경비 5.2%(17억 2,000만원), 정보화사업 1.3%(4억 2,100만원), 시설관리 1.1%(3억 7,500만원),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0.1%(3,600만원)임.

< 2023년도 단위사업별 집행액 비중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나. 이체·이용 및 이월 내역

2023년도 세출결산의 이체·이용 및 이월액은 없음.

다. 전용 내역

2023년도 세출결산의 전용액은 2022년도 7,600만원 대비 4,400만원 증가한 1억 2,000만원임.

구체적인 내역으로 총액인건비 직급상향분 보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에서 ‘인건비’로 600만원을 전용하였고,

국내출범회의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부족분 충당을 위해 같은 ‘자문회의 운영’(국내·해외출범회의)사업에서 국내 여비 및 국외업무 여비 1억 4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같은 ‘자문회의 운영’(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사업에서 국외업무 여비 1,000만원을 전용하였음.

< 2023년도 세출예산 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1011-200)	210-05	6	인건비 (1001-100)	110-01	총액인건비제 직급상향분 보수 부족분 충당
자문회의운영 (1031-300)	220-01	56	자문회의운영 (1031-300)	210-01	국내출범회의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부족분 충당
	220-02	48		210-07	
자문회의운영 (1031-300)	220-02	10	자문회의운영 (1031-300)	210-01	상임위원회 개최에 따른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계		12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3. 2023 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 주요 검토내용

2023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자문회의 운영 사업 중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7억 6,5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법정위원회 중 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 참석률(59.60%)이 목표치(70%)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일부 분과위원회의 경우 회의체의 기본요건인 정족수도 못 채운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한 바, 사무처는 분과위원회별 위원 수를 효율적 회의운영이 가능한 적정 규모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위원 출석률이 낮은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

또한, 최근 5년간 법정위원회 개최를 위한 임차료 집행 현황을 보면, 2022년도를 제외하고 모두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바, 사무처는 회의 개최 시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기재부 지침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임차료 초과집행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자문회의 운영 사업 중 '자문회의 구성'(3억 1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제21기 자문위원 위촉 시 연임(34.2%)보다 신규(65.8%) 위원의 비율이 높은 바, 연임 및 신규 위원의 위촉 비율에 적정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고, 자문위원의 여성위원 비율(34.3%) 및 청년위원의 비율(26.5%)이 각각 전기(제20기)보다 낮아진 바, 법령에 규정된 권고사항(여성위원 40%이상, 청년

위원 30%이상)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 중 ‘협의회 운영비’(32억 9,300만원 집행)와 관련하여 국내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연초에 1회 교부하고 있는 바, 사무처는 예산과목(민간경상보조금)에 맞게 지역회의 등 운영비를 최소 2차례 이상으로 교부할 필요가 있음.

(4)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 중 ‘평화통일포럼’(5억 8,5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해외 평화통일포럼’ 사업비를 연례적으로 증액 조정하여 초과집행하고 있는 바, 특정 비목(민간경상보조금)의 연례적·반복적 예산 조정은 부적절하며 행사를 담당하는 개별 지역회의 또는 지역협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Ⅱ.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별 검토

1. 세입

2023년도 세입예산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3,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2,0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200만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과 동일함.

< 2023년도 세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 입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	예산액 대비 수납율
합 계	5	32	20	15	400.0
기타재산이자수입	3	2	2	△1	66.7
기타경상이전수입	2	30	18	16	90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3년도 징수결정액 3,200만원의 세부 내역은 사무처 및 국고보조금(운영비, 사업비) 통장 이자 200만원,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 1,800만원, 과년도 소송비용액 미상환금 1,200만원임.

최근 5년간 연도별 세입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최근 5년 세입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 입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예산액과 수납액 차액	예산액 대비 수납율
2019년	5	17	17	12	340.0
2020년	6	4	4	△2	66.7
2021년	6	27	15	9	250.0
2022년	5	24	12	7	240.0
2023년	5	32	20	15	40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최근 5년 세입발생 현황 >

(단위: 백만원)

연 도	과 목	금 액	세 부 내 역
2019년	기타재산수입	3	o 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 통장 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2	o 육아휴직자 급여,퇴직급여 과납입금 환수금
	기타고정자산매각	10	o 냉동기 및 쿨링타워 매각대금
	재고자산매각	2	o 비상발전기 매각대금
	계	**17**	
2020년	기타재산수입	2	o 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 통장 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2	o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납금
	계	**4**	
2021년	기타재산수입	3	o 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 통장 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12	o 과년도 국고보조금 및 과오납 반납금, 퇴직급여 환급금
	기타잡수입	0.02	o 퇴직자 보유 공적항공마일리지 반납
	기타고정자산매각	0.2	o 배전반용 변압기 및 진공차단기 매각대금
	계	**15**	
2022년	기타재산이자수입	2	o 사무처 및 국조보조금 통장 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10	o 과년도 국고보조금 및 과오납 반납금
	계	**12**	
2023년	기타재산이자수입	2	o 사무처 및 국조보조금 통장 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18	o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납금, 국가채권
	계	**2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 통일정책자문 · 통일여론조성(1000-1031 단위사업)

가. 개 요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문회의 운영’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단위사업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본예산과 동일한 43억 3,900만원이며, 이 중 96.7%인 41억 9,8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4,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통일정책자문 · 통일여론조성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본예산	추경						
□ 통일정책자문 .통일여론조성	4,339	4,339	-	-	4,339	4,198	141	96.7
○ 자문회의 운영 (1031-300)	4,339	4,339	-	-	4,339	4,198	141	96.7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자문회의 운영(1031-300 세부사업)

‘자문회의 운영’ 사업은 통일정책 건의를 위한 법정회의 개최와 통일여론 수렴을 위한 사업으로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 ‘국내·해외 출범회의’, ‘자문회의 구성’, ‘자문위원 일반지원’, ‘간부위원 활동지원’, ‘직능별정책회의’, ‘지역운영위원회’ 등 총 8개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동 사업의 2023년도 본예산과 예산현액은 43억 3,900만원이며, 이 중 96.7%인 41억 9,8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4,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자문회의 운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본예산	추경						
○ 자문회의 운영	4,339	4,339	-	-	4,339	4,198	141	96.7
·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680	680	-	111	791	765	26	96.7
·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	264	264	-	△21	243	235	8	96.6
· 국내·해외 출범회의	2,148	2,148	-	△64	2,084	1,996	88	95.8
· 자문회의 구성	304	304	-	△1	303	301	2	99.3
· 자문위원 일반지원	174	174	-	14	188	186	2	98.8
· 간부위원 활동지원	250	250	-	-	250	237	13	95.1
· 직능별정책회의	198	198	-	△13	185	184	1	99.6
· 지역운영위원회	321	321	-	△26	295	294	1	99.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 세부사업의 비목별 주요 집행내역은 운영비(210목) 22억 8,900만원, 여비(220목) 11억 4,600만원 등임.

< 2023년도 '자문회의 운영' 사업 비목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목-세목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	추경							
○ 자문회의 운영		4,339	4,339	-	-	-	4,339	4,198	-	141
110-04	일용임금	71	71	-	-	-	71	69	-	2
210	운영비	2,235	2,235	-	114	-	2,349	2,289	-	60
220	여비	1,321	1,321	-	△114	-	1,207	1,146	-	61
240-01	사업추진비	340	340	-	-	-	340	337	-	3
250-02	직책수행경비	121	121	-	-	-	121	121	-	-
250-03	특정업무경비	15	15	-	-	-	15	15	-	-
310-04	기타보전금	128	128	-	-	-	128	116	-	12
320-09	고용부담금	8	8	-	-	-	8	5	-	3
430-01	자산취득비	100	100	-	-	-	100	100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업은 자문위원 임기 2년을 주기로 하여 출범하는 홀수년도에는 국내·해외 출범회의가, 출범회의 다음연도인 짝수년도에는 국내·해외 지역회의가 각각 개최됨.

제21기(2023. 9. 1.~2025. 8.31.)가 출범한 2023년의 경우 국내 및 해외에서 출범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최근 3년간 동 세부사업의 추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최근 3년간, 자문회의 운영 사업 추진 현황 >

연 도	사업 추진 현황
2021년	o 운영위원회 개최 : 4회 o 상임위원회 개최 : 1회 o 분과위원회 개최 : 30회 o 정책 건의 : 10회(분기별 정기건의 3회, 수시건의 7회) o 남북관계전문가토론회 : 3회 o 통일여론분석 보고서 발간 : 4회 o 통일문제여론조사 : 15회 o 국내출범회의 : 12,613명(64.0%) 참석 o 해외출범회의 : 2,622명(67.2%) 참석 o 직능별정책회의 : 8회, 496명 참석 o 자문위원 위촉 : 제20기 자문위원 20,000명 위촉
2022년	o 운영위원회 개최 : 3회 o 상임위원회 개최 : 1회 o 분과위원회 개최 : 40회 o 정책 건의 : 11회(분기별 정기건의 4회, 수시건의 7회) o 남북관계전문가토론회 : 3회 o 통일여론분석 보고서 발간 : 4회 o 통일문제여론조사 : 15회 o 국내지역회의 : 8,326명 참석(53%) o 해외지역회의 : 1,744명 참석(45.9%) o 직능별 정책회의 : 9회, 712명 참석 o 국내 지역운영위원회 : 52회, 965명 참석 o 해외 지역운영위원회 : 20회, 205명 참석
2023년	o 운영위원회 개최 : 4회 o 상임위원회 개최 : 1회 o 분과위원회 개최 : 38회 o 정책 건의 : 11회(분기별 정기건의 4회, 수시건의 7회) o 남북관계전문가토론회 : 3회 o 통일여론분석 보고서 발간 : 4회 o 통일문제여론조사 : 15회 o 국내출범회의 : 10,525명 참석(48.8%) o 해외출범회의 : 2,523명 참석(62.5%) o 자문위원 위촉 : 제21기 자문위원 21,984명 위촉 o 직능별 정책회의 : 7회, 653명 참석 o 국내 지역운영위원회 : 72회, 1,318명 참석 o 해외 지역운영위원회 : 20회, 262명 참석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가)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사업은 통일 관련 자문회의의 운영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인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기 위한 법정위원회[199]를 개최하여 평화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자문·건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정위원회는 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대통령)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및 10개 이내로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로 구성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정위원회 현황 >

기 구	구 성	기 능
상임위원회 (법 제18조)	500명 (부의장 25명, 분과위원장 10명, 직능대표 상임위원 463명, 간사 2명)	○ 전체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 의장이 명한 사항 ○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운영위원회 (법 제19조)	50명 (부의장 25명, 직능대표 운영위원 24명, 간사 1명)	○ 통일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자문위원 해촉 심사 ○ 기타 통일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법 제18조제5항)	10개 이내 분과×50명 내외	○ 각 분야별 안건 심의 및 건의 ○ 분과별 통일정책 연구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9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상임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되며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상임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개회한다.
⑤ 상임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상임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회의참석률이 저조한 분과위원회에 대한 대책 필요

내역사업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의 2023년도 본예산은 6억 8,000만원이었으나 전용등을 통해 1억 1,100만원을 증액한 예산현액 7억 9,100만원 중 96.7%(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113%)인 7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을 불용함.

< 2023년도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본예산	추경						
·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680	680	-	111	791	765	26	96.7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3년도에 상임위원회 회의는 1회, 운영위원회 회의는 4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모두 38회를 각각 개최하였고, 법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편성된 4억 5,100만원 중 4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3년도 법정위원회 운영 예산집행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소집	대상	예산 편성		집행실적	
			기준	예산액[주2]	개최 횟수	집행액(집행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500명)	1회	99,000	1회	51,000 (51.5)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50명)	4회	45,000	4회	48,000 (106.7)
분과위원회[주1]	분과위원장	분과위원 (9-10개×30명 내외)	10개×4회	307,000	38회	322,000 (104.9)
합 계				451,000		421,000 (93.3)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주1: 2023년도 상반기(제20기) 10개 분과위 → 하반기(제21기) 9개 분과위

주2: 2023년 예산 편성시 회의참석률 운영위 80%, 상임위·분과위 70%를 기준으로 함.

최근 5년간의 법정위원회 개최 현황 및 자문위원의 참석률 현황은 각각 다음 표와 같음.

< 최근 5년 법정위원회 참석률 현황 >

(단위: %, 회)

구 분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참석률	개최횟수	참석률	개최횟수	참석률	개최횟수
2019년	69.2	1	86.2	4	63.4	3
2020년	78.4	1	82.5	4	58.6	4
2021년	73.0	1	92.5	4	76.6	3
2022년	63.0	1	88.2	3	70.7	4
2023년	**71.2**	**1**	**87.0**	**4**	**59.6**	**4**
평균	**71.0**	**1**	**87.3**	**3.8**	**65.8**	**3.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법정위원회의 위원 참석률은 최근 5년 동안 상임위원회가 평균 71.0%,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각각 87.3%, 65.8%로서,

2023년에는 상임위원회(71.2%)와 운영위원회(87.0%)의 경우 예산편성 시 목표로 했던 참석률(70%, 80%)을 각각 초과달성한 반면, 분과위원회는 목표치 70%에 이르지 못한 참석률(59.6%)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을 위하여 당초 예산 3억 700만원을 1,500만원 초과한 3억 2,200만원을 집행(104.9%)함.

다음 표에서 2023년 분과위원회의 분야별 위원 수 및 회의참석률을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는 바,

< 2023년도 분과위원회 분야별 자문위원 참석률 현황 >

(단위: %)

제20기(상반기)					제21기(하반기)				
분과위원회(10개)	인원	회의 참석률			분과위원회(9개)	인원	회의 참석률		
		1/4분기	2/4분기	평균			3/4분기	4/4분기	평균
기획조정	**34명**	72.7	58.8	65.7	**기획조정**	**27명**	77.7	81.5	79.5
통일·안보	34명	52.9	55.9	54.4	통일·안보	49명	79.2	61.2	70.2
인권·국제협력	32명	43.8	34.3	39.1	인권·탈북민지원	54명	73.6	53.7	63.7
경제·산업	30명	76.7	60.0	68.4	**국제협력**	**89명**	69.3	57.3	63.3
문화·예술·체육	48명	58.3	58.3	58.3	경제·과학	58명	83.3	56.9	70.1
보건·환경	**28명**	57.1	57.1	57.1	교류·협력	58명	80.4	79.3	79.9
종교·탈북민지원	36명	47.2	52.8	50.0	종교·민족화합	52명	80.0	50.0	65.0
국민소통1	**83명**	64.3	49.4	56.9	**국민소통**	**60명**	55.2	71.7	63.5
국민소통2	**110명**	38.2	43.6	40.9	청년	40명	75.0	70.0	72.5
청년·교육	46명	39.1	34.8	37.0					
평 균		**52.8**	**49.1**	**50.9**	**평 균**		**74.0**	**63.2**	**68.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보면, 제20기의 경우 28명(보건·환경)에서 110명(국민소통2)까지, 제21기의 경우 27명(기획조정)에서 89명(국제협력)까지 등으로 위원 수가 분야별로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분과위원회는 「민주평통법 시행령」 제13조[200]에서, 그 회의에 관

2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05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13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상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의 수는 10개 이내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의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각 위원의 경력·직책 및 출신 지역을 고려하여 상임위원장이 선임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하고, 그 회의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을 예비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장의 승인

하여는 제19조(운영위원회)[201]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운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지만,

2023년도 상반기, 즉 제20기(1·2분기)의 분과위원회별 회의참석률이 평균 50.9%에 불과하고 특히 3개 분과위원회(청년·교육 37.0%, 인권·국제협력 39.1%, 국민소통2 40.9%)의 경우에는 회의체의 기본 요건인 ‘정족수’도 못 채운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음.

이에 대하여 사무처는, 지난 2021년에 출범한 제20기 자문회의 위원들이 정권 교체(2022. 5.) 이후 사직하는 경우가 많았고, 2023년 9월 제21기 자문회의가 출범하면서 상반기까지 활동한 제20기 자문위원과 하반기에 활동한 제21기 자문위원의 인적 구성에 변동이 많았다는 설명임.

제21기 출범 첫해에 새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회의에 참여하고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아도, 2023년 하반기 분과위원의 참석률(평균 68.6%)은 목표치 70%에 미달한 것임.[202]

을 받아 해당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상임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합동으로 소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전문개정 2012. 2. 29.]

20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05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1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장은 의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제18조제2호에 따른 위촉 해제 심사의 대상이 된 위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회의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29.]

202) 이에 대하여 사무처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76.6%)과 2022년(70.7%)의 경우 대면 회의와 비대면 회의를 병행하여 참석률이 예외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대면회의로만 진행된 2023년 하반기의 위원 참석률(67.7%)은 코로나 이전 시기인 2019년 63.4%, 2018년 60.3%, 2017년 61.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설명함.

각 분야별 안건을 심의하고 건의하는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함께, 민주평통 자문 기능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사무처는 분과위원회별 위원 수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적정 규모로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의 출석률이 낮은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 법정위원회 개최를 위한 임차료 초과집행 지양

최근 5년간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의 임차료(210-07) 집행 상황을 보면, 2019년에 7,175만원(123.1%), 2020년에 4,642만원(130.0%), 2021년에 9,042만원(155.1%), 2022년에 3,246만원(99.3%), 2023년에 7,306만원(132.0%) 등으로, 2022년을 제외하고 모두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 최근 5년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사업의 임차료 집행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편성	58,300	35,700	58,300	32,700	55,300
집행	71,748	46,420	90,420	32,460	73,060
집행률	123.1	130.0	155.1	99.3	132.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3년도에 집행된 임차료 7,306만원(예산 대비 1,776만원 초과집행) 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법정위원회 중 매 분기 회의를 개최하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경우 민주평통 사무처 내의 회의장을 활용하여 회의 개최를 위한 임차료가 별도로 소요되지 아니하였으나,

위원 수가 많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회의장소를 임차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법정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명, %)

구 분		일자	장소	대상인원	참석인원	참석률
운영위원회	1분기	2. 1.	사무처 1층 회의장	운영위원 47	39	83.0
	2분기	6. 20.	사무처 1층 회의장	운영위원 50	38	76.0
	3분기	9. 5.	사무처 1층 회의장	운영위원 48	47	97.9
	4분기	10. 6.	사무처 1층 회의장	운영위원 48	44	91.7
상임위원회		12. 19.	백범김구기념관	상임위원 497	354	71.2
분과위원회	1분기	3. 31. ~ 4. 7.	사무처 1층 회의장	분과위원 481	254	52.8
	2분기	5. 31. ~ 6. 9.	사무처 1층 회의장	분과위원 481	236	49.1
	3분기	10. 5. ~ 10. 17.	사무처 1층 회의장	분과위원 466	345	74.0
	4분기	12. 5. ~ 12. 14.	사무처 1층 회의장	분과위원 487	308	63.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에 사무처는 2023년도에 제21기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명장 수여(9.5.)를 위해 3,936만원, 제67차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12.19.)를 위해 1,776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그밖에 분과위원회 특별활동(워크숍 등)을 위해 1,594만원을 집행함.

< 2023년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사업 임차료 집행 세부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제21기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9.5.)	제67차 상임위원회 (12.19.)	분과위원회 특별활동(워크숍 등)
일자 및 장소	9.5. 스위스그랜드호텔	12.19. 백범김구기념관	14회, 웨스턴조선호텔 등
장소 임차료	25,410	4,950	2,000
시설·장비 임차료	13,950	12,815	5,000
버스 임차료	-	-	8,935
계	**39,360**	**17,765**	**15,93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023년 분과위원회 특별활동 임차료 집행 세부내역 >

(단위: 천원)

일자 및 장소			분과위	활동명(임차내용)	집행액
1	3.29.	포항 해병대, 경주 일원	문화예술체육	한미연합훈련 참관 (버스임차)	715
2	5.9.	연천군청, 군남댐	보건환경	경기도 연천군청 방문 및 DMZ 문화탐방 (버스임차)	770
3	5.22.	민족화해센터	종교탈북민지원	민족화해센터 방문 및 오두산전망대 견학 (버스임차)	770
4	9.23.	외신기자클럽	인권탈북민지원	북한인권 개선 간담회 (장소 및 시스템)	3,000
5	11.29.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인권탈북민지원	북한주민의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 (시스템임차)	4,000
6	10.16., 10.17., 11.15., 11.16., 12. 8.	국정원	운영·상임위원	운영·상임위원 국정원 견학 (버스임차)	3,600
7	10.5., 10.12., 11.16., 11.23.	하나원	통일안보, 인권탈북민지원, 종교민족화합, 국제협력	하나원 견학 (버스임차)	3,080
합 계					15,93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는 임차료 초과집행에 대하여, 위원 수가 500명에 가까운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별도의 회의장소가 필요하고, 이는 자문위원이 구성되는 2년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무처가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상임위원회 등 법정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적정 임차료를 정규 예산안에 미리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회의 개최 시 각급 교육기관, 훈련기관 등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재부 지침[203]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임차료 초과집행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203) 임차료(210-07목) 세부지침 중 "….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206.

□ 자문위원 위촉 시 연임·신규 비율의 균형 고려 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3년 9월 출범한 제21기 자문위원은 총 21,984명(국내 17,946명, 해외 4,038명)으로, 전기 20,000명(국내 16,100명, 해외 3,900명)에서보다 1,984명, 약 10% 증가하였음.

< 제21기 자문위원 위촉 현황 >

(단위: 명, %)

구 분		제20기	제21기	증원
합 계		20,000	21,984	1,984(9.9)
국내	소 계	16,100	17,946	1,846(11.5)
	지역대표(지방의원)	2,944	3,288	344(11.7)
	직능대표	13,156	14,658	1,502(11.4)
해외	재외동포대표	3,900	4,038	138(3.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제21기 자문위원의 위촉 비율을 보면, 전기 6,392명(34.2%)이 연임하고 12,304명(65.8%)이 신규 위촉된 바, 이는 제20기(2021.9.~2023.8.) 및 제19기(2019.9.~2021.8.) 자문위원 구성 시의 신규 위촉비율 47.8%, 58.4% 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임.

< 제19기~제21기 자문위원(직능, 재외동포) 신규 등 위촉 >

(단위: 명, %)

구 분		제19기		제20기		제21기	
		신규	연임	신규	연임	신규	연임
신규 비율	계	9,276 (58.4)	6,606 (41.6)	8,159 (47.8)	8,897 (52.2)	12,304 (65.8)	6,392 (34.2)
	직능대표	7,210 (58.7)	5,072 (41.3)	6,380 (48.5)	6,776 (51.5)	10,065 (68.7)	4,593 (31.3)
	재외동포대표	2,066 (57.4)	1,534 (42.6)	1,779 (45.6)	2,121 (54.4)	2,239 (55.4)	1,799 (44.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참고] 제21기 해외 자문위원(136개국, 4,038명) 위촉 현황

(단위: 명)

협의회	위원 수	국가	협의회	위원 수	국가
일본동부	186	일본	댈러스	96	미국
일본중부	60		애틀랜타	109	
일본근기	152		마이애미	55	
일본서부	45		하와이	70	
베이징	79	중국	샌프란시스코	89	
광저우	63		덴버	37	
칭다오	53		시애틀	118	
상하이	71		시카고	115	
선양	63		토론토	123	캐나다
서남아	61	네팔, 몰디브,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밴쿠버	81	
동남아남부	78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라질	51	브라질
동남아북부	111	필리핀, 팔라우, 몽골, <중국(대만, 홍콩)>	중미·카리브	76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멕시코, 베네수엘라,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동남아서부	76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남미서부	76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파라과이, 페루
베트남	119	베트남	영국	51	아일랜드, 영국
호주	170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피지, 호주	남유럽	109	그리스, 몰타, 스페인, 알바니아, 사이프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프랑스
뉴질랜드	79	뉴질랜드	북유럽	147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워싱턴	134	미국	중동부유럽	60	루마니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헝가리
뉴욕	171		중동	78	레바논, 모로코, 모리타니아,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오만, 요르단,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필라델피아	61		아프리카	79	가나, 가봉,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와나, 세네갈, 감비아, 앙골라,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차드,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보스턴	53		모스크바	47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로스앤젤레스	159		러시아동부	21	
오렌지·샌디에고	106		중앙아시아	108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휴스턴	9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는 연임 보다 신규 위촉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뒷받침할 통일준비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전문성과 실천력을 겸비한 신진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문회의의 활동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함.

민주평통은 1981년 6월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때부터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이끌어간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됨.

남북 분단 이후 갈수록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2년만에 급격히 변화되는 것은 아닐 것인 바, 통일정책의 안정성 측면에서 신규 위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현 정부가 지향하는 통일정책에 대한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대북·통일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민주평통 본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문위원 구성 시 연임 및 신규 위원의 비율에 적정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봄.

□ 자문위원 위촉 시 여성·청년 위원 비율 제고 필요

민주평통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해야 할 것임.

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추천권자가 자문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지역, 성별, 세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되, 특히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청년위원 비율 30% 이상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204].

제21기 자문위원 21,984명 중 여성위원은 6,414명, 34.3%, 45세 이하의 청년위원은 참여공모를 통한 1,000명의 청년을 포함하여 4,952명, 26.5%를 각각 위촉하였는 바, 이는 전기의 여성위원 40.6%, 청년위원 30.3%에서 각각 6.3%p, 3.8%p가 낮아진 것임.

< 제19기～제21기, 청년·여성 위원 위촉 현황 >

(단위: 명, %)

구 분		제19기(2019년)	제20기(2021년)	제21기(2023년)	증감
여성 위원	계	6,397 (40.3)	6,929(40.6)	6,414(34.3)	6.3p ↓
	직능대표	4,955 (40.3)	5,352(40.7)	5,013(34.2)	6.5p ↓
	재외동포대표	1,442 (40.1)	1,577(40.4)	1,401(34.7)	5.7p ↓
청년 위원	계	4,777 (30.1)	5,164(30.3)	4,952(26.5)	3.8p ↓
	직능대표	3,690 (30.0)	3,973(30.2)	3,986(27.2)	3.0p ↓
	재외동포대표	1,087 (30.2)	1,191(30.5)	966(23.9)	6.6p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선출직인 지역대표 위원은 통계산출 대상에서 제외, 청년·여성위원 중복인원 포함)

20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위원의 위촉) ① (생 략)
② 사무처장이 위원의 위촉을 제청하거나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추천하는 자가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여성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청년(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 성별, 세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 7. 30.>
③ (생 략)

국내 자문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인 지역대표(3,288명)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어 여성이나 청년의 비율을 조절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추천권자(정당대표, 국회의원 등)가 추천하거나 민주평통사무처장이 제청하는[205] 자문위원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비율을 최대한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자문위원 추천권자 >

추천권자(시행령 제4조)	**위촉 대상**(법 제10조)
사무처장(제청)	o 광역 · 기초의회 의원(본인 동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o 시·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정당 대표, 국회의원	o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 추천 인사
주무관청의 장	o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
이북5도지사	o 이북5도 대표
관할 공관장	o 재외동포 대표
사무처장(제청)	o 기타 통일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사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는 자문위원 위촉 시, 추천 및 제청권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법령에 규정된 권고사항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0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위원의 위촉)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0. 5. 20., 2013. 5. 22.>
1.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구·시·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3.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5. 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

(나) 통일여론 수렴·분석

‘통일여론 수렴·분석’ 사업은 통일문제 현안에 대한 통일여론 수렴 및 대상・시기별 여론분석을 위한 사업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그 결과를 통일 관련 정책 자문 또는 건의 등에 활용하고 있음.

2023년도 동 내역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통일여론분석 보고서를 4회 발간하고, 통일문제 여론조사를 15회 실시하였으며,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3회 개최하였음.

< 2022년 및 2023년도 통일여론 수렴・분석 사업 추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집행실적			
	2022년		2023년	
	발간 등 횟수	집행액	발간 등 횟수	집행액
통일여론분석보고서 발간	4회 발간	110	4회 발간	89
통일문제 여론조사	15회 실시	98	15회 실시	105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3회 개최	46	3회 개최	4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3년도 통일문제 정기 여론조사의 기간 및 조사대상은 아래 표와 같음.

< 2023년도 통일문제 정기 여론조사 기간 및 조사대상 >

구 분 (대주제)	조사기간	조사대상
정기 1차 (한반도 긴장관리와 비핵·평화·번영 기반 구축)	3. 24 ~ 3. 26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3. 24 ~ 3. 30	·통일·북한 전문가 150명
	3. 24 ~ 3. 30	·제20기 자문위원 대상
정기 2차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대북·대내외 정책 추진방안)	6. 9 ~ 6. 11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6. 9 ~ 6. 15	·통일·북한 전문가 150명
	6. 9 ~ 6. 15	·제20기 자문위원 대상
정기 3차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 여건 강화방안)	9. 15 ~ 9. 17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9. 15 ~ 9. 21	·통일·북한 전문가 150명
	9. 15 ~ 9. 21	·제21기 자문위원 대상
정기 4차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의 대내외 정책추진 방향)	11. 24 ~ 11. 26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11. 24 ~ 11. 30	·통일·북한 전문가 150명
	11. 24 ~ 11. 30	·제21기 자문위원 대상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3년 정기조사 주제는 다음과 같음.

< 2023년도 통일여론조사 정기조사 주제 >

구분	통일여론조사 정기조사 주제	결과 활용
1분기	△한일정상회담 영향, △우선 추진 대북정책,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영향, △비핵평화번영 기반구축 우선 추진과제, △통일관련 추이분석 등	1분기 정책건의 연계
2분기	△북한인권 상황, △북한인권문제 우선 추진과제, △북한인권보고서의 북한인권 개선 도움정도, △통일관련 추이분석 등	2분기 정책건의 연계
3분기	△러북 관계, △북한 전군지휘훈련, △한미동맹 70주년 방향성, △통일관련 추이분석 등	3분기 정책건의 연계, 「통일 여론·동향」 발간
4분기	△북한 정찰위성 발사, △2024 북한 도발강도 예상, △2024 남북관계 전망, △2024 통일·대북정책 과제, △통일관련 추이분석 등	4분기 정책건의 연계, 「통일 여론·동향」 발간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023년도 통일여론조사 정기조사 응답률 현황 >

구분	국민여론조사	전문가 여론조사	자문위원 여론조사
조사 개요	· 일반국민(전국 만19세 이상 1,000명) · 분기별 2~3일 · 전화면접조사 (가구전화 20%, 휴대전화 80%) · 고정문항 5개, 현안문항 5개 · 글로벌알앤씨 수행	· 통일·북한 전문가 150명 · 분기별 5~6일 · 이메일 조사 · 고정문항 5개, 현안문항 5개 전문가 대상 추가문항 2개 · 글로벌알앤씨 수행	· 해당기수 자문위원 대상 · 분기별 5~6일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동시 병행조사 · 고정문항 5개, 현안문항 5개 · 자체 온라인 조사
1분기	· 2023.3.24. ~ 3.26.(3일) · 응답률 8.9% · 신뢰수준 95%,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 2023.3.24. ~ 3.30.(7일) · 100명 응답(응답률 66.7%)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7%p	· 2023.3.24. ~ 3.30.(7일) · 4,227명 응답(응답률 21.3%)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3%p
2분기	· 2023.6.9. ~ 6.11.(3일) · 응답률 9.9% · 신뢰수준 95%,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 2023.6.9. ~ 6.15.(7일) · 101명 응답(응답률 67.3%)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6%p	· 2023.6.9. ~ 6.15.(7일) · 5,920명 응답(응답률 30.0%)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1%p
3분기	· 2023.9.15. ~ 9.17.(3일) · 응답률 9.6% · 신뢰수준 95%,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 2023.9.15. ~9.21.(7일) · 100명 응답(응답률 66.7%)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7%p	· 2023.9.15. ~9.21.(7일) · 12,060명 응답(응답률 56.4%)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0.6%p
4분기	· 2023.11.24. ~11.26.(3일) · 응답률 10.0% · 신뢰수준 95%,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 2023.11.24. ~11.30.(7일) · 101명 응답(응답률 67.3%)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7%p	· 2023.11.24. ~11.30.(7일) · 10,983명 응답(응답률 51.7%)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0.7%p

주: 국민여론조사 응답률은 전화조사 응답에 성공한 횟수에 대한 것임. 국민여론조사는 보통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 할당 추출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며, 대부분의 경우 1,000명 정도를 표본으로 함.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다) 국내·해외 출범회의

'국내·해외 출범회의'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206]에 따라 2년에 한 번 의장(대통령)의 소집으로 출범회의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자문위원의 임기(2년)가 시작되는 해에는 출범회의가, 출범 다음연도에는 각 지역별로 지역회의가 각각 개최됨.

국내의 경우 2023년에 제21기 자문회의 출범회의가 전체회의로 열렸고, 2024년에는 각 지역회의별로 회의를 개최하며, 해외의 경우 2023년에 각 해외협의회별 현지 출범회의로, 2024년에는 해외권역별 자문위원을 국내에 초청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됨.

2023년도의 경우, 11월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국내 출범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해외 출범회의는 하반기에 8개 권역에 걸쳐 45회 개최되었음.

< 2023년 출범회의 개최 현황 >

구 분	일자(기간)	장소	참석인원(참석률)
국내 출범회의	11. 28.	킨텍스 제1전시장	10,525명/21,567명 (48.8%)
해외 출범회의	9. 13. ~ 11. 19.	해외 협의회 활동 거점도시	2,523명 /4,038명 (62.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집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라) 자문위원·간부위원 지원

'자문위원 일반지원'과 '간부위원 활동지원' 사업은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 자문위원들의 지역통일활동 지원과 원활한 직무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자문위원 일반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억 8,800만원 중 98.8%인 1억 8,600만원이 집행되고 2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간부위원 활동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억 4,900만원 중 2억 3,700만원이 집행되고 1,2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자문위원·간부위원 지원 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본예산	추경						
· 자문위원 일반지원 (3005)	174	174	-	14	188	186	2	98.8
· 간부위원 활동지원 (3006)	249	249	-	-	249	237	12	95.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인 전체 자문위원 21,984명을, 간부위원은 수석부의장(1명)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간사(1명), 상임위원회 간사(2명), 국내·외 부의장(24명), 분과위원장(10명), 분과위원회 간사(10명) 등 48명을 의미함.

수석부의장(1명)은 의장(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며, 기타 간부자문위원(47명)은 지역의 통일활동 및 정책건의 활동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

를 위한 것으로, 각각「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207]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하고 있음.[208]

< 간부자문위원별 활동경비 월별 지급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수석 부의장	운영위 간사	상임위 간사	부의장	분과위원장	분과위 간사
지급액	6,000	1,500	1,300	300	200	15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법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시행령 제5조제2항(수당과 여비 등) 부의장, 상임위원회의 간사, 상임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간사, 운영위원회의 간사, 지역회의의 지회장, 협의회의 회장·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드는 활동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208) 지역회의의 지회장, 협의회의 회장・지회장에 지급하는 직무관련 활동경비는 없음.

3.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1000-1032 단위사업)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은 변화관리 워크숍, 성과관리, 제안제도 등을 통해 발전적 조직문화 활성화 및 행정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3,700만원 중 3,600만원이 집행되었고, 100만원은 불용되었음. 세부 집행내역은 사무처 변화관리 워크숍 2회에 3,000만원, 제안제도 운영 100만원, 성과관리제도 운영 500만원 등임.

< 2023년도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
	본예산	추경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37	37	-	37	36	1	97.3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 단위사업의 최근 4년간 추진 실적은 다음 표와 같음.

< 최근 4년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추진 실적 >

연 도	사업 추진 현황
2020년	o 사무처 변화관리 워크숍: 4회 o 제안제도 운영: 2회 o 재정성과관리 운영: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1회)
2021년	o 사무처 변화관리 워크숍: 2회 o 제안제도 운영: 2회 o 재정성과관리 운영: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1회)
2022년	o 사무처 변화관리 워크숍: 1회 o 제안제도 운영: 1회 o 재정성과관리 운영: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1회)
2023년	o 사무처 변화관리 워크숍: 2회 o 제안제도 운영: 1회 o 재정성과관리 운영: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1회)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4. 정보화사업 추진(1000-1033 단위사업)

‘정보화사업 추진’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와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 업무지원을 위한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4억 7,400만원 중 4억 2,100만원이 집행되고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5,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정보화사업 추진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					
□ 정보화 사업 추진	474	474	-	474	421	53	88.9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주요 집행내역은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1억 9,80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9,700만원, 행정업무용 PC 백신 프로그램 및 기록관리 전용 백신 라이센스 구입에 2,6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년도 정보화사업 추진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차액	사유
□ 정보화 사업 추진		474	421	53	-
○ 행정업무용 PC 백신 프로그램 구입	자산취득비 (430-01목)	13	13	-	-
○ 기록관리 전용 백신 라이센스 구입	자산취득비 (430-01목)	13	13	-	-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관리용역비 (210-15목)	231	198	33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210-15목)	217	197	2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5. 사무처 인건비(1100-1101 단위사업)

2023년도 '사무처 인건비'(1100-1001 단위사업) 예산액은 69억 4,800만원이고, 총액인건비 직급상향분 보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600만원을 전용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69억 5,400만원으로, 이 중 89.0%인 61억 8,5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6,900만원은 불용됨.

< 2023년도 사무처 인건비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확정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본예산	추경	[이용](전용)	<세목조정>{내역변경}				
□ 인건비	6,948	6,948	6	-	6,954	6,185	769	89.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023년도 사무처 인건비 비목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목-세목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인건비		6,948	6,948	-	6	-	6,954	6,185	-	769
110-01	보수	6,616	6,616	-	6	-	6,622	5,943	-	679
110-02	기타직보수	281	281	-	-	-	281	198	-	83
110-05	연가보상비	51	51	-	-	-	51	44	-	7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3년 12월 말 기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공무원 정원은 81명이고, 현원은 80명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원·현원 현황 >

(2023.12.31. 기준)

구분	계	정무직(차관)	고위공무원	3급	4급	5급	6급이하
정원	81	1	3	3	12	20	42
현원	80	1	3	3	12	21	4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는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1111-200-2002)의 특근매식비(210-05)에서 인건비 직급상향분(6급→ 5급, 1명) 급여 충당을 위해 600만원을 자체전용('23.6.15.)한 바,

최근 4년간의 결산 내역을 보면, 기본경비에서 매년 500-600만원을 전용하여 직급상향분의 보수 부족분으로 충당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인건비(1101-100)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6,599	6,346	-	5	-	6,351	6,049	95.3	95.2	-	302
2021	6,684	6,684	-	6	-	6,690	6,461	96.9	96.7	-	229
2022	6,796	6,786	-	6	-	6,792	6,270	92.4	92.3	-	522
2023	6,948	6,948	-	6	-	6,954	6,185	89.0	89.0	-	769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의도적 절감[209] 노력으로 확보한 재원을 자율항목에 속하는 인력증원 등에 전용할 수 있는 바,

사무처는 일하는 방식 개선과 업무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으로 직급상향 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209) 의도적 절감: 시행기관이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제로 절감한 재원을 말함.

6. 기본경비(1100-1111 단위사업)

‘기본경비’(1100-1111 단위사업)는 기관의 유지·운용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로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비대상 기본경비 및 전산운영경비로 이루어져 있음.

2023년도 예산액은 17억 5,000만원이고, 총액인건비 직급상향분 충당을 위해 인건비(1101-100)로의 전용으로 6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17억 4,400만원이며, 이 중 98.6%인 17억 2,000만원이 집행되고 2,4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기본경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본예산	추경					
□ 기본경비	1,750	1,750	△6	1,744	1,720	24	98.6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1111-200)	367	367	△6	361	345	16	95.6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1111-250)	1,201	1,201	-	1,201	1,193	8	99.3
○ 전산운영경비 (1111-251)	182	182	-	182	182	-	10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7. 지역협의회 활동지원(1100-1131 단위사업)

가. 개 요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사업은 국내·해외 지역조직의 평화통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문위원 역량강화’, ‘지역협의회 운영’,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단위사업의 2023년도 본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01억 200만원이고, 이 중 99.4%인 199억 7,2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3,0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대비 집행률
	본예산	추경						
□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20,102	20,102	-	-	20,102	19,972	130	99.4
○ 자문위원 역량강화 (1131-300)	2,870	2,870	-	△15	2,855	2,817	38	98.6
○ 지역협의회 운영 (1131-301)	12,337	12,337	-	-	12,337	12,272	65	99.5
○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1131-302)	4,895	4,895	-	15	4,910	4,883	27	99.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자문위원 역량강화(1131-300 세부사업)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은 자문위원의 정책건의 역량과 통일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지역평화통일준비 역량강화’, ‘유공자문위원 포상’, ‘기관지 제작, ‘평화통일자료 지원’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예산현액은 28억 5,500원이며, 이 중 98.6%인 28억 1,600만원이 집행되고 3,9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본예산	추경					
○ 자문위원 역량강화	2,870	2,870	△15	2,855	2,816	39	98.6
·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952	952	△22	930	928	2	99.8
· 지역평화통일준비 역량강화	790	790	-	790	777	13	98.3
· 유공자문위원 포상	99	99	7	106	104	2	98.0
· 기관지 제작	814	814	△13	801	790	11	98.6
· 평화통일자료 지원	215	215	13	228	217	11	95.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 세부사업의 비목별 주요 집행내역은 운영비(210목) 16억 8,900만원, 민간경상보조(320-01목) 7억 7,700만원 등임.

< 2023년도 자문위원 역량강화 비목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목-세목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	추경							
○ 자문위원역량강화		2,870	2,870	-	△15	-	2,855	2,816	-	39
110-03	상용임금	88	88	-	-	-	88	87	-	1
210	운영비	1,715	1,715	-	7	-	1,722	1,689	-	33
220	여비	219	219	-	△22	-	197	195	-	2
240-01	사업추진비	24	24	-	-	-	24	23	-	1
310-03	포상금	30	30	-	-	-	30	30	-	-
320-01	민간경상보조	777	777	-	-	-	777	777	-	-
320-09	고용부담금	17	17	-	-	-	17	15	-	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최근 3년간 동 세부사업의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 추진 현황 >

연 도	사업추진 현황
2021년	o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 전국 청년분과위원장 정책회의 등 청년위원 활동 : 20회 - 전국 여성분과위원장 정책회의 등 여성위원 활동 : 18회 - 세계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 : 2회 - 해외지역 청년·여성위원 역량강화 활동 : 25회 o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 권역별 자문위원 연수, 부의장·협의회장 합동회의 등 : 65회 o 유공자문위원 국민훈장 수여 : 45개 o 평화+통일 발행 : 12회/각 23,000부 o 민주평통 블로그 운영 : 494개 콘텐츠 게재 o 뉴스레터 제작 : 24회 o 민주평통 40년사 제작 : 1,000부 o 자문위원 온라인 통일콘텐츠 : 16편 o 온라인 통일자료 지원 등 영상 제작 : 37편 - 리플릿(133,000부) 제작 및 발송, 공무직 인건비 등

연 도	사업추진 현황
2022년	o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 전국 청년분과위원장 정책회의 등 청년위원 활동 : 22회 - 전국 여성분과위원장 정책회의 등 여성위원 활동 : 26회 - 세계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 : 2회 - 해외지역 청년·여성위원 역량강화 활동 : 24회 o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 온라인 통일콘텐츠(온라인 지식서비스) : 16건 - 권역별 자문위원 연수, 부의장·협의회장 워크숍 등 : 40회 o 유공자문위원 국민훈장 수여 : 45개 o 기관지 제작 - 평화+통일 발행 : 12회/각 23,000부 - 민주평통 블로그 운영 : 515개 콘텐츠 게재 및 뉴스레터 제작 24회 o 평화통일자료 지원 - 영상자료 제작 : 11편 - 소책자(12,000부) 제작 및 발송, 공무직 인건비 등
2023년	o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 여성운영위원회 등 여성위원 활동 : 32회 - 청년운영위원회 등 청년위원 활동 : 16회 - 세계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 : 2회 - 해외지역 청년·여성위원 역량강화 활동 : 18회 o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 온라인 통일콘텐츠(온라인 지식서비스) : 16건 - 권역별 자문위원 연수, 부의장·협의회장 워크숍 등 : 20회 o 유공자문위원 국민훈장 수여 : 43개 o 기관지 제작 - 평화통일 발행 : 12회/각 23,000부 - 민주평통 블로그 운영 : 569개 콘텐츠 게재 및 뉴스레터 제작 24회 o 평화통일자료 지원 - 영상자료 제작 : 11편 - 리플릿(22,000부) 제작 및 발송, 공무직 인건비 등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가)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내역사업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은 미래 통일시대 준비의 중요한 축인 청년・여성위원의 통일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고 통일준비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은 9억 5,200만원, 예산현액은 9억 3,000만원이며 이 중 99.8%인 9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은 불용하였음.

< 2023년도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본예산	추경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952	952	△22	930	928	2	99.8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 사업은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과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210] 해외

210) 청년·여성 평화·통일활동 기획사업 개요
o 목적 및 필요성
- 평화통일에 대한 세대·성별 간 간극 해소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청년·여성위원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청년·여성의 역량 및 활동력 제고 필요
o 추진개요
- 대 상 : 지역 청년(대학생), 여성층
- 주 관 : 지역 청년·여성위원회
- 사업내용 : 청년·여성 평화통일 역량강화 및 청년·여성조직 활성화 사업, 청년·여성 주도의 국민참여형 통일활동 사업,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문화사업 등
- 사업유형

<청년사업>
o 청년층 대상 평화통일 역량강화 및 청년 조직 활성화 사업
- 대학생 평화통일토크콘서트, 차세대와 함께하는 통일리더캠프, 청년들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등
o 청년 주도의 국민참여형 통일활동 사업
- 청년 통일콘서트, 청년 평화통일공감 강연회 등
o 청년 중심의 통일공감 문화사업
- 청춘 평화통일페스티벌, 전국 청소년 평화통일 랩 경연대회, 지역청년과 함께하는 '통일의 꿈' 등

<여성사업>
o 여성층 대상 평화통일 역량강화 및 여성 조직 활성화 사업
- 여성리더가 함께하는 통일좌담회, 여성 통일대북정책 공감워크숍, 여성 통일리더 평화의 길을 lead하다 등
o 여성 주도의 국민참여형 통일활동 사업
- 여성 평화통일로 가는 플랫폼, DMZ 여성 평화통일 공감 걷기, 탈북여성이 함께하는 평화통일공감 워크숍 등
o 여성 주도의 통일공감 문화사업
- 인천에서 기다리는 통일의 봄, 시의 향기로 통일을 노래하다, 전통문화 속의 여성통일공감 한마당 등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2023년도에는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 사업 15회,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27회, 해외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20회를 각각 실시하였음.

< 2023년도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실적 >

(단위: 회, 백만원)

사 업 명		개최 횟수	집행액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	▪ 전국 청년분과위원장 워크숍	1	33
	▪ 청년 평화·통일활동 기획사업	14	381
	계	15	414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 전국 여성분과위원장 워크숍	1	45
	▪ 여성 평화·통일활동 기획사업	26	147
	계	27	192
해외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 해외 청년위원 컨퍼런스	1	128
	▪ 해외 여성위원 컨퍼런스	1	109
	▪ 해외 청년·여성 통일 공감대 확산 사업	18	85
	계	20	32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집행액에는 사업비, 수용비, 여비 등 모두 포함)

(나) 지역평화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

내역사업 '지역평화통일준비 역량강화'는 지역통일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지역별·대상별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여 통일준비를 위한 실천과제 발굴과 통일문제 현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이며, 온라인 통일 콘텐츠 제작 및 연수자료집 제작 등을 통해 자문위원 연수에 필요한 영상 및 교재를 직접 맞춤형으로 제작하고 있음.

< 2023년도 지역평화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 주요 추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o 온라인 지식서비스 제작 16편	185	185	182
o 간부자문위원 역량지원 2회	143	146	146
o 권역별 자문위원 대상 연수 18회	391	391	381
o 연수자료집 제작	71	68	68
합계	**790**	**790**	**777**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연도별 온라인 지식서비스 예산집행 내역 및 2023년 조회실적은 아래 표와 같음.

< 연도별 온라인 지식서비스 예산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	180	180	180	180	180
집행	165	167	169	172	177
제작편수	18편	18편	16편	16편	16편
제작단가	9.2/편당	9.3/편당	10.6/편당	10.8/편당	11.1/편당
조회수	5,514/편당	7,100/편당	7,568/편당	14,263/편당	29,931/편당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023년 온라인 지식서비스 조회실적 >

(단위: 회)

연번	제 목	조회 수 ('23.12.31기준)
1	1분기 정기회의 주제 영상	-
2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원칙과 방향	14,982
3	우크라이나 전쟁 1년... 현황과 전망	34,794
4	북한의 MZ세대, 장마당세대	47,643
5	2분기 정기회의 주제 영상	-
6	인도-태평양 전략과 새로운 아세안 정책	22,232
7	북한 도시의 변화	44,065
8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5,031
9	3분기 정기회의 주제 영상	-
10	미리 가보는 북한 여행기	19,830
11	한미동맹 70년과 안보협력	32,976
12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대응방안	46,681
13	4분기 정기회의 주제 영상	-
14	최근 북한경제 실태	37,684
15	국민통합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	28,417
16	북한의 사회통제	4,846
총 조회수	359,18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다) 기관지 제작 및 평화통일자료 지원

내역사업 '기관지 제작' 및 '평화통일자료 지원'은 자문위원에게 통일·대북정책, 남북관계 현안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건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화통일 발간', '블로그 제작 및 SNS 운영', '영상자료 제작', '기타 평화통일자료 지원' 등으로 이루어짐.

< 2022·2023년도 민주평통 기관지 제작 및 통일자료 지원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추진 현황	2022년 집행액	2023년 집행액
기관지 제작	「평화통일」	o 발간횟수 : 12회 (매월) o 발간부수 : 매회 23,000부 (모바일「평화통일」병행) o 배 부 처 : 자문위원 및 유관기관·관련 단체	530	542
	블로그	o 발행주기 : 상시 o 콘텐츠 수 : 월 30~40개 o 대국민 공개 서비스(네이버 블로그)	166	248
평화통일자료 지원		o 영상자료 제작 : 11회 o 기관소개 리플렛 22,000부 o 홈페이지 다국어 번역 서비스(2023년)	213	217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 지역협의회 운영(1131-301 세부사업)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211]에 따라 구성되는 지역회의[212]와 지역협의회[213]의 운영비와 국내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행정실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의회 인건비’, ‘협의회 운영비’, ‘협의회 직무교육’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동 세부사업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본예산과 동일한 123억 3,700만원이고, 이 중 99.5%인 122억 7,200만원이 집행되고 6,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
	본예산	추경					
○ 지역협의회 운영	12,337	12,337	-	12,337	12,272	65	99.5
· 협의회 인건비	8,963	8,963	15	8,978	8,917	61	99.3
· 협의회 운영비	3,296	3,296	-	3,296	3,293	3	99.9
· 협의회 직무교육	78	78	△15	63	62	1	99.3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11)「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21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 2023년 12월 31일 기준 23개(국내 18개, 해외 5개)

213)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구성, 2023년 12월 31일 기준 273개(국내 228개, 해외 45개)

최근 3년간 동 세부사업의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 추진 현황 >

연 도	사업추진 현황
2021년	o 협의회 직원 인건비 매월 지급 o 협의회 운영비 매월 지급(해외 분기별) o 협의회 직원 직무교육 : 13회(상반기 7회, 하반기 6회)
2022년	o 협의회 직원 인건비 매월 지급 o 협의회 운영비 지급(국내 연초 1회, 해외 분기별) o 협의회 직원 직무교육 : 전국단위 개최(1회)
2023년	o 협의회 직원 인건비 매월 지급 o 협의회 운영비 지급(국내 연초 1회, 해외 분기별) o 협의회 직원 직무교육 : 전국단위 개최(1회)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가) 협의회 인건비·운영비

협의회 인건비는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214]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2023년도에 89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장애인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1,500만원을 증액 조정한 예산현액 89억 7,800만원 중 99.3%인 89억 1,700만원이 집행되고 6,100만원은 불용되었음.

214) 국내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공무직 근로자(행정실장) 현황

(단위: 명)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북5도
247	26	17	10	11	6	6	1	6	32	19	12	16	15	23	23	20	3	1

< 2023년도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인건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설치기준	예산현액	집행액	지급기준	비 고
국내 지역회의 (18)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8,978	8,917	매월 29일 행정실장 개인별 지급 (기본급, 수당 등)	매월 1인당 200여만원 실급여 지급
국내 지역협의회 (228)	시·군·구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협의회 운영비는 자문회의 지역조직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정기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 본예산 및 예산현액은 32억 9,600만원이고 이 중 99.3%인 32억 9,300만원이 집행되고 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지역회의 및 협의회 운영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지급기준
합 계	**3,292**	**3,289**	
국내 지역회의(18)	216	216	연 1,200만원(연 1회) × 18지역
국내 지역협의회(228)	1,642	1,642	연 720만원(연 1회) × 228협의회
해외 지역회의(5)·지역협의회(45)	1,434	1,431	(지역회의)분기당 955만원 × 5지역 × 4분기 (협의회)분기당 690만원 × 45협의회 × 4분기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해외 송금수수료(400만원) 제외)

국내 18개 지역회의에는 '협의회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연 1회 평균 1,200만원)하고,

국내 228개 지역협의회에는 ‘자문위원 수’(60인 이하, 61~100인, 101~140인, 141~180인, 181인 이상)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연 1회 평균 720만원)함.

해외 5개 지역회의에는 기준(기본경비 130만원, 협의회당 5만원, 사무실 임차료 최대 100만원, 인건비 최대 150만원)에 따라 분기당 630~1,102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해외 45개 지역협의회에는 기준(기본경비 70만원, 국가 및 도시 등급에 따라 최대 30만원, 자문위원수에 따라 최대 20만원, 관할 지회당 40만원, 사무실 임차료 최대 100만원, 인건비 최대 150만원)에 따라 분기당 300~1,048만원을 차등 지급함.

□ 국내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를 예산과목에 맞게 교부 필요

민주평통 사무처는 협의회 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금(320-01)으로 편성하고 연초에 1회(해외의 경우 분기별) 지급하고 있음.

기획재정부 지침[215]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말함.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등은 자문위원이 대표이지만 대부분의 행정 사무를 공무직 근로자(해외의 경우 자문위원 또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처리하고 있고, 민주평통 사무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사무처는 해외 지역회의 및 협의회는 분기별로 운영비를 교부·정산하고 있으나, 국내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경우 지역조직마다 운영비 집행 항목 및 지출시기가 상이하여 분기별 균등 교부가 어렵다는 이유로 운영비를 연초에 1회 교부하고 연도말에 정산하고 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216]에 따르면,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사이에 교부된 교부

215)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370.

21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3. (생략)

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협의회 운영비도 예산과목에 맞게 교부할 필요가 있음.

다만 사무처는 공공요금, 사무실 유지비 등에 사용되는 협의회 운영비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상적 경비로, 자체지침[217]으로 교부방법을 연 1회로 정하여 교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보조금 집행 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최소 반기별 중간 정산을 통해 운영비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17) 「민주평통 국내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집행지침」

3) 지역협의회 활동추진(1131-302 세부사업)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에 따라 구성되는 국내외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 단위의 통일활동 추진에 관한 사업으로,

‘평화통일포럼’, ‘평화통일 시민교실’, ‘지역평화통일활동 지원’, ‘청소년 평화통일공감 사업’, ‘해외 평화통일정책 강연회’,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등 6개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동 세부사업의 2023년도 본예산은 48억 9,500만원, 예산현액은 49억 1,000만원이고, 이 중 99.5%인 48억 8,400만원이 집행되고 2,6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
	본예산	추경					
○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4,895	4,895	15	4,910	4,884	26	99.5
· 평화통일포럼	565	565	28	593	585	8	98.5
· 평화통일 시민교실	344	344	△3	341	326	15	95.8
· 지역평화통일활동 지원	2,691	2,691	△34	2,657	2,657	0	100.0
·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1,030	1,030	-	1,030	1,029	1	99.9
· 해외평화통일정책 강연회	171	171	25	196	196	0	100.0
·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94	94	△1	93	91	2	98.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최근 3년간 동 세부사업의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 추진 현황 >

연 도	사업추진 현황
2021년	o 국내평화통일포럼 : 45회, 2,458명 참석 o 해외평화통일포럼 : 5회, 901명 참석 o 통일시대시민교실 : 66회, 8,790명 참석 o 국내 지역통일활동 지원 : 139회(강연회·토론회 51회, 통일문화행사 등 88회) o 국내 정기회의 통일활동 지원 : 4회(분기별), 38,086명 참석 o 해외 지역통일활동 지원 : 227회(강연회·토론회 69회, 통일문화행사 등 158회) o 해외 정기회의 통일활동 지원 : 2회(상·하반기), 4,608명 참석 o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 112회, 청소년 19,521명 참석(국내 66회, 15,405명/해외 45회 4,116명) o 해외 대북정책강연회 : 18회(대면 3회, 비대면 및 대면·비대면 병행 15회) o 우리고장 평화플랜 : 6회, 480명 참석
2022년	o 국내평화통일포럼 : 51회, 3,190명 참석 o 해외평화통일포럼 : 3회, 420명 참석 o 평화통일시민교실 : 152회, 9,216명 참석 o 국내 평화통일활동 지원 : 183회(강연회·토론회 70회, 통일문화행사 등 113회) o 국내 정기회의 : 4회(분기별), 33,786명 참석 o 해외 평화통일활동 지원 : 162회, 31,716명 참석 o 해외 정기회의 : 3회(1~3분기), 6,401명 참석 o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 212회, 24,032명 참석(국내 161회, 20,985명, 해외 51회, 3,047명) o 해외 평화통일정책 강연회 : 14회(대면 12회, 비대면 2회) o 우리고장 평화플랜 : 6회, 594명 참석
2023년	o 국내평화통일포럼 : 34회, 3,625명 참석 o 해외평화통일포럼 : 4회(해외포럼 3회·국제학술회의 1회), 1,174명 참석 o 평화통일시민교실 : 139회, 12,291명 참석 o 국내 평화통일활동 지원 : 122회(강연회·토론회 44회, 통일문화행사 등 78회) o 국내 정기회의 : 4회(분기별), 39,773명 참석 o 해외 평화통일활동 지원 : 165회, 39,508명 참석 o 해외 정기회의 : 3회, 5,898명 참석 o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 229회, 58,950명 참석(국내 168회, 54,773명, 해외 61회, 4,177명) o 해외 평화통일정책 강연회 : 14회, 1,175명 참석 o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 3회, 420명 참석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가) 평화통일포럼 사업 및 평화통일 시민교실 사업

내역사업 '평화통일포럼'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 및 통일·대북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포럼과 해외포럼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음.

2023년도 국내포럼은 총 34회 개최되어 3,625명이 참석하였고, 해외포럼은 총 4회(해외포럼 3회, 국제학술회의 1회) 개최되어 1,174명이 참석하였음.

< 최근 4년 국내·외 평화통일포럼 실시내역 >

(단위: 회, 명,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개최 횟수	40	5	45	5	51	3	34	4
참가자	2,162	696	2,458	901	3,190	420	3,625	1,174
예산액	240	179	179	186	203	187	180	386
집행액	**235**	**124**	**209**	**138**	**188**	**208**	**181**	**40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내역사업 '평화통일 시민교실'은 통일·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기반 구축 및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전국 지역협의회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음.

동 내역사업은 통일·대북정책, 국민통합, 북한 사회·문화, 역사 등으로 강연 주제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총 139회 개최되어 12,291명이 참여하였고 3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3년 평화통일 시민교실 개최 실적 >

개최 횟수	참가인원	집행예산	비 고
139	12,291명	326백만원	회당 사업비 235만원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최근 5년 평화통일 시민교실 개최 횟수 및 참가인원 >

연 도	개최 횟수(회)	참가인원(명)
2019년	276	21,670
2020년	127	6,714
2021년	132	8,760
2022년	152	9,216
2023년	139	12,29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해외 평화통일포럼 사업비의 연례적 증액조정 집행 지양

내역사업인 '평화통일포럼' 사업은 국내 시·도별, 해외 주요 국가별 여론 주도층 대상의 통일 논의, 대안 모색과 여론 수렴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 5억 6,500만원에서 2,800만원이 조정 증액된 예산현액 5억 9,300만원 중 5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평화통일포럼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평화통일포럼	565	28	593	585	8	98.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 사업은 국내·외 지역회의 등에 사업별로 민간경상보조금(320-01)을 지급하여 집행하는데,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매년 증액 조정을 통해 사업비를 초과집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평화통일포럼 민간경상보조금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1년	국내	163	163	+33	196	196	-
	해외	90	90	+36	126	126	-
	소계	**253**	**253**	**+69**	**322**	**322**	**-**
2022년	국내	186	186	△12	174	174	-
	해외	90	90	+27	117	117	-
	소계	**276**	**276**	**+15**	**291**	**291**	**-**
2023년	국내	163	163	0	163	163	-
	해외	90	90	+26	116	116	-
	소계	**253**	**253**	**+26**	**279**	**279**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 사업의 사업 집행절차를 보면, 사무처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회의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예산 지원을 받아 포럼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바, 사무처는 각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평화통일포럼 집행절차 >



또한, 매년 평균 국내 43회, 해외 3회로 다양한 지역과 장소에서 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사무처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 최근 3년간 평화통일포럼 개최 실적(횟수, 참석인원) >

	2021년	2022년	2023년
국내 평화통일포럼	45회, 2,458명	51회, 3,190명	34회, 3,625명
해외 평화통일포럼	3회, 487명	3회, 420명	3회, 344명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023년 해외 평화통일포럼 개최 현황 >

구 분	일자	지역(장소)	참석인원	집행액(천원)
한·일 평화통일포럼	4.25.	도쿄 게이오 프라자호텔	134명	37,000
한·미 평화통일포럼	5. 3.	워싱턴 National Press Club	150명	47,000
한·독 평화통일포럼	6. 9.	베를린 아데나워재단아카데미	60명	32,0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는 해외 평화통일포럼의 초과집행 사유에 대해 장소 및 장비 임차료 등 현지의 물가 사정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였다는 설명이나, 예산 지원의 현실화에 앞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또한, 예산의 자체 조정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특정 비목(320-01)에 대한 연례적·반복적인 예산 조정은 부적절하며, 행사를 담당하는 개별 지역회의 또는 지역협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사무처의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나) 지역평화통일활동지원

내역사업 '지역평화통일활동지원'은 지역 단위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및 통일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지역 통일운동을 전개하여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 26억 9,100만원에서 3,400만원이 조정 감액된 예산현액 26억 5,700만원 중 26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지역평화통일활동지원 사업 예산 비교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		2023년 집행액	
		계획	예산액	집행내역	집행액
계			2,691		2,656
국내 정기회의		0.6×229개소 ×4분기 (자료집 : 29)	579	0.6×229개소 ×4분기 (자료집 : 22)	572
해외 정기회의		2.8×45개소 ×3회 (자료 번역비 등 : 18)	391	2.8×45개소 ×3회 (자료 번역비 등 : 18)	391
지역회의·협의회 특화사업	국내	3.06×246개소 (여비 : 20)	773	3.06×246개소 (여비 : 19)	772
	해외	10.2×93개소	948	9.7×95개소	92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다)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내역사업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은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국가관·통일관 정립 및 통일의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통일골든벨'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동 내역사업의 2023년도 본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0억 3,000만원이고, 이 중 10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최근 4년 통일골든벨 사업추진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대상	참가현황	집행액	결선 시청률
2020년	고등학생	o 국내: 7개 지역회의, 43개 협의회, 7,674명 o 해외: 4개 지역회의, 29개 협의회, 4,444명 o 온라인 퀴즈이벤트: 1,552명	930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일정 조정 및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하에 기존의 대면 집합식 방식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
2021년	고등학생	o 국내: 17개 지역회의, 48개 협의회, 79,800명 o 해외: 5개 지역회의, 35개 협의회, 4,116명 o 결선: 1회, 91명 o 온라인 퀴즈이벤트: 5,514명	999	
2022년	고등학생	o 국내: 17개 지역회의, 138개 협의회, 13,967명 o 해외: 5개 지역회의, 40개 협의회, 3,047명 o 결선: 1회, 100명 o 온라인 퀴즈이벤트: 6,918명	835	온·오프라인 병행 추진
2023년	고등학생	o 국내: 17개 지역회의, 115개 협의회, 46,313명 o 해외: 5개 지역회의, 41개 협의회, 3,607명 o 결선: 1회, 96명 o 온라인 퀴즈이벤트: 8,210명	1,029	온·오프라인 병행 추진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청소년 평화통일골든벨 진행 단계 및 2023년 참가 학생 수 현황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최근 4년간 결산 및 참가 학생 수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예산	집행액	참가 학생 수 현황
2020	999	929	o 국내: 7개 지역회의, 43개 협의회, 7,674명 o 해외: 4개 지역회의, 29개 협의회, 4,444명 o 온라인 퀴즈이벤트: 1,552명
2021	1,000	999	o 국내: 17개 지역회의, 48개 협의회, 9,800명 o 해외: 5개 지역회의, 35개 협의회, 4,116명 o 결선: 1회, 91명 o 온라인 퀴즈이벤트: 5,514명
2022	830	835	o 국내: 17개 지역회의, 138개 협의회, 13,967명 o 해외: 5개 지역회의, 40개 협의회, 3,047명 o 결선: 1회, 100명 o 온라인 퀴즈이벤트: 6,918명
2023	1,030	1,029	o 국내: 17개 지역회의, 115개 협의회, 46,313명 o 해외: 5개 지역회의, 41개 협의회, 3,607명 o 결선: 1회, 96명 o 온라인 퀴즈이벤트: 8,210명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라) 해외 평화통일정책 강연회

내역사업 '해외 평화통일정책 강연회'는 통일·대북정책, 통일준비에 대한 재외동포사회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총 14회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총 1,175명이 참석하였음.

동 내역사업의 2023년도 본예산액은 1억 7,100만원, 예산현액은 1억 9,600만원이고 이 중 1억 9,6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년도 해외 평화통일정책 강연회 추진 현황 >

(단위: 명)

권 역	주 관	일 자	장소	주 제	참석 인원	사무처 인원	방식
계(14)					1,175		
일본 (2)	일본근기	4.21.	민단오사카본부	동북아 주변정세와 한일협력의 미래지향적 방향	120	4	대면
	일본중부	4.23.	아이치민단 대강당	동북아 주변정세와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100	4	대면
미주 (8)	하와이	1.14.	크리스도연합감리교회	동북아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문제	100	5	대면
	샌프란시스코	1.16.	힐튼 에어포트 베어프런트 호텔	동북아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문제	80	3	대면
	애틀랜타	2.25.	소네스타호텔	한반도 주변정세와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	100	4	대면
	브라질	2.27.	포고드차오	한반도 주변정세와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	67	4	대면
	남미서부	3.1.	협의회사무실	한반도 주변정세와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	90	4	대면
	중미카리브	3.4.	레포르마 메리어트호텔	한반도 주변정세와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	80	4	대면
	시카고	4.30.	힐튼 시카고 노스브룩	최근 한반도 정세와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83	4	대면
	마이애미	12.17.	포트라러데일 노인복지관	한반도 통일정책과 북한의 인권	60	0	대면
유럽·중동·아프리카 (4)	영국	6.11.	주영한국문화원	최근 한반도 정세와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70	4	대면
	중동	10.13.	힐튼 쿠웨이트 리조트	최근 한반도 정세와 민주평통의 역할	80	4	대면
	중앙아시아	10.18.	인터내셔널호텔	최근 한반도 정세와 민주평통의 역할	73	4	대면
	남유럽	10.21.	포르타 파라 호텔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외교	72	4	대면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마)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내역사업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는 평화통일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 통일과제를 발굴하고 실천계획 도출을 위해 2021년도에 신설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9,300만원 중 9,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실적은 국내 3개 지역에서 총 420명이 참석하였음.

< 2023년도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사업 개최 현황 >

(단위: 백만원)

지역	일자	장소	참석	집행액
충남 천안시	5.25.	천안시청 대회의실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120명	30
서울 송파구	6.21.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200명	31
대구 수성구	12.1.	대구그랜드호텔 리젠시홀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100명	3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8. 시설관리(1100-1132 단위사업)

‘시설관리’ 사업은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호원, 미화원, 조리원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사관리 운영’ 단일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23년도 예산액 3억 8,300만원 중 3억 7,500만원이 집행되었고, 8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청사관리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					
○ 청사관리 운영	383	383	-	383	375	8	98.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 단위사업의 연도별 예산 현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청사관리 직원의 경우 2018년도부터 직접 고용방식(무기계약 근로자)으로 전환하여 청소원 3명, 방호원 6명, 조리원 1명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음.

< 연도별 시설관리 사업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	242	331	333	366	383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Ⅲ.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1. 재정상태표[218)]

< 재정상태표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기 2023(A)	전기 2022(B)	변동액 (C=A-B)	변동률 (C/B)
1. 자산합계	28,905	29,053	△148	△0.5
가. 유동자산	-	-	-	-
나. 일반유형자산	28,355	28,367	△12	△0.04
다. 무형자산	550	686	△136	△19.8
라. 기타비유동자산	-	-	-	-
2. 부채합계	-	-	-	-
가. 유동부채	-	-	-	-
3. 순자산	28,905	29,053	△148	△0.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18)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재정상태표) ①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② 재정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8조(재정상태표 작성기준)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 경우 유동성이란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정도를 말한다.
②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가. 자 산[219)]

2023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산은 289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5%인 1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음.

유동자산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반유형자산은 283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0만원 감소하였는데, 세부내역은 건물 700만원 감소, 구축물 1,200만원 감소, 기계장치 3,400만원 증가, 집기비품 및 차량운반구 3,800만원 감소, 기타일반유형자산 1,100만원 증가임.

무형자산은 5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600만원 감소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소프트웨어 및 기타 무형자산의 신규취득으로 2억 4,700만원이 증가하고, 감가상각으로 3억 8,300만원 감소하였음.

---

219)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②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이하 “유산자산”이라 한다)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③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부 채[220]

2023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채로 집계된 금액은 없음.

다. 순자산[221]

2023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순자산은 부채가 없으므로 자산가액과 같은 289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5%인 1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음.

---

220)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②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①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채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2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③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한다.
④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2. 재정운영 분석[222)]

< 재정운영표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기 2023(A)	전기 2022(B)	변동액 (C=A-B)	변동률 (C/B)
1. 프로그램순원가	34,132	33,185	947	2.9
2. 관리운영비	-	-	-	-
3. 비배분비용	-	-	-	-
4. 비배분수익	20	12	8	66.7
5. 재정운영순원가(1+2+3-4)	34,112	33,173	939	2.8
6. 비교환수익 등	-	-	-	-
7. 재정운영결과(5-6)	34,112	33,173	939	2.8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2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재정운영표)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③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더하고, 제3호의 수익은 빼서 표시한다.
1. 관리운영비: 기관운영비와 같이 기관의 여러 정책이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에는 관리업무비를 말한다)
2. 비배분비용: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
3. 비배분수익: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
④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제28조제2항제2호의 비교환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빼서 표시한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란에 표시한다.

가. 프로그램순원가 및 관리운영비[22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프로그램순원가는 341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인 9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예산 집행의 증가가 프로그램순원가 증가의 주요 원인임.

구체적으로 인건비(2억 800만원 증가), 복리후생비(1억 300만원 증가), 소모품비(5억 2,000만원 감소), 인쇄비(3억 300만원 증가), 지급임차료(4억 5,500만원 증가), 여비교통비(6억 6,300만원 증가), 업무추진비(14억 3,100만원 감소), 외주용역비(9억 7,200만원 증가) 및 기타 프로그램비용(1억 9,400만원 증가)임.

나. 비배분비용[224]

2023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비배분비용은 없음.

---

223)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 지침)
(3) 프로그램순원가
- ㅇ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함.
- ㅇ 행정형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한다)와 같이 징수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함.
- ㅇ 사업형 회계는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나 기금과 같이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함

(4) 관리운영비
□ 관리운영비란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함.
□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나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능수행을 위한 관리업무비를 말함.
□ 관리운영비의 범위는 국가회계실체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 ㅇ 행정형 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과 관련된 인건비와 경비를 전액 관리운영비로 구분함
- ㅇ 사업형 회계(기업특별회계, 기금): 개별적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기업적인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동 실체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경비 중 사업의 수행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인건비와 경비는 관리운영비로 구분함.

* 사업형 회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건비와 경비는 간접원가로 보아 해당 프로그램에 배부함.

22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①·② (생략)
③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더하고, 제3호의 수익은 빼서 표시한다.
2. 비배분비용: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

다. 비배분수익[225]

2023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비배분수익은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7%인 800만원이 증가하였음.

증가의 주요 원인은 지출금반납금이 1,000만원 증가하고, 잡이익이 200만원 감소하여 전년 대비 800만원 증가하였음.

라. 재정운영순원가 및 재정운영결과[226]

2023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재정운영순원가 및 재정운영결과는 동일하며 341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인 9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음.

---

225)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①·② (생략)
③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더하고, 제3호의 수익은 빼서 표시한다.
3. 비배분수익: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

226) 재정운영순원가는 해당 국가회계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뿐 아니라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거나 낮은 관리운영비, 비배분수익·비용을 모두 반영함으로써 전체 재정활동을 통해 소요된 원가를 나타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④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제28조제2항제2호의 비교환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빼서 표시한다. 다만,「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50조의2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란에 표시한다.

3. 순자산변동 분석[227]

< 순자산변동표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기 2023(A)	전기 2022(B)	변동액 (C=A-B)	변동률 (C/B)
1. 기초순자산	29,053	28,490	563	2.0
2. 재정운영결과	34,112	33,173	939	2.8
3. 재원의조달및이전	33,967	33,738	229	0.7
4. 조정항목	△2	△2	-	-
5. 기말순자산(1-2+3+4)	28,905	29,053	△148	△0.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가. 기초순자산[228]

2023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초순자산은 290억 5,300만원으로, 전기 기말순자산 대비 변동은 없음.

나. 재정운영결과[229]

2023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재정운영결과는 341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인 9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재정운

---

227)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순자산변동표) ①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228)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 지침)
Ⅰ. 기초순자산
1. 기초순자산의 정의 및 계정분류
(1) 기초순자산의 정의
기초순자산은 전기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당기에 발생한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하여 기초순자산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전기에 보고한 금액을 "보고금액"으로 별도 표시하고, 회계정책 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이 매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전기오류수정손익", "회계변경누적효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29) 재정운영표에서 산출한 재정운영결과는 순자산변동표의 구성에 포함됨.

영표의 내용과 동일함.

다. 재원의 조달 및 이전[230]

국고수입, 기타재원의 조달 및 국고이전지출 등으로 구성되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339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7%인 2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음.

라. 조정항목[231]

2023회계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자산변동표상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가 상계되어 전년 대비 변동이 없음.

---

230)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 지침)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행정형 회계의 비교환수익과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 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를 말하며,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재원의 조달
(가) 국고수입
(나) 부담금수익
(다) 제재금수익
(라) 기타비교환수익
(마) 무상이전수입
(바) 채무면제이익
(사) 기타재원조달
(2) 재원의 이전
(가) 국고이전지출
(나) 무상이전지출
(다) 기타재원이전

231)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 지침)
(조정항목) 조정항목은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초래하는 거래이나, 수익 또는 비용거래나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납입자본의 증감
(2) 투자증권평가손익
(3) 파생상품평가손익
(4) 자산재평가이익
(5)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감
(6) 기타순자산의증감

Ⅳ.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현황 >

조치 결과	구분			소계
	주의	시정	제도개선	
조치 완료	1	-	1	2
조치 중	2	-	-	2
소 계	3	-	1	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3건의 주의와 1건의 제도개선 요구를 받았고, 이에 대해 2건은 조치 중, 2건은 조치 완료된 것으로 국회에 보고하였음.

<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24.6.30)
(1)평화통일포럼 민간경상보조금의 연례적 증액조정 지양	○[지적사항]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 중 평화통일포럼(3억 9,600만원 집행)은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국내·외 지역회의 등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받아 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을 최근 3년간 매년 증액 조정을 통해 초과집행함	○ 2024년도 해외 평화통일포럼(중동, 미주, 아태) 예산지원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회의·협의회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지원액을 결정하겠음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해외 현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예산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예정일 : 2024년 12월 2일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24.6.30)
	○[시정요구사항] 민주평통은 각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액을 결정하고, 개별 지역회의는 결정된 지원액 내에서 집행하는 등 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		
(2)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참가자 수 증대방안 마련 필요	○[지적사항]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8억 3,500만원 집행)은 청소년 평화통일골든벨 퀴즈대회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코로나19 상황인 2019년과 2022년의 예산집행액은 큰 차이가 없으나, 2022년 참가 학생 수가 2019년에 비해 국내 학생은 10.5% 수준인 13,967명, 해외 재외동포 학생은 27.3% 수준인 3,047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시정요구사항] 민주평통은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의 홍보방안과 지역별 접근가능성 제고 등 예산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023년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참석자 수가 국내 학생은 46,395명(22년 14,043명 대비 330% 수준), 해외 학생은 3,621명(22년 3,071명 대비 118%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향후에도 청소년의 통일·역사관 함양 및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3년 9월 1일	조치 완료
(3)상임위·분과위 및 국내외 지역회의 참석률 제고 필요	○[지적사항] 상임위원회의 자문위원 참석률(63.0%)이 최근 5년 중 가장 낮고, 일부 분과위원회(지역협력, 종교인도, 보건환경, 청년교육 분과위원회)의 참석률이 연간 평균 60% 초반에 머무르는 등 회의 출석률이 저조한 상황임	○ 상임위원의 법정회의 참석률 제고를 위해 △신규 상임위원의 법정회의 참석의무 고지 강화, △분과위원회 운영·발전방향 수립, △분과위원회의 특별활동 등 위원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 그 결과 2023년 상임위원회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24.6.30)
	- 또한, 2022년도 국내 지역회의의 평균 참석률은 53.0%이고, 해외 지역회의는 45.9%로 역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국내 및 해외 자문위원 대상 지역회의에서 위원의 연임비율 증가와 참여부진에 따른 조치 및 제도적 개선의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상임위·분과위 및 국내외 지역회의의 참석률이 낮은 이유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참석률이 낮은 자문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온라인 회의를 병행하는 방식 등을 도입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	(12.19.) 참석률은 71.2%로 8.2% 상승하였고, 분과위원회 참석률도 상반기 50% 전후에서 하반기 70% 전후로 점차 상승하였음 ○ 제20기 국내·해외지역회의(2022년)는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인해 참석률이 저조하였으나, 제21기(2024년)에는 사전홍보 강화, 자문위원 출석률 관리, 온라인회의 병행(해외지역회의) 등을 통해 참석률을 제고시키고자 함 ○ 조치예정일 : 2024년 10월 31일	
(4)평화통일여론조사의 정기·수시 주제와 조사 횟수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자문위원의 여론조사 응답률 제고 필요	○[지적사항]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사업(2억 5,400만원 집행) 관련, 정기 여론조사와 수시 여론조사 간 주제의 유사도가 높고 조사시점의 간격이 좁아 차별성이 부족함 ※ '22년 조사시기: 정기 여론조사(분기별), 수시 여론조사(5·8·10월) - 또한, 국민·전문가·자문위원으로 구분하여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중 자문위원의 응답률이 3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 자문위원의 통일여론을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자문위원 여론조사 응답률 현황	○ 2023년에는 수시 여론조사 대상·내용을 정기조사와 차별화하여 실시함 - 수시1차: 2030세대 통일인식 조사 - 수시2차: 청년 대상 통일인식 조사 - 수시3차: 일반국민 대상 탈북민에 대한 인식조사 ※ 2024년 수시 조사횟수를 2회로 조정(예산 5백만원 감액) ○ 또한, 2023년 자문위원 조사 응답률이 11%P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응답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자문위원 응답률: ('22년) 30%→ ('23년) 41% (단위: %)	조치 완료

<table>
<tr><th>시정요구명</th><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조치결과</th><th>조치
상황
('24.6.30)</th></tr>
<tr><td></td><td>(단위: %)
<table><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4">2020년</td><td colspan="4">2021년</td><td colspan="4">2022년</td></tr><tr><td>1분기</td><td>2분기</td><td>3분기</td><td>4분기</td><td>1분기</td><td>2분기</td><td>3분기</td><td>4분기</td><td>1분기</td><td>2분기</td><td>3분기</td><td>4분기</td></tr><tr><td>합계</td><td>29.1</td><td>24.3</td><td>33.5</td><td>33.1</td><td>36.3</td><td>35.6</td><td>41.5</td><td>39.6</td><td>30.4</td><td>31.4</td><td>29.5</td><td>29.6</td></tr></table>
○[시정요구사항] 민주평통은 평화통일여론조사의 정기·수시 주제와 조사 횟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자문위원의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여론조사의 정기 여론조사와 수시 여론조사 간 차별성과 조사 횟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것</td><td><table><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4">2022년</td><td colspan="4">2023년</td></tr><tr><td>1분기</td><td>2분기</td><td>3분기</td><td>4분기</td><td>1분기</td><td>2분기</td><td>3분기</td><td>4분기</td></tr><tr><td>합계</td><td>30.4</td><td>31.4</td><td>29.5</td><td>29.6</td><td>21.3</td><td>33.8</td><td>56.4</td><td>51.7</td></tr></table>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31일</td><td></td></tr>
</table>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소관 : 수석전문위원 송 병 철

I.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 입

< 세입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과 목	세 입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과 수납액 차 (C-A)	예산액대 수납액 비율 (C/A)
경상이전수입	-	0.3	0.3	-	-	0.3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4.5	0.4	0.4	-	-	△4.1	8.9
합 계	**4.5**	**0.7**	**0.7**	**-**	**-**	**△3.8**	**15.6**

2023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4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67만원으로 당초 세입 예산액 대비 383만원이 감소(15.6%)하였음.

수납액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인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이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410만원 미달하였기 때문임.

< 세입증감액조서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편성대비 증감액		증 감 사 유
	증	감	
12관 경상이전수입	**0.3**	**-**	청사 소방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57항 변상금및위약금	0.3	-	
572목 위약금	0.3	-	
13관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4.1**	수수료 수입액 감소
65항 면허료및수수료	-	4.1	
651목 면허료및수수료	-	4.1	
합 계	**0.3**	**4.1**	

2. 세 출

가. 개 요

< 세출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율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C/A)	(C/B)		
-	56,133	42,129	-	75.1	3,241	10,764

※ 재외동포청은 '23.6.5. 출범 시, 외교부로부터 예산을 이체받았기에 예산액(A) 없음.

※ 예산현액(56,133백만원) = 외교부 잔여예산 이체(34,136백만원) + 예비비(21,997백만원)

2023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61억 3,300만원이며, 이 중 421억 2,900만원을 집행(75.1%)하였고, 32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7억 6,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나. 예비비

(단위: 백만원)

과 목	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일반예비비	21,997	15,534	1,565	4,898
- 일반예비비	21,997	15,534	1,565	4,898

2023년도 예비비는 재외동포청 출범('23. 6. 5)에 따른 기관 운영비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신설된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금 등을 위한 예비비로 총 219억 9,70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이 중 155억 3,400만원을 집행(70.6%)하였고, 15억 6,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8억 9,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다. 전 용

< 전용 개요 >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전 용 사 유	금 액
사업계획 변경	재외동포 영사서비스 지원 비목조정	-
	재외동포협력센터 비목조정	-
	글로벌 인재양성 비목조정	-
	재외동포 권익향상 비목조정	38
	세대별 분야별 재외동포 협력지원 비목조정	425
	동포 언론 활성화 지원 비목조정	-
	지역별 재외동포 정책 강화 비목조정	453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량 증가	재외동포 행정지원 비목조정	429
합 계		**1,345**

2023년도 전용액은 총 13억 4,500만원으로, 지역별 재외동포 정책 강화 비목조정 4억 5,300만원, 재외동포 행정지원 비목조정 4억 2,900만원, 세대별 분야별 재외동포 협력지원 비목조정 4억 2,500만원, 재외동포 권익향상 비목조정 3,800만원이 전용되었음.

라. 이 용

해당사항 없음.

마. 수입대체경비

해당사항 없음.

바. 이 월

< 이월 개요 >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이월사유	금 액
미지급금 이월	민간위탁사업 및 일반용역 미지급금 발생	566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HW 계약금 이월	671
	연구용역 미완료로 인한 이월 등	387
	소 계	**1,624**
사업계획 변경	청 출범에 따른 사무환경 조성 공사 사업계획 변경 등	1,397
	소 계	**1,397**
기타	국가재정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기본경비 이월	220
	소 계	**220**
합 계		**3,241**

2023년도 이월 규모는 32억 4,100만원으로, 청 출범에 따른 사무환경 조성 공사 사업계획 변경 등(13억 9,700만원)이 주요 사유임.

사. 불 용

< 불용 개요 >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불 용 사 유	금 액
지급사유 미발생	기본경비 지급사유 미발생	38
	주요사업 지급사유 미발생	42
	소 계	**80**
집행잔액	집행잔액 등	10,684
	소 계	**10,684**
합 계		**10,764**

2023회계연도 불용액은 총 107억 6,400만원으로, 지급사유 미발생 8,000만원, 집행잔액 등으로 106억 8,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Ⅱ.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검토의견

1. 개 요

「정부조직법」 개정[232]에 따라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재단이 해산[233] 되고 재외동포청이 출범하였음.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하였고 외교부 소관 중 재외동포 영사서비스 및 재외동포권익향상 등 재외동포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은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되었음.

2023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구조를 보면, 재외동포 지원 및 재외동포 행정지원 등 2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에서 이체된 341억 3,600만원 및 예비비 219억 9,700만원 등 예산현액은 561억 3,300만원이고 이 중 421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32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7억 6,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재외동포청 프로그램별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프로그램	2022 결산	2023년					2024 예산
		외교부 이체액	예비비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계	-	34,136	21,997	56,133	42,129	75.1	106,660
[5000] 재외동포 지원	-	26,226	4,752	30,978	24,515	79.1	73,965
[7100] 재외동포 행정지원	-	7,910	17,245	25,155	17,615	70.0	32,695

232) 2023. 2. 27. 국회 의결, 재외동포청 신설 및 「재외동포재단법」 폐지

233) 재외동포재단 설립 및 해산: 1997. 10. ~ 2023. 6.

2. 총 괄

□ 재외동포청 출범 준비 미흡에 따른 사업지장 초래

재외동포청 출범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700만명의 재외동포의 염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동포들의 기대감이 매우 큰 만큼 출범 당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었음.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재외동포청 출범 추진 현황 >

일자별	추진내역
2023. 2. 27.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3. 4. 21.	재외동포청 설립기획단 발족
2023. 4. 27.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2023. 6. 5.	재외동포청 출범 ※ 재외동포재단 해산,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재외동포기본법」 근거)
2023. 6. 7.	기재부 예비비(21,997백만원) 이체 승인 통보
2023. 8. 3.	기재부 외교부 예산(34,136백만원) 이체 승인 통보
2023. 9.	경력경쟁채용 공무원 신규 임용(61명) ※ 2024. 4월 기준: 현원 137명(정원 151명)

그러나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출범을 준비하면서 재외동포재단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던 일부 사업을 중단하고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였으며[234], 재외동포청 출범 초기에 인력 부족과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않았고 한국어뉴스 세계위성방송망사업은 재외동포청이 재검토하여 폐지한 후 2024년부터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사업으로 변경시행하였음.

234) 2023년 5월 재외동포재단 관계자의 사업추진 저조에 대한 답변

<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 >

내역사업명	추진 현황		비 고
	사업 수행 계획안	추진 현황	
사할린동포 지원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사업’	○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사업’ 추진 불가	○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간적 제약과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추진 불가
한글학교교사 초청연수	○ 사업 계획: 2023년 7월	○ 사업 추진 : 2024년 1월	○ 재외동포청 개청으로 사업 지연 ○ 한글학교 지역별 협의회를 대상으로 연수 시행 시기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24년 1월 중 추진
조사연구 활성화 사업	연구용역,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추진	○ 연구용역 2건 ○ 이해교육 3건 추진 완료 - 이해교육 일부 미추진	○ 개청 및 23.9월 업무 이관 후 각 학교 커리큘럼과의 일정 조율 문제 등
재외동포 차세대대회	○ 세계한인차세대대회 - 사업 계획: 9월	○ 세계한인차세대대회 - 사업 추진: 11월	○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사업 지연
한상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	○ 한상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 - 인턴 출국: 7~9월 - 인턴 및 기업 사후 관리: 7~ ‘24.3월	○ 한상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 - 인턴 출국: 12~ ‘24.2월 - 인턴 및 기업 사후 관리: 12~ ‘24.8월	○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사업 지연
한국어뉴스 세계위성방송망 구축	○ 한국어뉴스 세계위성방송망 구축 - YTN과 협약 체결	○ 사업 폐지	○ 기존 ‘한국어뉴스 세계위성방송망 구축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과 폐지 ○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사업으로 변경
입양동포 실태조사	‘입양동포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 현지 간담회를 통한 입양동포 현안파악 - 미국(11월)·네덜란드(12월) 간담회 개최 완료	○ 연구비 집행 축소(전용) - 일부 일반연구비(50백만원)는 ‘원폭 피해동포 초청사업’의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일반용역비로 전용
동포보듬기 사업	신규사업	○ 원폭 피해동포 초청사업 - 23.9월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하여 대통령 오찬, 건강검진, 문화 시찰, 동포청장 만찬 행사 개최	○ 개청 계기 상징적 사업 신규 추진 - 재외동포청 개청에 따라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된 취약 동포를 국내로 초청 -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신설된 재외동포협력센터도 출범 직후 사업비 예산 배정 과정에서 외교부-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센터 간 사업조정 협의, 기획재정부와 재외동포청 간 사업조정 협의 및 승인, 관련 예산 배정을 위한 재외동포청 계좌개설 및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출연금 교부 등 전반적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지장을 초래하였음.

< 재외동포협력센터 사업 추진 현황 >

단위사업	사업명	추진 현황	비고
통합네트워크 지원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지원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6·7월 대금(9.11. 지급)	○예산 미배정으로 6·7월 대금 지연
동포지원사업	한상넷 운영	유지관리 5~7월 대금(9. 8. 지급)	○예산 미배정으로 5월~7월 대금 지연
기록전시운영	자료실 운영	자료실 미운영	○온·오프라인 서비스 운영 중단 및 도서 구입 중지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설계용역 지연(2023. 1.25 - 2023. 9. 21. → 2024. 4.29)	○사업이관 및 행정소요기관 반영
재외동포 장학사업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7월 장학금(8.24. 지급) 8월 장학금(9. 5. 지급)	○예산 미배정으로 7·8월분 대금 지급 지연
		2023년 장학생 선발지연으로 인한 생활비, 어학연수비 등 4억원 불용	○당초 9월 선발 예정이었으나, 12월 선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재단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이 행한 행위는 재외동포청의 행위로 보도록 규정[235]하고 있으므로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으로 하여금 업무의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재외동포청 출범시 인력 문제 및 시간적 제약

235) **「정부조직법」 부칙<법률 제19228호, 2023. 3. 4>**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한 행위는 그 업무의 범위에서 재외동포청의 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등으로 재외동포 지원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었음.

또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따라 부칙으로 외교부장관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을 위한 위원을 위촉하는 등 법 시행 전 센터 설립준비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외교부-재외동포청 간 사업조정 협의 및 예산 배정 지연 등으로 출범 준비과정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임.

3. 재외동포 지원

가. 개 요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별·분야별·세대별 맞춤형 동포지원 및 재외동포사회와의 교류증진을 통해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으로 7개의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도 예산액은 309억 7,800만원 중 245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B)	
				본예산	추경(A)		
[5000] 재외동포 지원			-	-	-	24,515	73,965
	[5031] 재외동포 영사서비스 지원		-	-	-	830	3,065
		[301] 재외동포 영사서비스 지원	-	-	-	830	906
		[302]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	-	-	-	-	2,159
	[5032] 재외동포협력센터		-	-	-	13,165	23,754
		[302]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	-	-	13,165	23,754
	[5033] 글로벌 인재양성		-	-	-	295	922
		[301] 워킹홀리데이 이행	-	-	-	295	665
		[302]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	-	-	-	257
	[5034] 재외동포 권익향상		-	-	-	666	1,410
		[301]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	-	-	339	728
		[302]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	-	-	327	682
	[5035] 세대별 분야별 재외동포 협력지원		-	-	-	7,655	33,105
		[301]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	-	-	2,679	7,100
		[302]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	-	-	1,808	22,194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B)	
				본예산	추경(A)		
		[303] 재외동포 차세대 및 인권지원	-	-	-	1,398	1,353
		[304]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활성화	-	-	-	1,770	2,458
	[5036] 동포 언론 활성화 지원		-	-	-	420	1,687
		[301] 재외동포정책기반 조성	-	-	-	420	1,687
	[5038] 지역별 재외동포 정책 강화		-	-	-	1,484	10,022
		[301]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	-	-	-	384	820
		[302]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	-	-	-	1,100	9,202

나. 워킹홀리데이 이행(5033-301)

“워킹홀리데이 이행” 사업은 워킹홀리데이에 관심이 있는 우리 국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개최를 통해 현지 생활, 안전, 일자리 정보, 체류 관련 상담 등을 제공하여 참가자에게 안전한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임.

< 워킹홀리데이 이행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	-	299	-	299	295	-	4	98.7

외교부에서 이체된 예산현액은 2억 9,900만원으로 이 중 2억 9,500만원이 집행되고 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워킹홀리데이 내·외국인 참가자 지원사업의 공개입찰 심사기준 적정성 여부 및 직접 추진 가능성 검토 필요

‘워킹홀리데이 내·외국인 참가자 지원 사업’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참가를 유도하고 한국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외국인 참가자 증대 등을 목표로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10년부터 워킹홀리데이 협정체결국 확대와 함께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내·외국인 참가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일반용역비 4억 5,000만원 중 4억 4,880만원을 집행하였음.

< 워킹홀리데이 내·외국인 참가자 지원 현황 >

지원대상	지원 내역
우리국민 참가자	- 워킹홀리데이 국내 설명회, 해외통신원・워홀프렌즈 운영 및 콘텐츠 공모전 등 - 관련 상담 및 협정 체결국 워킹홀리데이 안내서 제작 및 배포
외국인 참가자	- 한국내 일자리, 관광, 숙박, 어학연수 정보의 발굴 및 업데이트 - 한국 문화체험 행사, 한국 워킹홀리데이 홍보물 제작·배포 및 홍보

동 사업은 사업의 전문성 유지 및 홈페이지 운영 등을 위하여 공개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민간 위탁사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 10년 동안 (주)대학내일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은 4억 4,88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음.[236)]

< 연도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내·외국인 참가자 지원 계약 체결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계약금액	수행업체	연도	예산액	계약금액	수행업체
2014	441	418	(주)대학내일	2019	450	440	(주)대학내일
2015	441	425	(주)대학내일	2020	450	440	(주)대학내일
2016	441	424	(주)대학내일	2021	450	446	(주)대학내일
2017	450	429	(주)대학내일	2022	450	449	(주)대학내일
2018	450	440	(주)대학내일	2023	450	449	(주)대학내일

236) 2024년에도 (주)대학내일과 계약을 체결하였음.

민간위탁제도는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의 입찰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업체평가부문을 보면, 만점(100점) 중 유사사업수행실적에 5점(5%)을 배점하고 있음. 유사사업수행실적이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내국인 연수 참가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제작/관리 업무, 국내외 대학생 대상 홍보 사업, 사업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 대행 실적과 관련된 개별 용역수행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유사사업수행실적은 업체선정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나, 기존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다른 업체의 낙찰가능성을 차단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향후 공개입찰 시 유사사업수행실적 심사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외동포청은 기관의 업무추진과정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고 있는데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운영이 계속사업으로서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재외동포청에서 직접 추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다.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5035-301)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는 재외동포사회 각계의 한인네트워크 연결 및 대한민국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지구촌 한인 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임.

<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	-	5,895	-	5,895	2,679	89	3,126	45.4

외교부에서 이체 및 이·전용된 예산현액은 58억 9,500만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26억 7,900만원이고 이월액은 8,900만원이며, 31억 2,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국내외 동포단체 지원을 통하여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자료 보관 및 활용 방안 마련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는 동포단체 활성화, 조사연구활동지원,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K-타운 활성화 지원 등 국내외 동포단체(한인회, 차세대, 경제, 문화, 언론 등 관련 단체)가 시행하는 동포사회 발전, 재외동포 정책 이행, 각종 계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조사연구활동지원은 국내외 재외동포 연구단체의 동포사회 실태조사 등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기록·보관 사업을 실시하고 동포사회 현안 연

구 및 논의를 위한 학술회의 개최 등 계기성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국내외 동포단체 지원사업은 매년 500여개 단체에 5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포단체에서 시행한 사업결과물 중 전자결과물은 온나라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비전자결과물은 온나라시스템에 건명을 등록한 후 별도로 서류함에 보관하고 있어 관련 결과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2023년 동포단체 지원 내역 >

연도	지원 내역
2023	○ 교류증진 권익신장 지원: 89개국, 352개 단체, 449개 사업 ○ 문화예술단체 지원: 18개국, 105개 단체, 105개 사업 ○ 차세대단체 지원: 14개국, 39개 단체, 45개 사업 ○ 경제단체 지원: 15개국, 21개 단체, 21개 사업 ○ 계기성 기념사업 등 지원: 2개국, 2개 단체, 2개 사업 ○ 재외동포 언론단체 지원: 6개 단체, 6개 사업 ○ 국내 동포관련 단체활동 지원: 23개 단체, 23개 사업 ○ 조사연구활동 지원: 8개 단체, 10개 사업 ○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지원: 147개 단체, 169개 사업

2023년 동포단체 지원사업은 한-핀 수교 50주년 기념 교민을 위한 행사, 미주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행사, 반아시안 혐오범죄관련 연구사업, 옥스퍼드 한인사회 차세대 학술교류사업, 인도 한인 70년사 역사편찬,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사업 등 500여개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음.

이러한 해외이주 계기성 기념사업, 종합 문화행사, 자료집 발간 등은 재외동포 거주국의 현지 특성과 세대 및 연령 등 다양한 여건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결과물을 활용한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제고, 대한민국 국민과 교

류활동 및 유대강화 등 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재외동포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재외동포협력센터는 도서, 논문, 신문, 전자문서 등 전문자료를 수집·관리 및 대국민서비스를 위하여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설립에 맞추어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 중에 있음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협력센터와 협의하여 각종 동포단체 지원사업에서 생성된 결과물 중 재외동포사회의 이해 제고, 현안 및 이슈 파악, 재외동포 연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외동포 관련 기록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할린동포지원사업의 통합 관리 필요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세부사업(5035-301) 중 ‘동포단체활성화’ 내역사업에서 사망한 사할린 동포 1세 자녀의 모국방문 지원사업과 사할린 동포 위문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사할린동포 관련 사업은 1989년 한·일간 체결한 ‘사할린 거주 한국인 지원 공동사업체 협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고 있으며, 구) 재외동포재단이 1997년 외교부로부터 이관받아 실시하던 사업을 2023년 6월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서 이어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주관부서는 재외동포협력총괄과임.

한편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 세부사업(5038-302)에서도 외교부로 이관받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할린동포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관부서는 아주러시아동포과임.

< 사할린동포 지원사업 비교 >

세사업명	재외동포 교류협력강화(5035-301)	아주러시아동포 정책강화(5038-302)
담당부서	재외동포협력총괄과	아주러시아동포과
사업명	사할린동포 2세 모국방문사업	사할린 한인 2-3세 모국방문사업
대상	사할린동포 2세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하여 모국에 방문하지 못한 경우)	사할린동포 2-3세 (사할린동포 1세의 영주귀국한 경우)
수탁기관	대한적십자사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시작년도	1997년	2017년
2023년 예산	1억 2,000만원	4억원
그 밖의 사업	국내 체류 동포 위문품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념사업

* 2017~2020년에는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였음.

2023년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외교부 및 재외동포재단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던 사할린동포 관련사업을 재외동포청이 이관받았음. 그러나 사할린동포를 지원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유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사업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업무의 비효율 및 행정비용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

2023년 재외동포협력총괄과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사업을 변경하여 사할린동포 신규 영주귀국자 2세를 위한 한국문화체험을 시행하였으나, 아주러시아동포과는 재외동포청 개청에 따른 준비시간 부족으로 사업을 미실시하

여 주관부서에 따라 사업이 달리 운영되고 있음. 2024년 예산에도 세사업을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재외동포청 출범당시 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 바, 사할린동포 지원사업 예산을 일원화함으로써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라.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5038-302)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는 아주·러시아·CIS·아프리카·중동 지역 재외동포단체 사업지원 및 실태조사, 현안연구, 동포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임.

<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	-	2,156	-	2,156	1,100	300	756	51.0

외교부에서 이체 및 이·전용된 예산현액은 21억 5,600만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11억원이고 이월액은 3억원이며, 7억 5,600만원을 불용하였음.

주요 불용사유는 해외현지 사정으로 동포단체의 사업 미신청, 사업 연기, 환률하락으로 인한 외화 송금 잔액 등임.

□ 사할린법 제정 기념사업 집행 부적정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은 사할린 거주 한인 2-3세 모국 방문사업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 외교부에서 이체된 모국방문사업 및 기념사업 예산액은 각각 4억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3년 사할린 사업 관련 예산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예산사업명	예산액	이전용액	예산현액	집행액
가. 사할린 사업 지원	550	△96	454	300
1) 사할린 거주 한인 2~3세 모국 방문 사업	400	△96	304	-
2)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념사업	150	-	150	300

사할린 한인 거주 2-3세 모국방문사업은 재외동포청 개청에 따른 준비시간 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하였고 사할린법 제정 기념사업은 TV방송 프로그램 4편을 제작·방영하면서 2023년 예산액보다 1억 5,000만원이 많은 3억원을 이월·집행하였음.

재외동포청은 청 개청 및 사할린동포법 개정 계기 동포정책을 홍보하고 우리 국민의 동포 관련 인식제고를 위하여 사할린법 제정 기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념사업은 동 법 제3조[237]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1년 동 법 제정 이후 매년 1억 5,000만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으나, 2024년에는 오히려 5,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이 축소되었음.

2021년에는 사할린동포법 제정 및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를 모시고 정동아트센터에서 기념식을 진행하였으나, 2022년 및 2023년에는 기념사업으로

237)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였는데 2022년에는 2편을 제작하였고 2023년에는 2편이 증가한 4편을 제작하였음.

재외동포청 출범 기념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액을 증액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 편수를 증가시킨 것은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념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홍보성 사업을 구체적 계획없이 물량 증가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사할린법 제정 기념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명	방영일	주요내용	분량	시청률	집행액
KBS 동네 한 바퀴	'24.1.6.	사할린동포 위문품 증정식, 사할린동포 2세 한국문화체험 등	13분	4.4	45
KBS 이웃집 찰스	'24.2.6.	부산 기장편	50분	4.4	45
KBS 한국인의 밥상	'24.2.8.	국내거주 사할린동포 4세편	50분	5.6	60
SBS 모닝와이드	'24.1.3.	설특집 사할린동포편	55분	2.0	150
계					300

* 2022년에는 무엇이든 물어보살, 한국인의 밥상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특히 사할린동포지원 내역사업 내 사할린 한인 거주 2-3세 모국방문사업이 재외동포청 개청에 따른 준비시간 부족으로 실시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모국방문사업 불용액 4억원 중 1억 5,000만원을 기념사업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사할린동포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나, 모국방문지원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이라는 예산사업의 성격이 엄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향후 재외동포청은 사업 수행이 불가할 경우 가급적 불용처리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었고 특별한 사유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내역변경절차를 통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었음.

□ 사할린법 제정 기념사업의 대한적십자사 위탁 운영 검토 필요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은 사할린 거주 한인 2-3세 모국 방문사업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3년 예산과목은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되어 집행이 이루어졌음.

사할린법 제정 기념사업은 2021년에 사할린법 제정 원년을 기념하여 영주귀국 기념식, 사할린동포의 역사 및 지원활동 관련 전시회, 사할린동포 관련 영상콘텐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 및 2023년은 언론진흥재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음.

< 연도별「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념사업 계약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계약명	예산액	집행액	계약기간	수탁기관
2021	사할린 동포법 제정 기념사업 시행	150	143	21.5-22.1	주식회사 메가온
2022	사할린 기념사업 방송 프로그램	150	150	22.11-22.12	언른진흥재단
2023	사할린 기념사업 방송 프로그램	150	300		언론진흥재단

민간위탁사업비는 개별법령에 따라 국가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제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의 경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업무의 위탁)[238]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하고 있음.

---

238)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업무의 위탁)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의 접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사할린법이 제정되기 이전 1989년부터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사업을 시작하여 우리 정부가 위탁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사업, 2-3세 모국방문 사업, 인천 사할린 복지회관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러시아 현지 사할린동포 1세대의 일시모국방문 및 영주귀국자 역방문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같이 대한적십자사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부터 사할린동포의 복지업무 등 국내 및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동포의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내에 사할린동포지원을 위한 사할린동포지원본부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전문기관임.

2022년 및 2023년 사할린기념사업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그쳐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전문기관인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하여 동 사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재외동포 행정지원

가. 개 요

“재외동포 행정지원” 프로그램은 제도개선 및 민원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통해 재외동포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4개의 단위사업과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도 예산액은 251억 5,500만원 중 176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재외동포 행정지원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B)	
				본예산	추경(A)		
[7100] 재외동포 행정지원			-	-	-	17,615	32,695
	[7101] 인건비		-	-	-	3,059	12,721
		[101] 인건비	-	-	-	3,059	12,721
	[7111] 기본경비		-	-	-	1,582	5,683
		[201] 기본경비(총액)	-	-	-	330	1,327
		[251] 기본경비	-	-	-	1,252	4,356
	[7112] 사무환경 조성		-	-	-	5,459	-
		[251] 사무환경 조성	-	-	-	5,459	-
	[7121]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 강화		-	-	-	-	300
		[301]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 강화	-	-	-	-	300
	[7131] 재외동포 정보화		-	-	-	7,514	13,991
		[301]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	-	2,501	4,703
		[302]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정보화)	-	-	-	3,687	6,954
		[303]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	-	1,326	2,334

나.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7131-301)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은 재외국민의 영사, 민원, 보호업무 및 행정서비스를 제고하여 재외동포가 재외공관 방문 없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	-	2,597	-	2,597	2,501	-	96	96.3

외교부에서 이체된 예산현액은 25억 9,700만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25억 100만원이고 9,600만원을 불용하였음.

주요 불용사유는 영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낙찰차액과 해외 SMS 발송 비용 및 전용선 사용료 집행잔액임.

□ 재외국민등록제도 신뢰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재외국민등록법」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여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 증진 및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법률로서 2023년 재외동포청이 출범함에 따라 외교부로 이관받아 재외동포청이 관장하고 있음.

동 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재외국민등록제도는 1949년에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수와 재외국민등록자 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 전체 추정 재외국민 수는 2,467,969명으로 이중 재외국민등록자 수는 68.6%인 1,693,115명으로 저조함. 대부분의 공관에서 재외국민등록률이 추정 재외국민 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등록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등록률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남.

< 공관별 재외국민 등록률 현황(2023.12월 기준) >

재외국민등록 초과등록률 상위 15개 공관				재외국민등록 미달등록률 상위 15개 공관			
공관명	추정 재외국민 수 (A)	등록 재외국민		공관명	추정 재외국민 수 (A)	등록 재외국민	
		등록자 수(B)	등록률 (B/A)			등록자 수(B)	등록률(B/A)
주예멘(대)	2	165	8250.0	주시애틀(총)	69,726	23,115	33.1
주아프가니스탄(대)	6	185	3083.3	주베트남(대)	76,200	23,815	31.2
주리비아(대)	23	666	2895.6	주바르셀로나(총)	1,226	294	23.9
주우크라이나(대)	75	822	1096.0	주휴스턴(총)	58,423	13,930	23.8
주수단(대)	26	232	892.3	주호놀룰루(총)	32,791	5,891	17.9
주투르크메니스탄(대)	28	222	792.8	주시카고(총)	136,046	24,170	17.7
주이란(대)	150	1,013	675.3	주샌프란시스코(총)	160,640	26,304	16.3
주스리랑카(대)	440	2,894	657.7	주멜번(분)	12,820	1,972	15.3
주적도기니(대)	59	277	469.4	주애틀랜타(총)	147,961	20,933	14.1
주오만(대)	241	1,129	468.4	주댈러스(출)	42,364	5,154	12.1
주벨라루스(대)	54	251	464.8	주세부(분)	8,663	955	11.0
주카자흐스탄(대)	250	1,072	428.8	주발리(분)	640	39	6.0
주알제리(대)	403	1,725	428.0	주다낭(총)	12,357	200	1.6
주아제르바이잔(대)	156	666	426.9	주브리즈번(출)	17,650	144	0.8
주요르단(대)	345	1,433	415.3	주필라델피아(출)	32,463	233	0.7
총 계					2,467,969	1,693,115	68.6

* 재외국민등록률 초과 상위 공관 15개, 저조 공관 15개

특히 예멘,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는 추정 재외국민의 1,000% 이상의 재외국민등록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재외국민등록률이 추정 재외국민 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동·귀국·사망·외국국적 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를 해태하는 경우임.

이러한 부정확한 재외국민등록 실태는 정부가 해외체류중인 국민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게 하고 재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음. 2024년도 재외동포청 예산에 재외국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음.

재외국민등록제도는 정부가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등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외국민등록제도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5. 재외동포협력센터

가. 개 요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 사업,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 사업 등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외동포기본법」[239]에 따라 설립[240]된 재외동포청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임.

나. 수 입

2023년도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수입은 정부출연금 85억 3,600만원, 예비비 46억 2,900만원, 자체수입 1,400만원을 합쳐서 총 131억 7,900만원임.[241]

정부출연금은 구)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중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받은 통합네트워크 지원, 기록전시운영, 동포지원사업,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

239)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 사업
2.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 사업
3.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장과 필요한 임직원을 둔다.
⑤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립,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0) 「재외동포기본법」 공포(2023. 5. 9.)에 따라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241) 2023년 수입예산은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일인 2023년 6월 5일을 기준으로 함.

민족교육 육성, 재외동포 장학사업, 차세대육성사업 등을 위한 예산액이고 인건비[242] 및 경상운영비는 예비비를 편성하였음.

< 재외동포협력센터 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증 감	예산현액(A)	결 산(B)	차 액(B-A)	집행률(B/A)
총 계	-	-	13,165	13,179	14	100.1
1. 일반회계	-	-	13,165	13,165	-	100.0
- 정부출연금	-	-	8,536	8,536	-	100.0
- 예비비	-	-	4,629	4,629	-	100.0
2. 자체수입	-	-	-	14*	14	-
- 이자수입	-	-	-	4	4	-
- 잡수익	-	-	-	10	10	-

* 자체수입 예산 미편성에 따라 전액 반납

다. 지 출

2023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 31억 8,100만원, 경상운영비 16억 4,900만원, 사업비 83억 3,500만원으로, 총 131억 6,500만원 중 95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8억 8,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42) 재외동포협력센터 인력 운영 현황

(단위: 명, 2024. 1월 기준)

구분	임원	일반직						무기계약직	별도정원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원	2	1	4	8	10	11	-	-	1	37
현원	2	-	7	7	10	18	2	-	1	47*

*「재외동포기본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을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되,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의 수가 센터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초과하면 그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재외동포협력센터 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증 감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D=A-B-C)	집행율 (E=(B+C)/A)
1. 인건비	3,181	-	3,181	2,631	530	20	99.4
2. 경상운영비	1,649	-	1,649	987	116	546	66.9
3. 사업비	8,335	-	8,335	5,930	1,088	1,317	84.2
계	**13,165**	**-**	**13,165**	**9,548**	**1,734**	**1,883**	**85.7**

< 재외동포협력센터 사업비 등 세출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A)	결산(B)	B/A	
총 계	**-**	**-**	**13,165**	**11,282**	**85.7**	**23,754**
5000 인건비	**-**	**-**	**3,181**	**3,161**	**99.4**	**3,710**
5001 인건비	**-**	**-**	**3,181**	**3,161**	**99.4**	**3,710**
인건비(5001-501)	-	-	3,181	3,161	99.4	3,710
6000 경상운영비	**-**	**-**	**1,649**	**1,103**	**66.9**	**1,169**
6001 경상운영비	**-**	**-**	**1,649**	**1,103**	**66.9**	**1,169**
경상운영비(6001-601)	-	-	1,649	1,103	66.9	1,169
7000 사업비	**-**	**-**	**8,335**	**7,018**	**84.2**	**18,875**
7001 통합네트워크 지원	**-**	**-**	**1,182**	**1,020**	**86.3**	**2,001**
통합네트워크 지원(7001-701)	-	-	1,182	1,020	86.3	2,001
7002 기록전시운영	**-**	**-**	**351**	**235**	**67.0**	**315**
기록전시운영(7002-702)	-	-	351	235	67.0	315
7003 동포지원사업	**-**	**-**	**922**	**898**	**97.4**	**3,580**
동포지원사업(7003-703)	-	-	922	898	97.4	3,580
7004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	**-**	**(8,456)***	**(647)**	**(7.7)**	(7,809)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7004-704)	-	-	(8,456)	(647)	(7.7)	(7,809)
7005 민족교육 육성	**-**	**-**	**691**	**634**	**91.8**	**339**
민족교육 육성(7005-705)	-	-	691	634	91.8	339
7006 재외동포 장학사업	**-**	**-**	**2,492**	**1,744**	**70.0**	**4,620**
재외동포 장학사업(7006-706)	-	-	2,492	1,744	70.0	4,620
7007 차세대육성사업	**-**	**-**	**2,697**	**2,486**	**92.2**	**8,020**
차세대육성사업(7007-707)	-	-	2,697	2,486	92.2	8,020

* 2023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재이월액임.

라. 검토의견

1) 기록전시운영

「기록전시운영」은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 및 재외동포 관련 전문자료 축적 및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임.

< 기록전시운영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4 예산액
		추경 · 전용	내역조정					
기록전시운영	351	-	-	351	159	76	116	315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사업	248	-	-	248	148	76	24	250
▪자료실 운영	103	-	-	103	11	-	92	65

동 사업의 예산현액 3억 5,100만원 중 7,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1,600만원이 불용되고 1억 5,9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45.3%임. 주요 불용발생사유는 재외동포청 설립 및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인한 자료실을 미운영에 따른 예산임.

□ 재외동포 아카이브 시스템 조속 구축 및 외부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기록물 관리 필요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재외동포 관련 기록 보존(생활·문화·역사) 및 관리체계 구축, 전 세계 재외동포가 이용 가능한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제공, 기록 콘텐츠 서비스(문화전시 포함)를 활성화하는 사업임.

재외동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추진계획은 2020년 5월 수립되어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으로 2021년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실무추진단 구성 등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ISP 용역에 따라 2022년부터 재외동포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음.

그러나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022년 기록물 수집 및 중장기 수집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통하여 동포사회 사진 자료, 연구서, 간행물 등 903점을 수집하였고 국내 동포 기록물 등 수집사례를 조사하여 중장기 기록물 수집전략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에는 파독 근로자, 고려인동포,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등 2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1세대 재외동포 구술채록 용역을 시행하였고[243] 2024년에도 쿠바·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 아카이브 자료를 생성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직원 대상 내부기록물 수집을 시행하여 2023년 말 기준으로 168,306건의 디지털 기록물 및 사진, 시안, 행정 박물[244] 등을 수집하였으나, 내부자료로서 보관하는데 그쳐 동 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대국민 및 전 세계 재외동포가 이용가능한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 못하고 있음.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은 재외동포와 내국민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분야 학술연구 기반조성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내국민의 재외동포 이해증

243)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수집자료를 유관기관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244)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활용한 형상기록물

진 및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함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므로 재외동포 자료 수집과 동시에 아카이브 서비스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구)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던 한상넷, 코리안넷, 스터디코리안 등 3개 시스템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연구자료, 아카이브 자료, 행사 정보 등을 새롭게 구축될 재외동포 디지털 아카이브와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이민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외부기관의 학술, 연구, 전시자료 등 상호 데이터와 연계하여 재외동포 기록물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명실공히 재외동포 전문자료실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자료실 미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자료실 운영사업은 도서, 논문 학술자료 등 재외동포 관련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축적함으로써 재외동포 학술연구 기반을 조성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재외동포 및 내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액은 1억 300만원으로 1,100만원을 집행하고 9,20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주된 불용사유는 재외동포청 설립 및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인한 자료실을 운영하지 않음에 따른 것임.

< 자료실 운영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4 예산액
		추경·전용	내역조정					
▪자료실 운영	103	-	-	103	11	-	92	65

* 2023년 예산액은 재외동포협력센터 출범 이후 재외동포청으로 부터 이관 받은 예산임.

자료실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온라인의 경우 재외동포재단 발간 자료 및 초청장학생 논문 등 원문자료, 자료실 소장자료, 다른 기관의 소장 재외동포 관련 자료 검색기능, 재외동포 관련 통계자료 등을 제공[245]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은 전문자료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245) <연도별 자료실 온라인 이용자 현황>

연도	해당 기간	온라인 이용자(회)	
		총계	일 평균
2019	2019.01.01. ~ 2019.12.31.	406,582	약 1,114
2020	2020.01.01. ~ 2020.12.31.	262,813	약 720
2021	2021.01.01. ~ 2021.12.31.	222,664	약 610
2022	2022.01.01. ~ 2022.12.31.	363,819	약 996
2023	2023.01.01. ~ 2023.05.31.	172,313	약 1,188

제한적으로 대출하고 있음.

2023년 상반기 자료실 운영은 자료실 도서관리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246]하고 있었으며, 월별 재외동포 및 사업관련 도서를 구입[247]하여 재외동포 및 내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 중에 있었음.

그러나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되며 재외동포재단의 모든 권한 및 의무가 재외동포청으로 승계됨에 따라 도서 및 도서 관련 물품 등 각종 자료의 보유관리권한도 재외동포청으로 승계되었고 동 권한은 2024년 3월 15일이 되어서야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관되었음[248].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협력센터에게 자료의 보유관리권한을 이관하지 않고 2023년도 자료실 운영 예산액을 교부함에 따라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자료실 운영 주체 미확정 상태에서 자료구입비 등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재단 해산으로 인해 서울로 청사를 이전[249]함에 따라 자료 보관 및 열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여 자료실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측면도 있음. 현재 자료실 소장자료 33,492종 45,981권은 경기도 연천군 전문시설에 보관 중임.

재외동포청이 자료 보유관리권한의 이관을 지연함에 따라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023년 당초 예산액[250]의 절반 수준인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4

246) (주)라이브텍을 통하여 자료실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시행(2023. 1월 - 5월 말)

247) 59종 86권의 도서 구입

248)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 - 2079(2024. 3. 15)

249) 국립외교원 외교타운에 임시청사 마련

250) 2023년 자료실운영을 위한 당초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임.

년에도 자료실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할 것으로 보임.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자료실 운영 권한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자료실 운영이 미흡하였으므로 2024년 자료실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기사용 면적>

구 분	재외동포재단(2018년도까지)	재외동포재단(2018~2023)
위 치	서울, 외교타운	제주, 서귀포제2청사
사용면적	전용 190.17㎡ (약 57.53평)	전용 297.1㎡ (약 89.87평)
장 서 량	27,991종 31,090권 (2018. 12. 30. 기준)	33,492종 45,981권 (2023. 6. 1. 기준)

<재외동포협력센터 자료실 면적 산출(안)>

구 분	소분류	소요면적	산출내역
재외동포 자료실	대외개방 서고 및 열람공간	297.1㎡ (약 89.87평)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면적과 동일 기준 적용(보유도서량 동일)
	비공개 기록물 서고*	113㎡ (약 34.18평)	1만권 기준
	근무공간**	14㎡ (약 4.2평)	7㎡/인
필요면적 합계		424.1㎡ (약 128.3평)	

또한 재외동포협력센터는 공간 부족으로 자료실의 오프라인 서비스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상주하고 있는 국립외교원의 하부층이 공실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과 협의하여 조속히 오프라인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축」은 차세대동포 정체성 함양 및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재외동포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재외동포와 내국인 간 상호이해·존중 바탕의 사회통합 및 한인 역량 결집을 위한 전시, 아카이브, 교육·연수, 조사연구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할 계획임.

< 2023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4 예산액
		추경·전용	내역조정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	**-**	**-**	**8,456**	**647**	**7,809**	**-**	**-**
▪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축	-	-	-	8,456	647	7,809	-	-

이 사업은 2021년 및 2022년에 편성된 설계비 및 건축비 총 84억 5,6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고 2023년 예산액은 편성하지 않아 예산현액은 84억 5,600만원이며, 6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78억 900만원을 다시 이월하였음. 주요 이월액 발생사유는 재외동포재단 해산,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협력센터 신설로 업무이관에 따른 일정 지연으로 인한 것임.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건립규모 축소의 재정당국과의 예산액 재논의 필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는 당초 2023년 건립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마곡지구의 매입불가 통보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를 대상지로 재선정하여 사

업을 추진하면서 완공일을 2025년으로 2년 사업기간을 연장하였고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 증가로 인한 건립규모도 7,800㎡에서 1,042㎡가 감소한 6,758㎡으로 축소되었음.

< 2021년 당초 계획 및 2023년 계획 변경 비교 >

구분		당초(2021)	현재(2024)
건립대상지		마곡지구 2021. 6. 16. 마곡지구 매입불가 통보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총 사업비		29,974 백만원	좌동
사업 기간		2021~2023	2021~2025
규모	연면적	7,800㎡	6,758㎡
	층수	지하 2층, 지상 7층	지하 1층, 지상 5층
	비고	마곡지구 대상 계획(2020. 10.)	서울대 시흥캠퍼스 대상 계획 재수립(2022. 5.)

2023년 1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내 설계완료 및 공사발주를 계획하였으며, 2025년 10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였음.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주요 계획안 >

일자별	주요 계획
2022. 12. 27.	설계공모안 심사 및 당선작 선정
2023. 1.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계약체결
2023. 9.	설계완료 및 인허가
2023. 10.	공사발주
2023. 11.	공사착수(공사기간: 24개월)
2025. 10.	공사준공

자료: 재외동포재단 기부금 운용 및 관리계획(안), 2022. 12. 29일

그러나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교통영향평가, 서울대 캠퍼스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등을 위하여 설계용역이 일시 중단되어 당초 계약기간보다 1년을 연장하였고 24개월의 공사기간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보다 3년이 지연된 2026년 하반기가 되어야 건립이 완료될 것으로 보임.

< 2023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관련 계약체결 현황 >

(단위: 백만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변경사유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주식회사 신한종합건축사 사무소	1,052	'23.1.9.	(당초) '23.1.25.~'23. 9.21 (변경) '23.1.25.~'24. 9.29	사업이관 행정 소요기간 등 반영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주식회사 이원알앤디	45	'23.5.15.	'23. 6. 1. ~ '24. 3.26.*	-

2020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잦은 계획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건립이 공사기간 내에 완공되지 못함에 따라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발생한 공사비 인상으로 당초 예산액에 맞추어 건립규모를 축소하였음.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은 재외동포의 염원으로 기부금 조성[251]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음.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되었으며,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으로 향후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 간 교류 증진 및 재외동포를 위한 각종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의 기능적 역할이 증가될 것으로 보임.

251)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자금 등으로 18억원이 접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부족으로 인한 건립규모 축소는 향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상시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한인네트워크로서의 거점 역할, 해외이주 역사유물 전시관 운영 등 필요한 목적 및 역할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 발생할 수 있음.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청 설립 및 「재외동포기본법」제정 등 상황변경을 고려하여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가 당초 목적한 바와 같이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건립규모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Ⅲ. 재외동포청 통합 재무결산 분석

1. 총 괄

국가재정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을 근간으로 한 「국가회계법」이 제정(2007. 9)되고, 결산보고서의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한 개정「국가회계법」(2008. 12)이 시행되고 있는 바,

각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는 2009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모든 기금에 대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의 국회제출이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의무화되었음.

이하에서는 재외동포청 일반회계에 대한 통합재무제표를 분석하고자 함.

2. 재정상태표[252]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3(A)	조직개편일(B)	증 감(A-B)	
				금 액	비 율
자 산	일반회계	7,988	-	7,988	-
부 채	일반회계	103	-	103	-
순자산	일반회계	7,885	-	7,885	-

252)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가. 자 산[253]

2023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자산은 79억 8,800만원이며, 주요 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의 취득으로 인해 유·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나. 부 채[254]

2023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부채는 1억 300만원이며, 주요 요인은 미지급금의 증가에 따른 유동부채의 증가와 공무직 채용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인 장기충당부채 발생에 따른 것임.

다. 순자산[255](=자산-부채)

2023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순자산은 78억 8,500만원으로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따른 것임.

---

253)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하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성자산으로 구분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254)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하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등으로 구분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255)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으로 구분함.

3. 재정운영표[256]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3(A)	조직개편일(B)	증 감(A-B)	
				금 액	비 율
Ⅰ.프로그램순원가	일반회계	24,523	-	24,523	
Ⅱ.관리운영비	일반회계	13,825	-	13,825	
Ⅲ.비배분비용	일반회계	-	-	-	
Ⅳ.비배분수익	일반회계	0.4	-	0.4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일반회계	38,348	-	38,348	
Ⅵ.비교환수익 등	일반회계	-	-	-	
Ⅶ.재정운영 결과(Ⅴ-Ⅵ)	일반회계	38,348	-	38,348	

가. 프로그램순원가

프로그램순원가[257]는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제적 자원의 소모액을 의미하며 정부회계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자원 소요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재외동포청 프로그램순원가 산출단위는 총 2개의 프로그램임.

2023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프로그램순원가는 245억 2,300만원이며, 이는 주로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256)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임(「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257)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나.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 정부행정기관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경비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각종 수수료, 제세공과금, 교육훈련비, 여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연구개발비 등이 이에 해당함.

2023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관리운영비는 138억 2,500만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 발생에 따른 것임.

다. 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국가의 자산 매각 시 발생하는 자산처분 손실과 같이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과 직접적·간접적인 대응관계가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비용을 의미함.

2023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비배분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음.

라. 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자산처분이익, 평가이익 등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발생하거나 프로그램 외의 업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의미함.

2023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비배분수익은 40만원임.

마. 비교환수익 등

비교환수익 등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을 의미함.

2023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비교환수익 등은 발생하지 않았음.

바. 재정운영 결과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258]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뺀 것을 의미함.

2023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재정운영결과는 383억 4,800만원임.

4. 순자산변동표[259] 분석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3(A)	조직개편일(B)	증 감 (A-B)	
				금 액	비 율
Ⅰ.기초순자산	일반회계	-	-	-	
Ⅱ.재정운영 결과	일반회계	38,348	-	38,348	
Ⅲ.재원의 조달 및 이전	일반회계	46,234	-	46,234	
Ⅳ.조정항목	일반회계	-	-	-	
Ⅴ.기말순자산(Ⅰ-Ⅱ+Ⅲ+Ⅳ)	일반회계	7,885	-	7,885	

258)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은 더하고 비배분수익은 뺀 액수를 의미함.
259) 순자산 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임.

가. 기초순자산

기초순자산은 전기(前期)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 금액임. 2023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기초순자산은 발생하지 않았음.

나. 재정운영 결과

재정운영 결과는 재정운영표에서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이나 사업의 원가에서 재정운영에 대한 원가회수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지표로 앞의 재정운영표에서 증감요인을 설명하였음.

다.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023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462억 3,400만원이며, 이는 국고수입의 증가 등에 따른 것임.

라. 조정항목

조정항목은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2023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조정항목은 발생하지 않았음.

마. 기말순자산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 결과를 빼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과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출하는 개념임.

2023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기말순자산은 78억 8,500만원임.

Ⅳ. 재외동포청 성과관리 분석

1. 총 괄

「성과관리제도」란 기존의 투입·통제 중심의 방식을 벗어나 성과관리를 통해 획득된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정부 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위주로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함.

「국가재정법」 제8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6호에서는 성과관리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즉, 성과관리란 각 기관이 그 임무달성을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후, 조직의 역량과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이나 자원배분, 개인의 성과보상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근거하여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바, 각 정부기관은 성과계획서에 그간의 정책

성과, 해당연도의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의 조직, 인원 등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성과목표체계에 따라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를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순차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에 해당하는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그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 및 성과 달성률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목표달성 기여도와 목표달성 과정 및 성과미달성 원인분석과 향후 성과이행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2. 성과체계 현황

재외동포청의 임무는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한다.”이며, 비전은 “자랑스런 700만 재외동포를 보호·지원하는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사회의 대변자”임. 재외동포청이 ’23.6월에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23년 성과체계는 외교부 성과체계 내 프로그램 목표 Ⅳ-3을 달성하기 위한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외동포청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

구분	전략 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소 계	일반재정	정보화	R&D
개수(개)	-	1	4	4	-	-
비율(%)	-	-	100	100	-	-

재외동포청 설립(2023. 6. 5.) 이전 외교부의 프로그램 목표 Ⅳ-3에 해당하는 2023회계연도 예산은 589억 4,600만원임. 이 중 성과관리 대상 예산은 584억 4,900만원이며, 결산액 기준으로는 330억 830만원임.[260]

260) 재외동포청 설립(2023. 6. 5.) 이후 청 소관 예산은 총 561억 3,300만원임. 이 중 성과관리 대상 예산은 376억 3,500만원이며, 결산액 기준으로는 303억 6,300만원임.

< 재외동포청 소관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 액(A+B)		-	-	584	331
단위사업 설정	일반재정	-	-	584	331
	정보화	-	-	-	-
	R&D	-	-	-	-
	소계(A)	-	-	584	331
단위사업 미설정	인건비	-	-	-	-
	기본경비	-	-	-	-
	사무환경 조성	-	-	-	-
	소계(B)	-	-	-	-

외교부 2023년도 결산의 재원목표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재외동포청 소관의 “프로그램 목표 Ⅳ-3 :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영사서비스 접근성을 지속 제고하고 재외동포의 정체성 및 역량을 강화한다.”가 속해 있는 “전략목표 4 :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 활동을 지원한다”에 전체 재원의 8.2%인 1,229억원을 투입하였음.

< 외교부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결산액	비중
□ 전략목표 1 : 한반도 평화 · 번영 및 동북아 안정 · 협력에 기여한다.	220	1.5
□ 전략목표 2 : 상생 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161	1.1
□ 전략목표 3 :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13,056	87.5
□ 전략목표 4 :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1,229	8.2
□ 전략목표 5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147	1.0
□ 전략목표 6 :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115	0.8

< 외교부 2023년 성과목표관리체계도 >

외교부는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고, 전 세계의 자유, 평화,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 Ⅳ	전략목표 Ⅴ	전략목표 Ⅵ
한반도 평화·번영 및 동북아 안정·협력에 기여한다	상생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프로그램목표 Ⅱ-1	프로그램목표 Ⅲ-1	프로그램목표 Ⅳ-1	프로그램목표 Ⅴ-1	프로그램목표 Ⅵ-1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	아세안·동남아·유럽지역 및 중앙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공영의 지역별 맞춤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강화한다.	UN 등 주요 국제기구에 적극적인 참여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역할 강화를 통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 구축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외교지평을 확대한다.	문화·지식·정책 공공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내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지지를 증진한다.	다자경제외교 및 주요국과의 지역 경제외교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한다.	외교연구와 교육을 강화하여 역량 있는 외교인재를 양성한다.
	프로그램목표 Ⅱ-2	프로그램목표 Ⅲ-2	프로그램목표 Ⅳ-2	프로그램목표 Ⅴ-2	
	중남미·아중동지역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생협력 강화 및 아프리카 중동 지역으로 외교지평을 확대한다.	원자력·비확산·군축 분야 국제협력강화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한다.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기후·환경·에너지·과학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프로그램목표 Ⅲ-3	프로그램목표 Ⅳ-3		
		SDG 달성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선진적·전략적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한다.	해외체류 우리국민의 영사서비스 접근성을 지속 제고하고 재외동포의 정체성 및 역량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 Ⅲ-4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규범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주도하고,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3. 2023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재외동포청의 2023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를 보면, 1개의 프로그램 목표에 총 2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음. 2개 성과지표 중 2개 성과지표 모두 달성(100~130%) 하였음.

< 재외동포청 2023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단위: 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 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1	2	-	2	-
	100%	-	100%	-

< 성과지표별 달성 현황 >

성과지표	목표 대비 달성률	
1.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적	목표 / 실적	51,218건 / 52,438건
	달성률(%)	102.4
2. 한민족 정체성 함양 지수	목표 / 실적	88.1점 / 88.1점
	달성률(%)	100.0

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배정액은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금 등을 위한 ‘재외동포 지원’과 재외동포청 출범(‘23.6.5.)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 사무환경 조성 등 ‘재외동포 행정지원’을 위한 총 219억 9,700만원의 일반예비비로, 이 중 70.6%인 155억 3,400만원이 집행되고, 15억 6,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8억 9,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예비비 지출내역 >

(단위: 백만원)

사항	프로그램명	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지 출 내 역
일반 예비비	재외동포 지원	4,752	4,661	-	91	-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재외동포 행정지원	17,245	10,873	1,565	4,807	- 인건비 - 기본경비 - 사무환경 조성 -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정보화)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합 계		21,997	15,534	1,565	4,898	

가.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은 재외동포정책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국민여론, 동포사회 분위기 등을 조사·수렴하여 성공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억 2,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3,200만원을 집행하고 9,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예비비 편성 대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123	32	-	91	
합 계	123	32	-	91	

□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 검토 부족

재외동포청 개청에 따라 재외동포 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 등 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사업착수 과정에 수반되는 정책대상 및 전문가 의견 청취, 관계자 업무 협의, 대외 아웃리치 등을 위하여 예비비를 배정받았음.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재외동포청의 출범은 예상하지 못하였고 독립기관 단위의 신규정책 관련 예산소요를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타당함. 그러나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사업이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국민여론, 동포사회 분위기 등을 파악하고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이므로 재외동포청 출

범에 따른 재외동포 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 등을 위하여 별도로 예비비를 배정받을 것이 아니라, 사업 내 조정을 통한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

예비비로 집행한 내역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개최, 재외동포담당관회의 개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설명회, 기본계획 설명자료 제작 등 다수의 사업이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중복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 예비비 세부 집행내역 >

세부사업명	예산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예비비] 32백만원 * (일반수용비) 원폭피해동포 초청 관련 번역 · 사할린 영주귀국 법률자문 11백만원, 기타 정책업무 관련 소모품 · 회의용품 등 9백만원 * (임차료)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5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사할린 영주귀국 설명회 출장 3백만원 * (사업추진비) 재외동포담당관회의,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4백만원

재외동포청은 예비비를 배정받은 후 예상하지 못한 해외 정치일정으로 인하여 국외 업무수행이 제한되었고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동일 비목의 예산 여유분을 우선 집행하여 단가 절감 노력 등에 의하여 예비비의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기정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예비비로 배정받은 것으로 보임.

향후 재외동포청은 예비비의 사용계획시 기정예산으로 충당가능한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

나.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등 46억 2,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36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4,600만원은 이월하고 5억 6,600만원은 불용하였음.

< 예비비 편성 대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4,629	3,618	646	566	
- 인건비	2,980	2,631	530	20	
- 경상운영비	1,649	987	116	546	

□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외교부에서 이체된 기정예산 2억 100만원 및 예비비 배정액 29억 8,000만원을 포함한 총 31억 8,10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고 이 중 26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음. 주요 이월내역은 명예퇴직수당 2억 9,200만원, 조기퇴직수당 7,200만원, 경영평가성과급 1억 4,700만원 등임.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기본법」부칙 제4조에 따라 해산된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을 정원 내에서 고용 승계하되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의 수가 센터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초과하면 그 초과 현원을 정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4년 1월 기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현원은 정원보다 10명이 많은 47명임.

< 재외동포협력센터 인력 운영 현황(2024. 1월 기준) >

(단위: 명)

구분	임원	일반직						무기계약직	별도정원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원	2	1	4	8	10	11	-	-	1	37
현원	2	-	7	7	10	18	2	-	1	47*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정원 초과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퇴직금규정」 부칙 제3조(한시적 조기퇴직금 지급기준 적용특례)를 신설하였고[261] 2024년 12월 20일 이전에 조기퇴직을 신청할 경우 기본연봉월액의 12개월분을 조기퇴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인건비 이월 내역 >

(단위: 백만원)

비목	세부 내역	이월액	이월사유
보수 (110-01)	명예퇴직 수당	292	· '24년에도 추가 수요조사 실시하여 명예퇴직 시행 예정
	조기퇴직 수당	72	· '24년에도 추가 수요조사 실시하여 조기퇴직 시행 예정
	'23년 경영평가 성과급	147	· 외교부 산하기관 평가위원회가 2024년 1월 개최되어 사고 이월
고용부담금 (320-09)	4대보험료(12월분)	19	· 센터 임직원 12월분 보험료 등
합계		530	

261) 2023. 6. 5. 「퇴직금규정」을 제정하면서 특례규정을 신설함.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024년에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262]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건비 3억 6,400만원을 이월하였음.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인건비 이월은 명예퇴직·조기퇴직 수당 이월집행계획에 따른 것이고 2023회계연도에 퇴직희망자가 확정되지 않았고 추가 수요조사를 통하여 퇴직예정자를 확정할 계획이므로 지출원인행위 없는 사고이월에 해당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263]을 준수하지 않은 것임.

재외동포협력센터는 명예퇴직·조기퇴직 시행시 2024년도 인건비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인건비를 이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퇴직수당 지급에 대한 특례규정이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일인 6월 5일이 제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2024년 예산안 편성시 퇴직수당에 필요한 재원을 편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부족한 재원은 시급하지 않은 여유재원의 이·전용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음.

---

262) 2023. 10월 명예·조기 퇴직 시행으로 1명 퇴직 처리, 퇴직희망자 추가 모집을 통한 감원 필요

263)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Ⅵ.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검토의견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재외동포청은 주의 2건, 제도개선 2건의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으며, 시정요구 총 4건에 대해 조치완료 되었음을 국회에 보고하였음.

<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조치 결과	구분				소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징계	
조치완료	-	2건	2건	-	4건
조치 중	-	-	-	-	-
소 계	-	2건	2건	-	4건

Ⅴ. 대체토론 요지

1. 외교부 소관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위한 예산 전용 문제 등 시정 2건, 외빈차고지 개축사업의 실제 공사기간 및 사전 행정절차 검토 미흡에 따른 사업지연 등 주의 13건,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집행 관리 강화 필요 등 제도개선 29건을 시정요구 할 필요 있음.

2. 통일부 소관

○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 삭제 필요에 대한 시정 1건,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및 연구결과 공개 확대 필요등 주의 12건,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한 사업의 추가지연 방지 필요 등에 대한 제도개선 20건을 시정요구 할 필요 있음.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연례적 전용 방지를 위한 비목별 적정예산 반영 필요에 대한 주의 1건, 분과위원회 회의참석률 저조 관련 대책 필요 등 제도개선 2건을 시정요구 할 필요 있음.

4. 재외동포청 소관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지연에 따른 건립규모 재논의 및 사업관리 필요 주의 1건, 사할린동포지원사업의 통합관리 필요 등 제도개선 9건을 시정요구 할 필요 있음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1. 외교부 소관

○ 2건의 시정, 13건의 주의, 29건의 제도개선 등 총 44건의 시정요구를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2. 통일부 소관

○ 1건의 시정, 12건의 주의, 20건의 제도개선 등 총 33건의 시정요구와 2건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1건의 주의, 2건의 제도개선 등 총 3건의 시정요구를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4. 재외동포청 소관

○ 1건의 주의, 9건의 제도개선 등 총 10건의 시정요구를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Ⅵ. 심사결과

1. 외교부 소관

원안의결

2. 통일부 소관

원안의결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원안의결

4. 재외동포청 소관

원안의결

Ⅶ. 부대의견

1. 외교부 소관

없 음.

2. 통일부 소관

○ 통일부는 남북간 교류협력 및 대화·협상능력 유지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운용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개선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통일부는 국민의 통일인식 제고와 남북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저해하는 예산 집행을 지양한다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없 음.

4. 재외동포청 소관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Ⅸ. 시정요구사항

【외교통일위원회】

1.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 총 90건(결산·예비비 합계)

(단위: 건)

부 처 명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복)	합 계
외교부	-	-	2	13	29	-	44
통일부	-	-	1	12	20		33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	-	-	1	2	-	3
재외동포청	-	-	-	1	9	-	10
합계	-	-	3	27	60		90

2. 시정요구사항(결산)

가. 외교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연례적, 관행적 예산 전용 문제**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국외업무여비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임차료 등으로부터 약 80억원 이상의 전용 발생함. 특히 임차료 및 공공세제 등 경직성 항목에서 전용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고질적 문제로 판단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국외업무여비예산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 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외교센터 민간임대 공실률 개선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국립외교원은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온비드(국가공매포털)를 통해 유상사용허가 일반입찰 공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3층 민간임대공간의 경우 2020년 외교부가 외교타운을 환수하여 관리를 맡은 이후 2024년 현재까지 공실인 상황이며, 현재 민간임대 전 공간이 모두 공실임 ○ 국립외교원 근무인원 1명당 사무공간이 상당부분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외교부 사무실 입주현황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일부 본부 조직을 외교타운으로 입주시키는 방안, 임시조직인 기획단이나 TF의 활동 공간으로 외교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등 외교센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립외교원 사용 현황을 점검하여 근무인원 1인당 사무공간을 재조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1132-403)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민족공동체 해외협력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북한이탈주민 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63.2%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중 ‘탈북민 의료지원’, ‘공관보호 탈북민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집행률이 특히 저조하며, ‘주재국 유관기관과 정기협의체 운영’, ‘주재국과 협력관계 구축’ 사업은 탈북민 수의 증감과 상관없이 적극 집행되어야 하는 예산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향후 체류국 정부와 현지 교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면밀한 집행계획을 세워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		
4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집행실적의 연례적 부진**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1134-401)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 내역은 40~70%대이고, 2023년도의 경우 집행률이 61.8%로 전반적으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향후 중국측 국내정세 변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행사대행용역 조달수수료 이월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1135-404)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외교부는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행사 대행용역’ 계약대금으로 2023년 4월과 8월에 각각 선금과 잔금을 수탁기관에 지급하였으며, 조달수수료는 이월하여 2024년 1월 집행하였음 ○ 조달수수료는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외교부는 즉시 조달청장에 통보하고 조달수수료를 연내 납부했어야 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조달수수료의 부적절한 이월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6	세목조정을 통하여 적합한 비목의 예산 확보 후 광고 요청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1135-404)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사업의 정부광고는 집행목적에 적합한 비목의 잔액이 부족하였음에도 지출원인행위(광고의뢰)를 하여 「국고금 관리법」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집행을 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향후 지출원인행위 전 적합한 예산비목을 확인하고 잔액을 확보한 후 사업을 집행하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사업을 정상 및 총리외교에서 부적정 집행**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상 및 총리외교(1231-401)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외교부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의 본회의 행사장 조성을 위하여 정상 및 총리외교 일반용역비에서 2억 8,682만원을 집행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별도의 정상회의 세사업이 편성된 경우 개별 세사업에서 정상회의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예산 집행 및 업무 수행을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8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적극적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기구분담금(2100)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국제기구 의무분담금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으로서 의무적 지출에 해당할 것이나, 2023년도는 환차손, 회계연도 불일치 또는 국제기구의 수정예산안 제출 등으로 인해 국제기구 분담금 미납액이 발생하였음 - 기타 의무부담금은 예산 편성액을 전액 집행하였음에도 환차손 등으로 인하여 24억 9,800만원을 미납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의무분담금 미납이 발생할 경우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고지받은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국제기구 분담금 분류기준의 일관성 미흡**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2131-404)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국제질병퇴치기금에 편성되었던 CEPI(감염병예방혁신연합), GPEI(글로벌 소아마비 박멸 이니셔티브), Global Fund(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에 대한 국제기구 분담금이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지 않았음 ○ 동일한 국제기구에 납입하는 분담금을 분할하여 각각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납부거나 기금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제기구 분담금으로 분류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같은 국제기구에 납입하는 분담금을 분할하여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각각 납부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기금 사업이라도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하는 등 관리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할 것		
10	**국제기구 분담금 자체평가에 대한 관리 · 보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2131-404)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가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피평가자인 개별 부처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존하고 있고, 개별 부처의 자발성 및 관점 차이로 인해 일관성 있는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국제기구 분담금 자체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분담금 납부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국제기구초급 전문가(JPO) 파견경비 집행 및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기구초급 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ODA)(2231-401)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가 중도에 사임을 하여 반납액이 발생하는 경우 외교부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2021년과 2023년 JPO 조기 사임에 따라 국제기구측이 해당 금액을 반납한 두 건에 대해서만 세입처리를 하였으며, 각 국제기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향후 JPO 파견 시 사용해 오고 있음 ○ 일부 국제기구와의 양해각서에 정산 관련 내용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연도별·기구별 집행액 및 정산 내역의 체계적 관리가 부재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향후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을 위하여 새로운 국제기구와 양해각서를 맺을 시 파견경비 정산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매년 집행액 및 정산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각 국제기구에서 반납액이 발생하거나, 국제기구와의 양해각서가 종료되는 경우에 기구측 예치 잔액을 신속히 국고로 세입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12	**소규모 무상원조사업(ODA)의 집행가능성 검토 및 집행절차 관련 법령 개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아시아태평양지역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사업선정 시에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아 2023년도 예산액의 34.8%를 이월하였음 ○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집행절차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관련 절차를 규정한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은 개정되지 않았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소규모 무상원조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회의 시정요구에 적합하게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소규모 무상원조(ODA)의 수원국별 지원한도의 적정성 검토 및 지원 기준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불특정 소규모 원조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세부내역을 특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편성되며, 일반협력국에 대한 물자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수원국별 지원한도가 크게 상향조정되고 예외에 해당하는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및 현금지원이 증가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향후 사업 집행 시 소규모 무상원조 수원국별 지원한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중점협력국에 대한 예외적 배정기준을 명확화하며, 물자지원원칙을 준수할 것		
14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집행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도적지원(ODA)(2438-402)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는 5년 사이 4배 가량 증가하여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뒤따르지 않을 위험과 체계적이고 시기적절한 예산집행이 어려울 수 있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인도적 지원 계획과 인력, 조직 역량이 미흡할 수 있음 - 인도적 지원 프로젝트별 성과지표 개발 및 정기적인 효과성 평가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 효과성 평가 메커니즘의 도입과 인도적 지원 예산 사용에 대한 상세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 제3자 감사 시스템 도입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인도적 지원 예산에 대한 효과성 평가 메커니즘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급격하게 증가된 인도적 지원 예산이 체계적이고 적시에 집행되도록 주기적인 집행률 점검 등의 노력을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해외긴급구호 (ODA) 사업 평가시기 조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도적지원(ODA)(2438-402)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교부는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고 있는바, 결산 심사와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에 해당 결과가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큼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해외긴급구호 결과를 국회에 상반기에 보고하도록 시기를 조정해 적절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		
16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의 수의계약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공외교 역량강화(2631-403)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의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목적으로 과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음 - 현장실습원의 채용 및 파견준비 업무를 분리하여 2건의 용역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수의계약을 허용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과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여 공개입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진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인플루언서 활용 해외안전홍보예산 확대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국민 보호(2731-401)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해외안전여행 홍보 사업은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예산이 2차례에 걸쳐 6천 5백만원으로 대폭 확대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해외안전여행 홍보 사업과 같이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 경우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18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위한 예산 전용 문제**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3032-401)	시정	외교부
		지적사항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일부 세목조정 등 변동 및 국외여비 (220-02) 확보 명목으로 전용한 예산 총 5억 9,300만원이 발생함. 부산엑스포는 예산 편성 및 심의 당시에 계획에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같이 예상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과학기술 외교강화 사업의 집행부진**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후변화 녹색환경 외교강화(3131-401)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과학기술 외교강화’ 사업은 AI, 반도체 등 첨단과학기술의 주도권을 두고 미·중을 비롯한 여러 강대국들이 패권다툼을 벌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나, 동 사업의 23년도 예산 18억 900백만원 중 6,700만원은 이·전용되었고 6억 8,300만원(약39%)이 불용처리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과학기술 외교강화 사업의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중복 및 추진취소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것		
20	**재외공관 직원 개인차량 공용사용비의 차등지급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4011-251)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재외공관의 직원 개인차량의 공용사용에 대한 지원금은 직무등급별로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직무등급에 따라서 사용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공적 사용의 정도와 직무등급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직원 개인차량의 공용사용 지원금에 대한 차등지급 방식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장애인 고용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4021-401)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국가기관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고용할 경우 정원의 3.6% 이상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용할 의무가 있으나,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국가예산으로 납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2021년 5.6억, 2022년 6.2억, 2023년 7.1억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장애인 근로자 채용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인사 소요 발생 시 이를 고려한 인력수급 방안과 함께 장애인 고용 독려방안을 마련할 것		
22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증원 및 처우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4021-401)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관련하여 업무과다, 예산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관리 개선, 인건비 현실화 및 주거보조비 지원, 처우개선, 재외공관 인력 유출 방지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증원과 인건비 현실화 및 주거보조비 지원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재외공관 관서운영경비 이월 관행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4031-401)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외교부가 제출한 연도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이월이 있었으나, 결산상에는 이월이 없었던 것으로 표기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 내 이월 예산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상 규정의 취지를 감안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할 것		
24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해소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4031-401)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다수의 재외공관에서 리모델링 사업 지연으로 교부된 사업비가 실집행되지 못하고 있음 - 연례적으로 공관으로 교부된 예산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이 과다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의 집행부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실소요수준의 예산을 반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 현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1)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4차례에 걸쳐 46억 9,300만원을 전용하였고, 자체 내역변경을 포함할 경우 52억원이 부족하였음 ○ 과도한 기본경비의 이·전용은 기관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의 연례적 이전용을 지양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6	**실제 공사기간 및 사전 행정절차 검토 미흡에 따른 사업지연**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전장실 기본경비(7011-203·253): 외빈차고지 개축사업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외빈차고지 개축사업은 외빈차량운영팀 사무실 및 외빈차량 보관·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를 동시에 계상하여 예산현액 중 60.1%를 이월하였고, 관련 행정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전용이 이루어짐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외빈차고지 개축사업 등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 공사, 감리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행정적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지연을 최소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예산 심의 당시와 다른 변칙 집행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대응(7033-404)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재외공관장회의 개최를 위하여 약 8억 5천만원의 전용이 발생함. 행사장 조성 용역(2,500만원에서 9,900만원), 임차료(3,300만원에서 5,200만원) 등 예산 내역과 변동된 내역이 다수 발생한 바, 용역이나 임차료 등은 예상 및 계획이 가능한 예산 항목임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공관장회의 개최 사업과 같이 예산 변동 내역이 다수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28	**국회 감액 사업의 증액 집행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7033-403): 소통 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사업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통 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사업 예산은 정부안(1억 8,400만원) 대비 5,500만원 감액이 조정되었으나, 외교부는 2023년 제2회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를 위해 5,650만원을 동 사업으로 전용 증액하여 행사장 조성 및 방송 연출 용역 비용으로 집행한 바,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을 증액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에 반하는 동시에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도 위반되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소통 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사업의 사례와 같이 국회 감액 사업을 증액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홈페이지 개편 사업의 미추진 및 교체 여비로의 전용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외교홍보역량강화(7034-401): 온라인 홍보 강화 사업	시정	외교부
		지적사항	○ 외교부는 2023년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당분간 홈페이지 전면 개편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동 예산을 재외공관 직원 이부임을 위한 교체 여비로 전용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홈페이지 개편 사업 미추진 및 전용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치고, 예산을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		
30	**국가별 협력사업(ODA) 예산의 조정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	제도개선	한국국제 협력단
		지적사항	○ 일부 국가별 협력사업(ODA)은 전용을 통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전액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낮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국제협력단은 연도 내 집행가능한 금액을 추계하여 이월 또는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과도한 예산조정을 최소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차차기이월금 과다 계상 및 이자수입 과소 추계**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	제도개선	한국국제 협력단
		지적사항	○ 매년 상당액의 결산잉여금을 차차기년도 수입으로 편성하여 그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이 사업수행에 활용되지 않고 있음 ○ 이자수입 추계방식이 최근 5개년 이자수입 평균값을 사용하여 직전 연도의 차차기이월금을 직접 반영하기 어려운 측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국제협력단은 확정된 결산잉여금을 바로 차년도 수입에 반영하고, 출연금을 감액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며, 이자수입을 추계함에 있어 직전 연도의 기준금리 변동 등 외부 환경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32	**신규 ODA 사업 예산 편성시 수원국의 특성 고려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	제도개선	한국국제 협력단
		지적사항	○ ODA 사업은 다년간의 사업 경험을 통해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수원국의 행정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수원국의 행정적 특성으로 인하여 신규 ODA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신규 ODA 예산 집행률이 부진한 다수의 사업이 사업기획단계의 예산만 집행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국제협력단은 신규 ODA 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수원국의 행정적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협의과정이 모호한 국가별 협력사업의 경우 1차년도에 사업기획단계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국가별 협력사업(ODA)의 철저한 사업관리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	제도개선	한국국제협력단
		지적사항	○ 실제 집행단계에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확인되고 있으나, 명목집행률이 높게 나타나 국가별 협력사업의 명목집행률과 실제 사업추진상황 간에 괴리가 있음. 또한, 2023년 신규 국가별 협력사업의 집행이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한국국제협력단은 무상 ODA 사업의 실질적 집행정보를 제공하고,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집행 가능한 사업에 초과 배정하는 방식을 시정하며, 사업의 지연요소를 면밀히 관리할 것		
34	분쟁 및 취약국 지원(ODA)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	제도개선	한국국제협력단
		지적사항	○ 2023년도 신규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약정 체결 및 1차년도 약정액 지급이 대부분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어 원조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표면적인 집행률은 높으나 국제기구의 실집행은 저조한 경우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국제협력단은 신규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디지털정부 ODA 신규사업 발굴 및 선정 관련 후속 조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	제도개선	한국국제협력단
		지적사항	○ 감사원은 한국국제협력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2023.08.)에 “현지국가에 근거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의 ODA 정보시스템 설치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하며 ‘기관주의’를 통보한바, 이에 따라 디지털 정부 ODA사업은 중단된 상태임 - 추후 감사원은 일률적으로 현지의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시 수원국의 관련 법령 개정 진행상황 등에 맞추어 추가대책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라는 취지라고 밝힘		
		시정요구사항	○ 한국국제협력단은 감사원의 취지를 본부 및 48개 해외사무소 임직원들에게 조속히 공지하고, 디지털정부 ODA 신규사업의 발굴 및 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미비를 이유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36	한국국제협력단의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	제도개선	한국국제협력단
		지적사항	○ 한국국제협력단은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징계가 있었음에도 징계부가금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국제협력단은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한국국제협력단의 내부감사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	제도개선	한국국제협력단
		지적사항	○ 감사원이 발표한 ‘2022년도 공직 비리 기동감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은 고위직 임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등 뇌물수수와 같은 비위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자체 내부조사 뒤 별도의 인사 처분 없이 퇴직 처리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국제협력단은 비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감사 제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38	**부진한 인도네시아(ODA) 사업의 대책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도네시아(ODA)(2431-402)	주의	한국국제협력단
		지적사항	○ 19억 7천 7백만원이 편성된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실집행 3% 미만이고, 28억 8천만원이 편성된 ‘인도네시아 재난대응 공공의료 훈련 역량강화사업’은 사업변경절차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 - 2023년도 예산 심의에서도 두 사업과 관련하여 저조한 집행률이 지적되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었으나, 외교부가 집행의지 피력으로 편성됨		
		시정요구사항	○ 한국국제협력단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PCP(공식 사업요청서) 등의 철저한 검토와 사업수행역량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국가별 협력사업에 대한 신9속한 후속 절차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스리랑카(ODA)(2431-408)	주의	한국국제협력단
		지적사항	○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사업 추진 미비로 인한 사업취소 검토가 요구되었으나 2023년까지 집행 없는 예산 편성이 지속된 후 2023년 4월 사업이 최종 취소됨 - 2023년도 예산 심의에서도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었으나, 외교부가 집행의지 피력으로 편성됨		
		시정요구사항	○ 한국국제협력단은 향후 수원국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경우 불필요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절차를 마련할 것		
40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2433-405)	주의	한국국제협력단
		지적사항	○ 아이티 UNDP 취약계층 여성역량강화 및 소득증진 사업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현지 정세로 인해 전면 중단된 상태로, 2022년부터 편성액을 감액하였으나 매년 불용됨 ○ 동 사업은 2023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었으나 외교부가 집행의지를 피력하여 편성됨		
		시정요구사항	○ 한국국제협력단은 아이티 지원사업 예산의 불용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민간기업 및 비영리기구를 지원하는 ODA 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2435-404)	제도개선	한국국제협력단
		지적사항	○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내역사업 중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은 파트너 기업의 파산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고,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은 해외민간기관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고 있어 자금의 집행 및 사업성과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 ○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중 계속사업의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예산이 공개되지 않아 사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국제협력단은 CTS 사업 및 IPS 사업의 집행점검을 강화하고, CTS 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한 사업수행기반 마련과 IPS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원투입에 따른 효과성을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중 다년도에 걸친 계속사업의 사업내역을 공개할 것		
42	**기여금 감면으로 인해 폐지·삭감되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예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 국제교류기금 - 법정부담금(12-59-593): 국제교류기여금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최근 여권발급 비용 인하, 예산 편성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이루어지는 등 국제교류기여금의 재원이 축소되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원활한 사업 운영에 차질이 있음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학기반확대 사업은 집행률 99.1%, 글로벌인적교류 98.8%, 한국문화해외확산 99.5% 등으로 높은 사업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바, 재단의 우수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국제교류기여금의 재원 축소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 타기금 전입, 민간 기부금 확대 등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수입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3	**한국국제교류재단 예산 편성 근거에 맞춰 사업을 시행할 필요**	관련사업명	○ 국제교류기금 - 한국학기반확대(2632-401)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한국학 강좌 운영사업, 한국학 전문가 육성사업 등 국제교류재단 사업에서 예산 편성 근거와 집행 내역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회가 승인한 예산편성 근거대로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국회 승인 사업은 감액시키고 추가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도 함 ○ 업무 위탁 계획이 무산된 것, 한국학 현황 조사 용역비를 다른 연구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 연구 성과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 등은 국회가 가진 정부 예·결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국제교류재단이 사업 계획과 집행 결과에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국회 예산·결산심의 권 침해하는 부당한 예산전용**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1135-401)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외교부 아태국은「한일관계사 대응 및 미래지향」사업 추진과정에 한일관계개선으로 국외여비 수요 폭증을 이유로 정책연구비 49.5백만원을 국외여비로 사용함 ○ 외교부 아태국은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사업」에서 99.5백만원을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증진」사업으로 전용, 한중일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국내외여비, 행사장비용 등으로 사용하고도 '출장보고서의 경우,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일방이 공개 곤란함을 양해 바란다' 며 출장보고서 등 관련 증빙자료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한일관계 개선이 국외여비 수요 폭증의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올바른 한일관계사 대응에 사용해야 할 정책연구비를 국외여비로 전용한 것은 국회예산 심의권 침해 뿐 아니라 국민 일반 정서에도 심히 어긋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한일관계사 대응에 사용해야 할 정책연구비를 국외여비로 전용한 것은 국회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시정하고, 출장보고서 등 관련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할 것		

나. 통일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개최실적 제고 필요 등**	관련사업명	총괄, 통일정책추진(1031-300),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 등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통일부가 운영중인 소속 위원회(4개) 중 법령상 국회(또는 국회의장)의 위원 추천이 필수인 위원회(남북관계발전위원회 2회,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0회) 뿐만 아니라, 그 구성·운영이 국회 추천 등 외부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위원회(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3회,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4회)도 회의개최 실적이 부진한 바, 회의개최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소속 위원회 위원 위촉에 비수도권, 여성 등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를 위해 성별·지역·직능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균형있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소속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을 제고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 위촉을 통해 전문성, 공정성 및 신중성을 확보할 것		
2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 삭제 필요**	관련사업명	※ 관련 예산사업 없음	시정	통일부
		지적사항	○ 불법시위 개최 및 주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삭제를 권고하였으나, 통일부, 외교부, 과기부는 현재도 해당 규정을 존치 중임.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및 연구결과 공개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정책연구개발(7031-300), 통일정책추진(1031-300) 등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통일부는 2023년 정책연구비(260-02)로 8개 세부사업과 13개 내역사업에 총 62개 과제, 17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정책연구개발(7031-300)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43건 중 32건(74.4%)을 수의계약에 의해 수행하였고, 통일정책추진(1031-300)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36건의 정책연구과제 모두 수의계약에 의해 수행함. ○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는 부분공개를 포함하여 그 공개 비율이 2021년 81%, 2022년 79%, 2023년 74%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정책연구과제의 과도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연구결과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4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정산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세입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기타경상이전수입’(10억 3,500만원 수납)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자체 감사 후 환수금액 등이 수납되는 비목이며, ‘기타재산이자수입’(7,400만원 수납)은 보조금 관련 발생이자 및 관유물대여료 분할납부시 이자 등이 수납되는 비목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 완료하여야 하나, 2022년도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가 2023년 연내 미수납된 사례(2022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 집행잔액 6,400만원 등)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정산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운영 실적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통일정책추진(1031-300)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신규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11억 800만원 집행)은 통일미래전략 구상·수립, 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 지원을 위해 통일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출범한 첫 해임에도 예산집행률은 73.9%에 그쳤으며, 법령상 회의운영 기준도 준수하지 못함. ○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을 제고하여 예산불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법령에 따라 설치된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사업 실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것		
6	**통일+센터 구축 사업 지연에 따른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해 있는 통일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는 종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인데, 당초 2024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된 강원·충청·경기 지역의 통일+센터 설립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 ○ 강원권 통일+센터의 경우 2024년 10월 개관 예정이나, 경기권·충청권의 경우 사업이 반복 지연(예산이월 반복)되어 2025년 6월과 10월로 각각 개관이 늦춰짐.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통일+센터 건립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통일+센터의 명확한 역할 정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에서, 일부 센터의 경우 지역통일관의 역할을 겸하고 통일체험·문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 등과 그 역할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해당 센터가 설치된 특정 지역에 통일 관련 인프라가 편중되어 있음. ○ 역할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여 하나센터, 지역통일관 등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통일교육 인프라 기관과 역할이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권역 내 통일 관련 인프라의 지리적 편중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권역별 통일+센터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여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통일교육 인프라 기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8	**당초 예산계획에 없던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사업 추진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에서 당초 예산계획에 없던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용역) 추진을 위하여 변경 집행을 통해 일반용역비 1억원을 조성하고 8,000만원을 집행한 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충실한 사업계획을 통해 정규예산에 편성하고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신규사업 추진시 관련 예산을 정규예산에 편성하고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자부담 미이행 등 관리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민화협은 2018년부터 4년간 통일문화축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파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총 9,100만원)으로 통일부 보조사업의 자부담(20%)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됨. ※ 통일부 담당자는 민화협이 파주시 지원금으로 자부담 정산 처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보조사업자의 단체 특성,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0	**적정 예산과목 편성으로 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통일기반조성(1031-302)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사업에서 일반수용비가 과다 불용(1억 5,000만원)된 바,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외여비와 업무추진비가 함께 편성되지 못함에 따른 결과임. ○ 사업 취지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적정예산 과목(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적정 예산과목을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11	**북한경제연구포럼 사업 구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세분석역량강화(1533-307)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 내역사업은 북한경제에 대한 연례적 평가 및 북한 경제의 구조적·심층적 분석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억 5,000만원 중 3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을 불용함. ○ 동 사업의 목적은 정부와 북한경제연구자 간 종합적 소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는데, 포럼 운영에는 세미나 개최 비용 1억원(28.6%)만 편성되어 있고, 일반연구비 및 정책연구비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 다른 정책연구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 내역사업을 사업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게 포럼, 세미나 등 형태의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한 사업의 추가지연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1535-310)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통일정보자료센터는 북한전문도서관 기능의 자료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09억 7,700만원 중 50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59억 5,500만원을 불용함. ○ 동 사업은 당초 2023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고양시의 부지 변경 요구로 착공 진행 불가에 따른 설계 중지로 설계비 기성금 잔액 5,000만원, 공사비 등 59억 500만원, 총 59억 5,500백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향후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일정의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설계, 착공 등에 있어 철저한 집행관리를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내역사업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집행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은 북한인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한 홍보사업인데, 2023년도 당초 예산(1억 500만원)에는 임차료가 편성되어있지 않았으나, 내역사업 간 조정을 통해 계획에 없던 '북한인권영화 다시보기'의 상영장소 임차료(800만원)로 집행함. ○ 콘텐츠 개발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장소 임차를 위해 집행한 것은 당초 사업 계획이 면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사업추진시 보다 면밀한 계획을 통해 내역사업간 예산 조정 등 변경집행을 최소화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14	**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인력양성, 문화행사, 공론화 등의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2023년도에 18개(상반기 15, 하반기 3)단체에 총 18억원을 집행함. ○ 보조단체에 대한 통일부의 종합평가 결과, 3개 단체는 '미흡'으로 (상대)평가되었고 일부 단체는 예산을 불용(9~20%)한 경우도 있으며, 통일부 공모사업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공모사업에 동시에 선정되어 이중으로 지원된 단체(3곳)도 확인된 바,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집행지침을 마련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보조사업자 선정시 정치적 중립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인력양성, 문화행사, 공론화 등의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2023년도에 18개(상반기 15, 하반기 3)단체에 총 18억원을 집행함. ○ 보조사업 추진 시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를 배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시행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보조사업자 선정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단체를 배제할 것		
16	**당초 계획에 없던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위한 전용 등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2135-303)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 중 자료 발간을 위한 예산은 당초 2,000만원이었으나, 다른 세부사업 등에서 전용, 내역변경 등을 통해 총 1억 2,100만원을 더 조성하여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국문판 5,900만원, 영문판 8,200만원)함. ○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동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별도의 홍보사업을 진행하기도 한 바, 과도한 전용 등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볼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충실한 사업계획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정규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과다한 전용 등 변경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인권재단 운영(2135-304)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북한인권 실태조사,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 시행일(2016.9.4.)에 맞춰 재단이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재단 이사 구성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됨.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어 예산 집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출범 후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		
18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사업 연말 예산전용을 통한 사업 추진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사업(2023.12.1. 서울 코엑스 개최)은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전용을 통해 추진되었는데, '23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2억 3,000만원을 전용하여 2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불용됨. ※ 구인 기업체 141개, 북한이탈주민 약 1,200여명 참가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후 국회 심의를 거쳐 정규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연말 예산전용을 통한 사업 추진은 지양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내실있게 운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통일부 훈령 제697호) 에 따르면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탈북민을 위촉할 수 있으며, 반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총 138개 지역협의회 중 탈북민 위원이 위촉된 지역협의회는 15개에 불과하며, 반기별 회의 개최 규정을 준수한 지역협의회는 3년간 15개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구성 및 운영 대책을 마련할 것		
20	**하나센터 직원 처우개선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25개 하나센터 근무 직원 127명 중 1년 미만 퇴직자가 59명으로 나타나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하나센터 현황: 서울(4), 인천(1), 부산(1), 대구(1), 대전(1), 광주(1), 경기(6), 강원(2), 전북(1), 전남(1), 충북(1), 충남(1), 경북(1), 경남(1), 제주(1)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하나 센터 근무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정보화 사업 추진시 적극적 성과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2331-500)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세부사업에 총 11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2023년도 기존 내역사업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4억 2,400만원과 신규 내역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에 7억 2,500만원을 집행함. ○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정보화 예산이 10억 이상인 경우 성과평과 수립 및 성과지표 관리가 필요함에도 2023년도에 동 사업을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함.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정보화 사업 관련 성과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10억 이상)을 내역사업 기준이 아니라 세부사업 기준을 적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성과관리에 임할 것		
22	**연례적 집행부진에 따른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2337-301)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자활의지 제고를 위해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정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09억 8,100만원 중 100억 8,600만원이 집행되고, 108억 9,500만원은 불용함. ○ 북한의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가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탈북민 입국인원 추계의 정확성 부족으로 인해 예산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임(2023년도 예산 기준 탈북민 550명, 실제 입국인원 196명).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향후 국제정세 및 북한의 동향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 운영사업의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개편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3032-303)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 사업(4억 1,400만원 집행)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임. ○ 최근 3년간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 중 휴면 중인 기업이 20개 내외이고, 소비재박람회, 국회 상품전시회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등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들의 성과는 정체 또는 축소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 관련 기존 사업의 결과분석 및 2024년 이후의 사업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24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 사업의 예산 과다 계상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3036-312)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1억 4,700만원 집행)은 남북 그린데탕트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남북공동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 ○ 예산심의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현실적 어려움 등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아 결국 예산액의 51%를 불용(1억 5,300만원)처리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지적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절감 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의 과다계상을 지양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남북회담 역량강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남북회담 추진(4031-300)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남북회담 역량강화 사업(400만원 집행)은 남북회담·협상과 관련한 지식 습득과 국제 사례 조사 등을 통해 대북협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 남북회담 담당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외부전문가 및 회담 유경험자 강의 등을 통해 회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그 사업 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유관부처 합동 해외 사례조사 사업 또한 2023년 집행되지 않았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남북회담 역량강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담당 인력의 협상 역량을 강화하고 남북회담에 대한 상시 대응태세를 구축할 것		
26	**남북회담문서 공개사업 열람 방식 확대 ·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남북회담 추진(4031-300)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분야별회담 추진 사업(8,000만원 집행)은 북한과의 분야별 회담·접촉을 추진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사업임. ○ 남북회담 사후조치의 일환으로 30년이 경과된 남북회담문서를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2022년과 2023년의 남북회담문서 자료 열람건수를 보면 각각 19건과 11건으로 열람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수도권에 편중된 남북회담문서 열람 장소를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확대하고, 전자적 열람 방안을 마련하여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홍보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교육목적에 맞게 현장견학 프로그램 개선 및 세목조정을 통한 위탁용역 신설 집행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5031-304)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국립통일교육원의 장·단기 교육과정(1억 3,400만원 집행)은 통일 및 통합과정을 주도·견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 예산 집행액의 15%를 현장견학에 사용하였는데, 통일정책 지도자과정에는 통일과 무관한 통영·제주 등 관광지 방문 등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에서는 사업계획에 없던 현장견학 위탁용역 추진을 위해 1,500만원을 세목조정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통일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현장견학 위탁용역 등을 세목조정을 통해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28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개설 지원사업의 수강인원 확대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국립통일교육원의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개설 지원사업(7억 100만원 집행)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강형식과 1학기 동안의 학점과정인 통일 강좌로 나눠 지원하는 사업임. ○ 대학생 통일강좌 수강인원 점검 결과 2020년 2,779명 대비 2023년 수강생이 1,681명으로 40% 급감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대학생 통일강좌 수강인원이 급감한 원인을 파악하고, 수강인원생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교직원 및 대학(원)생 대상 통일논문 등 공모사업 활성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사업(4,200만원 집행)과 대학(원)생 통일논문 및 통일 홍보 영상 공모 사업(4,400만원 집행) 등 공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관련, 2021년 대비 2023년의 응모 수는 41%, 입상 수는 43%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대학(원)생 통일논문 공모 사업 또한 응모 수와 입상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통일논문 등 공모사업 상금을 올리고,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예비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는 동시에 입상 후 연계활동을 개발하는 등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할 것		
30	**지역사회 통일교육 제공 주체의 분절화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통일교육 강화(5031-309)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사업(45억 3,000만원 집행)은 지역 통일교육 인프라 확충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통일관을 지원하는 등 사회통일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통일부는 지역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인프라로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역통일관 및 통일+센터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각 조직의 역할이 통일강좌 확산, 체험학습 등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역통일관 및 통일+센터 상호간 역할과 위치 등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통일 인프라의 역할을 조정 및 재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보조사업자 예산 집행 관련 교육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남북협력기금 - 사회문화교류 지원(2040-401)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사회문화교류 지원 사업(계획액 215억원 중 34억 5,600만원 집행)은 남북한 교육·학술협력사업 및 인적왕래, 그 밖의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지원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가보조금통합시스템에서 보조사업자가 예산집행시 원고비 및 제작비를 사업추진비(240-01)로 집행하고 행사 식대를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는 등 예산비목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편성 비목과 국가보조금통합시스템상 집행 비목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조사업자의 예산 집행과 관련한 교육 강화 등 예산 집행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32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의 부채 상환 방침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남북협력기금 -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3041-403)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사업(20억 2,700만원 집행)은 개성공업지구의 행정·지원을 위해 설립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운영 등을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나, 동 재단의 기본임무와 역할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2024.3월 해산을 의결하였음. ○ 재단의 주요 자산이 북한 개성공단에 소재하고 있어 평가액 산정과 현금화 가능성에 한계가 있으나, 남북협력기금에서 재단에 운영자금으로 대출한 금액 중 788억원 및 외화대출 $1,577,050이 미상환 상태임(2023년 12월말 기준).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부채 상환에 대한 방침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남북경협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남북협력기금 -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3040-403)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사업(집행액 없음)은 북한과의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소요 자금을 대출함으로써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임. ○ 남북경협이 장기간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 사업 청산, 추가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장기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북경협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분과위원회 회의참석률 저조 관련 대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문회의 운영(1031-300)	제도개선	민주평통
		지적사항	○ 내역사업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은 통일정책 자문 등을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법정위원회 중 분과위원회의 경우 자문위원 출석률이 최근 5년간 평균 65.8%, 2023년에 59.6%이고, 2023년 상반기에 일부 분과위원회(청년·교육 37%, 인권·국제협력 39.1%, 국민소통2 40.9%)는 회의체의 기본요건인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음. ○ 상임위원회와 함께 자문 기능의 중추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위원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민주평통은 분과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연례적 전용 방지를 위한 비목별 적정예산 반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문회의 운영(1031-300)	주의	민주평통
		지적사항	○ 동 세부사업에서 2020년부터 매년 여비 또는 사업추진비를 전용하여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부족분에 충당하고 있음. ○ 예산의 전용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특정 비목에 대한 연례적, 반복적 전용을 지양해야 함.		
		시정요구사항	○ 민주평통은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각 비목별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변경집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국내 출범회의 참석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문회의 운영(1031-300)	제도개선	민주평통
		지적사항	○ 내역사업 '국내·해외 출범회의'는 21기 자문회의 출범을 국내외에 선포하고 활동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임. ○ 2023년 21기 국내 출범회의(11.28.)의 위원출석이 정족수에 미달(48.8%)한 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과반수 출석의 정상적인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민주평통은 회의 일정을 조기에 수립하고, 자문위원의 자발적인 참여 제고를 위한 관리조치 등 제도개선을 할 것		

라. 재외동포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워킹홀리데이 이행 사업의 외교부 이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워킹홀리데이 이행(5033-301)	제도개선	재외동포청
		지적사항	○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관련 협정 체결 담당 부처로서 재외국민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및 동 사업이 국내에 들어오려는 외국인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사업은 재외동포청이 아닌 외교부에서 소관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재외동포청은 정부조직개편의 취지와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외교부로부터 이관된 워킹홀리데이 이행 사업의 소관이 적정한지 다시 검토할 것		
2	**실적보고서 제출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5035-301): 동포단체 활성화, 조사연구활동지원사업	제도개선	재외동포청
		지적사항	○ 국내 재외동포단체가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한 실적보고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재외동포청의 16개 보조사업 중 5개의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는 기한을 준수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재외동포청은 보조금에 대한 실적보고서 지연 제출 사유를 파악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해외 동포단체의 기념성 행사 지원 시 심의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5035-301): 해외경상이전 비목 관련	제도개선	재외동포청
		지적사항	○ 재외동포청은 해외 동포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135개 사업을 선정하여 99만 1,400달러를 지원하였고, 그 중 6만 9,400달러가 반납되어 전체 반납률은 7% 수준인데, 17개 사업은 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아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6만 7,400달러) 반납함		
		시정요구사항	○ 재외동포청은 해외 동포단체에 대한 기념성 행사 지원금의 반납 사유 등을 조사하여 추후 사업을 선정할 때 이를 고려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4	**국내외 동포단체 지원을 통하여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자료 보관 및 활용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5035-301): 국내외 동포단체 지원사업	제도개선	재외동포청
		지적사항	○ 국내외 동포단체 지원사업은 매년 500여개 단체에 5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포단체에서 시행한 사업결과물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설립에 맞추어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 중임을 고려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와 협의를 통해 각종 동포단체 지원사업에서 생성된 결과물 중 재외동포 관련 기록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사할린동포지원 사업의 통합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5035-301),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5038-302)	제도개선	재외동포청
		지적사항	○ 사할린동포를 지원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유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교류협력강화(5035-301), 아주러시아동포 정책강화(5038-302)에서 세사업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업무의 비효율 및 행정비용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의 예산을 일원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6	**스터디코리안 운영사업의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5035-302): 스터디코리안 운영사업	제도개선	재외동포청
		지적사항	○ 재외동포 학습자와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스터디코리안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교사인증과정’의 수료율이 낮고 세부과정의 차이가 없으며,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학습’의 수강인원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시정요구사항	○ 재외동포청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 개선, 타 기관과의 협력 강화, 콘텐츠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사인증과정’의 수료율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학습’의 수강인원 증가를 위해 영어권 화자 뿐 아니라 비영어권 화자로 학습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재외국민등록제도 신뢰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7131-301): 재외국민등록제도	제도개선	재외동포청
		지적사항	○ 대부분의 공관에서 재외국민등록률이 추정 재외국민의 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등록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등록률의 편차도 큼 ○ 부정확한 재외국민등록 실태는 정부가 해외체류중인 국민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게 하고 재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의 등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외국민등록제도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8	**재외동포 아카이브 시스템 조속 구축 및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록전시운영(7002-702):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사업	제도개선	재외동포 협력센터
		지적사항	○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재외동포 관련 기록 보존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세계 재외동포가 이용 가능한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록콘텐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사업인 바, 수집된 자료는 내부자료로 보관하는데 그치고 대국민 및 전 세계 재외동포가 이용가능한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제공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 기록물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존·관리 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자료실 미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록전시운영(7002-702): 자료실 운영	제도개선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협력센터
		지적사항	○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되어 자료실 소장자료의 보유·관리 권한이 재외동포청을 거쳐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관되었으나 청사 공간 부족,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의 건립 지연 등의 사정으로 자료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소장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활용을 위해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이전까지의 자료실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10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지연에 따른 건립규모 재논의 및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7004-704):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주의	재외동포 협력센터
		지적사항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는 당초 2023년 건립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마곡지구의 매입불가 통보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로 대상지를 재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완공일을 2025년으로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였고, 실제 건립은 당초 계획보다 3년 지연된 2026년이 되어야 완료될 것으로 보임 ○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건립규모도 7,800㎡에서 1,042㎡가 감소한 6,758㎡로 축소됨		
		시정요구사항	○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청 설립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상황변경을 고려하여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가 당초 목적한 바와 같이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건립규모에 대하여 재논의하고 향후 계획된 공사일정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3. 부대의견

가. 외교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재외동포청

○ 없 음

나. 통일부

○ 통일부는 남북간 교류협력 및 대화·협상능력 유지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운용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개선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통일부는 국민의 통일인식 제고와 남북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저해하는 예산 집행을 지양한다